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ISSN 3022-2141

2023 HUMAN RIGHTS OF CHILDREN

# 아동인권 보고대회

##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쟁점과 대안
##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세상

**일자** 2023.11.23 (목) – 11.25 (토)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19층 매화홀

국가인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동인권 보고대회'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사를 해 주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님과 안성초등학교 윤원형 학생을 비롯해 세션별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학교현장을 둘러싸고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강력한 교권 보호를 요구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그에 공감하여 교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각에서는, 지금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인권과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학교가 진정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올해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생활지도,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관련법, 학교규칙 등 지금 학교현장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관련 당사자·현장·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학생자치와 정책결정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동인권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 두 환**

#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오준입니다.

2023년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무력 분쟁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아동단체, 학계,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동등하게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모든 어른들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이 공통 주제로 다뤄집니다. 참여권은 다른 모든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만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고대회는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아동 당사자를 포함하여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진행한 모니터링의 결과와 제언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일깨워 주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저를 포함한 한국 아동단체 구성원들도 오늘 보고대회의 발표를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오 준**

# 축 사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2년에 걸쳐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성초등학교 6학년 윤원형입니다.

먼저 2023년 아동인권보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과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매우 큰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큰 무대에 선 설레임과 함께 모니터링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과 아동의 인권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 어린이가 느끼는 아동인권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른들이 느끼는 아동인권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동인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아동인권을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이 아동인권보고대회는 아주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우리는 어린이들이 곧 “미래”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외침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인권을 향한 발걸음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소유물이나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오늘의 아동인권보고대회와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어져 문제점를 발견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인권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진정한 아동인권이 잘 보호받는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준 아동인권보고대회가 진정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아동인권보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안성초등학교 6학년 **윤원형**

□ 일시 : 2023. 11. 23.(목) ~ 11. 25.(토)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19층 매화홀

| 일 자 | 시간 | 프로그램 |
|---|---|---|
| 11. 23. (목) | 10:15 ~ 10:30 (15') | 〈개회식〉 |
| | | 개회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br>축 사 : 오 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br>윤원형 (안성초등학교 재학생) |
| | **1부 _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쟁점과 대안** | |
| | 10:30 ~ 12:00 (90') | 〈세션 1〉 **학생인권조례와 생활지도** |
| | | • 좌장 :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br>• 발제 : 이제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br>• 토론 : 김지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br>수 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br>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 | 12:00 ~ 13:30 | 점심 및 휴식 |
| | 13:30 ~ 15:00 (90') | 〈세션 2〉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
| | | • 좌장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br>• 발제 :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br>• 토론 :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br>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이필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br>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
| | 15:00 ~ 15:15 | 휴식 |

| 일 자 | 시간 | 프로그램 |
|---|---|---|
| 11. 23. (목) | 15:15 ~ 16:45 (90') | 〈세션 3〉 **학교규칙 실태** |
| | | • 좌장 :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br>• 발제 :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br>• 토론 :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조사관)<br>**박지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br>**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br>**지권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 11. 24. (금) | 10:00 ~ 10:30 | 등록 |
| | 10:30 ~ 12:00 (90') | 〈세션 4〉 **학교폭력 제도** |
| | | • 좌장 :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발제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br>• 토론 :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교육법률지원 변호사)<br>**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br>**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 | 12:00 ~ 13:30 | 점심 및 휴식 |
| | **2부 _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세상** | |
| | 13:30 ~ 15:00(90') | 〈세션 5〉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
| | | • 좌장 :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 발제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br>• 토론 : **유근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br>**일 움** (인권 활동가)<br>**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
| | 15:00 ~ 15:15 | 휴식 |

| 일 자 | 시간 | 프로그램 |
|---|---|---|
| 11. 24.<br>(금) | 15:15 ~ 17:15<br>(120') | 〈세션 6〉 **2023 아동인권 정책·현장 모니터링<br>(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
| | | • 좌장 : 이고은 (법률사무소 온강 변호사)<br>• 발표 : 김요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br>남화성 (경기대학교 평가사업단 대학기관연구센터 교수)<br>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br>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br>고영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및 전북동화중학교 교사)<br>양오석 (국민의힘 광진(갑) 당원협의회 청년특별보좌관)<br>이정찬 (정의당 청소년위원장)<br>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11. 25.<br>(토) | 09:30 ~ 10:00 | 등록 |
| | 10:00 ~ 13:00<br>(180') | 〈세션 7〉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br>(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
| | | • 사회 : 김건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재학생)<br>강민경 (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br>• 발표 :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br>권역별 당사자 모니터링 참여 아동 및 연구자<br>• 토론 : 김나연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책임활동가)<br>코 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br>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
| | 13:00 ~ | 폐회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차 례



## 1부 _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쟁점과 대안


### 〈세션 1〉 학생인권조례와 생활지도

- 발제 : 이제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5
- 토론 : 김지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 33
  수 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 41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48

### 〈세션 2〉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 발제 :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 67
- 토론 :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 99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00
  이필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 106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 109

### 〈세션 3〉 학교규칙 실태

- 발제 :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 125
- 토론 :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조사관) ····· 151
  박지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158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 166
  지권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175

### 〈세션 4〉 학교폭력 제도

- 발제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 189

• 토론 :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교육법률지원 변호사) ····· 207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 214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217

## 2부 _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세상

### 〈세션 5〉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 발제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231

• 토론 : 유근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 249
일 움 (인권 활동가) ····· 250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 254

### 〈세션 6〉 2023 아동인권 정책·현장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 발표 : 김요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261
남화성 (경기대학교 평가사업단 대학기관연구센터 교수) ····· 267
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 275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283
고영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및 전북동화중학교 교사) ····· 290
양오석 (국민의힘 광진(갑) 당원협의회 청년특별보좌관) ····· 296
이정찬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 299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03

### 〈세션 7〉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 활동소개 ····· 309

• 공통주제 발표 :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17

• 공동주제 사례발표 : 김의준, 이서현, 신민서, 강승후, 오연우 (불사조, 서울2-2) ···· 355
김민건, 이민성, 이재원, 이효린, 임주원,
최아인, 최주희 (포에버드림, 서울2-3) ····· 36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손성호, 안유비 (카프리썬, 전남1) ····· 374
김지현, 서유민, 장지민 (경남즈, 경남) ····· 383
이한진, 정예림, 곽효민 (NLCS, 제주1) ····· 388

• 권역별 사례발표 : 이가인, 김태우 (LENS US, 전북) ····· 397
심예나, 김주하 (징징컴퍼니, 서울2-1) ····· 408
최준용, 이아인, 신은수 (기억해, 서울1) ····· 412
김성채, 윤동건, 윤원형, 윤태영 (안성초프렌즈, 경기1) ····· 418
윤수영, 정세현, 홍유나 (라이트빌더, 경기2) ····· 428
이누리, 김하율, 신영인 (감자, 강원) ····· 436
임연아, 임은미, 정단비 (세렌디피티, 전남2) ····· 445
김수아, 이명은, 최서영 (DHI 인연동, 경북2) ····· 455
권성수, 이예찬 (우리가 이기조, 충남) ····· 465
변환기, 이시영 (다함께, 충남) ····· 470
박단비, 이바울, 신수아 (은광지역아동센터, 서울3) ····· 476
김선유, 양태은, 김진성 (안양외고, 경기3) ····· 482
이도혁, 한서준 (청자, 경북1) ····· 497
김정범, 정현희, 김민경 (c_lens_w, 충북) ····· 502
이유민, 강윤교, 박한주 (Youth Activists, 제주2) ····· 518

• 토론 : 김나연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책임활동가) ····· 529
코 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532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 53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1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쟁점과 대안

세션 1

# 학생인권조례와 생활지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발제

#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돌아보기

## - 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

이제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돌아보기

## - 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

**이제호**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Ⅰ. 서론

## 1. 학생인권조례 및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규정 현황

2023년 교사의 노동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교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동시에 '지나치게 강해진 학생 인권으로 인해 교사의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보도와 발표를 연달아 내었다. 이에 한동안 교권의 논의는 교사가 처한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논의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맨 처음 공격받은 대상은 손쉽게 폐지·수정할 수 있는 각 시·시도 학생인권조례였다.

먼저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추가하고 생활지도를 따라야 하는 의무규정, 그리고 생활지도에 불응 시 학생에게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추가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이미 2022. 12. 27.자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1]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초·중등교

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생활지도법”)이 통과되어 2023. 6. 28.자로 시행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신설하였고, 2023. 9. 1.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학생생활지도’의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고시에 맞추어 학칙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 2. 학생인권조례,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인권 친화적 학교

위와 같은 요구와 흐름에는 ① 현재 학교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화된 학생 인권’으로 분석하고, ②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교사의 생활 지도(통제)권한의 회복’으로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전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허하게 만든다.

이러한 전제는 ‘학교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논의를 축약시킨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지, 학교 공동체와 조직이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학생이 시민으로서 존재하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 학생인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무엇인지, 그 안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를 위해 교사의 노동권과 근무 환경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학교 공동체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 등의 논의는 모두 후순위로 밀리게 만든다.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주제 세션 중 한 세션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로 구성 되어있는 점이나 학생인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의

1)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용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무의식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칙을 준수하고 공동체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만큼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여러 갈등 상황,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학교 내 인권침해 및 폭력 상황 등)에서 공동체가 이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움직임과 생활지도권에 대한 접근방식은 학교 현장에서 위와 같은 담론을 모두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이하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현황, 학생생활지도의 제도적 도입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Ⅱ. 학생인권조례의 의의 및 조례안·폐지안 현황

##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경위 및 의미

### 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의 시도가 채택해 시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그 대상을 넓힌 '학교 인권조례'를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각 시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대한민국 헌법」,「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3조,「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 나. 학생인권조례가 보호하는 권리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역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당국 및 교육기관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여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교육행정청 및 학교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인 원리를 교육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여 비차별의 원칙을 실현하고,“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와“교육에 관한 권리” 및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을 통하여 생존·발달·보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와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권리는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다.

## 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규범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인권조례가 다양한 인권 개념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선언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립,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시행,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

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학생인권이 개선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보고서[2]에서는 다양한 학생인권환경에 대한 지표 결과를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비시행 지역으로 나눠서 비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인 학생인권 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직접체벌 경험은 23.5%, 간접체벌 경험은 30.5%인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비시행 지역의 경우(직접체벌 경험 32.4%, 간접체벌경험 40.6%)와 큰 차이가 난다.[3] 또한, 두발규제 유무(66.1%, 39.6%), 소지품 검사 유무(23.2%, 11.5%)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이 외에도 성적 공개와 그에 따른 차별, 휴식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비시행 지역과 비교하여 보다 나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및 대응

그러나 2023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는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발의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000여 명의 서울시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이 청구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가 이를 수리하였다. 이러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은 그 청구취지가 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반인권

2)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3)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71, 89.
4)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102, 112.

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수리하지 않고 각하를 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수리가 이루어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제4조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제외 대상을 규정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로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를 둔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폐지함으로써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수리, 발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시민 등 당사자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서울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충청남도에서도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청구되어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해당 폐지 조례안은 행정기구로 볼 수 있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발의되어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학생 및 도민이 원고가 되어 위 폐지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 3. 시도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서울특별시, 경기도)

### 가. 개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은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학생인권의 내용을 축소하여 규정하거나,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들을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 나. 서울학생인권조례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1조(목적)에 “학생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하고,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과 제25조(징계 등절차에서의 권리) 제5항을 신설한다. 제4조의2는 다시 기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조 제5항의 내용을 옮겨온 제1항과 항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2항,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한 금지사항을 정한 제3항으로 구성된다. 제3항은 금지사항으로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제1호), 학교규범의 준수(제2호),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제3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제4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제5호), 흉기, 마약, 음란물 등 안전 및 학습권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 금지(제6호) 각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제5항은 2023. 9. 1.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부터 제13조에 규정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하게 학생의 책임, 의무, 금지 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학생 인권의 내용을 더 축소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유와 권리의 한계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조),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4조제5항),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5조제1항),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교육과정 변경 및 학생의 교내외 행사 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내용 수정(안 제8조제2항),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수정(안 제9조제2항),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정(안 제10조제2항), 학생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안 제19조의2제1항),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방법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25조제4항),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을 학생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안 제26조 등),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매년에서 2년 마다로 변경(안 제33조 제1항),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임명 절차 간소화(안 제39조제2항), 용어의 현행화, 불명확한 자구 수정 및 현실과 불부합한 조문 삭제(안 제9조 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Ⅲ. 학생생활지도법 및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

## 1.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 〈신 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법률 제19096호로 2022. 12. 27. 일부 개정되어 2023. 6. 28.자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법'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규정으로, 의무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원'으로 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학교의 장에게만 학생지도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있었다. 또한, 개정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규정되어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이에 포함되어있는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으로 '교원[5]'에게 생활지도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제18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및 '인권을

5)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만을 의미(「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처럼 선언적,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기존의 제18조 제1항의 징계권과 학생에 대한 지도권 중 지도권 부분을 교사에게도 부여한 규정인바, 그 내용에 있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신설

###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 신설

위와 같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권한과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를 통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 구체화되었다.

특히, 제40조의3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신설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범위와 권한,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고시로서 법률적으로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규칙(고시)은 대내적인 규정에 한정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그러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배제, 징계에 따른 자유 제약,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제한)을 담고 있다. 특히, 생활지도 불응시 징계 요청권이 발생하거나 교원지위법상 바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위임 입법한계를 위반하였다는 위헌의 소지, 즉, 적어도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내용을 단지 고시에서 규정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 내용(고시의 주요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는 범위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쟁점 사항을 살펴본다.

### ○ 제3조(교육3주체의 책무)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학생의 학칙 준수와 생활지도 준수는 의무 조항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인권보장 및 학생 지원의 내용은 노력 조항으로 규정한 불균형이 있다.

○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원칙적 금지 제한적 허용이라는 것이 법률 체계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제5조(학업 및 진로)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 제6조(보건 및 안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한 사항들은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실질적인 생활지도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 ○ 제8조(그 밖의 분야)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나 용의 복장 제한을 하여 개성을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 권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 제9조(조언)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 상담 ·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조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생활의 자유침해 내지는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금지 등 제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 제10조 이하의 조항들은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더 크다.

○ 제10조(상담)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에 대한 거부 권한과 절차 등을 교장과 교원에게만 부여한다는 문제가 있다.

○ 제11조(주의) :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교내 질서 유지 저해할 소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이라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배할 소지가 있다. 또한,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배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될 여지도 있다.
- 특히, 제12조 훈육, 제13조 훈계 등 규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부담의 효과와 교사의 징계 요청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질 필요 있다.

### ○ 제12조(훈육)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 ·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물리적)제지, 분리, 물품의 조사와 보관’ 같은 직접적인 기본권 제한 내용을 ‘고시’ 수준에서 담고 있다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거 법령에도 ‘훈육’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 해당 내용에서 물리적 제지나 조사, 분리 등이 도출되기는 힘들다.
- 또한 다른 법령에서는 이러한 제재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다른 법률과 체계 정합성 문제가 있다.
- 구체적으로 제2항의 ‘지시’는 불명확성이 높고 의무없는 일을 과업으로 강요하거나 간접체벌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3내지5항의 제지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봄이 타당한바, 정당방위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고 타법령과도 체계 정합성이 맞을 필요가 있다.
- 물리적 제지의 경우, 해당 요건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데, 이는 실질적 현장에서 교사 개인에게 상황 판단에 전적인 부담이 지어질 위험이 있다. 또 반대로는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물리적 제지가 부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위험

성도 존재한다.

- 6항, 9항의 분리의 경우, 학생에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바,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
- 또한, 제3호, 제4호의 교실 밖 분리의 경우, 안전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나 절차 등을 더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학칙으로 정해놓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잇다.
- 제8항 제9항의 물품조사 및 보관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수색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준한 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에도 고시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우려”나 “의심”등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추가적으로 보관 이후 환부, 보상에 대한 책임이나 내용도 없다.)
- 제11항 학급생활규정의 경우, 학칙과 고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학급 생활규정”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 제13조(훈계)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 ·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훈계의 내용은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원상복구의무 부담으로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이다.
- 그러나 그 요건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는 학생”이라고 규정하여 ‘잘못’이라

는 주관적 판단 및 자의적 판단, 내심의 의사에 따라 훈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도 어떤 내용인지 불명확하다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성찰하는 글쓰기는 사실상 반성문처럼 활용될 경우,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 내용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성찰하는 글쓰기는 고시 초안에서 반성문으로 예고되었던 것이 의견수렴을 통해 명칭이 수정이 된 것인바, 그 의도가 반성문에 해당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는 최소한의 고의 과실 여부 및 인과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 ○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불응시 조치의 요건도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의 내용도 아무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특히, 해당 조항을 통해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나 판단없이 바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며, ②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징계청구권이 발생하는바,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Ⅳ. 인권 친화적 학교의 관점에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과 학생생활지도 규정의 한계 및 우려 사항

## 1.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조례 개정안에 관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의 후퇴를 의미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폐지 움직임에 비한다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인권 친화적 학교의 실현에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이라 한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먼저, 조례 개정안은 형평에 맞지 않게 학생에게만 책임이나 금지의무를 부과한다. 기존의 조례에도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의무나 협력·존중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생의 책무 규정을 별도 여러 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에게는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만 부과하는 것에 그치는 것에 비하여 학생의 금지의무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러 조에 거쳐서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나아가,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준수 의무와 그에 따른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 법률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② 조례개정안에는 인권의 기본 원칙과 개념 등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학생에게 인권 보장·보호의무를 규정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인권 보장 의무 주체와 보호 대상을 혼동하는 규정이다. 법률적으로 사인(私人)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의무는 국가와 사회, 공공기관, 학교와 같은 공적 주체의 의무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인에 의한 법집행이나 사적 구제를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인권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권은 타인의 법률과 인권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 누군가에 의하여 혹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내용 자체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 개정안에서는 학생의 인권은 인권의 내용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는 형태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야기하고 학교 현장에서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을 추상적·선언적 규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불균형한 책임·의무·금지 규정은 현실에서도, 법률적 판단에서도 학생에게 더 과도한 의무 부과와 기본권 제한을 할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의무규정'은 일상적인 학교 공간에서는 학생에게 지나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법적인 다툼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안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규정된 것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학생에게 부과된 의무, 금지, 징계, 생활지도에 순응하였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과도하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실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2.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관하여

현행 학생생활지도법안과 관련 규정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 규정의 내용은 그 자체로 학생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그 내용과 요건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생활지도 및 생활지도 고시는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자, 존중하자 이런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규정을 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주로 교사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기준을 설명하는 데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학교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역을 교사 개인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사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그 내용은 어떠한 방식이 인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학생의 생활이나 행동을 지도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 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이 직접 모든 판단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이 겪고 있는 '독박교실'의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된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통해 소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과 절차를 부여하였는바, 이에 대한 실패나 책임은 모두 교사에게 역으로 지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학생생활지도라는 도구를 주었다는 핑계로 학교 현장 및 공공의 영역에

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교사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의 논의는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교사 개인의 노동권도 효과적으로 보호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것보다는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 규정의 수범자의 지위만 강조된다는 한계가 있다.

즉, 현행 학생생활지도 법안과 그 해석의 내용은 학생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교사의 권위 및 독박교실 운영에 학교 교육의 많은 의무와 책임을 던져두었던 과거의 교실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이를 문제의 해결 도구로 받아들이게 하여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나아간 논의를 막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오랜 기간의 걸쳐 겨우 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인권의 인식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생인권조례 및 폐지 여론으로 급격한 후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나 문제행동 그리고 교사가 처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학교 안에서의 다른 논의들을 모두 흐리게 만들고 있다.

‘학생 인권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대립 구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사 개인이 학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현재 교사들이 처한 문제나 학교의 문제상황의 분석과 대안 마련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고, 또 교사들과 대중들에게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학생 인권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며,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본질은 교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독박 교실의 문제, 그리고 매우 열악한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규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의 회의 자리에서 어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고 때리는 것은 안 되지만, 교실에서 뒤로 나가 서 있으라는 지도를 못하게 하면 수업이 진행인 안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어쩌면 현재도) 학생에 대한 폭력과 체벌은 당연한 생활지도의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폭력과 체벌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식은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체벌은 안 된다고 하는 법률과 규정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체벌과 폭력은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가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차와 권한을 넘어 무엇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위한 방법인가를 논의하는 환경과 지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움직임과 학생생활지도 법안의 도입은 이런 논의를 사라져 버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① 학칙 혹은 생활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

학생생활지도의 영역은 법률적으로 그 행위 태양을 규정하거나 매 상황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영역이다. 또한 학생생활지도는 교원지위법과 결합하여 학생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를 상대적으로 명확성이 담보되는 법령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대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의 학교 공동체를 위한 학칙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은 학교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동의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구성원이 학칙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여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생활지도 활동이 서로 예측가능하고 합의가 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한 학칙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지, 또 학내·외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소외하는 내용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② 교원의 노동권 지원 :

결국 학교 공동체에서 위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물질적, 인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 스스로 본인이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닥칠 수 있는 불이익한 상황이나 위급 상황에서도 안전함이 보장되고, 자신에게 지워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원에게 수업, 교육행정 등 업무를 넘어 원활하게 인권 친화적인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학생인권조례 내지 학생인권법의 제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학생의 권리·의무에 끼치는 영향이 큰 반면,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학생생활지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법은 그 자체로는 인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언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적어도 교원이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바, 구체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지도 않으므로 교원과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보완 방향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배치되는 것이 아님에도 현재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이를 학생인권조례에 반영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교사 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모두 전가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한 주체의 인권 강화나 인권의 제한이 아닌, 학교라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 안전하고 서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규정도 그러한 방향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토 론 문

김지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수 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토론문

## -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는 대립적인가? -

김지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 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진행 현황

### 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청구 진행 상황

| | |
|---|---|
| 2023.3.6. | 청구인명부 제출 **(필요 서명수 12,073명, 청구 서명수 21,031명)** |
| | ▼ |
| 2023.3.13.<br>~ 3.22. | 공표 및 이의신청 접수 |
| | ▼ |
| 2023.3.27. | 이의신청 심사·결정<br>- 시민단체 이의신청 및 도의회 검증 결과 6,025명 무효 확정으로 검증대상은 14,993명 |
| | ▼ |
| 2023.3.27.<br>~ 8.22. | 명부 검증 작업 (유효 12,673명, 무효 8,358명) |
| | ▼ |
| 2023.9.7.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수리 의결 |
| | ▼ |
| | 수리 통지(도의회 의장→청구인) |
| | ▼ |

| | |
|---|---|
| 2023.9.11. | 조례안 발의(도의회 의장) |
| ▼ | |
| 2023.9.19. | 조례안 상정 예정이었으나 잠정처분 인용으로 보류(교육위) |
| ▼ | |
| 2023.10.25. | 충남도의회 의원 발의로 조례 폐지안 발의(25명)<br>(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심의 / 11.7~12.15) |
| 심의(교육위)·의결(1년이내: 본회의 의결(1년 연장 가능) | |
| ▼ | |
| 집행부 이송(5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 | |
| ▼ | |
| 조례공포(교육감: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 |

❍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안 자격 검증결과

| 대상조례 | 총 연서수 | 유효서명수 | 기준대비 | 유효비율 |
|---|---|---|---|---|
| 학생인권 조례 | 21,031명 | 12,673명 | + 600명 | 60.3% |

※ 2023년도 주민청구 연서 인원 기준 : 12,073명(23.1.10 공표)

## 2)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청구 수리 및 발의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 진행 현황

❍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 접수: 2023. 9. 14.(시민단체→법원)
❍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 2023. 9. 21.(대전지방법원)
❍ 잠정처분 신청: 2023. 9. 18.(시민단체→법원)
❍ 1차 잠정처분 인용(2023. 9. 19.): 2023. 9. 25.까지 효력 정지(대전지방법원)
❍ 2차 잠정처분 인용(2023. 9. 25.): 효력정지 2023. 11. 16.까지 연장
❍ 청구 서명 문서 제출 명령(2023. 10. 19.): 서명의 요건 근거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차 변론 기일: 2024. 1. 11.

❍ 3차 잠정처분 인용(2023. 11. 15.): 효력정지 2024. 1. 18.까지 연장

## 2.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주장 강화

### 1) 국정감사 질문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개정할 생각이 없는가?

### 2) 교육부의 권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발표(2023. 8. 17)

- 주요 내용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

・생활지도 방식: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및 보호자에게 인계 요청
- 고시안에 부합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 안내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2023. 8. 17)
- 주요 내용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권고

❍ 교육부-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2023. 9. 13)
- 학생인권조례 예시안 10월중 발표 예정으로 교육청별 개정 논의 할 것을 권고

❍ 교육부-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2023. 9. 21)
- 학생인권조례의 개별 조항이 교육부 고시에서 정하는 생활지도 권한과 상충하는 경우 조례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음 안내

## 3. 충남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그리고 해설서

|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 충남학생인권조례 | 해설서 및 조례와의 관계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유아교육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서〉<br>- 고시의 내용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이며 고시의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해야 함**<br><br>〈조례와 관계〉<br>생활지도와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목적 자체가 다르며 상호 존중 관계에 있음 |

|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 충남학생인권조례 | 해설서 및 조례와의 관계 |
|---|---|---|
|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수 있다. | 제11조(정보접근권)<br>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할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학생인권 실태조사〉<br>**2023년 실태조사에서 중학교의 경우 86.2%가 등교후 걷고 하교 때 돌려주고 있으며 수업시간 이외시간 사용 5..6%, 자율적 관리 4.5%였으며 고등학교는 등교후 걷고 하교때 돌려주는 경우가 44.7%, 수업 시간이외 사용 34.6%, 자율적 관리 14.3% 임** |
| 제8조(그 밖의 분야)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br>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br>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 〈해설서〉<br>- 복장과 용모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 교육 3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 제12조(훈육)<br>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br>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br>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br>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br>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br>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해설서〉<br>- 훈육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br>- 분리 장소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교무실등 교감 지정 장소**<br>-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br>- 물품 조사할때는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음**<br>-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고시가 불안한 해설서
- 유의사항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
- 학생생활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라고 강조
- 정당한 생활지도의 판단 기준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행당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라고 설명하여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교사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수 있음을 안내함
- 교사가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많아 실제로 고시가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임

❍ 인권과 법률, 학칙을 강조하는 고시안 해설서를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고시안으로 학교의 혼란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생활지도와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확대되면서 상호존중의 생활지도가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 권리와 권한보다는 통제와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생활규정 등이 바뀌어가고 있음

❍ 생활지도 고시로 인해 충남의 경우에도 생활규정 예시안이 47조에서 67조로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커져 그만큼 규제와 지켜야할 의무도 늘어나 학교의 자율적 문화와 학생자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큼

## 4.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와 충남학생인권조례 비교 충남교사 검토단 운영

❍ 검토단 구성: 교원단체 6명, 인권교육 담당교사 3명, 생활지도 담당교사 3명 총 12명

❍ 검토기간: 2023. 10. 16. ~ 10. 26.

❍ 검토방법: 대면(2회) 및 재택 검토

❍ 교육부 고시와 조례의 상충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존재
- 문구상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존재함
-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고시의 해설서 지도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고시와 조례가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은 고시는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여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조항이 많은 반면,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여 학생의 권리를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많아 두 부분이 충돌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수의 의견으로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와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또한, 고시와 조례가 상충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문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는 의견

## 5. 향후 방향

❍ 학생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학생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필요

❍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방안 연구 및 실천 확대
- 인권에 기반한 학교생활규정 만들기

| 학생인권조례 없는지역 OO고등학교(공립) | 충남지역 OO고등학교(사립) |
|---|---|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여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재심청구)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제4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다.<br>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br>①「대한민국 헌법」 제31조<br>②「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br>③「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br>④「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18조의4, 제20조, 제32조<br>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br>⑥「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
| 차례<br>1. 총칙, 2. 학생교육복지위원회, 3. 학생회, 4. 학생생활, 5. 학생선도 | 차례<br>1. 총칙, 2. 학생의 권리, 3.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 및 지도, 4.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5.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6. 학생시상, 7. 학생회, 8.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

- 인권친화적 생활 지도 방안 연구 및 생활협약 만들기 등

❍ 학생자치 확대 및 학교내 인권역량 강화

- 학생 참여 활성화와 상호 소통·협의하는 민주적 시스템 강화
- 교육과정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 학생인권과 교권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인권 정책 확대

-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간의 협력적 논의 활성화
- 학교별 인권기구 및 인권 동아리, 학습공동체 활성화
- 인권침해 구제 활동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토론문

## - 학생인권의 시계가 그만 거꾸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

수 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 I. 안타까운 현실, 더 한심한 정부여당

지난 여름의 서울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을 향한 범국민적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당연히 모두는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이 보다 인권적 환경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지금 교육현장이 마주한 것은, 학생인권 책임전가와 교육예산 축소를 비롯해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 정부여당의 망동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교권회복'을 위한 변화들은 진정으로 교사와 교육공동체를 위한 움직임일까.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주문[1]한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

교육부는 '생활지도'라는 이름 아래 교사의 책임을 늘리고 체벌을 정당화 할 소지가 있는 '물리적 제지' 권한을 신설하며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면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할 수 조차 없지만 '교권'이 침해된다면 학생들은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내용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정[2]해

1) 한국일보(2023), 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 자치조례 개정"... 학생인권조례 직격

2)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동 고시 해설서 63p "위급한 상황시 교사는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교육현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일방적인 '생활지도'의 수범자로 두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이 야합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고, 충남과 광주에서는 보수기독교세력의 주도 아래 주민조례발안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3]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주민발안되었다.

본 토론문에서는 생활지도가 징계와 처벌로 둔갑하는 현실과 반(反) 인권 움직임에 대해 지적하고 대립적 프레임 그 이상의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 II. '인권'을 싫어하는 그들

'권리와 책임', '인성', '학생권', 모두 학생인권의 대체용어로 여권에서 제안 및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학습권'은 여당이 학생 권리와 '교권'의 균형을 맞춘다며 내건 용어이고, '권리와 책임'과 '인성'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안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내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다수 여권 인사들이 책무성 강화를 주장하며 추진하는 것들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왜 세계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국가 권리와 책임에 관한 위원회가 아닌가. 인권 실현에는  조건이 있거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위헌적 주장 그 자체이다. 헌법 제10조에도 규정되어 있듯,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지는 주체(수범자)는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다. 학교와 교사는 국가의 의무교육 보장 의무를 대리해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자연히 지는 의무이다. 그럼에도 인권의 보장이나 노동권의 침해 주체를 학생 개인으로 상정하고 그 전제 하에 관련 정책과 법령을 내놓는 것은 그 취지와 문제상황에 대한 근본 인식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III. 학생인권, 제대로 알아보자

최근 정부여당과 일부 교원단체가 학생인권과 교육권을 대립구도로 설정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파다하게 퍼져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

## 1. 자유롭게 일진회를 조직할 권리가 일진회를 조직할 권리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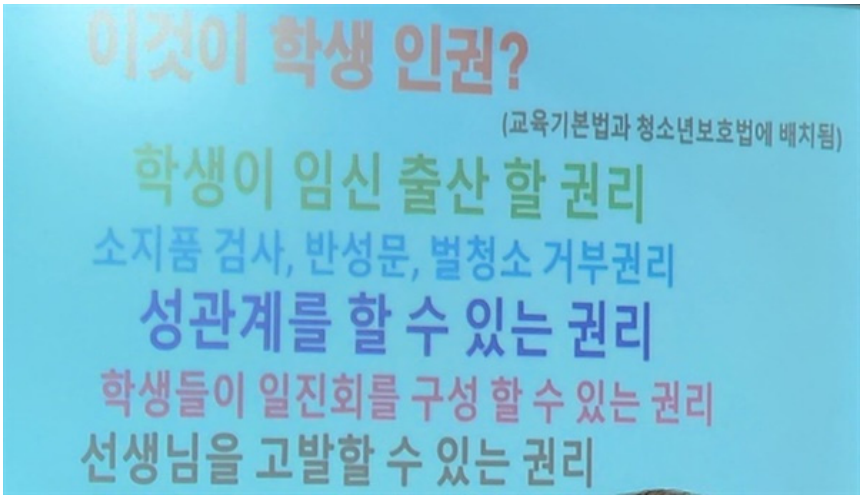


한국교총 부회장이 교육부 포럼에서 발표한 PPT 자료

지난 8월 8일, 교육부 주최 "학생생활지도고시안 포럼"에서 한국교총 부회장이 발제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소위 '일진회'를 조직할 권리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되어 있다는 발표자료 내용이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자치활동권[4]은 보장되어 있지만 일진회를 조직할 권리 따위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 조항[5]을 성관계, 동성애, 임신을 조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장한다고 해석하는 것과 이미 있는 책무조항[6]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문제의 본질을 전도하고 인권의 개념을 그저 악마화하는 것에 급급해 학생인권조례를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해도를 엿볼 수 있다.

## 2. 학생인권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이 마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인 양 호도하는 주장 역시 파다한데, 이 역시 교육부가 매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건수 통계로 반박이 가능하다.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 건)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5년 |
|---|---|---|---|---|---|---|
| 조례 유 | 0.59 | 0.53 | 0.61 | 0.27 | 0.51 | 0.50 |
| 조례 무 | 0.61 | 0.60 | 0.62 | 0.29 | 0.54 | 0.54 |
| 전체 | 0.60 | 0.57 | 0.62 | 0.28 | 0.52 | 0.52 |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의 교육부 연간 교육활동 침해건수 수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별로 지역별 통계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조례 유 지역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현황이 오히려 조례 무 지역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현황보다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정화(2014)와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IV. 생활지도가 아니라 생활‘징계’?

생활지도는 본래의 “life guidance”를 번역한 개념이다. Miller(1971)[7]는 생활지도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해 지역사회에 최대한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공존하지만, 학생을 조력하는 것이라는 내용에서는 그 본질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와 교육계가 생활지도를 대하고 적용하는 태도는 본래의 그것과는 한참 괴리가 있는 강제력, 때로는 물리적 제지라는 이름의 유형력을 동반해 마치 징계와 처벌과 뒤섞여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졸속으로 내놓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는 임의적으로 해석되어 직·간접 체벌의 명분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는 물리적 제지 권한과 생활평점제로 둔갑한 상벌점제를 부활시키고 ‘정당한 지도 방식’에 편입시켜 생활지도의 목적과는 한참 멀어진 생활지도고시가 되어버린 실정이다.

## V. ‘교권’ 정책에서 내쳐지는 교사들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로 교사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을까. 코코(2023)[8]의 지적과 같이, 학교에서 권위를 능숙하게 세우지 못하는 교사들은 생활지도고시를 비롯한 ‘교권’대책 이후 학교에서 살아남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법적 권한, 직무적 권한을 고시나 매뉴얼에 적어 배포한다 해도,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현장에서 겪어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항목을 통제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라는 것은, 더 많은 갈등상황에 직면하라는 강요다. 대놓고 때리는 체벌이 만연했던 시기, 학생들을 때렸던 교

7) Carroll H Miler(1971), Foundations of guidance (Exploration series in education)

8) 코코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2023),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서이초 교사’의 교훈이 고작 체벌의 부활인가 - 체벌 포기 못하는 교육부

사들은 고시 없이도 알아서 학생들을 통제해 왔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이들 손에 쥐어졌을 때는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 침해가 더욱 만연해질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어떤 권한이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교사들은 이를 휘두를 수 없다. 교사들이 노력하여 학교 안에서 권위를 획득하고 이를 휘둘러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애초에 국가는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을 침해할 것을 업무 내용으로 주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VI. 우리 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나

지난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입법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학생생활지도고시안 포럼, 그리고 공청회에 학의 자리는 없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5인의 학생들을 한 차례 만난 것을 두고 당당히 '학생 의견 수렴'이라고 적어둔 교육부의 모습, 멀쩡히 구성되어있는 학생참여기구를 막상 반인권적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할때는 한 차례 논의도 거치지 않는 여러 지방교육청의 모습, 만 18세 이하 청소년·학생의 참여가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는 국가교육위원 20명 중 한 자리도 두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습은 제도권이 청소년-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헌법 상 학습권의 주체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법령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현재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을 배제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린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크게 다른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 것이기에, 씁쓸한 장면들로 남습니다.

>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내는 걸로 당장 교사의 힘듦이 완화되는 듯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길게 봐서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참여할 의지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만일 이런 조치가 끝내 학교 자체에서 쫓겨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균열과 불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 – 공현(2023), 정말로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내민주주의 실현과 학생인권 보장을 가로막는 여러 시도들을 서슴지 않고 이어왔다. 각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물론이요,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한 이후에는 인권침해적 생활지도고시를 급조해 내놓고 지방의회 권한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안까지 내놓는 등 월권과 퇴행을 넘나드는 반인권적 행보들이 반복되었다.

다른 본질적인 문제는 다 제쳐두고 교사 개인의 역량만에 기대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에 정부와 제도권이 할 일은 이미 정해져있다. 인권침해적 학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학교의 속도와 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비롯해 교사가 학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학생인권법안(박주민 의원 발의) 역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 없이,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 보장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정책에 그칠 뿐이다. 교육문제의 본질에는 애써 눈감으며 학생인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중단하고, 학내민주주의 실현과 학생인권 그리고 교사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지금 당장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 토론문

## - 2023아동인권보고대회 1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문제가 전국가적,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속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고(교권4법 개정이라 함),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1]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과 학생 인권 간의 상호 관계'를 주체로 하여 2023년 아동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기획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조례와 생활지도',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학교규칙의 실태', '학교 폭력 제도'라는 학교현장 관련 4개의 섹션 역시 적절하게 배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자 하는 것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가가 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요구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학생의 교권침해라기 보다,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요구를 '교권 대 학생 인권'의 대립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 1.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1) 2023.11.15.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발제자께서 발제문 말미에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인권보호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로 바꾸어 말하고 싶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오히려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사노조연맹 창립 이후 교사노조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5월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 익산 초등생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자, 교사노조연맹은 '정부는 위기 행동에 의한 수업불가상황,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상 필요한 지도활동을 보장하는 관련법(학생생활지도법)의 제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그해 7월 초 생활지도법 근거 마련 교사 서명운동을 벌여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

오늘 이 섹션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의 하나인 '학생생활지도고시'는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위임으로 제정된 고시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함."[3]

국회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법 제18조의4 제2항 신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2)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사 새로운 길』, p. 263~265.

3)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096호, 2022.12.27.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설(법 제20조의2 신설)합니다.

이런 법 개정 취로로 볼 때,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2.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사와 학생은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따른 인권(기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헌법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고(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학생은 헌법에 따라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학교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인 교육활동이 수행되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생활공간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사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학생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할 권리가 동시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 인권 보호'의 문제를 '학생 개인의 기본권 보호' 차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다 점을 말해줍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 내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사회윤리의 기초이며, 사회 유지를 위한 법질서 체계 수립의 기본 원칙입니다.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헌법 제37조 제2항)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권을 제약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기본권)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함께 숙고해야 할 주요한 관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규율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일상적 생활공간을 넘어, 헌법적 권리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교는 일상적 생활공간과 달리 교육과 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존중해야 하는 또 다른 윤리와 사회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교 사회에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윤리와 사회적 규범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입법한 것이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유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그에 따른 '학생생활지도고시', '교원지위법' 등입니다. '학생생활지도고시'는 일반적으로(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후술 참조) '헌법-교육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 고시된 것이란 점에서 정당성을 가집니다.

물론 학생은 미성년자이며, 일부는 촉법 연령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학교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학생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은 일면 다탕성이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학생에게 일반 국민과 같은 사회적 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생에게 사회적 규범 준수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공간이고, 학생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적 윤리와 규범을 준수하는 것의 필요성과 책무감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생의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학교 교육의 주요 내용이자 교육목표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에게 일반 사회윤리와 사회법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교육적 목적의 학교사회 윤리와 규범을 가르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교육이고, 생활지도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반복해서 어기거나 의도적으로 어길 경우, 주의,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방법으로 규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교육적 목적의 주의, 훈계, 훈육, 그리고 징계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학생의 기본권(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위 논의와 관련하여 올해 개정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도 동일한 내용 있음)의 내용들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 ·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본조신설 2023. 9. 27.]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 3. 학생생활지도고시와 학생 인권

발제문은 'Ⅲ. 1.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에서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학교의 장에게만 학생지도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제18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럼 선언적,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기존의 제18조 제1항의 징계권과 학생에 대한 지도권 중 지도권 부분을 교사에게도 부여한 규정인 바, 그 내용에 있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2항에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로고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배제, 징계에 따른 자유 제약,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제한)을 담고 있다. 특히,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권이 발생하거나 교원지위법상 바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위임 입법한계를 위반하였다는 위헌의 소지, 즉,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내용을 단지 고시에서 규정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발제문은 고시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각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교사의 입장에서, 발제문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고시로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를 허용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학습권을 제한하는 수업 방해학생 분리 허용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필자는 고시의 주요 내용들을 법이나 시행령으로 담아야 한다는 발제문의 의견에 부분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이상의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업방해 학생에 대하여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는 학습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시 제12조(훈육) 제6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하면서 3호로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호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학생을 수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라 학생의 헌법적 기보권인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6항은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단서 조상을 두어, 분리 장소, 시간, 방법 등에 대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분리조치가 학교마다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향후 차별을 이유로 한 법적 시비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바, 법과 시행령으로 그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노조연맹은 수업방해학생의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법에 법률로 허용하고, 그 방법과 법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아직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분리제도의 법제화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보하기 위한 분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임 부여,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임 부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둘째, 사적 공간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 기준을 공적 공간인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필자는 발제문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명확성 등의 원리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시행령 이상의 수준으로 법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에서는 고시 내용중 일반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수준의 규제조차 과잉금지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등 다소 과한 해석이 많다고 봅니다.

이는 사적 공간에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 인권 보호기준을 공적 활동인 교육활동(수업활동)에 그대로 직접 대입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적 공간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도 공적 공간에서는 제한이 허용됩니다. 공적 공간에서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그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유지의 기본적 원리이고,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적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 기준과 공적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학교와 수업이 이루어는 교실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적 공간의 인권 보호 기준을 수업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면, 공적 활동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해집니다.

고시 제4조는 수업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발제문은 이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고 봅니다. 그러나 공적 공간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일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연장, 영화관, 공적 회의 공간 …… 등등.

수업은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수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수업이란 공적 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필요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잉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업을 공적 공간이 아니라 사적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8조의 용의복장 제한에 대한 발제문의 견해도 그러합니다.

발제문은 학교가 학칙으로 용의복장을 제한하는 경우,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적 공간에서의 용의복장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 공간에서의 용의복장 제한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현상입니다. 특정 목적의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용의복장 제한을 하지한 이를 기본권 침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사적 공간의 기본권 보호 기준을 공적 공간인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발제문은 고시 제12조와 관련해 ‘물품의 조사와 보관’도 직접적인 기본권의 제한을 고시 수준에서 담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할 수 있는 여기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 공간에서 누군가 타인의 소지품을 조사하거나 이를 빼앗아 보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한 공적 공간에서 소지품을 조사하고,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지품을 일시 보관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이를 위법이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출입할 때, 재판정에 출두할 때, 정부청사 들어갈 때, 국회 출입할 때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은 일정부분 허용됩니다.

고시 제12조 제8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지품 조사의 요건을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발제문에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공간의 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본권 보장 내용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적 공간의 기본권 보장 기준을 공적 공간의 활동인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관점은 고시의 여러 내용에 대한 비판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일반적인 위법의 판단 기준을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은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문은 위 시행령에 근거한 생활지도교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조언'에 대하여 : "조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생활의 자유침해 내지는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금지 등 제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
> '주의'에 대하여 :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배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될 여지도 있다."
>
> '훈육'에 대하여 : "제2항의 '지시'는 불명확성이 높고 의무 없는 일을 과업으로 강요하거나 간접체벌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11항 학급생활규정의 경우, 학칙과 고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학급 생활규정"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 '훈계'에 대하여 : "훈계의 내용은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원상복구의무 부담으로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그 요건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는 학생"이라고 규정하여 '잘못'이라는 주관적 판단 및 자의적 판단, 내심의 의사에 따라 훈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위 발제문의 요지는 교원이 할 수 있는 조언, 주의 조치, 훈육, 훈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니, 이를 교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없도록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 보이는 위 고시의 표현들도 수업활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성을 말하는지 비교

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내용들입니다.

학생생활지도고시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에게 허용하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육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위법적이라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전문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위법이 아니고 상식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도 일반인이 할 때의 행위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성 실현을 위해 필요할 때 하는 행위는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인이 타인의 육체에 칼로 상처를 내면 위법이지만,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육체에 칼로 성처를 내는 것은 합법입니다. 일반인이 타인에게 달리기를 강제하면 위법이지만, 스포츠 팀의 지도자가 운동선수에게 달리기를 강제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위법이지만,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어려 사람 앞에서 잘못을 지적했다고 위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를 그대로 전문적인 영역인 교육활동에 적용할 때 교육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법 적용의 오류로 인해 교육 불능 상황을 초래한 것이, 수십만 교사를 분노하게 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입니다. 교육활동 중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도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함으로써 교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고 결국 학생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 올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분노로 폭발한 것입니다.

교사들의 분노는 결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런 교육법 개정은 일반인에 대한 법 적용 기준과 전문적 활동인 교육활동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은 달라야 함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육의 전문성을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초등등교육법 20조의2와 그에 따른 시행령 제40조의3은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것입니다.

수업활동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각개 상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교원들이 행하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 훈계”의 범위와 내용을 일일이 적시하여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추상적 수준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법령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고 환자에게 조언하고 상담하고 훈계하듯이, 변호사가 법률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고 고객에게 조언하고 상담하고 하듯이, 교원도 교육전문성을 갖고 법령과 학칙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하여 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교원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 훈계를 고시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고 강제하게 될 경우 사실상 교육활동은 박제화 되어 교육은 활력을 상실합니다.

때문에 교원이 할 수 있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 훈계의 범위는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구체적인 판단은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수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명확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법, 위헌이라 하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보장될 수 없고, 교육은 기계적인 활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사법행위가 아닌 교육활동의 허용 범위를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학교에서의 수업활동과 생활지도는 사법행위가 아니라 교육적 활동입니다. 학생이 규율을 어겨도 학교는 사법적 잣대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자원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지도 활동을 합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미성년인 학생의 사회화를 돕는 공적 활동이고 때문에 교육활

동 증의 학생 행위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훈육의 방법과 규제를 통해 학생의 사회화를 돕고 지원합니다. 때문에 일반사회에서는 통용되는 수준의 규제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교육적이라 용인되든 수준이라면 성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규제도 허용됩니다. 예컨대, 일반사회에서는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워도 이를 처벌할 수 없지만 학교는 훈계, 훈육을 하거나 학칙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고, 사회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는 '교육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를 사법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니 됩니다. 교사는 사법권이 없고, 학교에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 학생을 처벌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제문은 생활지도고시의 내용을 '사법적 관점'에서 보고, 그를 기준으로 그 정당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 제12조 훈육 증 '제지'에 대하여 : "3내지5항의 제지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봄이 타당한 바, 정당방위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고 타법령과도 체계 정합성이 맞을 필요가 있다."
>
> 제12조 물품조사 및 보관과 관련하여 : "제8항 제9항의 물품조사 및 보관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수색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준한 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에도 고시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우려"나 "의심"등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발제문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이를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공권력의 행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품조사의 경우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원은 이런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에게 허용된 제지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행위입니다. 이를 공권력 행사로 해석하면 교사는 지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지나 물품조사를 이렇게 사법적 행위로 해석

하면, 학교에는 경찰관이 상주하여 필요할 때 학생을 제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접근이집만, 이렇게 학생에 대한 지도 활동 하나하나를 사법 행위로 보고 접근할 때, 이미 교육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지도고시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사법적 잣대로 정당한가를 판단할 것이라 아니라 교육적으로 정당한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4. 학생인권조례와 학생 인권, 교사의 교육권

서이초 사태 이후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무력화된 주요한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으며, 따라서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무불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의 악성 미원과 교사에게 학생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데 있는 바, 그러한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발제자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 “학생 인권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대립 구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사 개인이 학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현재 교사들이 처한 문제나 학교의 문제 상황의 분석과 대안 마련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고, 또 교사들과 대중들에게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
>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학생 인권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며,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2010), 광주(2012), 서울(2012), 전북(2013), 충남(2020), 제주(2021) 등 6개시도(괄호 안은 제정 년도)에 불과하며, 인권조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의 발생 빈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

중 2016년과 2019년 4년간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었고, 경기 지역(500→663)만 늘어났다고 합니다.(윤근혁,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통계는 '관계없음'」, 오마이뉴스, 2023.7.22.)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인권조례보다 교사에게 학생을 교육하고 생활지도를 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방치하여 왔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학생이 불응하면 지도하고 제제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봅니다.

다행히 2022년 교사노조연맹이 제안한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그에 근거하여 8월말 교육부가 교사의 생활지도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고시가 발효되었고, 교권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가되어 교사의 교육할 권리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 확대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추락시킨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듯이,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함께 보장되고 신장되도록 협력해주기길 바랍니다. 생활지도고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여러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되고, 학생의 사회화 수준도 높아져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1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쟁점과 대안

세션 2

#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발제

#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 Ⅰ. 서론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현안이자 난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된 교권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이던 것이 코로나 19 시기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2022년에는 3,035건에 달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1],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2], 초등학교 학생이 지도하던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한다거나,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교사를 상대로 범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처럼 교권침해의 양상이 심화 되고, 결국 교권침해는 교사의 권리 침해를 넘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2. 12.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시작으로[3],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2022. 12. 27.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발표[4], 2023. 3. 23.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

1) 교육부, 2023. 8. 23.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참조
2) 교육부, 2022. 12. 27.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3)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4) 교육부, 2022. 12. 27. 위 발표

시 개정 공포[5], 2023. 6. 27.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6]의 개정이 잇따랐다.

그러던 중 2023. 7. 18.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7]을 계기로, 교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현행의 법제도로는 교육현장의 교권침해가 해소될 수 없다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학교 내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무력화되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며 교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일련의 절차들로 인하여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취합하여 2023. 8. 23.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고[8], 2023. 9. 1.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제정·공포[9] 하였으며, 국회는 2023. 9. 27.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절차 정비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0]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11]을 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교권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의 과정에서, 교권 침해 양상의 심화에 있어 주된 원인으로 교원을 행위자로 한 아동학대의 무분별한 신고, 이로 인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의 무력화, 아동(학생) 중심의 아동학대 관련 절차로 인한 교권 침해 등이 지적되면서,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아동복지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12]. 그러나 특정 직군에게 아동학대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

5) 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일부개정

6)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7) 2023. 7. 18.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을 견디지 못하고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8) 위 교육부, 2023. 8. 23. 위 발표

9)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10)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개정

11)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개정

12) newsis, 2023. 9. 16., '교원 6개 단체, 교사집회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러한 선례가 생긴다면 아동복지법이 무력화되어 아동 보호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13].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교권 침해의 양상과 교원의 아동학대 현황 및 법적 대응 등을 살펴보고, 아동의 권리와 교권이 교육현장에서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Ⅱ. 교권의 개념과 교권 관련 현황

### 1. 교권의 법적 개념

교권이란 좁은 의미에서 **교사의 권리로서 교육권(가르칠 권리)**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4]. 특히,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 11. 12. 89헌마88 결정에서, 좁은 의미의 교권인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교사의 수업권이라 보고, 이는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으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학생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13) 오마이뉴스, 2023. 9. 17., '3개 아동·청소년 관련 학회, 아동복지법 개정에 '우려' 표명'

14) 김민규 외, '교권침해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 ,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2016, 3면 ;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권리로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선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권' 등이 해당되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는 신분보장,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등 법률로서 교사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말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교사가 한 사람으로서 갖는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 청구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말한다.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교사의 가르칠 권리란,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교육 권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권위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은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2.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보호

이상의 교권의 개념에 비추어 교권이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고 침해당하는 교권 침해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교원지위향상법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다[15]. 이 중 교원지위향상법상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

15) 교육부, 『2019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 교원지위향상법에서'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권은 권익 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계가 깊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할 것이다[16].

**〈교원지위향상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이며, 교육활동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향유하는 공통의 법익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주고,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바,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16) 이상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지속하다가 교육활동 침해 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원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양상이 발생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 화상 · 음성 등을 촬영 · 녹화 · 녹음 ·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하여야 하고(동법 제18조), 피해교원에 대하여, 피해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특별휴가, 심리상담 등)와 교원치유지원센터[17]를 통한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20조), 침해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행위 정도에 부합하는 조치[18]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또한, 개정 교원지위향상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으로 하여금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26조)

## 3. 교육활동 침해 현황

202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19],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하였고

17)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법률·심리상담·복귀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18) 침해학생의 조치로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
19) 교육부, 2023. 8. 23. 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침해주체의 대부부은 학생(92.2%)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있어 초등학교(33.7%)가 중학교(4.9%), 고등학교(5.0%)에 비해 비율적으로는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연도별 침해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
| 침해 심의 건수 | 2,662 | 1,197 | 2,269 | 3,035 |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20]〉**

(단위: 건)

| 학년도 | 초 | | | 중 | | | 고 | | | 기타 | | | 합계 | | |
|---|---|---|---|---|---|---|---|---|---|---|---|---|---|---|---|
|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 2019 | 185 | 102 | 287 | 1,394 | 77 | 1,471 | 856 | 48 | 904 | - | - | - | **2,435** | **227** | **2,662** |
| 2020 | 50 | 44 | 94 | 488 | 36 | 524 | 543 | 36 | 579 | - | - | - | **1,081** | **116** | **1,197** |
| 2021 | 149 | 67 | 216 | 1,158 | 64 | 1,222 | 767 | 36 | 803 | 24 | 4 | 28 | **2,098** | **171** | **2,269** |

| 학년도 | 유 | | | 초 | | | 중 | | | 고 | | | 특수 | | | 각종 | | | 기타 | | | 합계 | | |
|---|---|---|---|---|---|---|---|---|---|---|---|---|---|---|---|---|---|---|---|---|---|---|---|---|
|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 2022 | 0 | 5 | 5 | 202 | 85 | 287 | 1,791 | 71 | 1,862 | 807 | 38 | 845 | 29 | 3 | 32 | 4 | 0 | 4 | 0 | 0 | 0 | **2,833** | **202** | **3,035** |

침해유형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5.5%)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8.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협박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20.8%)' 하는 비율이 학생(5.5%)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교육부, 2023. 8. 23. 위 발표 : 2021학년도부터 기타(특수학교 포함) 추가하였고,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추가 및 특수, 각종 등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단위: 건)

| 학년도 | 침해대상 | 상해 폭행 | 협박 | 모욕 명예훼손 | 손괴 |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 공무 및 업무 방해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 기타 | 합계 |
|---|---|---|---|---|---|---|---|---|---|---|---|---|---|
| 2019 | 학생 | 240 (9.9%) | 82 (3.4%) | 1,345 (55.2%) | 14 (0.6%) | 24 (1.0%) | 28 (1.1%) | 126 (5.2%) | 205 (8.4%) | 238 (9.8%) | - | 133 (5.5%) | **2,435 (100%)** |
| | 학부모등 | 8 (3.5%) | 21 (9.3%) | 112 (49.3%) | 1 (0.4%) | 0 (0.0%) | 6 (2.6%) | 16 (7.0%) | 1 (0.4%) | 42 (18.5%) | - | 20 (8.8%) | **227 (100%)** |
| 2020 | 학생 | 106 (9.8%) | 38 (3.5%) | 622 (57.5%) | 12 (1.1%) | 30 (2.8%) | 23 (2.1%) | 69 (6.4%) | 107 (9.9%) | 34 (3.1%) | - | 40 (3.7%) | **1081 (100%)** |
| | 학부모등 | 7 (6.0%) | 10 (8.6%) | 46 (39.7%) | 0 (0.0%) | 1 (0.9%) | 4 (3.4%) | 6 (5.2%) | 3 (2.6%) | 33 (28.4%) | - | 6 (5.2%) | **116 (100%)** |
| 2021 | 학생 | 231 (11.0%) | 60 (2.9%) | 1,203 (57.3%) | 19 (0.9%) | 65 (3.1%) | 67 (3.2%) | 80 (3.8%) | 200 (9.5%) | 93 (4.4%) | - | 80 (3.8%) | **2,098 (100%)** |
| | 학부모등 | 8 (4.7%) | 19 (11.1%) | 68 (39.8%) | 3 (1.8%) | 1 (0.6%) | 3 (1.8%) | 15 (8.8%) | 7 (4.1%) | 29 (17.0%) | - | 18 (10.5%) | **171 (100%)** |
| 2022 | 학생 | 347 (12.2%) | 108 (3.8%) | 1,611 (56.9%) | 20 (0.7%) | 107 (3.8%) | 51 (1.8%) | 139 (4.9%) | 221 (7.8%) | 96 (3.4%) | 7 (0.2%) | 126 (4.4%) | **2,833 (100%)** |
| | 학부모등 | 14 (6.9%) | 24 (11.9%) | 75 (37.1%) | 0 (0.0%) | 1 (0.5%) | 5 (2.5%) | 25 (12.4%) | 2 (1.0%) | 45 (22.3%) | 0 (0.0%) | 11 (5.4%) | **202 (100%)** |

## 4.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현황

###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이라 한다)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 9. 27. 에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등 절차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되었다.

##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개정)

교육부 고시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되었다. 해당 고시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 9. 27. 개정)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21].

---

2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유아교육법(법률 제19737호, 2023. 9. 27. 개정)

개정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원장 등 교원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며,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유아의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보호자에게 교원과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유치원과 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마. 계류 중인 입법안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5296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안 제14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등).

- 의안번호 24156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 의안번호 2407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전학·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안 제18조제8항 신설 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의안번호 24009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안 제15조제1항·제3항 및 안 제18조의3 신설).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4990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20조의4 신설).

# Ⅲ.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 및 법적대응

## 1.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요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국가'의 역할 재고(再考)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현행 법률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두 법률의 각 개정과 제정의 계기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었다[22].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졌고,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의 유인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개입의 필요성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해 들어오게

22) 1998년, 친부와 계모가 남매를 지속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하여 학대하여 여자아동이 사망하자 그 시체를 집 앞 마당에 유기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아동복지법은 2000년 전부개정에 이르게 된다. 또한, 2013년 계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당시 만8세였던 아동이 사망한 울산의 아동학대사망사건은 피고인 계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같은 시기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당시 9세의 아동이 사망한 칠곡의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하여는 상해치사로만 기소되어 계모에게 징역 15년,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들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되었는데, 단순히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던 이전의 아동복지법과 달리,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한편,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시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준용하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한하여 '아동학대범죄'로 보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친권 등을 제한하는 조치,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하는 조치 등을 동법의 특별한 절차(임시조치, 아동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2019년 아동학대에 있어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23]'이 추진되었으며,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아동학대 사실을 조사하여 "원가정 회복"을 위한 개입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의 강화는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24]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바람직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양육되고 있던 원래의 가정에 필요한 지원과 개입을 함으로써 해

23) 관계부처 합동, 2019.「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참조
2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9조 참조

당 가정이 아동이 건강히 양육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의 방향도 일견 타당하다. **문제는 '학교'와 같이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의 제·개정을 가져온 유인과 원가정 회복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결이 다른 '가정 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다.**

## 2.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법개정 경과

### 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체벌(학대)금지

초·중등교육법은 2022. 12. 27. 법률 제1909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에 대한 징계의 권한을 교장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동법 제18조)을 두고, 동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의 지도(징계)의 방식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 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이후 2022. 12. 27. 법률 제19096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제20조의2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2023. 9. 27. 법률 제19738호로 개정된 동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2006년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일련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사생활침해금지,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25]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각 교육청 단위의 '학생인권조례'에 같은 취지의 내용들이 담겨 논의되고 있다.

### 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2023. 9. 27. 에 개정된 교원지위향상법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

25) 의안번호 174042,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동법 제6조 제3항),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동법 제17조)를 신설하였다.

### 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논의

#### 1)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으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와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보호자의 개념인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 하는 자'의 범위에 '교사(교원)'가 포함된다고 해석됨에 따라, 교사(교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일련의 절차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26].

#### 2)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논의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의 양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 등을 근거로 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
|---|
| - 의안번호 24542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학생생활지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17조제5호 단서 신설). |
| - 의안번호 24401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안 제3조제7호 단서 및 제17조 단서 신설). |
| - 의안번호 24300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안 제17조제5호). |

26)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교사)를 현장에서 격리시켜야 하고(응급조치), 상당기간 피해아동으로부터 접근을 금지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임시조치).

### 3)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조사, 판단 절차 특례 신설 논의

2023. 11.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일반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조사, 판단 절차가 아닌 교육적 차원의 특별한 절차를 두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
|---|
| - 의안번호 23522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1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안 제22조제8항 신설).<br><br>- 의안번호 23793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안** |
|---|
| - 의안번호 25244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안 제11조의3 신설).<br><br>- 의안번호 24257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br><br>- 의안번호 24333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0조제4항 단서). |

- 의안번호 2379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 · 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 · 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 의안번호 23582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 의안번호 23517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3.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양상

### 가. 학교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통계[27]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1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였다가 2022년에 다소 줄어드는 양상으로,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신고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건수의 8.4%에 달하였던 것이 2021년 2,9%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는 다시 전체 아동학대 판단건수 대비의 비율이 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행되었던 온라인 수업이 종료되고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서 학생(아동)과 교원간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중 초·중등교원은 대리양육자[28]범주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7) 보건복지부 2018·2019·2020·2021·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참조

28)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1999)의 연구(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에서 차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연도별 아동학대 판단건수와 초·중등교원의 아동학대 비율〉

| 발생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전체 아동학대 판단건수 | 24,604건 | 30,045건 | 30,905건 | 37,605건 | 27,971건 |
| 초·중등교원 아동학대 판단건수 (전체 건수대 비 비율%) | 2,060건 (8.4%) | 2,154건 (7.2%) | 882건 (2.9%) | 1,089건 (2.9%) | 1,602건 (5.7%) |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2018년부터 증가하였다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였던 2020년, 2021년에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었으나, 등교가 재개된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연도별 학교 내 발생한 아동학대 판단 건수〉

| 발생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학교 내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 (전체 건수 대비 비율 %) | 2,086건 (8.5%) | 2,277건 (7.6%) | 893건 (2.9%) | 1,152건 (3.1%) | 1,654건 (5.9%) |

한편, 2023년 교육부가 교원 22,084명 및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29], 교원의 경우 87.7%가 학부모의 경우 49.1%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로부터 교원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제도 개선을 1순위**로,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 등에서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2순위로 뽑았다.

29) 교육부, 2023. 8. 23. 위 발표

## 나.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의 태도

학교 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과거 교사의 체벌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교사의 징계와 지도행위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헌법상의 원리인 비례의 원칙의 상응하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30].

그런데 최근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권한과 내용이 규정되었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31], 교원의 학생생

30)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 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활지도고시(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규정)가 2023. 9. 1. 자로 시행되는 등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 되었다

이러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적으로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법원 판시의 취지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려한다면, 교원이 훈육이나 훈계 등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일지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체벌이나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도 '①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②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③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④ 피해아동의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⑤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⑥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⑦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⑧ 행위의 정도와 태양, ⑨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⑩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⑪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32]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초·중등교육법령 및 위 고시를 이유로 교원이 생활지도행위임을 이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령의 규정이 존재함과 더불어 기존의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해당 지도행위**

---

3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2)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33].

## 다.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3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포함되는 바[35],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경우 해당 조항을 통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라 하더라도 부모에 의한 경우보다 교원과 같이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이 교원을 부모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36].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교원의"보호자"로서의 지위는 교원의

---

33)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동학대가 인정된 일련의 하급심 판례를 대법원이 판시한'비례의 원칙'에 따라 구분하면, '① 교육적 목적과 무관하게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학생에게 강요하는 등의 교원의 행위에 있어 지도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서울북부지법 2020노328, 수원지법 2022고단1031 등), ② 피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도, 훈계, 훈육의 필요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고양지원 2018고정1186,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746, 인천지법 2018노4315 등), ③ 지도, 훈계,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선택한 지도 등의 방식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지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즉 지도 방식이 부적절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광주지법 2018고단1906, 고양지원 2019고합248, 안산지원 2020고단2708,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5059, 대전지법 2018고정465, 대구지법 2021노4368, 성남지원 2020고정829, 춘천지법 2019고단1127, 청주지법 2021고단524, 대구지법 2017고정2029, 부산동부지원 2019고정595 등), ④ 지도, 훈계,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지도 방식이 폭력성을 가지는 등 과도하여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고양지원 2019고단921, 군산지원 2018고단160, 부산동부지원 2019고단2222, 수원지법 2020노5609, 대구서부지원 2018고단3679, 대구지법 2020고단2298, 수원지법 2020고단1612, 강릉지원 2019고단220 등)'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36) 결국 초·중등학교 교원은 많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근거리에서 관찰이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학대에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양형에 있어 가중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거듭되고 있다[37]. 이와 같은 교원 등의 지위가 가중요소로서 반영되는 것은 아동을 자주 접하는 전문가이자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이중적인 지위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해당 범행에 있어 훈육 등의 목적을 행위의 동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범죄성립 단계에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되, 일정부분 양형에서 감경요소로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8]. 그러나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훈육, 지도 목적의 행위의 동기를 참작

---

한 관계로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됨과 동시에 아동과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함께 보내면서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만약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근거리 관찰이 가능한 초·중등학교 교원마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는커녕 이들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아동은 그야말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이나 발견 및 처벌은 요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도입 경위와 그 목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초·중등학교 교원의 역할과 책임 및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21. 3. 25. 2018헌바388 참조)

37)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광주고법 2018노89), '피고인이 하는 행위는 담임학급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인천지법 2021노2437),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진주지원 2021고합81),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춘천지법 2021고단12),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서울고등 2021노437) 등

38)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김천지원 2020고단2039), '계속된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서부 2020고단3390),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안산지원 2020고단2567), '피고인은 대체로 훈육 의도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전주지법 2020고단2582, 전주지법 2021노881), '소극적인 태도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훈육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할 만한 동기로서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향후 아동학대 양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라.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로서 처벌하는 것 외에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39]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아동학대범죄가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징역, 벌금 등과 같은 형종으로의'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함으로써 피의자(행위자)의 성행개선과 아동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사건 수는 2019년 4,851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9,570건에 달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군산지원 2018고단6) 등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2019년 ~ 2022년 아동보호사건수[40]〉

| 년도 | 아동보호사건 수 합산 | 심급별 사건수 |
|---|---|---|
| 2019년 | 4,851건 | 제1심 4,658건 |
| | | 항소심 170건 |
| | | 상고심 23건 |
| 2020년 | 8,764건 | 제1심 8,521건 |
| | | 항소심 218건 |
| | | 상고심 25건 |
| 2021년 | 10,257건 | 제1심 10,007건 |
| | | 항소심 226건 |
| | | 상고심 24건 |
| 2022년 | 19,570건 | 제1심 18,964건 |
| | | 항소심 565건 |
| | | 상고심 41건 |

그런데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일반 형사사건 범죄와 같이 기소되어 “처벌”로서 종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의 목적과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와 절차들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현재 마련된 “아동보호사건” 절차로서 다양한 개입과 교육상담 등 진행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정도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주고 있는 반면, 가정 내 아동학대가 아닌 학교 내 아동학대로서, 교원이 행위자인 경우 이러한 절차 및 제도의 배려를 해줄 유인이 적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아동학대의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동학대 관련 절차가 교원의 교권보호와 외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도 교원에게 일정부분 사실상 불이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점이 있다는 것으로 제도의 활용에 있어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0) 법원행정처, 2019·2020·2021·2022 사법연감 참조

## 4. 정서적 학대 쟁점과 검토

1998년의 초·중등교육법 제정 이후, 학교 내에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의 신고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에 해당하는 동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그 개념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에 비하여, 정서적 학대의 경우‘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41]. 정서적 학대”로서 처벌에 이르는 실제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주관적이고 다소 모호한 정서적 학대 개념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체계[42]에서 교권침해의 의도로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원단체 등이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인하여 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신고에 이르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전반의 감수성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학교와 교사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실제 처벌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생활

41) 해당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위헌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4헌바244 결정 등 참조)

42)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적응과 지도의 명목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43], 교사의 의도가 지도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지적과 꾸짖음이 피해아동에게 있어서는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저해를 줄 정도의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교원사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 Ⅳ. 결어

교원에 대한 제반 지원책의 초점은 교원 개인 보호가 아니라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통한 공공이익 증대에 주어져야 한다[4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교육현장에서 "교권"의 논의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학생(=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결국 아동(=학생)의 권리 보장과 궤를 같이한다 할 것이다. 이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교권보호 대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교원의 아동학대에 있어 처리절차 특례 마련"이 논의되고 있었다.

---

43)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판례〉**
- 피고인은 학원 영어강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2세)의 지저분한 책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돼지라는 동물 알아, 돼지는 어떻게 생활하니, 너랑 돼지의 차이점은 돼지는 혼자 씻지 못하는데 너는 씻을 수 있고, 같은 점은 돼지와 너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때렸다(의정부지법 2017고단5112).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해자(7세)가 수업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을 향해 사과하도록 시켰으나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큰소리로 말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자 '제대로 사과 안 할 거면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팔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를 향해 던졌다(대구지법 2018고단3508).
- 피고인은 C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다. 피해자B에게 철로 된 필통을 사용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니 엄마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 동급생의 떨어진 연필을 주워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냈다.(강릉지원 2017고단1244)

44) 박남기,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입법 이슈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2023, 124면

##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

우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부여에 있어, 현재 초·중등교육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이하, '생활지도 규범'이라 한다)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교원은 이상의 생활지도 규범상 가능한 생활지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도를 행함으로써 교육활동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생활지도규범의 존재만으로 교사의 모든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교원의 지도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두고 있으며, 특히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교원의 지도행위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준은 생활지도 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다.

## 2.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 보장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 보장에 있어,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로서 정서적 학대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과 처분에 있어 교원에게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교원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성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구체적으로, 평등권과 특권계급 창설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45]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권을 규정한 헌법 제30조[46]의 저촉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47]을 근거로 하는 과잉입

45)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46)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과도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일련의 면책권 부여 법안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의 방식의 입법과 제도개선을 도모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면책권 부여 법안으로서 얻을 수 있는 교권의 침해 방지 및 학습권 보호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학대 관련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는 이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위배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의된 면책권 부여 법률만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한 생활지도” 역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추가적인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결국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형사사법기관에서는 교원의“정당한 생활지도”일 경우 훈육으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적어도 양형 단계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음에도, 굳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 조항을 둘 것인가에 있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3. 교원의 아동학대에 있어 처리절차 특례 마련

교원의 아동학대에 있어 처리절차 특례 마련과 관련하여, 개정 교원지위향상법이 교원의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 등이 이러한 교육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거나 참고하도록 하는 안과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인 아동학대 조사와 판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안, 교육지원청과 교육부

47)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에 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적정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의 발생빈도,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신고' 또는 '신고'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의심'을 핑계삼아 교사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학대를 무기 삼아 이루어진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현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한 바, 교육당국이 절차적으로 교원의 무고함을 확인하고 형사사법기관에 이를 통지하는 등으로서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 형사처벌에 비하여 유리한 절차이면서, 아동학대의 성행을 개선 등에 효과적인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교원에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의 심화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갈등상황을 조기에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는 매뉴얼과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로 인한 교원의 고통을 줄일 수 방안으로 보여진다.

## 4. 교사의 교육권 존중과 아동인권 인식 제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성장시키고 교육한다는 교원의 역할에 대하여 전 사회의 깊은 신뢰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활동 중 지도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동들에 대하여 교원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였고, 교원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가 부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

루어질 수 있었다. 근래에 이르러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 관련 고통과 갈등을 호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제도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권 침해의 가파른 증가의 원인은 사실 법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상과 같이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뢰하던 문화의 상실이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법률 개정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제고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다.

한편 한편으로는 교사 스스로도 아동의 권리와 학생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학대"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들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고, 아동을 지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권의 침해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나 권위의 침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의 미래에 있어서도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교권 침해의 해결책을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말 그대로 '비교육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아동 모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이에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교육적'이고 '인권 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8·2019·2020·2021·2022『아동학대 주요통계』
법원행정처, 2019·2020·2021·2022『사법연감』
교육부,『2019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육부, 2023. 8. 23.「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2022. 12. 27.「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19.「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김민규 외, ‘교권침해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 ,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2016,
박남기,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입법 이슈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2023
신수경,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 오늘의 교육, 교육공동체 벗, 제72호, 2023. 1.
오승호,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3권 제3호, 2011. 3.
이진화 외,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newsis, 2023. 9. 16., ‘교원 6개 단체, 교사집회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
오마이뉴스, 2023. 9. 17., ‘3개 아동·청소년 관련 학회, 아동복지법 개정에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토 론 문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필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 토론문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 토론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Esser는 법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분쟁'의 해결과 '법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적 분쟁을 어떻게 성격규정(Qualifikation)할 것인가에 따라 적용될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과 적용할 법 후보군을 계속해서 대비해 가면서 그 사안에 적용할 '법'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Esser의 이런 주장은 실제의 소송사건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다. 토론자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A),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B)', '2023년도 제0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문제(C)' 등을 법률가에게 법발견의 과정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설명한 경험이 있다. A는 조합청산 이후 청산금반환청구권 관련 법이 적용되어야 할 법인데, 당사자들은 '도급계약 해제에서의 기성고 법리'를 적용할 법으로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B에서는 이행보조자인 회사 직원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적용되어야 할 법인데, 당사자들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적용할 법으로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C에서는 권원 없는 점유자가 제3자의 소유자에 대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가가 적용할 법이어야 하는데, '그 제3자가 소유자에게 항변권이 있는지'를 권원없는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의 분쟁에 적용할 법으로 다투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면서 수험생에게 각 주장의 당부를 묻고 있었다.

법적 분쟁에 대해 적용할 법을 잘못 찾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민사분쟁' 관련 판결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관의 롤모델이어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면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Qualifikation을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Fra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치적 쟁점 또는 정치상황의 특성을 규정지으려고 하기도 한다.

이를 일반화해서 말하면 어떤 사회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가가 사회적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 최근 발생한 교사들의 자살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교사단체에서는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면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의 학대 관련 법규정 개정에 맞추어지고 있다. 총선을 눈 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규정은 정치집단의 이해타산과 맞물려 확산되기도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진 것은 '칠곡계모사건', '정인이 사건' 등 학대로 인한 잇단 아동사망의 충격 때문이었다. 그 결과 아동복지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고(2014), 민법의 '징계권'도  삭제(2021)되었다. 그런데 아동학대정책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여론에 떠밀려 입법되었다는 것은 후속대책이 그다지 없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 학대신고, 학대조사, 형사처벌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의 관할 행정부처의 결정, 각 부처의 역할, 다학제적 협업체계의 구축 등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법이 시행되었다. 징계권 삭제만 해도 다양한 후속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징계 없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부모 지원대책, 훈육 목적으로 징계를 한 부모와 교사 등에 대한 재교육 대책, 교사, 아동학대전담기관, 경찰 간의 상시적 다학제적 협력체계의 구축(기초단위 또는 광역의 권역별 단위)이 필수적인데 이런 것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번에도 여론에 떠밀려 교사면책을 입법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악성민원은 일부 학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 한의사,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도 매우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과 범위에서 악성민원이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 때문이 아님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의사에게 악성민원을 하듯이, 자녀에게 불이익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하는 것이고, 아동학대 신고는 빌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신고가 없었다면 다른 것을 걸고 넘어지는 악성민원이 있었을 것이다. 악성민원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법이지, 악성민원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악성민원이 없어지지는 않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을 현대화하는 길에 큰 대못을 박게 될 것이다.

3. 학교 현장에만 국한해서 보면 악성민원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교육현장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자녀 학대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과도한 교육열을 가진 부모 집단이 상당수 된다. 둘째, 부모와 학생은 학교 교육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에 상응한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계층이 사회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사립학교 무상교육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무상교육도 현재의 사회체계 내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와 공무원을 강하게 압박해야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대표적인 특징들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1] 교육의 영역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육과정의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가와 개별학교 간의 계약관계, 개별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계약관계에 입각하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적 교육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 각자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1) 다양한 이유로(민주국가의 초석을 쌓기 위해 또는 국력신장을 위해) 19세기 여러나라에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을 입법화하였으나, 의무교육이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의미할 때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였다. 미연방대법원 Pierce v Society of Sisters, 1925, 268 U.S. 510을 필두로 의무교육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주가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배정하지만 인종차별적 배정이나 집으로부터 먼 곳에 배정하는 것은 스쿨버스제공이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립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동을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육위원회가 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탄력성 있는 공립학교 배치를 선택하는 주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매우 낯설다. 교육은 국가독점=국가책임이라는 인식, 여기에 덧붙여 국민은 국가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면 할수록 얻는 것이 많아진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교육의 국가독점=국가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평등한 주체들의 협업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개별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교육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방법을 계약내용에 담아 부모와 학생에게 청약하여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학생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별 학교의 교육서비스 제공 계약내용(약관)을 교육부가 법률로써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제 역시 교육부와 개별학교 간의 계약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계약'이라는 개념은 당사자 간의 평등과 협력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라나는 아동이 자기존중과 상호존중을 익힐 수 있게 교육하고, 집단 속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율을 배우는 과정이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는 당연히 훈육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부모와 아동은 존중하여야 한다. 법과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수적이다. 법과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상응하는 제재를 받지 않으면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미국의 예를 보면, 교육서비스 제공의 방법(수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학생의 자세, 성적평가, 학교에서의 규율 등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나 부모에 대한 제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계약위반을 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더 나아가 결석, 수업해태, 음주 등등 아동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신분위반행위(status offence)를 한 '비행아동'으로 제재를 받는다. 다양한 diversion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diversion 제도 하에서의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법원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이 매년 1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도 사회보장법상에 따른 행동문제 있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개입, 범죄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실질에서 다를 바 없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반 위에 교육이 제공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악성민원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약에 기반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

에는 악성민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계약적 관계에서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악성민원은 없거나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규범으로 자리잡지 않고, 강력한 요구를 해야 얻어낼 것이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게 될 때 악성민원이 번성할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교육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사, 학부모와 학생)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계약적 관계에 있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상응한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악성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더욱 무르익어 가는 셈이다.

4.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부모 악성민원과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 또는 작은 성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아동에게 강요하는 것을 천부의 권리처럼 인식하게 되고,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교사는 성인의 기준, 특히 자신의 기준으로 아동을 다루면서 자기 가치관을 주입시키거나 성인적 관점에서 아동을 평가하곤 해 왔다. 아동 역시 사회구성원으로 자신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는 아동의 특성상 아동의 세계는 아동연령별로 다층적일 수 있고, 끊임 없이 변화해 간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관점을 아동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동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새롭게 조망하면서 성장단계에 따라 각자에 맞는 형태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사자살에서 잘 드러나듯이 한 인간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할 때 그 충격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아동 역시 자신의 영역이 타인에게 침해당할 때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아동 개인의 자기 영역의 침해는 청소년기 자살, 정신질환, 비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기 때 학대나 방임을 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된 아동, 왕따 경험이 있는 등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정신질환, 만성질환, 약물중독, 범죄, 실업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아동학대예방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아동기 부정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경험의 예방, 피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 개입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기 때의 적극적 개입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장래의 사회적 비용(질병, 실업, 범죄 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기준 연간 400 여만 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었고, 그 신고에 연루된 아동이 700 여만명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5만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공간은 가정, 학교이다. 아동학대행위를 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람 역시 부모와 교사이다. 현재 신고되거나 처벌되는 건수가 아동학대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 많은 학대가 물밑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학대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대부분은 고의적 범죄행위라기 보다는 아동을 대하는 관점과 기술, 역량의 부족 때문이다. 아동학대정책에서 부모와 교사의 처벌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게 이들을 재교육하고,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학대행위자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대범죄행위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져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대범죄행위자가 정신적 문제로 인해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그들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정책은 앞으로 더 광범위한, 더 깊은 변화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초유로 경험하는 현재의 상황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과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전혀 다른 목표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별개의 영역이다. 이런 별개 영역을 결부시켜 논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논의를 갖고 와서 우리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는 악성민원이라는 문제 중의 하나를 해결하려는 것은 Qualifikation을 잘못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만 제대로 된 학교질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문

이필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 학습권 보장 실현의 공교육의 전제조건-윤리의식

‘학습권’은 제4차 유네스코 회의(파리 1985.)에서 천명되었다. 대한민국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를 구체하여 「교육기본법」에 ‘학습권’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생, 보호자, 교원에 국한되었던 교육공동체에서 나아가 ‘교육당사자’로 확대하고 권리(권한)과 의무(책임)을 명시하여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공교육’은 헌법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교육이 공적 주체에 의해 국가 재원(財源)으로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습권’을 정의하고 제2장에는 ‘교육당사자’를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주체인 ‘학습자’와 ‘교원’ 모두에게 ‘윤리의식’ 덕목을 명시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이 모든 과정에 ‘학습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시행’하라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의식’의 구체적 적용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의 발달(성숙도) ·아동의 권리·효과적인 학습방법’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교육공동체 윤리의식은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화

첫째, ‘교권(敎權)’에 대한 언급「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서 “교권은 존중되어야

‘교권’에 대한 정의는 교육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일부 조례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권은 국가가 교원에게 공교육의 교육활동을 수행토록 한 ‘직무상의 권한’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여 교육부는 지난 3. 23자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를 신설하였고, 9월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통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바깥이나 가정으로 분리 조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는 교원도 국민 기본권 보장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원에게는 ‘교육활동침해’를 보호하겠다는 영역 이외 직무상 특성을 고려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부모(보호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성찰해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는 지금까지 교육당국이나 학교가 자녀가 입학·재학 중인 보호자의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책임)를 구체적으로 담은 ‘학부모교육’ 안내서나 교육을 얼마나 해 왔을까?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 보호자에 대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1]’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2]성’ 등을 요구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법령과 조례 등에 보장[3]하고 있었으나 보호자

---

1)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23. 9. 27.]

3)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 참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학부모회’ 등)가 법적, 제도적,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호자로서 권리와 의무(책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소통구조가 실행될 때 교원과 보호자 간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악성민원’이라 불리는 특이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교육활동 보호에 근원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감당할만 해야 하고 다양성과 맞춤형을 지향할 때 가능

학교 현장은 대부분 학교교육의 정점으로 갈수록 학력 신장과 대입 중심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교권보호와 아동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 충돌과 이익 대립이 상존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공교육의 목적은 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경제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의 기본권이므로 우리 헌법도 공교육 방법의 조건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로 압축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이 아동 학습자에게 기회의 평등에 머물지 않고 ‘조건의 평등’, 나아가 ‘결과의 평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최근 개정 및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같은 법령과 ‘생활지도고시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등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순과 비교육적 현실 상황들이 사회적 요구와 기본권의 가치 속에서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우리 교육과 학교문화가 우리 교육 목적과 이념을 실현할 수는 기회라고 본다. 이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 주체들의 요구 사항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교육당사자들이 감당할 만한 맞춤형 지원과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이다. 사람에 대한 교육은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토론문

## - 교권 침해의 최종 피해자는 학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육권 회복해야 -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 들어가며

발표자는 교권의 개념과 교권 관련 현황,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 및 법적 대응을 살펴 본 후 “아동의 권리와 교권이 교육 현장에서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안”으로 아래 네 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의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행위는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 보장**은 과잉입법금지 원칙, 피해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 등에 위배하는 **위헌성 소지가 있어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를 무기 삼아 이루어진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 특례 마련을 위한 법률 정비는 바람직하다**. 덧붙여 교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 절차 활용, 갈등 상황 조기 대응과 조정을 위한 매뉴얼과 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교권 침해의 가파른 증가의 원인은 법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뢰하던 문화의 상실이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법률 개정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제고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다.

발표자가 강조한 비례의 원칙, 과잉입법금지 원칙, 피해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의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다. 전국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또한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헌법상의 원칙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길 요구한 것이다.

발표자는 '교권 침해의 가파른 증가의 원인'을 법 제도가 아닌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뢰하던 문화의 상실"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해결의 방법 또한 "법률 개정의 방식이 아닌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는 교권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의 상실"**이 교권 실추, 공교육 파탄의 핵심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 없는'**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제고'**로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교권의 문제가 "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제고"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권 또는 공교육의 사안은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교원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문화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 제도와 법률 미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교권이란 교사의 권리, 권한, 권위로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사의 권리, 권한, 권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 대한민국 교사의 권리

권리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 학설은 권리법력설(權利法力設)이다. 권리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란 개인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힘이다. 교사도 민주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2일 보신각 광장에서 서이초 교사 「1차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교사들이 맨 앞에 내세운 구호는 '생존권 보장'이다. 지난해부터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문제점,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지쳐있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비보를 접하며 '생존권'을 외쳤다.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검은 점들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2023년, 수만 명의 교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요구한 것이 '생존권',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교사의 인권, 법적 권리의 상황을 방증한다.

## 대한민국 교사의 권한

권한이란 법률에서 정한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해 법률에서 보장하는 힘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르면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분하고,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의 직무는'학생교육'이다. '학생교육'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교사에게 보장해야 할 권한은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선택 및 활용권, 수업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등이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 교육법이 제정된 후 50년, 1998년 교육법을 폐기하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한 이후 25년, 법이 대한민국 교사에게 학생 교육을 위해 부여한 권한은 전혀 없었다. 교사의 모든 권한은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학교장의 '명령'에 따른 의무일 뿐이었다. 2022년 12월 27일(시행일 2023.6.28.)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이 처음으로 부여되었고, 그것이 유일한 법적 권한이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에게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 대한민국 교사의 법적 권한이다.

## 대한민국 교사의 권위

권위란 일정한 분야에서 인정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존중, 인정,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을 기본으로 하는 외

적 권위와 인격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내적 권위로 구분한다. 맹목적 지배, 복종,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와 다르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젠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주로 교사의 권위 실추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젠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교사의 권위이다. 사회적,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 없는“교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제고”는 현시점에서 빛좋은 개살구, 공염불에 불과하다. 학교문화 제고로 바뀔 사안이었다면 수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1. 교권 4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교사들의 생존권, 안전,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7월 22일 이후 열 차례가 넘는 집회를 통해 교사들은 생존권, 안전한 교육환경, 교육권,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권, 생활지도권은 교사의 권한에 대한 요구이다. 생존권, 안전한 환경은 교사의 인권, 기본적 권리에 관한 요구이다. 전국 교사들은 생존권,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른바 교권 4법이라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응답했다. 동문서답의 형국이다.

교권 4법 개정으로 교원의‘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었고, 이를 사실상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법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 내용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하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현행법으로도 이미 처벌하지 않는다. 교권 4법에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 또는 수사 관련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견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그 외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 등 교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는 아동학대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조치일 뿐 교사의 교육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없고 무엇보다 전국 교사들의 핵심 요구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 2. 교권은 학생인권과 학습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수단'이다.

> "교권의 논의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학생(=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결국 아동(=학생)의 권리 보장과 궤를 같이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 행정부가 임의로 제정한 행정규칙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행복추구권, 학습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공교육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학습권 실현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에 의한 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 실현에 있다. 교권은 학습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인권과 교권(교사의 권리, 권한, 권위)은 대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학생인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권은 성립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교권(교사의 권리, 권한, 권위)의 보장 없이 학생의 학습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 3.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 가파른 교권 침해 증가의 핵심. 교권침해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2014년 9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같은 날 아동복지법도 개정되어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형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벌금의 최소단위인 벌금 5만 원으로도 사실상 교사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이유이다.[1]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폭력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기본 의무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가정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하여 학대행위자 제지·격리,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교육 현장은 가정과 달리 긴급하게 학대행위자를 강제로 격리하거나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긴급하게 격리할 상황이 발생하기 힘들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 급하면 체하는 법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교육 현장에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했다. 인력, 재정, 시설, 행정 등 준비 부족으로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실상 아동학대 관련 모든 업무를 비영리 민간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째로 위임해 버렸다.[2] 그 결과 2023년 공교육 파탄에 직면했다.

---

1)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유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2014년 이후 약 6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교직원은 약 8,600명에 이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5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 법원의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이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판단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관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따른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법원, 수사기관의 장, 학교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정서학대) 판단만으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2022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법령 개정과 아동학대 사례 판단 및 변경 절차에 대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방어권 등을 보장하도록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아동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당사자의 방어권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주장만으로 관리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사례의 대부분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다.

---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의2.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2014년 이후 6년간,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판정은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호자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으로 아동학대 사례 판정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공교육 파탄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결과는 교사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최종 피해자는 결국 학생(아동)이다.

## 5.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드러난 교사의 인권

아래 표는 2018년 이후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침해 현황이다.

| 학년도 | 침해대상 | 상해 폭행 | 협박 | 모욕 명예훼손 | 손괴 |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 공무 및 업무 방해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 기타 | 합계 |
|---|---|---|---|---|---|---|---|---|---|---|---|---|---|
| 2018 | 학생 | 165 | 65 | 1309 | 15 | 16 | 13 | 69 | 164 | 263 | | 165 | **2,244** |
| | 학부모등 | 7 | 16 | 82 | 1 | 0 | 3 | 33 | 7 | 35 | | 26 | **210** |
| 2019 | 학생 | 240 | 82 | 1,345 | 14 | 24 | 28 | 126 | 205 | 238 | - | 133 | **2,435** |
| | 학부모등 | 8 | 21 | 112 | 1 | 0 | 6 | 16 | 1 | 42 | - | 20 | **227** |
| 2020 | 학생 | 106 | 38 | 622 | 12 | 30 | 23 | 69 | 107 | 34 | - | 40 | **1081** |
| | 학부모등 | 7 | 10 | 46 | 0 | 1 | 4 | 6 | 3 | 33 | - | 6 | **116** |
| 2021 | 학생 | 231 | 60 | 1,203 | 19 | 65 | 67 | 80 | 200 | 93 | - | 80 | **2,098** |
| | 학부모등 | 8 | 19 | 68 | 3 | 1 | 3 | 15 | 7 | 29 | - | 18 | **171** |
| 2022 | 학생 | 347 | 108 | 1,611 | 20 | 107 | 51 | 139 | 221 | 96 | 7 | 126 | **2,833** |
| | 학부모등 | 14 | 24 | 75 | 0 | 1 | 5 | 25 | 2 | 45 | 0 | 11 | **202** |
| 합계 | | 1,133 | 433 | 6473 | 85 | 245 | 203 | 578 | 917 | 908 | 7 | 625 | **11,617** |

5년 동안 교육부에 보고된 교육활동침해는 11,617건이다. 이중 법률에서 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상해 · 폭행 1133건, 협박 443건, 모욕 · 명예훼손 6473건, 손괴 85건, 성폭력범죄 245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203건, 공무 · 업무 방해 578건으로 모두 9,160건이다. 학생의 인권, 학습권 실현을 위해 교육활동을 수행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는 교사에 대한 범죄 행위가 9,160건이라는 사실이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범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교육 활동 중인 교사에 대한 범죄 행위 또한 용납될 수 없다. 만약 5년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범죄가 9,160건이라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까?

## 6. 보건복지부 통계에 드러난 아동인권과 교사인권

아래 표는 2014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고 국가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전국 유·초·중·고 교직원의 수이다.[3)]

| 연도 | 신고 접수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행위자 | | | 비율 | |
|---|---|---|---|---|---|---|---|---|
| | | | | 유치원 | 초 · 중 · 고 | 계 | 유치원 | 초 · 중 · 고 |
| 2014 | 17,791 | 15,025 | 10,027 | 99 | 145 | 244 | 0.9 | 1.4 |
| 2015 | 19,214 | 16,651 | 11,715 | 203 | 234 | 437 | 1.7 | 2.0 |
| 2016 | 29,674 | 25,878 | 18,700 | 240 | 576 | 816 | 1.3 | 3.1 |
| 2017 | 34,169 | 30,923 | 22,367 | 281 | 1,345 | 1,626 | 1.3 | 6.0 |
| 2018 | 36,417 | 33,532 | 24,604 | 189 | 2,060 | 2,249 | 0.8 | 8.4 |
| 2019 | 41,389 | 38,380 | 30,045 | 155 | 2,154 | 2,309 | 0.5 | 7.2 |
| 2020 | 42,251 | 38,929 | 30,905 | 118 | 882 | 1,000 | 0.4 | 2.9 |
| 2021 | 53,932 | 52,083 | 37,605 | 140 | 1,089 | 1,229 | 0.4 | 2.9 |
| 2022 | 46,103 | 44,531 | 27,971 | 100 | 1,602 | 1,702 | 0.4 | 5.7 |
| 계 | 320,940 | 295,932 | 213,939 | 1,525 | 10,087 | 11,612 | 0.8 | 4.6 |

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 발췌 (2014년~2022년)**
○ 신고접수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 이후 9년 동안「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아동학대행위자」로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4]에 등록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은 11,612명이다. 교직원으로 분류되었지만 대부분 아동을 직접 교육하는 교원으로 추정된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유·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교원 수(각종 학교 포함)는 507,793명이다. 11,612명은 전체의 2.29%이다. 100명 중 2명 이상의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것이다.

○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9년 동안 최소 11,612명의 아동이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행위를 당한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또 다른 관점,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11,612명 중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행위라 판단되어 기소된 교사는 몇 명쯤일까?
절대다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데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관리되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 2018년 이후 4년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는 6,787건의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고 6,787명의 교직원을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했다. 이중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사례는 11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6,787건 중 수사기관에서 정식 사건 처리한 것은 863건으로 12.7%에 불과했다. 87.3%에 해당하는 5,924건은 정식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되었다. 863건 중 정식 수사를 통해 110건은 기소, 753건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불기소 753명의 상황은 무혐의 438건, 기소유예 107건, 보호처분 208건이다. 기소유예(107건), 보호처분(208건), 기소(110건)를 합하면 425건으로 6.3%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에서 볼 때 93.7%에 해당하는 6,362명의 사례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무혐의 사안이었다.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2021년 이후 아동정보시스템로 명칭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위 비율을 9년 동안의 사례에 적용하면 11,612명의 교직원 중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사례는 1.6%에 해당하는 186명 정도이다. 기소, 보호처분, 기소유예도 아닌 완전 무혐의로 종결된 교사는 93.7%에 해당하는 10,880명 정도이다.

그런데, 10,880명의 교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동학대 신고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에겐 '괴물'이다. 보호자의 아동학대 주장만으로 담임 교체, 분리 조치, 강제 휴직, 직위해제 등 험난한 긴 터널을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어도 교사에게 남은 것은'살아남은 상처뿐'이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인권, 생존권마저 위협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권침해의 본질인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그대로 둔 채'교원 권리 존중 문화 제고'를 말하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사이의 갈등 해소 차원이 아닌 교원의 생존권 문제이다.

학급 아동은 어떠한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담임이 교체된 학급의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학기 중 새로운 담임을 만나고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학습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 정리하며

권위주의 시대, 교사에게는 학생 교육 관련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다. 학교 교육은 정치권력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교사는 자율성을 부정당한 채 수직적 권력 구조에 순응해야 했다. 1948년 이후 교육법 시대 50년, 교사는 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명'에 따라 교육하는 존재였다. 1998년 이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대 25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부모를 '교육 수요자'로 치환하면서 교사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권위주의 시대 국가는 교사에게 학생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권한이 아닌 학생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당한 '권력'을 쥐여 주었다. 학부모마저 '성공적 대입', '개천의 용' 탄생을 위해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사회 민주화 이후 인권 의식이 고양되었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으로 교육계에도 시장 논리가 도입되면서 '수요자

중심 교육'이 자리 잡았다. 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학교 교육의 역할은 약화 되었다. 교사에게 쥐여준 부당한 권력의 힘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학생, 보호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가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권력이 아닌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사에게는 갈등을 조정할 힘이 없다.

교사의 권한, 교육권 부재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작년 12월 27일, 교사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6월 28일 시행되었다. 9월 1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다. 학교는 12월까지 학교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보호자의 법적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만들기는 불가능한 것일까?**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이 시기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협약 제정을 제안한다.**

**교사의 인권,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는 공교육이 필요하다. 국가(교육부 장관)와 지자체(교육감)가 지도·감독하는 공교육이 아닌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원에 의한 학교자치,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전면 제·개정이 필요하다.**

학생의 존엄도, 대학에서 교육받을 권리도 성적순으로만 결정되는 입시경쟁 교육의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능력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존엄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공교육을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한 시대이다.**

**경쟁교육이 아동학대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1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쟁점과 대안

세션 3

# 학교규칙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발제

#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 -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 -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 1. 연구 개요

### 1) 연구 목적

본 실태조사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학생 및 보호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학교생활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인권위의 2016년 연구 및 2017년 권고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2) 학교규칙과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경험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3) 인권적 학교생활규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및 사례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과정에서 두 가지 점을 협의하여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학교규칙 전체가 아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규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는 연구 중 일어나 서이초 사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며, (4)서이초로 드러난 학교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고, 학생생활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것으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 표본 구성, (2) 표본 학교 규정 점검, (3) 표본 학교 구성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표본 구성

전국의 학교대비 표본은 10%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학생인권연구에서 확인된 지역, 학교설립유형, 남녀공학 여부라는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모집단에서의 해당 요소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층화표집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여, 모집단에 대한 균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중학교 : 293개교 (2022년 기준, 전체 3,259개교)**

| 지역별 | 표본수 | 설립주체 | | 남여공학여부 | | |
|---|---|---|---|---|---|---|
| | | 공립 | 사립 | 공학 | 녀 | 남 |
| 중학교 | 293 | 201 | 92 | 196 | 41 | 56 |
| 서울특별시교육청 | 31 | 18 | 13 | 22 | 3 | 6 |
| 부산광역시교육청 | 15 | 10 | 5 | 7 | 4 | 4 |
| 대구광역시교육청 | 12 | 7 | 5 | 9 | 1 | 2 |
| 인천광역시교육청 | 13 | 12 | 1 | 7 | 2 | 4 |
| 광주광역시교육청 | 9 | 5 | 4 | 6 | 1 | 2 |
| 대전광역시교육청 | 8 | 6 | 2 | 5 | 1 | 2 |
| 울산광역시교육청 | 5 | 5 | 0 | 4 | 0 | 1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 | 2 | 0 | 2 | 0 | 0 |
| 경기도교육청 | 59 | 45 | 14 | 50 | 5 | 4 |
| 강원도교육청 | 15 | 12 | 3 | 10 | 2 | 3 |
| 충청북도교육청 | 12 | 9 | 3 | 7 | 1 | 4 |
| 충청남도교육청 | 15 | 10 | 5 | 9 | 3 | 3 |
| 전라북도교육청 | 25 | 13 | 12 | 13 | 5 | 7 |
| 전라남도교육청 | 26 | 15 | 11 | 13 | 6 | 7 |
| 경상북도교육청 | 19 | 12 | 7 | 15 | 2 | 2 |
| 경상남도교육청 | 23 | 17 | 6 | 15 | 4 | 4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4 | 3 | 1 | 2 | 1 | 1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고등학교 : 247개교 (2022년 기준, 전체 2,373개교)**

| 지역별 | 표본수 | 학교유형별 | | | | 설립유형 | | 남여공학여부 | | |
|---|---|---|---|---|---|---|---|---|---|---|
| | | 일반 | 자율 | 특성 | 특목 | 공립 | 사립 | 공학 | 녀 | 남 |
| 고등학교 | 247 | 151 | 22 | 44 | 30 | 147 | 100 | 157 | 48 | 42 |
| 서울특별시교육청 | 34 | 16 | 8 | 6 | 4 | 12 | 22 | 17 | 9 | 8 |
| 부산광역시교육청 | 15 | 10 | 1 | 2 | 2 | 7 | 8 | 7 | 4 | 4 |
| 대구광역시교육청 | 10 | 5 | 2 | 1 | 2 | 4 | 6 | 6 | 2 | 2 |
| 인천광역시교육청 | 13 | 7 | 1 | 3 | 2 | 10 | 3 | 5 | 4 | 4 |
| 광주광역시교육청 | 7 | 5 | 0 | 1 | 1 | 4 | 3 | 3 | 2 | 2 |
| 대전광역시교육청 | 6 | 3 | 1 | 1 | 1 | 3 | 3 | 4 | 1 | 1 |
| 울산광역시교육청 | 6 | 4 | 0 | 1 | 1 | 5 | 1 | 4 | 1 | 1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 | 1 | 0 | 0 | 1 | 2 | 0 | 2 | 0 | 0 |
| 경기도교육청 | 50 | 37 | 2 | 7 | 4 | 36 | 14 | 45 | 3 | 2 |
| 강원도교육청 | 11 | 7 | 1 | 2 | 1 | 9 | 2 | 7 | 2 | 2 |
| 충청북도교육청 | 9 | 4 | 1 | 3 | 1 | 7 | 2 | 6 | 2 | 1 |
| 충청남도교육청 | 12 | 7 | 1 | 2 | 2 | 8 | 4 | 9 | 2 | 1 |
| 전라북도교육청 | 20 | 11 | 2 | 5 | 2 | 10 | 10 | 11 | 4 | 5 |
| 전라남도교육청 | 20 | 14 | 1 | 3 | 2 | 12 | 8 | 12 | 5 | 3 |
| 경상북도교육청 | 14 | 10 | 0 | 2 | 2 | 6 | 8 | 6 | 4 | 4 |
| 경상남도교육청 | 15 | 8 | 1 | 4 | 2 | 10 | 5 | 12 | 2 | 1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 | 2 | 0 | 1 | 0 | 2 | 1 | 1 | 1 | 1 |

### (2) 학생생활규정 점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및 2021년 대전학생생활규정전수조사 등의 지역별 조사들을 참고하여 점검사항을 구성하였다.

점검항목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점검은 연구원들이 이중으로 점검하여 연구원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 구분 | 점검 항목 |
|---|---|
| Ⅰ. 규정 체계 | 규정목적 에서의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규정<br>학생 이해 용이<br>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br>차별 금지 규정 / 차별 조항 |
| Ⅱ. 자치활동 | 독립성 / 공간 및 예산 확보<br>입후보 자격에서의 제한요소<br>학생의 학생지도 활동 |
| Ⅲ. 교내활동 | 다른 반 출입 제한<br>게시 등 제한<br>온라인 단체방 / 학내 동아리 제한 |
| Ⅳ. 교외활동 | 정치 활동<br>시민단체 / 교외 동아리/활동<br>집회/시위 |
| Ⅴ. 복장/용모 | 모호한 표현<br>머리 / 장신구및 화장<br>신발 / 양말 및 속옷 / 복장 |
| Ⅵ. 휴대폰 등 |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br>휴대폰 금지 / 압수 규정 |
| Ⅶ. 징계절차 | 의결진술권 / 징계 사실 공표 / 재심 절차 안내<br>무단 결석/ 흡연음주/ 누적 - 퇴학규정 |
| Ⅷ. 상벌점제 | 상벌점제<br>말소 조항<br>반성문/서약서 등 |

### (3) 학생생활규정 설문조사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실태를 학생/보호자/교사의 인식와 이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의 일부 내용은 앞서 조사한 규정과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구성원들이 체기감하는 규정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 해당 표본 학교에 대해서만 참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며, 현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해당 학교 전체로 하되, 시기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보호자, 해당 학년 담임/교과교사)은 제외하였다. (11월 11일 24:00 마감예정)[1)]

설문내용은 (1)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지, (2) 학교내 복장/용모/휴대폰등의 제한 실태, (3) 학생자치 및 참여 활동에 대한 실태, (4) 상벌점제를 다루고 있으며, 추가로 (5)학교내 차별경험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 등을 위해 별도의 집단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4) 기타

관련 연구 및 활동에 대한 문헌연구 및 활동 참여자를 포함한 전문가 감담회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해석 및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보호자/교사의 구성원내/ 구성원간 관계 및 신뢰 약화에 따른 학교현장에서의 영향 및 서이초 사건 대응에서 나타난 교육부 지침등이 학생생활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로 정리한다.

무엇보다 본 자료는 진행중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연말에 발간될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 2. 연구 결과

### 1) 학생생활규정 점검

#### (1) 생활규정내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조항

-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이나 총칙에서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1) 22월 6일 12:00기준, 학생 13,185명/ 보호자 3,257명/ 교사 2,245명 참여하였다.

설문당 다음과 같은 기초 분석을 하였으며, 요소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미성과 함께, 평균수치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 표본수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유의확률 |
|---|---|---|---|---|---|---|
| 합계 | 540 | 346 | 194 | 64% | 36% | |
| *중학교* | *293* | *182* | *111* | *62%* | *38%* | *〉 0.1* |
| *고등학교* | *247* | *164* | *83* | *66%* | *34%* | |
| *일반/자율고* | *172* | *117* | *55* | *68%* | *32%* | *〉 0.1* |
| *특성화고* | *44* | *28* | *16* | *64%* | *36%* | |
| *특목고* | *30* | *18* | *12* | *60%* | *40%* | |
| *국.공립* | *348* | *222* | *126* | *64%* | *36%* | *〉 0.1* |
| *사립* | *191* | *123* | *68* | *64%* | *36%* | |
| *공학* | *353* | *229* | *124* | *65%* | *35%* | *〉 0.1* |
| *남학교* | *98* | *60* | *38* | *61%* | *39%* | |
| *여학교* | *89* | *56* | *33* | *63%* | *37%* | |
| 강원도 | 29 | 23 | 3 | 79% | 10% | 〈 0.001 |
| 경기도 | 110 | 79 | 31 | 72% | 28% | |
| 경상남도 | 46 | 46 | 0 | 100% | 0% | |
| 경상북도 | 44 | 23 | 21 | 52% | 48% | |
| 광주 | 16 | 16 | 0 | 100% | 0% | |
| 대구 | 22 | 5 | 17 | 23% | 77% | |
| 대전 | 14 | 1 | 13 | 7% | 93% | |
| 부산 | 30 | 13 | 17 | 43% | 57% | |
| 서울 | 67 | 35 | 30 | 52% | 45% | |
| 세종 | 4 | 2 | 2 | 50% | 50% | |
| 울산 | 11 | 2 | 9 | 18% | 82% | |
| 인천 | 26 | 6 | 20 | 23% | 77% | |
| 전라남도 | 38 | 27 | 11 | 71% | 29% | |
| 전라북도 | 33 | 26 | 7 | 79% | 21% | |
| 제주도 | 7 | 2 | 5 | 29% | 71% | |
| 충청남도 | 27 | 24 | 3 | 89% | 11% | |
| 충청북도 | 21 | 16 | 5 | 76% | 24% | |

해당 설문의 경우, 다른 학교 요소별 차이는 없으며,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정내 학생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16 검검] 기본권 규정 : 중·고등 22% / 중학교 32% / 고등학교 19%

• 규정에서 차별금지조항이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 | 답변수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 합계 | 538 | 347 | 191 | 65% | 35% |
| 중학교 | 291 | 208 | 83 | 71% | 29% |
| 고등학교 | 247 | 139 | 108 | 56% | 44% |
| 강원도 | 26 | 14 | 12 | 54% | 46% |
| 경기도 | 108 | 95 | 13 | 88% | 12% |
| 경상남도 | 46 | 39 | 7 | 85% | 15% |
| 경상북도 | 44 | 37 | 7 | 84% | 16% |
| 광주 | 16 | 15 | 1 | 94% | 6% |
| 대구 | 22 | 4 | 18 | 18% | 82% |
| 대전 | 14 | 3 | 11 | 21% | 79% |
| 부산 | 30 | 2 | 28 | 7% | 93% |
| 서울 | 65 | 31 | 34 | 48% | 52% |
| 세종 | 4 | 4 | 0 | 100% | 0% |
| 울산 | 11 | 4 | 7 | 36% | 64% |
| 인천 | 26 | 2 | 24 | 8% | 92% |
| 전라남도 | 38 | 31 | 7 | 82% | 18% |
| 전라북도 | 33 | 25 | 8 | 76% | 24% |
| 제주도 | 7 | 5 | 2 | 71% | 29% |
| 충청남도 | 27 | 23 | 4 | 85% | 15% |
| 충청북도 | 21 | 13 | 8 | 62% | 38% |

차별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학교는 65%이다. 학교 요소별로는 중학교는 71%이며, 고등학교는 56%로 차이를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기타 성별/ 임신출산, 학생간 교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은 거의 없다.

해당 규정은 법률 위반으로 학교에 직접적 개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성별 차별 (6개 학교) / 임신,출산 차별 (3개 학교) / 학생간 교제 (22개 학교)

### (2) 규정 제·개정시 학생참여

• 학생참여 규정

81%의 학교에서 학생참여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인천, 부산, 대전, 서울 등의 도시지역이 낮다.

• 학생의 의결권을 1/3이상 보장

학생관련규정의 제·개정은 학생 의결권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약 62%가 보 장하고 있다.

요소별로는 중학교 69%로 고등학교 53%로 보다 높다. 공학여부에서는 남녀공학이 높은 반면, 남학교, 여학교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광주, 세종, 경기도, 경상남도 등이 높게 나타났다.

| | 답변수 | 예 | 아니오 | 무 | 예 | 아니오 | 무 |
|---|---|---|---|---|---|---|---|
| 합계 | 541 | 334 | 185 | 22 | 62% | 34% | 4% |
| 중학교 | 293 | 202 | 90 | 1 | 69% | 31% | 0% |
| 고등학교 | 248 | 132 | 95 | 21 | 53% | 38% | 8% |
| 공학 | 353 | 228 | 114 | 11 | 65% | 32% | 3% |
| 남학교 | 98 | 56 | 36 | 6 | 57% | 37% | 6% |
| 여학교 | 89 | 49 | 35 | 5 | 55% | 39% | 6% |

- 학생대상 토론회(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대부분의 학교가 규정하고 있다. (83%)

❖ [2016 검검] 의견수렴 조항 : 중·고등 96% / 중학교 97% / 고등학교 95%

### (3) 자치/참여 활동

-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규정의 모범적인 사례로서는 전라북도 백화여고의 경우, 학교 예산의 1%를 학생회 활동 예산으로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16조)

- 학생회 출마 자격

학생회 회장/부회장 출마의 경우, 학생들의 추천/투표외 다른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 추천을 요구하거나, 징계 이력을 제한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 소수의 학교는 성적을 자격 조건으로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교장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했다.

임명후, 교내 징계 등의 이유로 바로 자격 박탈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학교가 일부 있었다. 일부 학교는 후보의 징계경력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마 자격으로 두지는 않고 있다.

| | 답변수 | 예 | 아니오 | 무 | 예 | 아니오 | 무 |
|---|---|---|---|---|---|---|---|
| 합계 | 540 | 196 | 270 | 74 | 36% | 50% | 14% |
| 중학교 | 293 | 102 | 165 | 26 | 35% | 56% | 9% |
| 고등학교 | 247 | 94 | 105 | 48 | 38% | 43% | 19% |
| 시 | 188 | 70 | 73 | 45 | 37% | 39% | 24% |
| 도 | 352 | 126 | 197 | 29 | 36% | 56% | 8% |

교사 추천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전체가 50%이며, 고등학교는 43%로 더 낮다.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39%로 더 낮게 규정되어 있다.

-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활동이 있다.

학생회 규정을 포함하여, 학생생활규정내에 학생이 등교지도등 학교내 질서 유지 등을 맡은 규정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기존의 선도활동 규정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규정상으로는 27%가 학생회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36%에 이른다. 동은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 (4) 정치 사회/ 교외 활동

정치/사회 활동은 학교외 활동이면서도,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양성이라는 목적에 중요하게 연계되어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할 교육활동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만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만16세 이상 학생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보장을 법률로 보장받는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포함한 대외활동에 대해 폭력/불량 단체 활동을 규제하는 항목만을 두고 있다.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이나 시민단체 가입 활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심각하게는 일부 학교에서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징계나 벌점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충청북도 증평공업고등학교의 규정으로, 제2절 교외활동에 별도의 조항으로 정당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이나 학생회 임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22%).

•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치활동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단체 활동에 대해 교장/교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일부 학교의 경우 징계/벌점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36%)

특히 중학교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47%로 높다. 다양한 문화 및 체육, 사회 단체의 활동이 학생들의 성장에 연결되며, 우리사회의 건전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 태도가 필요하다.

### (5) 용모/복장

2016년 학생들의 학교내 인권실태조사 및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2016~20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용모·복장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하며,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건수의 대부분도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갈등 지점이라는 것이다.

❖ [2016 검검] 용모/복장/휴대폰 제한 : 93% 제한 규정 있음

• 모호한 표현의 제한이 있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진 표현이 많이 등장하였다. 학생신분에 맞는, 과도한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교풍, 사회통념상, 상식적과 같은 알 수 없는 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화려한, 고가, 비치는 과 같은 표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가 59%로 상당히 높다.

• 머리 퍼머나 염색에 대한 제한이 있다.

두발에 관련된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가 많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염색이나 탈색/원색의 염색, 화려한 퍼머를 금지하는 등 제한 범위를 줄인 경우도 있다.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가 63%로 높으며, 지역별로는 세종, 대구, 대전, 제주 등은

80%가 넘은 대부분의 학교에 제한이 있다.

• 장신구 및 화장에 대한 제한이 있다.

과도한 장신구, 칼라렌즈, 피어싱, 문신을 규제하는 경우는 '문신규제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 답변수 | 예 | 문신등 | 아니오 | 무 | 예 | 문신등 | 아니오 | 무 |
|---|---|---|---|---|---|---|---|---|---|
| 합계 | 540 | 307 | 44 | 167 | 22 | 57% | 8% | 31% | 4% |
| 중학교 | 293 | 193 | 9 | 81 | 10 | 66% | 3% | 28% | 3% |
| 고등학교 | 247 | 114 | 35 | 86 | 12 | 46% | 14% | 35% | 5% |
| 국.공립 | 348 | 182 | 32 | 117 | 17 | 52% | 9% | 34% | 5% |
| 사립 | 191 | 124 | 12 | 50 | 5 | 65% | 6% | 26% | 3% |

해당 규제는 머리 퍼어/염색 제한과 비슷한 수치와 패턴을 보여준다. 즉 제한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 (6)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동의를 원칙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규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동의시 후속 절차의 유무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규정에서 제시된 비동의시의 후속 절차에서, 학생에게 동의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7) 휴대폰 제한

학습권 보호와 휴대폰 사용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에 대한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해당 설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지점이다.

학교내 반입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57%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평일 휴대폰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학교 현장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휴대폰/정보통신기기의 사용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휴대폰의 교내 반입 금지나 등교시 일괄수거하는 규정이 있다.

중학교의 경우 68%로 학교내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 규정위반시 휴대폰 압수하는 규정이 있다.

55% 정도의 학교에서 압수규정이 있다.

요소별로는 중학교가 64%로 높다. 남학교가 63%로 압수규정이 많고, 이어 공학, 여학교 순으로 나타난다.

### (8) 징계 절차

징계 절차중 학생의 진술기회 보장 및 재심 절차 안내 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정도 대부분 동일하여, 권고 기준이나 표준안을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만, 해당 규정 자체가 없거나 (4%), 진술기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9%).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인정 결석, 흡연/음주, 단순위반의 벌점누적으로 인한 퇴학 조항을 조사하였다. 단순위반의 경우는 전체학교대비 10%로 나타났다.

❖ [2016 검검] 진술기회 보장 : 중·고등 93% / 중학교 88% / 고등학교 95%

• 미인정 결석 퇴학 규정

2017년 국가인권위 개선 권고 미인정 결석에 따른 퇴학 규정을 예시하고 있어, 꽤 많은 학교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46%).

학생 요소별로는 여학교가 52%로 가장높고, 지역적으로는 전남북, 서울, 강원, 충북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다.

미인정 결석의 경우, 학년 유예 등의 징계가 취해진다는 점에서, 퇴학 조치는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흡연·음주 등의 누적 퇴학 규정

흡연·음주로 퇴학 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는 30%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대전이 퇴학 규정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50%)

### (9) 상벌점제

상벌점제는 학교내 체벌을 금지하는 중간 과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민주적이고 교육적 학교생활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상벌점제의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정도와 대체 규정이나 활동이 중요한 사항이다.

• 상벌점제

규정으로는 상벌점제를 두고 있는 학교는 29%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학교 요소별로는 고등학교 33%, 여/남학교 34/32%, 경북, 대구, 대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제출 규정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일부 학교에서 해당 조항이 있었으며(16%), 경북, 대구가 많았다.

### (10) 학교 요소별 비교 분석 정리

• 시/도 단위 교육청간의 차이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규정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시단위 교육청 및 도단위 교육청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부분 항목에서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규정이 더 긍적적으로 점검되었다.

도단위 학교의 경우, 규정에서 학생인권보장 및 참여권을 보장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 긍정비율(%) | 학생인권보장 명시 | 차별금지 명시 | 조례-학생참여 | 학생참여 1/3이상 보장 | 학생의견수렴 |
|---|---|---|---|---|---|
| 도 | 76 | 80 | 88 | 71 | 90 |
| 시 | 43 | 35 | 68 | 44 | 71 |

그 외의 규정에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학생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시단위보다 많이 규정되어 있다.

| 긍정비율(%) |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없음 | 상벌점제 없음 | 학생(회)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있음 |
|---|---|---|---|
| 도 | 56 | 79 | 32 |
| 시 | 39 | 55 | 19 |

특정 교육청별 차이는 경상북도, 대구, 울산, 대전, 제주 지역 학교의 규정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긍정비율(%) | 학생인권보장 명시 | 학생참여 1/3이상 보장 |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없음 | 머리 제한 없음 | 장신구/화장 제안 없음 |
|---|---|---|---|---|---|
| 경상북도 | 52 | 16 | 55 | 23 | 14 |
| 대구 | 23 | 64 | 45 | 5 | 9 |
| 대전 | 7 | 36 | 23 | 7 | 7 |
| 울산 | 18 | 18 | 29 | 18 | 46 |
| 제주 | 29 | 57 | 17 | 14 | 0 |
| 기타 | 69 | 68 | 59 | 40 | 48 |

•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차이 확인[2].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학생인권 및 기본권 가치의 명시 및 세부 정책에 연관된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비율(%) | 학생인권보장 명시 | 차별금지 명시 | 학생참여 1/3이상 보장 | 상벌점제 있음 | 학생(회)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있음 |
|---|---|---|---|---|---|
| 조례 유 | 71 | 76 | 68 | 21 | 22 |
| 조례 무 | 62 | 59 | 53 | 40 | 32 |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교육청별로 비슷하며, 이는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에서의 권고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이하게도 휴대폰 관련 규정이 중학교가 더 엄격하다.

2)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의 경우, 이를 학생인권조례과 구분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석에서 인천은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긍정비율(%) | 차별금지 명시 | 학생참여 1/3이상 보장 |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없음 | 휴대폰 소지금지 | 휴대폰 압수규정 |
|---|---|---|---|---|---|
| 중학교 | 72 | 69 | 56 | 68 | 64 |
| 고등학교 | 56 | 53 | 43 | 44 | 45 |

- 남녀공학여부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간의 차이는 일부 규정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여학교가 부정적 비율이 높고, 남학교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높고, 남녀공학이 적게 나타나는데, 휴대폰 압수 규정 만은 여학교가 가장 적고, 남학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비율(%) | 학생참여 1/3이상 보장 | 양말/속옷 규정 있음 | 휴대폰 압수규정 | 상벌점제 있음 |
|---|---|---|---|---|
| 남여공학 | 65 | 14 | 56 | 28 |
| 남학교 | 57 | 4 | 63 | 32 |
| 여학교 | 55 | 27 | 46 | 34 |

## 2) 학생생활규정 설문조사

11월 7일 현재 설문 진행중이며, 학생참여자수로는 6일기준 13,000명을 넘었으며, 대략 1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발표를 위해 11월1일 기준 7300명을 대상으로 간단히 분석한다.

그러므로 아래 결과 분석은 중간 점검이며 지역별 참여도가 차이가 있어,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1) 학생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 인지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을 일부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이 78%

로 이른다. 중학생이 84%, 고등학생은 71%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정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6%로 2016년 조사의 15%보다 상당히 낮아졌다.

또한, 규칙을 모르는 이유로 학생 대부분은 설명이 모호하거나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70%정도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문답식 또는 사례 중심 설명이 필요하다.

- 학생생활규정 필요성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는 답변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85%, 87%)

즉,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며 해당 규정을 지켜야한다고 답하고 있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의견 반영

규정을 만들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 답변은 56%이며, 중학생 63%, 고등학생 49%로 나왔다. 이 수치는 2016년 형식적 절차를 포함하여 학생의견을 묻지않는다는 비율 35% 비교하면, 더 낮아진 수치로 볼 수 있다.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해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의 삶에 연관된 규정에서의 참여가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의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또한 참여방식에서도 설문조사(25%)와 같은 수동적 방식보다는 의견 개진(20%)이나 온라인 투표/토의(5%) 등의 방식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 (2) 학교 차별 환경

- 차별환경

학교에서의 차별에 대해, 학생들은 75%~80%로 긍정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성적에 따른 차별은 고등학생에서 71%에 그쳐, 다른 요소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는 2016년 조사에서 다른 요소와 달리 성적에 따른 차별경험이 30%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2016년 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2023년 현재에서도 성정이 학교내 차별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용모/복장 제한

학생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용모/복장, 그리고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것이었다.

제한 규정이 안전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모/복장등에서의 제한의 근거가 명확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두발 모양에 대한 제한

두발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는 39%, 중학생 25%, 고등학생 55%로 중학생에 제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6년 두발 제한이 있다는 53%도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다행이 두발 길이 제한은 5%로 상당히 줄었으며, 탈색이나 과도한 퍼머 등을 제한하는 비율이 50%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제한이 중학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규정 점검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63%로, 제한이 있다는 답변 61%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 화장/장신구 제한

화장 및 장신구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답변은 48%, 중학생 29%, 고등학생 70%로 중학생에 대한 제한이 2배 이상이다.

또한, 링 귀고리나 피어싱, 색조화장 등을 특정하여 규제하는 경우는 각각 33%, 25%로 중복답변한 경우를 고려하면, 학생중 40% 정도가 이러한 장신구/화장만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규정 점검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57%이며, 색조/피어싱 등을 규제하는 경우는 8%라는 수치와 비교하면, 규정에 비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제한은 약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초화장이나 단순한 형태의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 (4) 교내외 활동

- 등교시 교문지도

등교시 교문지도를 한다는 비율이 79%로 매우 높은데, 학생이 교문지도를 하는 경우도 6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학생지도활동 구성은 27%이며, 고등학교에서도 36% 정도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답변과의 차이가 크다. 이 경우 규정과 설문결과간의 차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 다른 반 출입 제한

규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반 출입을 제한한다는 답변이 6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82%에 이른다.

규정이 없음에도, 안전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이유로 담임 교사 등이 별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온라인 단체방의 제한이다. 제한한다는 답변은 31%이며 중학생의 경우 45%, 고등학생의 경우 16%로 격차가 크다.

- 정치/ 정당 활동 제한

정치/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모른다는 답변 73%, 제한이 없다는 답변이 15% 이다.

이는 규정에서도 비슷한데, 대부분의 학교 규정에서 이에 대한 조항이 없고, 있는 경우는 22%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휴대폰

• 휴대폰 사용

학교내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67% (중학생 75%, 고등학생 59%)로 규정에서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휴대폰 사용 - 가족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에 관련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31%로 상당하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36%, 고등학생은 2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32%, 남학생이 29%로 나타났다.

• 휴대폰 사용 - 학습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76%이며, 수업등에서 학습환경을 위해 휴대폰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이 38%로 답했다.

### (6) 자치참여활동

• 학생회장 출마 조건

전교학생회장이나 학급 학생회장 출마에 교사의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학생이 67% 정도가 되었다. 중학생 65%, 고등학생 70%로 답변했다.

이는 규정에서 파악한 학생만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50%로 그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43%로 더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 학생 의견 반영

학생회 의경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한다는 비율이 6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학생회 개최 빈도

학생 대부분이 학생회 회의가 학기당 1회 정도에 그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일부만이 월 1회 정도 이상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9%).

학생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넘어 학생회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이나 사례와 계기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 (7) 상벌점제 등

• 상벌점제 유무

상벌점제가 없다는 답변이 55%이며, 중학생 51%, 고등학생 59%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에서 상벌점제를 두고 있다는 답변 29%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없더라도, 교사가 개별적으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해석할 수 있다.

• 반성문/서약서 제출 요구

반성문이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는다는 답변은 55%로 상당하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 규정에서 해당 조항이 없다는 점과 차이를 보여준다.

앞서 상벌점제와 이러한 제한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관련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3) 기타 사항

#### (1) 2017년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변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에 권고를 하였다. 이후 학교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규정의 제.개정에서의 학생참여를 위한 법적 개선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시행령 제9조 4항 및 제59조의4에 대한 개정 권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법적 조치는 없었다.

- 반면, 규정의 기본원칙 및 이를 반영한 학교규칙운영 매뉴얼의 개정 및 배포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되어 진행되었다.

- 또한 상당수의 학교에서 제공된 매뉴얼에 따른 예시 등을 활용하여, 규정을 개선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의 선도규정의 명칭이나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시단위 교육청 및 일부 지역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났다.

### (2) 정치/정단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정치/정당법의 개정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에 대한 사례를 정리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적극적 정치/정당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 등의 활동도 포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 (3)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정책 사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의 규정 개선을 위해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1) 학교자체점검표 작성을 통한 자체 점검, (2) 희망학교 대

상 교육청컨설팅 지원, (3) 특정 사안/주제 중심의 특별 컨설칭 진행 (사회 이슈 및 권리구제 연계) 라는 세 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생활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우선 인지하게 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보다 부담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수렴과정이 요구되는 규정의 개정은, 이에 대한 업무 부담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득 과정이 어려워 개정이 유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 (4) 휴대폰 사용 – 디지털 영역에서의 인권

2023년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들의 평일 휴대폰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주요 사용애서 SNS와 같은 관계형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휴대폰를 포함한 ICT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공간이 중요한 공간으로 이어지며, 디지털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험과 성장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이에 맞추어 디지털공간에서의 인권보호, 가짜뉴스등에 대한 대처, 개인정보 보호등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2017년 [디지털 시민권]을 제시하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가이드라인, 교육자용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1)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닌 문화나 통합적 정보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2)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3)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권을 구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토 론 문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조사관)

**박지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지권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토론문

##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현황 및 사례 -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조사관)

##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적용

○ 학생생활규정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 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9호[1])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하고 있음

○ 학생생활규정의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권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생활평점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5조 4항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제·개정하며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징계는 별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있음

1)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 (중등 발췌)**

**제12조(용모 및 복장)** ①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③ 학생은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 소지·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1. 고사 기간 동안 소지 제한
2. 수업 시간 중 사용 제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소지 ·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 소지·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장난감,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 이어폰,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나.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라.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4. 그 밖에 소지 · 사용이 금지된 물품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라. 개인 이동 수단(PM),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교내 운행 차량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제19조(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임신·출산·이성교제를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27조(징계 원칙)**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학생의 징계는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의)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 (현황 1) 공론화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2019년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77.3%, 중학생의 79.7%, 고등학생의 70.0%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전체 중·고등학교 705교 중 552교(78.3%)가 `18-`19 학교 공론화 추진

○ (교복)공론화 추진 결과 98.3%의 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교복 선택** (교복 자율화 1.7%)

※ 공론화 결과 교복 완전 자율화 보다는 교복을 편하고, 개성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착용하는 방향, 간절기 또는 혹한기에도 교복을 편하고 착용하는 방향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짐

○ (두발) 공론화 추진 학교 중 두발길이 93.9%, 염색 63.1%, 파마 72.3% 자유화로 사실상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가 이루어짐

| 구분 | 학생생활규정에 다음 사항이 허용된 학교 | | | |
|---|---|---|---|---|
| | 두발 길이 | 염색 | 파마 | 두발길이, 염색, 파마 모두 허용 |
| **중학교** | 368교/385교 (95.6%) | 266교/385교 (69.1%) | 299교/385교 (77.7%) | 261교/385교 (67.8%) |
| **고등학교** | 294교/320교 (91.9%) | 179교/320교 (55.9%) | 211교/320교 (65.9%) | 175교/320교 (54.7%) |
| **합계** | **662교/705교 (93.9%)** | **445/705교 (63.1%)** | **510/705교 (72.3%)** | **436/705교 (61.8%)** |

○ 학교 공론화 추진 시 학생의견 반영 비율 확대

※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53.1%(293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구분 | | 학생 의견 반영 비율 | | | |
|---|---|---|---|---|---|
| | | 50% 이상 | 학생:학부모:교사= 1:1:1 (33.3%) | 기타 | 소계 |
| 중학교 | 공립 | 136 | 49 | 30 | 215 |
| | 사립 | 46 | 34 | 9 | 89 |
| | 국립 | 0 | 1 | 1 | 2 |
| | 소계 | 182(59.5%) | 84 | 40 | 306 |
| 고등학교 | 공립 | 48 | 32 | 10 | 90 |
| | 사립 | 63 | 79 | 12 | 154 |
| | 국립 | 0 | 1 | 1 | 2 |
| | 소계 | 111(45.1%) | 112 | 23 | 246 |
| 합계 | | 293(53.1%) | 196(35.5%) | 63(11.4%) | 552 |

○ (과제) 공론화를 통한 참여형 정책 결정 지속적 확대

- 교육현장의 유사 논란·쟁점 사안에 숙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 지속 운영
-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권 보장 및 확대

## □ (현황 2)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 학생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침해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진행

- 2021년 ~ 2022년 : 113개교 컨설팅

| 대상 | 매우만족 | 만족 | 불만 | 매우불만 | 미응답 |
|---|---|---|---|---|---|
| 113개교 | 90개교 | 13개교 | 0 | 0 | 10개교 |
| 만족율 | 80% | 11% | 0% | 0% | 9% |

## □ (현황3) 권리구제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 학생생활규정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최근 5년)

| 구분 | 연도별 건수 | | | | | | 합계 |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인권상담 | 134 | 68 | 49 | 67 | 71 | 38 | 427 |
| 권리구제 | 23 | 13 | 34 | 22 | 38 | 16 | 146 |
| 합계 | 157 | 81 | 83 | 89 | 109 | 54 | 573 |

-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권리구제의 구체적인 신청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은 427건, 권리구제 신청은 146건 정도로 보임

## □ (제언) 학교규칙의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학교규칙을 개선하는 것은 학교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

○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칙 제정 : 학생들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기 쉬운 언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각 규칙의 이유와 책임이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는 의견임

○ 학생들의 의견 수렴 :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도입 필요

○ 교육적인 접근 : 규칙을 제한사항 중심으로 접근하기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규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학교 내부 및 외부의 변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있어야 함

**참 조** **학생 생활규정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 ·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 토론문

## - 현행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 -

**박지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몇몇 분들은 학생인권조례도 있고, 체벌도 많이 사라졌는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이하 학칙)은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았냐며 반문할지 모르겠다. 물론 학교 현장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통제적 규칙과 생활지도를 고수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존엄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강하지 않아 발제문(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의 학교 요소별 비교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항목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학생인권보장과 차별금지 명시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전국에서 6개 지역뿐이며 서울과 충남은 그마저도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학교규칙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학교의 공식 문서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화된 폭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학생을 통제하는 데 열중하는 학교규칙

발제문(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① 규정 체계 ② 자치활동 ③ 교내활동 ④ 교외활동 ⑤ 복장/용모 ⑥ 휴대전화 등 ⑦ 징계 절차 ⑧ 상벌점제로 점검항목을 분류하고 있다. 그 중 학생인권운동에서 가장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 복장/용모,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칙의 문제점을 주로 짚고자 한다.

첫째, 복장/용의에 대해 말하자면 발제문(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신분에 맞는, 과도한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교풍, 사회 통념상, 상식적과 같은 알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모호한 표현으로 용의복장을 제한하는 학칙이 있는 학교가 59%로 상당이 높게 나타났다. 두발에 관련된 제한을 둔 학교는 63%, 화장/장신구 제한이 있다는 학생 답변은 52%였는데, 등교시 교문지도를 한다는 학생 답변이 79%인 점으로 보아 해당 규제가 단지 문서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의 전신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2022. 3. 4. 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우리 학교가 ‘악덕학교’?!!”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였을 때에도 매우 다양하고 세밀한 ‘나노 규제’ 사례가 확인되었다. 당시 제보 당사자들은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게 한다” 등 머리의 길이, ‘특이한 형태(스크래치 등), 파마, 염색, 무스’ 등의 두발, 악세서리, ‘치마를 올려 입는 것’, 신발의 종류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지나친 통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복 위 덧옷 착용은 금지한다”, “동복 : 11월-3월 / 춘추복 : 4월-5월, 9월-10월, 하복 : 6월-8월” 등과 같이 겉옷 착용을 제한하거나 동복, 하복 등의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칙도 있다. 학생 각자가 느끼는 추위와 더위의 정도, 건강상태, 개성 등은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높고 방역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았는데, 2020년에 ‘코로나19 관련 학생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수집된 501명의 중고등학생 제보에 따르면 “면역력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외투 착용 후 등교를 절대적으로 막는다”, “(감염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두발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용실에 가야만 했다.”는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 기존에 학생들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외모 통제를 더 중시해 온 학교의 모습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라 해서 어디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학생자치 및 참여활동에서는 발제문(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을 살펴보면 정치활동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는 각각 22%,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칙은 평소에는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학교에서 환영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언제든지 처벌하거나 제재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국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결국 위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고, 학생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이다. 학생의 시민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인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항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구성에 학생은 빠져 있기에 학교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고,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권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고민도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발제문(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은 “학교 내 반입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57%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규정 위반 시 휴대전화 압수를 명시한 학교도 55%에 달해 2023년에도 여전히 학교 내 휴대전화 규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통신과 정보검색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의 사용은 통신의 자유,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실현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사적 기록물로도 기능하는 휴대전화를 제출·압수한다는 점은 자유권의 침해인 동시에 학교에서 통신 및 정보검색을 하는데에도 큰 제약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금지하는 관련 학칙들은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사생활의 권리, 통신의 자유,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학칙들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22. 3. 29.자

21진정030260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20. 9. 22.자 20진정0041600 결정 등 참조)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최종견해에서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유지되고 있다.

## 교육의 목적에도 반(反)하는 학교규칙

앞서 소개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2022년에 학생인권침해사례를 수집 당시 전국 13개 시·도의 38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사례 53건이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① 두발·복장 규제 ② 휴대전화 소지 금지 ③ 대외활동·정치활동 제한 ④ 이성교제 규제 ⑤ 체벌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당시 제보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 학칙 내용 | 제보 사례(53건 중) |
|---|---|
| 두발·용의복장규제 | 32개 |
| 휴대전화 소지 금지 | 35개 |
| 대외활동·정치활동 규제 | 13개 |
| 이성 교제 제한 | 15개 |
| 체벌 | 2개<br>(학칙과 별개로 제보된 학교는 8개) |

당시 수집된 사례 중 발제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용의복장규제, 휴대전화 소지 금지, 대외활동·정치활동 규제 사례는 생략하고, 추가로 이성 교제 제한, 체벌에 관한 수집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수 학교에 "이성 간의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신체 접촉을 삼간다" 등의 학칙이 존재했고, 이는 직접적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불건전한 이성 교제", "풍기문란" 등을 중징계 대상으로 징계 기준에 명시한 학교들도 있

었다. 심지어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 (손잡기, 팔짱 끼기, 머리 쓰다듬기, 허리감기 등)”이 몇 회 이상 적발되면 봉사 등으로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결정례에서 “이성 간의 교제 장소와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현존하는 성범죄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법률이 아닌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그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성 교제 금지 규칙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이성 교제 금지 규칙은 바람직하고 성평등한 관계를 맺도록 교육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안을 금욕적·통제적·강압적 방식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통제와 금지만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연 어떤 평등한 관계 맺기를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많은 사람이 체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체벌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개 중 8개 학교에서 체벌 사례가 제보되었다. 대전의 한 학교는 “큰절하기(30회 이상),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손들고 있기”를 훈육을 위한 ‘특별과제’라고 학칙에 명시하여, 반복적 지속적 동작과 자세를 통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형태의 체벌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3~4시간 이상 걸리는 길을 걷는 것을 벌로 부과하는 사실상의 체벌이 학칙에 존재하는 예도 있었다. 학칙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최근 1~2년 이내에 ‘회초리로 손이나 머리를 때린다’, ‘지각하면 오리걸음을 시킨다’라는 등의 체벌을 경험했다는 제보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2023년 발간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기록자료집에 따르면 체벌경험은 다양한 연령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체벌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지만 더 나아가 체벌을 통해 체득된 둔감함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학생의 학생에 대한 폭력, 더 나아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학생들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는 동시에 기준 밖의 존재들은 '맞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한다. 사회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이 겪는 폭력에 외면하도록 하는 교육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차별의식을 남긴다.

제보 수집 당시 대구 지역의 한 학생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몸은 나의 몸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닐 권리는 내게 있다는 명료한 사실 앞에 어떤 규제가 타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의 질문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칙에 학생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모호한 표현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학칙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2022. 12. 27. 자로 일부 개정되어 2023. 06. 28. 자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생활지도법')이나 2023. 09. 01 자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생활지도의 판단 기준으로 학칙을 제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학생인권조례가 없거나 학칙 등으로 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교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에서 활동하는 교사 조영선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소지품 분리 보관'이 '압수수색 행위'와 다름없다며 "경찰조차도 이러한 행위는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물리적 제지는 물리적 폭력의 빌미가 됩니다."라며 현재 얘기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가 교사에게 과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교사 역시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학칙 개정과 모니터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일이 학칙을 개선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발제문(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항목들에서 공통적으로 학칙에서 정한 내용과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한 생활지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색조/피어싱 규제의 경우 규정은 8%, 설문조사에서는 30% 내외였으며, 상벌점제의 경우엔 규정에서는 29%의 학교만이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벌점제가 없다는 답변은 55%에 그쳤고, 등교 시 학생이 교문 지도를 하는 경우도 규정은 27%, 설문조사에서는 69%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다른 반 출입 제한이나 반성문/서약서 제출 요구 항목의 경우 둘 다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음에도 각각 68%, 55%로 나타났다. 학칙만으로는 학생인권을 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인권침해적 생활지도가 관행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학칙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생활지도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학생들은 학생인권침해 신고하고 인정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에 상관없이 법령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생활지도를 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과 교사의 인권감수성에 기대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학생인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동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에 학칙과 같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합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속되는 권고 및 아동권리협약상 학교의 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한 학칙과 완전히 같은 내용의 학칙조차도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랜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가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왔다. 학생인권 침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권고를 끌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론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변화의 힘은 생각할 자유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나온다. 이처럼 더 많이 자유로울수록 더 많이 평등해질 수 있고 더 많이 평등해질수록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닌, 주인으로서 대접이 더 필요하다. 청소년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교는 자유롭게 입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학교일 것이다.

# 토론문

## - 2023년 전국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을 중심에 놓고 보는 의견 -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 '21년 조사'는 "2021년 대전학생생활규정전수조사 보고"의 약칭이다. 당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에서는 2021년 12월 8일, 150개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평가해 발표했다. 발제문에는 지역별 통계가 전부 공표되지는 않아서 21년 대전 자체의 조사와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다.

## 1. 생활규정 내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조항

### ■ "학생활규정의 목적이나 총칙에서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 비교

- 표현만 다를 뿐 21년 조사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원칙조항이 있는가"라 물었다.

- 21년 조사에서는 150개 중고등학교 전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고 이번 전국 조사에서는 중학교 여덟 군데, 고등학교 6군데에 불과하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 21년 조사에서는 68.67%가 '아니오'라고 답변했다면, 23년 조사는 93%가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대전이 특별히 인권이나 '기본권보장조항이 후퇴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여전히 총칙에서 권리보장 조항을 집어넣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는 추세를 보면 되겠다.

- 대구, 울산, 인천, 제주, 부산 같이 대부분 학생인권조례가 없거나 기능하지 않는 지역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 **“기타 성별/임신·출산, 학생 간 교제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은 거의 없다.”**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가운데 실제로 차별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항을 만들 것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 2. 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

| | 23년 조사 | 21년 조사 |
|---|---|---|
| 학생참여 규정 | 81% | 45.33% |
| 학생의결권 1/3 이상 보장 | 62% | 20.67% |
| 학생 의견 모으는 방법 규정 | 83% | 45.3% |

- 이상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23년 조사에서 대전 데이터가 발제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발제문 ‘학생 참여 규정’ 평가에서 대전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과 21년 조사 결과로 보면 추세를 알 수 있다.

## 3. 자치/참여 활동

■ **학생회 출마 자격**

- 각종 자격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가 〈23년 조사 결과 평균 36.30% vs 21년 조사 결과 59.3%〉인 것을 보더라도 대전지역의 대체적인 추세는 학생자치활동에 제한이 타 시도에 비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활동이 있다.**

23년 조사에서 해당 규정이 27%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21년 조사에서는 78%에 이른다. 대전은 이 부분(학생선도부, 바른생활부 도는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4. 정치/사회/교외 활동

- 23년 조사에서 학생회 임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22%), 사회단체 가입 제한이나 승인(36%)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건대, 21년 조사에서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일괄적으로 제안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이를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55.66%가 그렇다 라고 답변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 5. 용모/복장

■ **모호한 표현**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풍'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화려한' '고가' '비치는' 등이 표현 23년 조사 59% vs 21년 조사 80.66%

■ **머리 파마나 염색에 대한 제한이 있다.**

23년 조사에서 제한 두는 학교가 파마 염색 등에 63%가 제한을 두고 있고 대전 등은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21년 조사에서 머리에 대한 제한이 대전은 86.66%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면, 대전은 여전히 전국평균을 넘은 머리모양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장신구 및 화장에 대한 제한이 있다.

23년 조사 각종 장신구 화장 문신 등에 대한 규제 합계가 63%에 이른다. 21년 대전 조사에서 '화장 등에 대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제한하는 규정이나 화장 액세서리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의 합계가 80%가 넘었다는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여전히 자질구레하게 가짓수가 많은 규제가 살아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가 2023년 8월이 발표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광범위한 머리모양 복장에 대한 규제를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해 생활지도 내용으로 다시 끌어오는 반시대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호한 내용을 학생 지도사항에 넣고(고시 5조), 용모 및 복장을 학칙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광범하게 열려있음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의적인 머리모양과 복장 등에 대한 규제는 구시대적 유물로 학생생활규정 어디에도 통제규정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를 빌미로 단속규정을 가동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더 나가서는 학습권까지 배제하는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기타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기타 학생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6. 사전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 현재 개별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이 소지품 검사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건 간에 교육부가 2023년 8월이 발표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의심만으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도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가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학교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학교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물건 압수 등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귀고리와 화장품 따위가 '교내질서 유지 저해 소지' '학칙에 금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물품'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등에 걸려 수색과 압수의 대상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

제10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7. 휴대전화 제한

23년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학교 내 반입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규정을 가진 학교 57%로 상당이 많다. 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의 학교는 70% 이상이 일괄 금지 수거 규정이 있다.

교육부가 2023년 8월이 발표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심되는 경우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훈육의 방법으로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할 수 있다(11조)

이를 기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려 하면 교사 학생 간에 휴대전화기 소지에 대한 이견 등을 가지고 잦은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일방적인 학칙 규정 → 고시에 따른 일방적인 학교나 교사의 조치 → 교사 학생 간 충돌」 이와 같은 주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 현장은 더 혼란하고 교사 학생 모두에게 힘든 공간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치력+휴대전화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이 앞서지 않고 모든 걸 고시와 학칙으로 정하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공상이다.

## 8. 징계 절차

### ■ 미인정 결석 퇴학 규정

### ■ 흡연 음주 등의 누적 퇴학 규정

이들 규정이 각각 46%, 30%의 학교들에 존재한다는 것은, 학교가 교육하기를 포기하고 학생들을 너무나 쉽게 극단적으로 학교에서 배제하기 쉬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문제 행동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없이 손쉬운 학생 배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학칙에서 보게 된다.

## 9. 상벌점제

### ■ 상벌점제

23년 조사서는 규정 두고 있는 학교가 29%로 상당이 줄어들었고, 지역으로는 대전, 경북, 대구 등이 상당이 높게 나타났다.  21년조사를 보면 대전은 150개 중고등학교 중에 상벌점제 규정이 있는 하교 86.66%에 이르렀다. 2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다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0. 학교 효소별 분석 정리

대전은 시/교육청 간의 차이에 더해 나쁜 걸로는 전국순위권을 다투고 있다.

그중에도 학교 자치의 기본인 학생 자치활동 영역과 자율적인 결정권에 대한 연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가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생활 규정은, 단연 전국 꼴찌를 못 면하고 있다. 23년 조사 결과에서 우리 지역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가 아래의 부분이다.

| 긍정비율(%) | 학생인권보장 명시 | 학생참여 1/3이상 보장 |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없음 | 머리 제한 없음 | 장신구/화장 제안 없음 |
|---|---|---|---|---|---|
| 경상북도 | 52 | 16 | 55 | 23 | 14 |
| 대구 | 23 | 64 | 45 | 5 | 9 |
| **대전** | **7(전국꼴찌)** | **36(뒤에서 3등)** | **23(뒤에서 2등)** | **7(뒤에서 2등)** | **7(뒤에서 2등)** |
| 울산 | 18 | 18 | 29 | 18 | 46 |
| 제주 | 29 | 57 | 17 | 14 | 0 |
| 기타 | 69 | 68 | 59 | 40 | 48 |

* 총평

- 학생생활규정이 보여준 단속적 억압적인 면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대전의 경우처럼 속도가 더딘 광역 단위가 있다. 같은 광역교육청 소속이라도 개별학교 차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학생인권문제에 관한 한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지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과제가 있다.

- 생활규정은 단순히 지킬 것을 강제하는 규범에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학생들의 기본권리를 확인해주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는데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 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자력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조항들이다. 조사를 통해 확인 통계를 봐도 그렇고, 실제 학생들이 설문에 답한 내용을 보아도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이 학생자치에 관한 한 아직도 코스프레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 발제문서도 지적한 것처럼, 규정과 현실에서 차이가 나는 사례로 들은 “교문생활지도’에 관해서는, 그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단속규정을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교문 지도'라면 전면 폐지가 맞고, 학생의 안전과 행복한 등교 이벤트라면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머리 복장에 대한 구시대적인 단속은 우리 시대로 끝나야 한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것이라면 모를까 신체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민주국가에서 남아 있는 단속규정은 부끄러울 뿐이다.

# 토론문

## -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발제'에 따른 토론문 -

**지권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학생인권의 바로 미터는 학교생활 그 자체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덕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아동인권에 대한 학교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보고는 학생인권에 무척 의미있는 접근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학교현장에 있는 저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정보로 다가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절대적으로 동감과 지지를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토론1] 생활규정내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조항

- 학교규칙에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 제시 답변이 중고등 평균 64%이다. 이는 2016년 검사 당시 22%에 비해 3배 가량 상승된 결과이다. 하지만 아직도 36%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고, 일부 시도의 경우 10 - 30%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은 학교규칙이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생활규범 정도로 인식하는 결과로 기인되었다 생각된다. 이에 학생인권 측면에서 학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써 학교규칙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인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학교규칙의 법적 근거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분야·방법 및 체벌금지 명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학칙
학교 규칙(학칙)
고시에서 위임한 구체사항 등
학급 규칙
학급 규칙
학급별 세부내용 규정

■ 학교규칙의 근거가 되는 세부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2023.9.27.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 토론자의 변

학생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대우하려는 관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UN 아동권리협약[1989]의 명문화**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 [토론2] 규정 제·개정시 학생참여

■ 규정 제·개정시 81%의 학교에서 학생참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생의 의결권을 62%가 보장하고 있다.

■ 학교에서 학생 참여 방법으로 대부분 설문조사 등 수동적 방법으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대신하고 있다.

■ 토론자의 변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을 때, 학교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해 열린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나아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 절 차 | 추진내용 | 세부 추진내용 |
|---|---|---|
| 1 학칙 제 · 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칙 제 · 개정위원회 구성 |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br>▶ 학칙 제 · 개정 제반 사항 추진 |
| | 제정 · 개정안 발의 |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 |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 학급회의 및 어린이회의<br>▶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 | 1차 시안 마련 |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 | 토론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br>▶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 | 최종 시안 마련 |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br>▶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
| 3 학칙 공포 · 시행 | 학교장 결재 | ▶ 학교장 학칙 승인 |
| |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 학칙 공포<br>▶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 |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br>▶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
| | 적용 및 환류 |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br>▶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생활지도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 규칙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제공하고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서명 운동을 운영할 수 있다.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학생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조치 이행 동의서 등을 책임 규약에 포함할 수 있음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서명 운동이란?〉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이란 학교의 교육 3주체(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 성격의 활동임
- 책임계약 서명운동은 학칙 및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과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령과 고시에서 부여받은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책임규약 서명운동의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등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구분 | 세부 내용(예시) |
|---|---|
| 운영 단위 | •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등 |
| 운영 시기 | • 학년 초, 학기 초, 특정 교육주간 등 |
| 운영 방법 |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캠페인, 결과 공유회 등 |

## [토론3] 자치/참여 활동 그리고 정치 사회/ 교회 활동

■ 학생들의 학생회 출마의 경우 학생들의 추천 외에 다른 부가 조건 예를 들어, 교사 추천, 징계 이력, 성적 기준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평균 50%나 된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 개최 빈도가 학기당 1회 정도이며, 일부 약 9%만이 월 1회 이상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정치·사회 활동은 교외 활동이면서도,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양성이라는 목적에 중요하게 연계되어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할 교육활동이다. 특히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만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만16세 이상 학생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보장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포함한 대외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교 22% 정도는 제한을 두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토론자의 변

**아동의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중 으뜸은 참여!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

1976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모여 만든 교육지침이다.
정치교육의 최소조건을 정한 내용으로, 처음에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의 수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교육지침에서는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첫째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 교육을 금지하며,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셋째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토론4] 용모/복장

■ 머리 퍼머나 염색에 대한 제한, 두발에 관련된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가 63%다. 또한, 장신구 및 화장에 대한 제한, 칼라렌즈, 문신 규제하는 경우는 57% 정도이다.

■ 이는 2016년 93% 제한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경향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최고의 핵심 갈등 사항이다.

■ 토론자의 변

**학생다움: 이 모호함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담론이 필요하다.**

학생다움, 참으로 모호한 표현이다.
학생 신분에 맞는, 과도한,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등과 같은 기준이 모호한,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진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 [토론5] 휴대폰 제한

■ 중고생 평일 휴대폰 사용 시간 3시간 이상, 이는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인 것이다.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이 무려 76%나 된다.

■ 휴대폰의 교내 반입 금지나 등교시 일괄 수거하는 규정의 경우 57%, 규정 위반 시 휴대폰 압수하는 규정이 55% 정도로 학교에서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에는 용모와 두발이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휴대폰이 또다른 갈등의 핵심이다.

■ 토론자의 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 폰은 전화기 그 이상의 존재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AI 시대 : 디지털 인재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디지털 정보파악 능력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47.4%에 크게 떨어지는 25.6%이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경우도 부족한 이유이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이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닌 문화나 통합적 정보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권을 구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교육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2014.
박근덕, 우리나라 아동인권에 대한 학교실태, 2023.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학생·교원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 2022,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육부,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교육부,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2023.
김나영, 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계발, 교육정책포럼, 20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1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쟁점과 대안

세션 4

# 학교폭력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발제

#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통계를 통해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늘어나는 수치도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현장의 대응을 어렵게 하면서 연일 언론의 주목받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은 아동·청소년이 가장 처음 경험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는 다른 특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보완되며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실제 올 한해 〈경남 지역 고교 기숙사 폭력[1]〉 〈대구판 중학생 더글로리 사건[2]〉 〈인천 문신 피해 사건[3]〉 〈태안 여중생 집단폭행 영상 유포 사건[4]〉 〈천안 집단 폭행[5]〉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또 〈충남 여중생 극단적 선택[6]〉 〈고양시 초등생 추락사[7]〉 〈12년 학폭 피해 폭로 유튜버 자살[8]〉 등 여러 건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아시아경제 2023.07.06. https://vo.la/vMeCt
2) 뉴스플러스 2023.03.19. https://vo.la/wyj8B
3) 엑스포츠 2023.06.03. https://zrr.kr/KYcC
4) SBS뉴스 2023.05.03. https://zrr.kr/UCOf
5) 연합뉴스 2023.10.31. https://url.kr/omajlr
6) MBN뉴스 2023.09.06. https://zrr.kr/fIos
7) 중앙신문 2023.06.23. https://zrr.kr/Qdb1
8) 한겨레 2023.10.10. https://zrr.kr/W4Jx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 및 경각심을 높여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 아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순신방지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학교폭력의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제도 개선방안이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 가. 최근 학교폭력 이슈

학교폭력 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몇 해 전 시작된 과거 학교폭력 폭로 현상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유명인(운동선수, 연예인, 고위직 공무원)을 넘어 일반인(유튜버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이미 성인이 되어 버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법적 처벌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성인으로 현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 이에 얼마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9)]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위중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다. 얼마 전 충남에서는 청소년 30여명이 가담한 집단폭력 사건 영상이 유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일명'MZ 조폭'이라고 불리는 10대 청소년 조폭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이버폭력은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생중계 한 사건, 피해학생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와 합성 유포한 사건,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SNS로 찾아내 또 다른

9) 의안번호 2124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신체폭력으로 이어진 사건, 피해학생의 무릎을 꿇리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현금 등을 갈취하는 장면을 SNS에 게시한 사건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익명성), 피해기록이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하며(확산성),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영원히 기록이 남기도 한다(영구성). 또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며(지속성), 댓글이나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저격당하기도 한다(개방성). 반대로 1:1 대화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거나(폐쇄성), 평소 알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대상 간 발생하기도 한다(관계성/무관계성). 이렇듯 사이버폭력은 복잡한 특성으로 초기에 부모나 교사가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제도의 한계로 이른바 맞학폭(쌍방신고)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가해학생으로부터 허위 신고 된 피해학생의 보호자는“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다. 2023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 동기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대다수 장난으로 했다는 응답에서 상대방의 시비나 억울함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불어 지능 및 정신의학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피·가해 학생으로 신고 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보호와 선도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사의 권한 부족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요소들이 문제 시되고 있다.

## 나.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10)]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양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매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율은 6.8%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이버폭력이 25.8%로 1위를 차지하였고, 언어폭력(19.9%), 괴롭힘(10.4%), 신체폭력(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피해학생 1명당 4

10) 2023 전국 학교폭력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2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 7,24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지 학교폭력 유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피해학생의 9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거의 모든 경우에 사이버폭력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49.9%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자해 충동 경험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38.8%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피해 극복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학생의 34.5%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1] 푸른나무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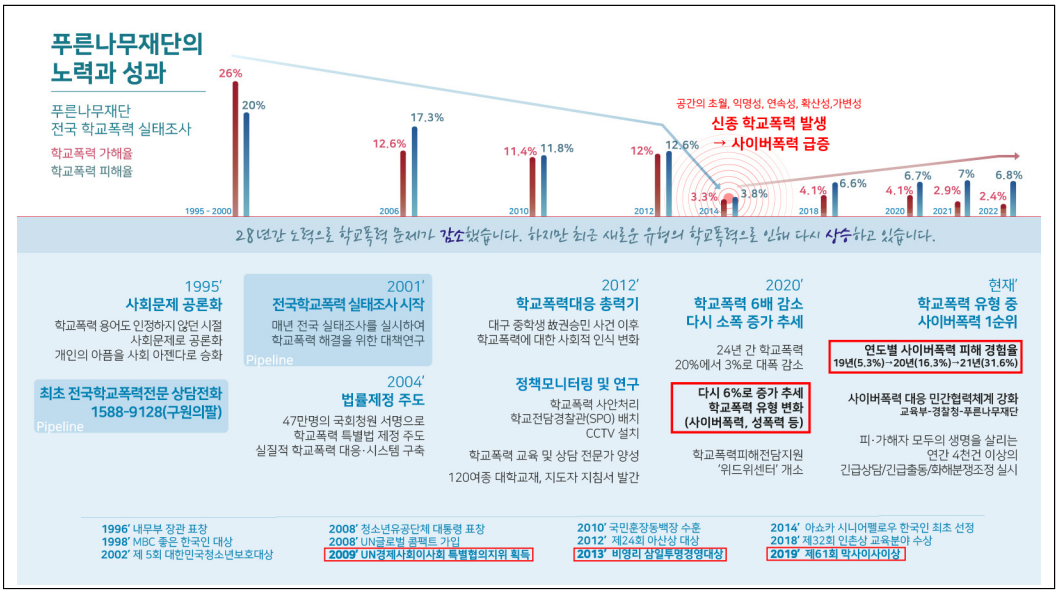


## 다.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대응력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대응력은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과 인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폭력의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으려면 재학 당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푸른나무재단의 사례를 보면 피해 이후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계회복, 보호 및 치료 등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이 제공된 경우 일상으로의 복귀가 원활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결국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대응력 회복과 이를 위한 교사의 권한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기피 대상이며, 실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서로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책임교사 혹은 담임교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기도 하면서 교사 또한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 인터뷰 사례에 따르면 '쌍방신고 학생 학부모가 밤에 술을 먹고 전화로 욕설을 하고 무기 같은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온 적이 있다.'고 호소한 교사가 있었다. 또 피·가해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공포심을 느꼈다.','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학대를 했다.'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때 교사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사실 교육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경험을 한 교사들의 상실감은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를 잃게 되는 것으로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해결이 어렵게 된다.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7월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이 이슈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2019년부터 이어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고양시의 경우 30대 초등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학교폭력 상담을 받던 중, 이유 없이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하고 흉기를 던져 교사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연이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30만이 넘는 교사가 집회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다.

## 3. 피해학생 및 교사 인권침해 사례(푸른나무재단 상담 사례 중심)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이 피해학생 및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초등학생 신체폭력 및 사이버폭력 사안**

- A(초5, 남, 피해)는 경계성 지능장애 학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B(초5, 남, 가해)와 C(초5, 남, 가해)는 장애를 이유로 A에게 지속적이고 가혹한 폭행들을 일삼아 옴.
- B와 C는 본인이 임의로 정한 횟수만큼 A를 때리고 목을 졸랐음.
- C는 SNS 메시지를 통해 A에게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당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른 학생에게 보내는 등의 사이버폭력도 있었음. C는 자신의 학교폭력 행위를 감추고자 SNS를 조작하기도 함.
- B는 자신의 잔반을 A의 식판에 쏟으며 같이 먹으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함.
- 지속적인 폭력으로 A는 자살 계획을 하기도 하였고 A의 보호자 또한 정신과에 다니고 있음.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11] 하지만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외모, 성적, 가정형편,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례1]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평등권[12]을 침해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고 도움을 청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존엄권과 자유권, 안전권 등이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11)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12)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례2] 중학생 사이버폭력 및 따돌림 사안**

- D(중3, 여, 피해)는 학기 초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함.
- 그러던 중 수학여행에서 E무리(중3, 여, 가해집단)는 D를 몰카범으로 몰고자 D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핸드폰을 훔쳐서 패턴을 풂.
- E무리는 D의 핸드폰에서 모든 문자, 사진, SNS 등 개인 정보를 열람함.
- 이후 E무리는 D의 핸드폰에서 본 사진을 흉내 내는 등 D를 놀리고 괴롭힘.
- 학교에 알렸으나, D가 보는 앞에서 E무리의 편을 들고 D에게 "너만 힘드냐.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아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음.
-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는 D는 생활기록부 상에도 불이익이 갈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
- D는 스트레스성 두통, 소화불량, 혈변 등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호소.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고유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며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13] [사례2]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경험한 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또다시 안전권을 위협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피해학생을 정서적으로 고립되게 하여 안전권 및 교육권[14], 평화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3) UN아동권리협약 제6조,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4)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례3] 초등학생 성추행 사안**

- F(초3, 남, 가해)가 G(초3, 남, 피해)의 성기를 잡아서 당기는 괴롭힘을 여러 번 반복함.
- 한 번은 G가 도망가자 F가 G를 쫓아가면서 때리고 괴롭힘.
- G는 수치심에 수개월간의 고민 끝에 학교폭력으로 F를 신고함.
- 그러나 F는 가해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성추행을 목격한 직접적인 증인 또한 없는 상황.
- F의 보호자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며, G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G가 F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함.
- F의 보호자는 G를 직접 찾아가 학교 앞 길거리에서 30분가량 "너 정직해라. 없는 얘기 그렇게 하면 너도 무사하지 않을 거다."라며 G를 협박함.
- 위 건으로 F의 보호자는 아동학대로 신고됨.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15] [사례3]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자유권과 평등권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안이다. 세계인권선언과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평등권은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16] 하지만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아동이라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으로 간주 되어 아동학대[17]로 다루어질 수 있다.

15)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3항.

16)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례4] 학부모 교권 침해 사안**

- H(초6, 여, 피·가해)는 I(초6, 여, 피·가해)와 서로 패드립과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이 있었음.
- I가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사안 조사가 이루어졌고, 학교장자체해결제로 서로 사과하며 마무리됨.
- 그러나 H측에서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H에게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강압적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H가 상처를 받고 등교를 거부한다고 주장함.
- H의 모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조사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며 학교에 찾아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언성이 높아짐. 결국 H의 모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수업준비 및 다른 업무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됨.
-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이 사안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H의 모를 교권 침해로 신고함.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하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례4]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가 심리적인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찾아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한 교권이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교사는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 보호 장치의 부재는 원만한 교육적 해결의 시도를 저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런 경우 교사의 교권과 피해학생의 인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례5] 중학생 교권 침해 사안**

- J(중2, 남)는 쉬는 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냈던 K(중2, 남)와 함께 장난을 치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K는 J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교사가 사안을 접수하고 양측에 사안에 대해 통보하는 과정에서 J의 부는 교사의 전화를 받자마자 분노하며,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는 안 하고 몸싸움이 발생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내가 깡패를 풀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모욕과 협박 그리고 폭언을 퍼부음.
- J의 부는 밤늦게 음주상태로 교사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부었으며,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 해당 교사는 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J의 부모를 교권침해로 신고하였음.

[사례5]는 학생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욕과 협박 그리고 폭언을 한 교권 침해 사례이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교원을 보호할 만한 학교의 권한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4.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사항

| 구분(조항) | 개정안(주요내용) |
|---|---|
| 제2조(정의) | - 사이버 따돌림의 용어가 '사이버폭력'으로 변경<br>- "사이버폭력"의 정의 구체화(제2조1의3) |
| 제6조<br>(기본계획의 수립 등) | - "교육부장관"의 역할 신설(제6조제3항)<br>- 국가가 학교폭력 대응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6조의2) |
| 제11조<br>(교육감의 임무) | - 교육감의 임무 강화<br>- 전담기구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11조제10항) |

| 구분(조항) | 개정안(주요내용) |
|---|---|
| | - 교육감이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조항 신설(제11조제13항)<br>-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보호를 위해 수업 시간 조정 및 법률서비스 제공, 책임면제 등에 대한 조항 신설(제11조의4) |
| 제13조의2<br>(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 자체해결 요건 변경(재산상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br>-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br>- 경미한 학교폭력이지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프로그램'을 먼저 권유할 수 있음을 신설(제13조의2제3항)<br>-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제13조의2제5항) |
| 제15조<br>(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책임 강화, 홍보를 위한 조항 개정 및 신설<br>(제15조제3항, 제6항 신설) |
| 제16조<br>(피해학생의 보호) | - 긴급보호에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추가<br>-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두어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16조의3)<br>-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16조의4) |
| 제17조<br>(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제2호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br>- 제2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부가할 수 있도록 강화<br>-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내려야 하는 조항 신설(제17조제4항)<br>- 긴급선도조치에 제7호(학급교체) 추가<br>- 긴급선도조치에 제1항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 조치 가능 신설(제17조제6항)<br>- 긴급선도조치 제6호의 경우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을 신설(제17조제7항)<br>- 가해학생 보호자의 책임 강화(제17조의제11항)<br>-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 구분(조항) | 개정안(주요내용) |
|---|---|
| 제17조의2<br>(행정심판) | - 피해학생에게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br>(제17조의2제3항)<br>- 피·가해학생에게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제17조의3)<br>-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제17조의4제1항)<br>- 가해학생의 집행정시 신청 사실 및 결과를 피해학생에게 통지한다는 조항 신설<br>(제17조의4제2항)<br>-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제17조의4제3항)<br>-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해야 하고, 기간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제17조의5) |
| 제19조<br>(학교의 장의 의무) |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현황 조사를 위한 학교의 장의 노력 신설<br>(제19조제4항) |

## 5.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방안

### 가. 피해학생의 일상회복 지원

푸른나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학교폭력 피해 후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학생이 77.9%로 나타났으며,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은 전년 26.8%보다 크게 상승하여 38.8%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피해는 긴 시간 트라우마로 남는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폭 미투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아울러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유투버가 최근 자살한 사건만 보아도 성인이 되어서도 씻기지 않은 고통으로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며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현장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04)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9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8개 시·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면서 피해전담지원관제도 등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제도를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모호했던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제2조 1의3). 또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제16조의 3) 제도를 신설했고,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의 조항(제16조의4)을 마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사안처리를 통한 피해학생보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다는 이유(가해학생 불특정, 학교 밖 청소년 등)로 특정 지역에서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제6조의2). 그러나 소수의 국가기관의 설치로 그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 국가 수준의 기관은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 집중 지원 및 피해지원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지역 단위 기관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중앙단위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 공공 및 민간 단위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학생 전문지원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행정·재정·제도적 지원하여 실제적으로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푸른나무재단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피해학생 전담 일시보호 시설인 '위드위센터'의 경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해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가해학생 조치(제17조)와 행정심판(제17조의2) 조항도 개정되었는데, 향후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된 제도가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나.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은 사안 발생 시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치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두 개의 과정 중 어떠한 방식으로 사안이 처리되더라도 결과 상관없이 피·가해 학생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푸른나무재단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처벌하고 싶다는 상담이 상당수 있다. 또 최근에는 경미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저학년의 경우 더 빈번한데, 예를 들어 함께 놀이하다가 의도치 않게 밀치게 된 것, 성향이 맞지 않아'놀기 싫다'고 말하는 것,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찬 공에 맞는 일 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기도 하는 것이다.

경미한 갈등 발생 시 적절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과정은 학교폭력 예방과 또 다른 갈등 상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처분 중심의 절차 진행은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지 못한 채, 불만족스러운 조치통보서를 받고 사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이끌기 위한 제도가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처벌적 접근보다 피해 학생 회복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 제13조의2항에 따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권유라는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불어 관계회복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과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에 교육공동체의 책임 인식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관계회복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양질의 예방교육을 위한 학급 단위 교육을 의무화 및 학교폭력 예방 강사 자격 규정 명시,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과 관련한 가이드 마련에 관해 시행령에 명시하는 등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한다.

##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지원

현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중 대응 및 사안 조사는 학교(전담기구)에서, 판단 및 조치는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단계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른 안내와 민원 처리 등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 결정 이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는 것도 학교에서 도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업무 과중 및 책임 부담, 민원 처리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량 및 의지에 따라서 사안 조사의 양과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제11조의 4[18]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시간 조정, 법률서비스 제공, 사안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은 교사의 안전권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예산 편성 부족 등 향후 해결할 과제가 많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세부 지침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최근 사안 처리 과정 중 사안 조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올 9월부터 사안처리지원단 제도가 도입되어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 시 지역별 편차 없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지속 제공 및 양질의 인력풀 확보가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확대 배치되어 지원하면 좋겠지만, 수사 기록 제공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인력의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안으로 현장경험이 많은 퇴직 경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 6. 마치며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존엄권, 자유권, 안전권, 평화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방관학생의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학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모든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문제라고 강조할 수 있다.

---

18) 제11조의4 신설 :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이에 전 사회가 힘을 모아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양상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방안 및 분쟁 해결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하며 해당 주무부처의 규모와 지원도 늘려야 한다.

푸른나무재단이 설립되던 1995년에만 해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이란 용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은 나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양상이 변화하고 고통받는 학생이 지속·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에 두어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회복과 치유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토 론 문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교육법률지원 변호사)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토론문

##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성 모색 -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교육법률지원 변호사)

## 1. 들어가며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내년 3. 1.부터 시행됩니다. 최선희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동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만든 일명 정순신방지법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거나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개정법률에 포함된 분리요청권,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로센터의 상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 2.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분리' 조치

### 가. '분리'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교육관계법령 중 어디에, 어떻게 '분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입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리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학교는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최대 7일의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번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을 보겠습니다.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교실 밖 분리의 경우 분리 장소와 기간에 대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되 분리 기간 동안 학습지원의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분리는 내년 3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내년 3. 1. 시행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개정〉**

제17조의4(집행정지)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 나. '분리' 조치 시행의 어려움

이렇듯 생활지도,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 다양한 학생갈등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은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거나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요. 더욱이 분리는 징계가 아니므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리 시 인력 및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분리를 법령과 지침에 맞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리의 이유, 기간, 방법, 학습지원 방법 등이 다른 상황에서 작은 실수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또 다시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이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리의 방법을 감안해볼 때 가해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불복으로 다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는 형태의 분리가 현장을 얼마나 어렵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 다.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분리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충분히 어렵습니다.

2021. 6.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분리 시행 이후 '맞' 학교폭력 신고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통계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은 제도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절차만 거쳐 무조건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형태여서는 안됩니다. 분리요청의 인용기준(ex. 학급교체 또는 전학조치를 받은 경우)을 명확히 세우고, 피해학생의 일시보호를 통한 분리나 교실 내의 분리 등을 분리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분리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제행동을 한 학생이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이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든 분리된 기간 동안 적극적인 학습 지원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학습을 지원할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거기에 보태어 다양한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분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 매뉴얼이 통합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3. 관리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가. 현행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를 살펴보면, 학생들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학기별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 및 학부모는 "상대학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장난이어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이

다"는 취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사소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심각성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외에도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야 하죠.

한편, 생활지도 고시를 살펴보면, 교원이 행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인성 및 대인관계'로 보고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아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폭력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곧 학교 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이자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쟁점과 내용에 대하여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의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 나.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별도로 관리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며 학교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이 커짐에 반하여, 2020. 3. 이후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능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사법화’로 학교가 사안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큰 분쟁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관리자 예방교육이 충실하게 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교육적 해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동학대(범죄)와 맞물려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하거나 생활지도하는 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이에 교사 역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삼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관리자 교육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보다 실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대부분 결합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자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통합교육 역시 단순나열식이 아닌 사례 형태로 실무와 가깝게 운영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 4.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운영

**〈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위학교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관계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명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설치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수원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문성을 지닌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안처리/ 피해회복/ 관계개선/ 법률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로센터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모두 운영됩니다. 기존의 학교폭력담당부서도 사안처리나 예방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어떤 차이점을 두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있는 인력, 지원단의 구성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사안처리/ 피해회복/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One-Stop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신속하게 학교와 관련학생 측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하여는 좋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전문성을 갖추되 교육적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되 끊임없는 관리(교육 포함)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5. 나가며

모두 아시겠지만, 법령과 제도만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묘안"에 대하여도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보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사법화는 가속화될 뿐입니다.

### 〈참고문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 9., 교육부)
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2023. 10., 변국희 외)

# 토론문

## -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관계회복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제도 -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 1. 들어가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학생의 피해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교폭력 제도와 절차는 보완, 재정비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정작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은 뒷전이 되어 본말이 전도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한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관계 회복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현행 학교폭력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적 문제

### 가. 사실관계 확인 편중 및 지나친 증거주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은 좋지만, 학교폭력 제도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사실관계 확인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피해학생의 진술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 내지는 피해학생을 취조하듯이 질문하는 사례, 이미 조사되어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반복적으로 질문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치우쳐 지나친 증거주의로 학교폭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 사안 조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증거 부족으로 인한 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해는 고스란히 피해학생이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 교육적 측면은 외면되고 가해학생 측의 보복성 맞신고, 증거 찾기 등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로까지 확산 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지나친 민원 발생,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로 누군가 이기고 진다는 일종의 경기처럼 여겨지다 보니 사소한 것도 예민해지고, 감정적 불만이 극에 달해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나.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 전락한 학교폭력 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 방법 중 하나이지 궁극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이른바 '학폭위 간다'가 능사인 것처럼 과잉대응하고 발표자께서 사례로 언급한 것처럼 또래 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실수까지도 어떠한 합의점은 배제한 채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상대방에게 징벌을 가하고 싶어 한다. 신고된 학생 측에서도 신고당했다는 점에 대한 분노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고집하기도 한다. 때로는 '너도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찾아내 맞신고로서 사건을 끌고 간다. 이처럼 심의위원회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피해 회복이나 학생 보호가 아닌 '억울하다', '상대방 부모가 괘씸하다'라고 감정적인 이유를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 제도가 감정의 해소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이 깊어져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지원청 모두를 힘들게 하고 학교폭력 업무 증가로 정작 집중해야 할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 집중하지 못한다. 단순히 당사자끼리 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 현장 전반의 피로감 증가와 다른 학교폭력 피해학생들까지 피해 입게 되는 것이다.

## 3. 관계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

### 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학교폭력 해결 방법

관계 회복적 해결이란 징계 목적의 징벌적 해결방법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이해·소통·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욕구와 사건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적 상태 등을 파악하고 소통 후, 가해학생이 사과와 피해학생의 피해에 공감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체감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는 회복적 정의라는 사법적 개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당사자 학생은 물론 양측 학부모, 선생님과 주변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의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물론 감정적 갈등에서 촉발되는 사소한 갈등의 해결에 관계회복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 나.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제도를 통한 관계회복적 해결 기대

현재 관계회복프로그램, 갈등조정, 학교장 자체해결 등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 관계회복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있어 부모님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24. 3. 1.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시행령에 근거하던 관계회복프로그램을 법 규정(동법 제13조의 2 제3항, 제5항)으로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또 각 시, 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관계회복,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입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및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인식과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정해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운용계획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도(동법 제15조 제3항, 제5항) 학부모들에게 각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토론문

## -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언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정순신 변호자 자녀 학폭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민감한 이슈이다. 그렇다 보니 유명인의 학교폭력 사안이 보도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크게 화젯거리가 된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해 비하면 응보적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학교폭력 정책으로 인해 실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해결 역량은 늘 제자리이다.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학교폭력은 증가하지만 정작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도 따라 증가해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문제해결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미 앞선 발제문에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다 생각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처벌적 접근보다 피해 학생 회복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학교폭력에 대한 응보적 엄벌주의 접근의 한계

응보적 엄벌주의의 문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둘 다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 학생의 34.5%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라고 밝힌 발제

문에 인용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엄벌주의는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한다.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으면 피해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해자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다 자기방어와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내려진 처벌을 수행해 내면 그만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끼어들면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은 더 멀어진다.[1]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고, 이것이 상급 학교 진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유사 사법 체계로 진행되다 보니,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하나라도 이 과정에 흠결이 있다면 바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을 돕고 가해 학생을 지도하다 괜스레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규정 위반에 휘말리느니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보다 엄밀하게 흠결 없이 진행시키는 데 힘을 쏟게 된다. 그러니 교사들이 사안 처리 과정의 엄밀함에 힘을 쏟을수록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거나 가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들일 힘은 점점 소진될 수밖에 없다.

##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치,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학교 내 갈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해 전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법적 다툼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학교 내 갈등 문제는 복합적인데 학교의 진단과 처방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분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학교는 교육공동체로서의 기능만 약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 내 갈등의 문제는 통합적이고, 한 학생이 보여주는 문제 행동 역시 통합적이다. 그러므로 통합적 문제에 대해 분절식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학교 내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없다. 학교폭

1) 월간 좋은교사(2023년 9월호),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P.3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력 및 학교 내 갈등에 대한 단위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며, 이 논의의 장으로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에서 피해 학생의 회복을 중심으로 두고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학교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 협조, 끊어진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 재건 방안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교사 전문가, 지역 사회 갈등 중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고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 관계 회복 프로그램 고지의 의무화와 학교 갈등 해결 역량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갈등 중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학교 내 갈등 문제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학교가 화해를 강제한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다. 또한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만으로도 담당교사는 업무 과부하 상태인데, 여기에 학교가 나서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역량은 차이가 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미비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관계 회복 지원단 활성화, 학교 밖 갈등 해결 전문기관의 확대 및 학교 연계 등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가 자신 있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을 만큼 교육적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오래 노력해 온 안양 관악초의 사례[2]를 살펴보자.

**〈표1〉 안양 관악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 순 | 안양관악초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
|---|---|
| 1 | **학생 지원** |
| | · 적극적인 학교폭력 조사 및 해결(학기 초·중·말, 연 5-6회)<br>· 갈등 발견 시 학교폭력전담교사 및 회복생활교육 실천가들의 적극적인 개입<br>· 비폭력 대화 및 회복적 서클을 통한 갈등 중재 교육(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수업 중) |
| 2 | **교사 지원** |
| | · 회복적 생활교육·비폭력 대화 활동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br>· 매월 교육과정나눔의 날 서클활동 및 비폭력 대화 실천 내용에 대한 나눔<br>·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교직원 문화 조성을 위해 늘 노력 |
| 3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 · 학기 초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주간 운영(연 2회 운영), 관련 자료 제공<br>· 그림책으로 실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자료를 재구성하여 학급 서클 자료 매월 제공 |
| 4 | **동아리 운영** |
| | · 인성교육 동아리 운영(필요시)<br>· 또래중재 동아리 운영 |
| 5 |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 | · 갈등의 문제를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br>· 본교 및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사안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달리 구성 |

안양 관악초는 학교폭력 조사의 경우 자체 조사를 포함하면 1년에 5~6회를 한다. 조기에 갈등을 발견해 학교폭력을 미리 방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하는 데에는 발견한 갈등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들을 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교사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2) 월간 좋은교사 9월호(2023년),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 공동체 통합을 지향하는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사례, PP. 29~3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 차원이 아닌 교육과정 차원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2〉 관계 회복 프로그램 예시를 보면, 진행자가 담임교사부터 학교장까지 다양하며, 학생의 갈등 상황에 맞게 회기도 1차시부터 7차시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학급-학년-학교로 이어지는 종적 체계와 담임교사, 인성부장, 수석교사, 교감, 학교장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전문가로 이어지는 횡적 체계가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양 관악초의 경우 다층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모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안양 관악초등학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예시**

| 회기 | 교육 내용 | 내용(예시) | 진행자 | 장소 |
|---|---|---|---|---|
| 1 | 회복적 대화모임 | · 회복적 성찰문 작성 및 나눔<br>·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생각해 보기<br>· 앞으로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 인성부장 및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전문가 | 상담실 |
| 2 | 그림책과 함께하는 독서치료 활동 | · 그림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누기 | 수석교사 | 수석실 |
| 3 | 교감 선생님 면담 | · 학생별 개별 면담, 학교 주변 관악산 산책 | 교감 | 상담실 및 관악산 |
| 4 | 교장 선생님 면담 | · 이 일을 겪으며 변화된 마음가짐, 배우게 된 것 나눔 | 교장 | 교장실 |
| 5 | 회복적 대화모임 | · 교육활동 소감문 작성, 동의된 약속 수정 및 확인 | 인성부장 | 상담실 |
| 6 | 성찰노트 작성 및 정기적인 약속 이행 점검 | · 동의된 약속 내용을 기반한 성찰노트 작성<br>· 동의된 약속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1개월 동안 매주 정기적 점검) | 담임교사 | 교실 |
| 7 | 상담교사 및 교육청 상담(필요시) | · 상담교사 및 교육청 위센터 개별 상담 신청(필요시) | 상담교사 | 상담실 |

학교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면 안양 관악초처럼 전문적, 다층적 지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갈등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갈등 해결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마련[3)]

서이초 국면에서 다른 의제에 비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 민원 창구 일원화를 통해 공적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구체적 생활지도 방법과 권한 부여 등의 주제는 비교적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에 관련이 깊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잘 다뤄지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련 방안에도 담겨 있지 않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 마련 요구〉**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개념의 정의
- 위기 대응 시스템 (예)교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위원회 운영)
-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의무화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강화
- 통합사례관리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개별화 계획 수립 의무
- 통합사례관리위원회 조치에 따른 학부모 이행 의무 부여

○ 법령에 근거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교사 배치
- 우선, 교육청 단위에서 고용하여 학교를 지원함.
- 양성 과정을 거쳐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교육경력 10년 이상)를 추가 정원으로 학교마다 배치
- 전문교사의 역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정, 위기 개입의 공적 권한 발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에 관한 전문적 코칭(담임, 학부모), 학교 내 상담 시스템 및 학교 밖 지원 기관 연결.

3) 월간 좋은교사 10월호(2023년), 특집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보조 인력 지원
-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일반학급에 편입될 때 의무적으로 보조인력이 학교에 배치되도록 함.

○ 심리적 안정실 운영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대한 분리와 제지가 생활지도 고시에 의해 이뤄진다 해도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가 되는 학생이라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분류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 학생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다 해도 이들 대다수의 학생들은 내 교실에 여전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지원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교사의 실질적 교권 보호는 이뤄지기 어렵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발생 상황에 이 학생들은 계속 노출될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 관련, 피해 관련 학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지원 범위와 제공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보편적 지원(그린 존), 표적집단 지원(옐로우 존), 개별적 지원(레드 존) 등의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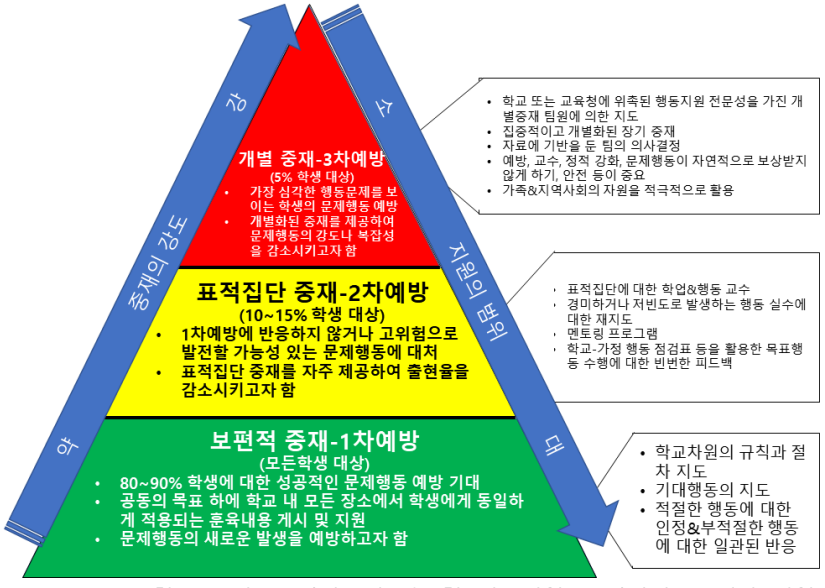


참고 : 행동수정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긍정적행동중재와 지원

4) 월간 좋은교사 4월호(2023년), 특집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1) 보편적 지원: 학교 환경 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행동지원. 학교의 행동지원팀은 학교의 전교생이 지켜야 할 기대행동을 정해 전교생 앞에서 기대행동을 지도한 뒤, 기대행동을 충분히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강화함으로써 학교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의 참여도를 높인다.

2) 표적집단 지원: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집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으로, 집단의 행동방식을 조사하여 아직 학생들이 습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습득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재교육하고 집단강화를 한다.

3) 개별 지원: 문제행동이 심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주로 개별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속한 모든 맥락을 고려한 문제행동 기능평가(기능적 행동진단)를 통해 문제행동이 갖는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가설 설정 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동지원을 실시한다.

학교는 위와 같은 다층적 지도와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그린 존) 포괄적 지도 방안부터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레드 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체계를 포함하는 안정적 체계를 이뤄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교별로 아무리 꼼꼼한 학생생활규정을 만든다 해도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늘 그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그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분리 대상 학생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 상황에 맞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지도 방법이다. 누가, 어디로 이 학생들을 분리할 것인가도 의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욱 중요한 질문은 그 학생들을 어떤 전문성으로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단순한 엄벌식 징계로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학교 내 법적 분쟁과 교육주체 간 갈등만 커질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 관련, 피해 관련 학생으로 분류하여 징계하는 방법으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누구이며,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도 전문성은 무엇이며, 이 전문성을 학교와 교사와 어떻게 체득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학교 밖 전문가 그룹과 학교를 어떻게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 것인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학교폭력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들 학생들 문제는 엄벌식 징계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 나오며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학교가 교육 조직으로 존재하기보다 준 사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와 학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조치 결과가 학생부와 대입 전형으로 연결되면 될수록 학교폭력 사안을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는 학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 학교가 놓여 있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에 교사들 99.7%가 동의하는 것[5]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이미 사법화 되어 버린 체계 속에서 학교가 교육적 해결 여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장치이다. 교육 영역에서 법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다면 당연히 법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잠식해 버린다면 학교는 학교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이다. 아니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으로서, 공동체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더 열어 가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학교로서 존재할 수 있다. 교육의 영역을 계속 사법의 영역으로 넘겨줄수록 학생들과 교사들이 설 땅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5) 교육플러스(2023.11.09.), “교사 99.7% 학교폭력 SPO 이관 '동의'...학생 91% "SPO 학폭 조사가 더 공정하고 정확”

2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세상

세션 5

#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발제

#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 연구의 필요성

### 1 주거 관련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가정 밖 청소년

- 원가정 복귀 또는 청소년쉼터 등 시설 입소라는 유이한 선택지
-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위험
- 성소수자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겪는 위기와 위협

### 2 주거에 대한 장소적 접근의 필요

- '장소(place)'는 유무형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실천(practice)을 포괄하는 실존적이고 관계적 개념
- 가정 밖 청소년의 임시 주거 공간 역시 난민캠프와 같이 장소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사회에서 예외적으로 위치 지어져 살아감의 권리와 연결된 장소로서 의미를 갖지 못

## 연구 목적

1 다양한 유형의 가정 밖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인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거권 상황, 그리고 주거권의 위기로부터 파생된 중층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분석

2 정책과 제도의 대상화로 인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가정 밖 청소년들이 발화의 주체가 됨으로써, 현재 주거권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자



## 연구방법 : 참여자 선정

청소년 쉼터, 교육부 Wee 센터, 법무부 자립생활관,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장기간 거주 여부, 주거지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의 거주 여부,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

| | 수도권 | | 비수도권 | |
|---|---|---|---|---|
| | 10대 | 20대 | 10대 | 20대 |
| 시설(아동양육시설, 단기, 중장기 쉼터, 피해자지원시설, 교육부, 법무부 등의 보호시설 등) 거주경험이 있는 청소년 | 1~3명 | 1~2명 | 1~3명 | 1~2명 |
| 주거위기를 경험했지만 거주시설(이동쉼터, 일시쉼터 제외)을 경험하지 않았던 청소년 | 1~3명 | 1~2명 | 1~3명 | 1~2명 |
| 비적정·비정규 주거 (고시원, 찜질방, 모텔, 타인의 집 등) 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 1~3명 | 1~2명 | 1~3명 | 1~2명 |
| 성소수자 | 1~2명 | 1~2명 | 1~2명 | 1~2명 |

# 연구방법: 참여자 개요

| | | | | | | |
|---|---|---|---|---|---|---|
| 비수도권 | 20대 | 여성 | 이수 | 일시 쉼터 | 원룸 | 성소수자, 면담 2회 |
| | | | 미영 |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 자취방 | 면담 1회 |
| | | | 시영 | 지인집, 고시텔, 원룸, 종교시설 | 원가정 | |
| | | 남성 | 현빈 | 청소년쉼터(일시/단기) | 원가정 | 성소수자, 면담 2회 |
| | | | 강선 | 친척집, 노숙, 소년원, 청소년쉼터(단기) | 원룸(시설 소유) | 면담 2회 |
| | | | 우중 | 지인 집 | 1.5룸(애인과 동거) | 성소수자, 면담 2회 |
| | | | 해은 | 지인 집, 원룸, 고시원 | 원룸(지인과 동거) | 면담 1회 |
| | 10대 | 여성 | 혜미 | 피학대아동쉼터, 아동양육시설, 지인 집,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원룸 | 성소수자, 면담 1회 |
| | | | 효림 | 청소년쉼터(일시/단기), 가출팸 | 1.5룸(지인명의) | 성소수자 |
| | | | 창선 | 청소년쉼터(일시/단기),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 고시원 | 성소수자 |
| | | | 미혜 | - | 자취방 | 면담 1회 |
| | | | 재선 | 언니집, 지인집 | 원룸(지인명의) | |
| | | 남성 | 희원 | 청소년쉼터 (단기) | 청소년쉼터 (단기) | 면담 1회 |
| | | | 채운 | 단기 쉼터 | 고시원 | 성소수자 |
| | | | 선기 | 일시 쉼터 | 친구 집 | 성소수자, 면담 1회 |
| | | | 수명 |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친척집, 노숙, 가출팸 | 원룸 | |
| | | | 준호 | 청소년쉼터(일시), 노숙, 지인 집, 원룸, 고시원 | 반지하 | 성소수자 |
| | | | 동우 | 지인집 | 원룸 | |
| | | | 희준 | 지인집, 친척집, 모텔 | 원룸 | |

| 지역 | 연령 | 성별 | 가명 | 과거 거주지 | 현 거주지 | 비고 |
|---|---|---|---|---|---|---|
| 수도권 | 20대 | 여성 | 찬선 | 보육원, 그룹홈, 의료 소년원,6호 소년보호처분시설, 성매매피해자전시설, 청소년 쉼터 | 공공임대주택 | 성소수자, 면담 2회 |
| | | | 은수 |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친족성폭력쉼터, 종교시설 | 원룸 | |
| | | | 효선 | 쉼터, 그룹홈 | 자립지원관 | 면담 2회 |
| | | | 강솔 | 청소년쉼터(단기) 2회 | 아파트 (공공임대) | 면담 1회 |
| | | | 수현 |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 원룸 (공공임대) | 면담 1회 |
| | | | 해란 | 청소년쉼터(단기) | 빌라 (공공임대) | 면담 1회 |
| | | | 강민 | 청소년쉼터(일시) | 원룸 (월세는 애인이) | 성소수자 청소년쉼터(일시)에서 9일) |
| | | | 혜진 | 지인집 | 원룸 (공공임대) | 성소수자, 면담 2회 |
| | | 남성 | 호수 |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 전세임대(원룸) | 면담 2회 |
| | | | 주혁 | 아동양육시설 | 어머니 집 | 면담 1회 (자립 후 전세임대로 가주하다가 지역을 옮기면서 장시 어머니 집 가주 중, 곧 다시 전세임대 구해서 나갈 예정) |
| | | | 지성 | 청소년쉼터(단기) | 전세임대(원룸) | 성소수자, 면담 2회 |
| | | | 희강 | 쉼터 | 고시원 | |
| | | | 해수 | 공장 숙소, 작업실근린시설) | 자취방 | 면담 1회 |
| | | | 희봉 | 원룸 | 전세임대 (공공임대) | 면담 1회 |
| | 10대 | 여성 | 다은 | 미혼모시설, 청소년쉼터(단기), 6호 소년보호처분 시설, 지인집, 언니집, 고시원 | 원룸 | 성소수자 |
| | | | 효주 | 그룹홈,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쉼터(일시) |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 성소수자 |
| | | | 다미 |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 쉼터 | 성소수자 |
| | | | 해서 | 쉼터 | 쉼터 | |
| | | | 송선 | 그룹홈, 청소년쉼터(일시) | 그룹홈 | |
| | | | 고유 | 청소년쉼터(단기) 2회, 일시쉼터 |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 면담 1회 |
| | | | 미나 | 청소년쉼터(단기) | 고시원 | 면담 1회 |
| | | | 채선 | - | | 성수소자 |
| | | | 연선 | 고시원 | 고시원 | 면담 1회 |
| | | 남성 | 유성 | 보육원, 6호 시설, 청소년쉼터(단기), 노숙, 가출팸, 원룸(지인 명의), 반지하 | 원룸 | |



# 연구결과

1.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2.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3. '그 가정' 바깥의 삶
4. '그 가정' 바깥 닿지 않는 지원 체계
5. '그가정' 바깥의 전략

## 연구결과

1.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가. '그 가정'의 주거 위기**

1) 학대와 폭력, "때리기도 했고 욕도 진짜 많이 듣고"

2) 방임 "저런 집구석에 처 넣냐고 사람을"

3) 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을) 닫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 탈출하거나 쫓겨나거나

"그 때는 (가정 폭력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 할아버지가 성폭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제가 고소를 하기 전까지 같은 일이 반복이 됐었는데 (...) 아빠 자취방으로 저 혼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게 14살. 한 3월정도 돼요. 그래서 그 3월에 이제 좀 편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수긍하고 학교를 다니려고 했으나 이제 아빠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성추행을 한두 번 정도를 더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 연구결과

1.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가. '그 가정'의 주거 위기

**나. 탈출하거나 쫓겨나거나**

1) 탈출 :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2) 쫓겨남: "못 살겠으니까 그냥 자기 신고해라"

"술을 마시면 계속 폭언하시고 이제 '너가 엄마 닮아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시고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너가 개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 많이 하셔서 또한 좀 좀 지친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렇게 폭력까지 해버리시니까는 그냥 완전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미안하다, 돌아와라, 안 그럴게, 상관 안 할게, 너 인생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연구자: 어떻게?) 왜 너 게이냐고. 왜 또 남자 좋아하냐고, 그렇게 부담감 느껴지는 말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갔죠."

## 연구결과

### 2. '그 가정' 바깥의 주거상황

**가. 불안정한 주거**

1) 떠도는 삶 : “10군데 이상은 왔다 갔다"

2) 각자도생 : “밖에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나. 주거선택의 권리없음

다. 주거의 취약성

라. 위협받는 안전

마. 관리와 통제

> 원가정으로 복귀했는데 또 이제 제가 어머니랑 또 이제 이모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모, 이모부 여동생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모, 이모부가 저를 반기지 않아서 들어오고 한 두 달 뒤에 큰이모 집으로 (가서) 또 지냈어요.
>
> 걱정을 했거든요, 9개월밖에 못 있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 그럼 그냥 마음 편히 있어도 되겠다 그랬죠. 거기 쉼터에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9개월이었으니까. 근데 9개월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게 바뀌지 않고 그 현재 체제를 그대로 가니까 저는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었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 연구결과

### 2. '그 가정' 바깥의 주거상황

가. 불안정한 주거

**나. 주거선택의 권리없음**

1) 시설이란 선택지 : “시설 말고는 선택권이 없는” 현실

2) 원가정 복귀라는 프레임 안에서 : “가정 복귀 할 생각이 왜 없어?"

다. 주거의 취약성

라. 위협받는 안전

마. 관리와 통제

> 가정복귀 계속 다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저는. 저는 여단기로 갈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고 제가 전화도 다 해봤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지 너가 막 나서고 이럴 게 아니다.

## 연구결과

2. '그 가정' 바깥의 주거상황

가. 불안정한 주거

나. 주거선택의 권리없음

**다. 주거의 취약성**

1) 눈치, “진짜 얌전히 있었어요”

2) 비적정 주거공간 : “그래서 이 집은 버리기로 했어요”

라. 위협받는 안전

마. 관리와 통제

> (LH 집들은) 허름하고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은. 어떤 집은 뭐 3평도 안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4평 남짓한 집도 있고 막 최대 5평.
>
> 화장실은 일단 건물 공용 화장실을 써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하고, 주방도 따로 없고 샤워실은 안에 있긴 한데 공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맨날 배달음식만 먹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 연구결과

2. '그 가정' 바깥의 주거상황

가. 불안정한 주거

나. 주거선택의 권리없음

다. 주거의 취약성

**라. 위협받는 안전**

1) 폭력에 노출, “하루종일 긴장한 상태라서”

2) 언제 당할지 모르는 범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3) 나일 수 없는 공간 : “내 집이 아니지”

마. 관리와 통제

> (베개 밑에)식칼을 넣어둔다든가 불을 켜고 잔다던가. 불 키면 있는 줄 알고 안 들어와요. 집주인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자유롭다고 느끼는데 솔직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
> 그냥 익숙해지면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퇴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내 집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나의 거주지가 될 곳이지만 하지만 기간이 되면 떠나는 거 딱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 연구결과

2. '그 가정' 바깥의 주거상황

**가. 불안정한 주거**

나. 주거선택의 권리없음

다. 주거의 취약성

라. 위협받는 안전

**마. 관리와 통제**

**1) 사생활 침해 : “감시받는 느낌”**

**2) 자유의 제한 : “내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요? 쉼터 자체가 다 cctv로 해가지고 화장실이나 생활실 그런데 아니면 cctv가 있어서 다 혼자 있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생활실은 저 혼자쓰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쓰니까

연구자 : 근데 그런 거(아르바이트) 해도 무조건 9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해서 : 네 근데 진짜 물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12시에 끝나가지고 그거는 한 번 딱 봐주셨어요.



## 연구결과

3. '그 가정' 바깥의 삶

**가. 경제적 취약성**

1) 생계의 위협: “200원을 아끼자”

2) 벅찬 월세: “저희 버는 거 다 월세로 다 나가고

3) 일할 수 없는 시설: "알바는 안 되는"

나.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다. 교육의 기회 제한

라. 아플 수 없는 몸

마.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바. 사라지는 관계들

설탕이요. 먹는. (...) 그게 300 칼로리 짜리에 보존 기간도 짧고 포만감이 크지도 않고 보관하기도 힘든 게 천 원? 그 천 원 두 장 가지고 조금 걸어가지고 그냥 대용량으로 파는 매장 같은 데 가죠. 설탕 1kg를 살 수 있어요. 삼각김밥 두 개 살 돈으로. 설탕 1kg 사죠, 설탕 1kg 사면 그게 대략적으로 3천 칼로리까지 나와요, 거의. 2천인가, 3천 칼로리가 나와요. 비교가 되냐는 거죠.

은수: 알바를 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알바를 하고 싶기는 한데 학교는 되지만 알바는 안 되는

연구자: 위험해 가지고. 그러게 너무 하고 싶으셨겠다.

은수: 돈을 좀 많이 모아놓고 싶었는데

## 연구결과

3. '그 가정' 바깥의 삶

가. 경제적 취약성

**나.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1) 청소년에게는 유명무실한 법: “그냥 안 주고 그거 달라고 하면 잘려요”

2) 참고 버티는 일터: "돈은 벌어야 하니까"

3) 여성청소년에게 취약한 노동시장: “가진 것도 없으니까”

다. 교육의 기회 제한

라. 아플 수 없는 몸

마.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바. 사라지는 관계들

> 연구자: 그래서 약간 그런 일들도 좀 힘들고 그냥 일을 그만두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준호: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냥 버텼어요. 계속. (...) 이것도 인생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 (...) 나중에 다른 데 취직해도 이런 일을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버텼어요.



## 연구결과

3. '그 가정' 바깥의 삶

가. 경제적 취약성

나.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다. 교육의 기회 제한**

1) 탈학교, “저절로 학교를 못 나올 수 밖에”

2) 포기하게 되는 교육 “내줄 학비 없다.”

라. 아플 수 없는 몸

마.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바. 사라지는 관계들

> 집에서 나오고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일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마트 보안쪽이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절로 학교를 못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
> 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고 많이 조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거는 지원이 되지만 입시학원은 전혀 지원이 되는 폭이 없어서 지금 입시학원 아직 못 다니고 있고, 또 가출 때문도 있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은 쉼터이면 더 힘든 것 같아요.

## 연구결과

3. '그 가정' 바깥의 삶

가. 경제적 취약성

나.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다. 교육의 기회 제한

**라. 아플 수 없는 몸**

1) 일상적 참기: "좀 서러운데 어쩌겠어요"

2)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법적 보호자: “너무 서럽게 울었던 기억”

3) 계속되는 심리정서적 위기: “그냥 이제 반응이 없어요”

마.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바. 사라지는 관계들

> 지성: 병원 못 갔죠.
> 연구자: 아파도?
> 지성: 아파도 못 갔죠, 그냥 참았죠.
>
> 괴롭힘을 당하고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졌었고 (...) 자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자해하냐고 한 번만 더 자해하면 정신병원에 가둘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자해를 하게 됐었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 연구결과

3. '그 가정' 바깥의 삶

가. 경제적 취약성

나.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다. 교육의 기회 제한

라. 아플 수 없는 몸

**마.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1) 나이주의: "이렇게 말투부터 바뀌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3)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 "성매매도 강요받고 "

바. 사라지는 관계들

> 저는 차별인가 싶긴 했는데 확실히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하고 그랬어 가지고 (...) '야로 부르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야 여기 여기 뭐 하나 가져와 봐' 아니면은 '야 뭐 된장찌개 고추 많이 넣으라고 말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
> 어그 집에서 조금 성매매도 강요받고 강제로 성매매 성착취도 8개월 동안 당하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

## 연구결과

3. '그 가정' 바깥의 삶

가. 경제적 취약성

나.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다. 교육의 기회 제한

라. 아플 수 없는 몸

마.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바. 사라지는 관계들**

1) 사라진 소속감: “너무 외로워요”

2) 스스로 단절하는 관계:"결국 다 들었어요"

> 뭔가 소속감은 사실 잘 안 느껴져요. 뭔가 확실히 좀 옛날에 비해서 좀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 뭔가 이 방만 이 방하고 이 집만 뭔가 내 공간인 것 같고 뭔가 항상 뭔가 밖으로 내려가면 되게 좀 낯선 그런 것 같아요.
>
> 어떤 입소생마냐에 따라서 또 그 입소생이 있을 때는 '잘했어' 이렇게 하다가도 없으면 '아까 하는 거 봤어요? 쟤 싸가지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종종 들었고 그러면 제가 없을 때도 그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 사람들도 충분히 저희 저의 귀에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

**가. 신뢰할 수 없는 제도**

1)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교"저는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2).기댈 수 없는 지원기관, “나를 도와준다고 했던 선생님의 말은 계속 남아 있어요.”

3) 믿을 수 없는 경찰 " 제대로 말 안 해준다는 느낌"

나.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다.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라. 파편화된 지원

>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너 뭣가? 여행 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저는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

가. 신뢰할 수 없는 제도

나.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1) 연결되지 않는 정보" 다른 건 몰랐어요"

2) 알음알음 연결되는 정보 :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라. 파편화된 지원

"○○에 있으면 설문조사하면 과자를 주든 사탕을 주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다 하고 하다 보니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버스 이런 데 가면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것도 그때 친구가 돈도 없을 것 같다가 이제 제가 혼자 산다는 얘기를 하고 하면서 먹을 거랑 그런 거 병원 치료비 이런 거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고 그런거 받고 있었죠."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

가. 신뢰할 수 없는 제도

나.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다.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1) 가구단위 사회보장체계의 한계: “이제 와서 엄마 아빠를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2)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요구들: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라. 파편화된 지원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자립지원관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지원 대상이나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 홈페이지에 딱 하니 있는데 우리는 자립한 애들만 지원한다. (...) 내가 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자립지원관 심사 대상에 내가 일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

가. 신뢰할 수 없는 제도

나.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다.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라. 파편화된 지원 "가서 그냥 만들라고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죠. 처음에는 은행 업무도 모르고 통장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지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 만드는 것도 몰랐고 가서 그냥 만들어달라고만 하고 그냥 남들이 20살 돼서 엄마 아빠한테 보살펴, 보살핌 받아야 했던 당연한 것들을 저는 못 받고 자랐으니까. 못 받고 그냥 성인이 돼버린 거"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가. 숨기기와 거리두기**

**1) '남과 다른 일상'을 숨기기 / 내 삶의 "가짜 이력서"**

**2) 쉼터 밖에서 /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찮았었던 거 같아요"**

**3) 쉼터 안에서 견디기 /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은 곳**

나. 자신을 갈아넣기

다. 타협하기

라.저항하기

마. 새로운 길 찾기

연구자 : (친구들에게) 얘기 안 한 거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희강 : 얘기 안 한 거요? 창피해서?
연구자 :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
희강 : 그냥 집 어디냐 그러면 저기라 그러고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가. 생존의 방식들1: 숨기기와 거리두기

나. 자신을 갈아넣기

1) 알음알음 알게 되는 것들 : 정보를 "긁어 모았다"

2) 혼자 해내야 한다는 마음 : "웬만해서 다 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생계 유지 : "알바는 디폴트"

다. 타협하기

라.저항하기

마. 새로운 길 찾기

"아무래도 좀 뭔가 남의 도움을 못 받았을 때 그런 거를 내가 혼자서 못 해내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웬만해서 다 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냥 버텼어요. 계속. (...) 이것도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 (...) 나중에 다른 데 취직해도 이런 일을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버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가. 생존의 방식들1: 숨기기와 거리두기

나. 자신을 갈아넣기

다. 타협하기

1) 시설과의 타협 :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 눈치 보기 : "그냥 뭐든지 다 제 탓인 줄 알았어요"

라.저항하기

마. 새로운 길 찾기

"뭔가 계속 쉼터에 살다 보니까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당연한 거고 나 지금 보호받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말이 옳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든지 다 제 탓인 줄 알았어요. 뭐만 하면 다 제 탓 같고 그냥 약간 사소한 거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약간 내 탓인 것 같고."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가. 생존의 방식들1: 숨기기와 거리두기

나. 자신을 갈아넣기

다. 타협하기

**라.저항하기**

**1) 공동체 문화에 개입 / "안 되면 되게 하라"**

**2) 이슈화 /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마. 새로운 길 찾기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바뀐 거예요.** (...) 그냥 나는 내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안 들어준다. 일단 될 때까지 얘기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고 이제 뭐 될 때까지 해보고 끝까지 해본 다음에 어차피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사실 그런 생각.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마인드가 강해요.

**방송도 한 번 타고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 연구결과

4.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가. 생존의 방식들1: 숨기기와 거리두기

나. 자신을 갈아넣기

다. 타협하기

라.저항하기

**마. 새로운 길 찾기**

**1) 미래 그리기 / "내가 원하는 게 뭘까"**

**2) 나 같은 사람 돕기 / "받은 게 많으니까"**

"**집을 나와서는 조금 더 저는 제 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도 OOO 형이랑 같이 영상 유튜브 영상 찍기도 하고 정보에 관련된 찍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기 OO에 있는 그룹홈에 가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이런 자립 정보에 대한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친한 보육원에 사는 후배들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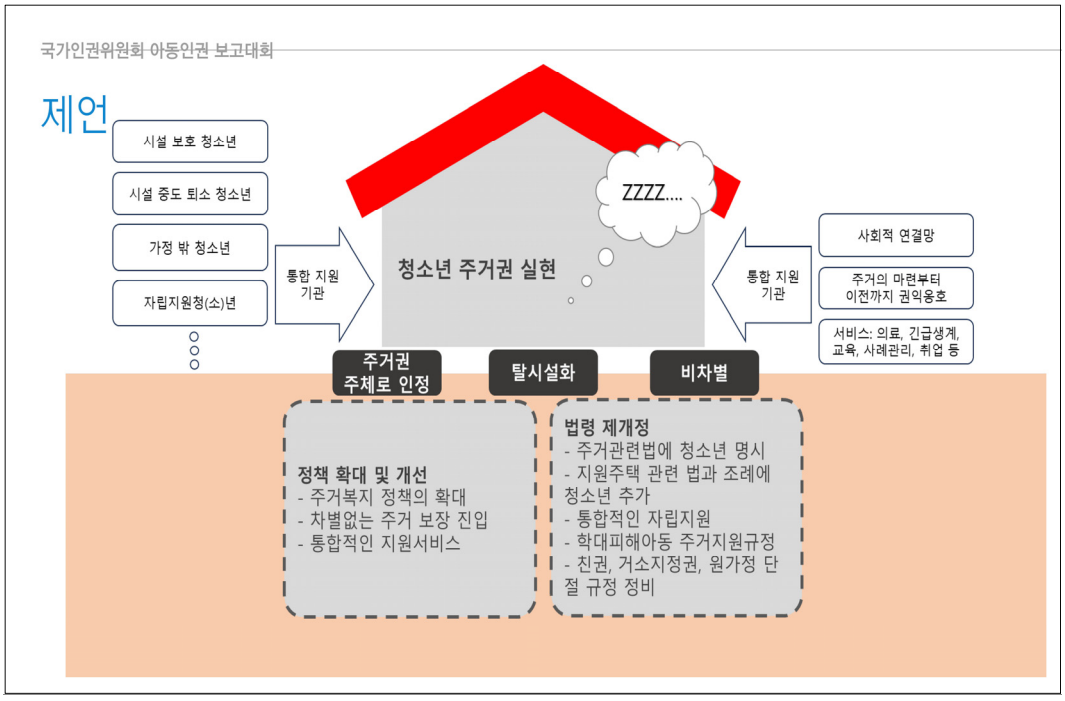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제언
시설 보호 청소년
시설 중도 퇴소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청(소)년
통합 지원 기관
청소년 주거권 실현
ZZZZ....
통합 지원 기관
사회적 연결망
주거의 마련부터 이전까지 권익옹호
서비스: 의료, 긴급생계, 교육, 사례관리, 취업 등
주거권 주체로 인정
탈시설화
비차별
정책 확대 및 개선
-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
- 차별없는 주거 보장 진입
-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법령 제개정
- 주거관련법에 청소년 명시
- 지원주택 관련 법과 조례에 청소년 추가
- 통합적인 자립지원
- 학대피해아동 주거지원규정
- 친권, 거소지정권, 원가정 단절 규정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2020
집은
인권이다
고맙습니다
(sisi@gie.re.k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토 론 문

유근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일 움 (인권 활동가)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 토론문

**유근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 토론문

## - 결핍과 함께 살아가기 -

일 움 (인권 활동가)

## 1. 원룸의 감각 : 해방과 버려짐의 경계에 홀로 선.

"혜진 : 너무 자유로우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아무도 나를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95"

발제문을 읽으며 가장 와닿고 동시에 이 토론문의 문을 여는 말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탈가정 청소년의 탈가정은 탈선, 탈출, 독립, 자립, 연립, 해방, (원가정으로부터의)버려짐... 그 어떤 단어로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감각이다. 탈가정은 그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탈가정 청소년들은 자유를 찾아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다. 그 여정은 무척 자유롭기 때문에 고립되고, 쓸쓸하며, 때때로 온기롭기도 하다는 것이 나의 총평이다. 탈가정 청소년은 보통 각자의 지역 혹은 상경한 지역의 원룸에서 새출발을 한다. 그 5~10평 남짓한 공간은 텅 빈 자유를 내어준다. 그 속에서 탈가정 청소년은 폭력으로부터 도망칠 용기를 낸 자신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폭력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자취 후 첫 날밤 나는 엄마의 고함소리, 쉼터 쌤들의 쿵쿵 달려오는 발소리 같은 것을 홀로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새공간 새출발은 정말로 날것의 새것 그 자체여서, 탈가정 청소년을 그저 덩그러니 둘 뿐이다. 공간적으로 자유롭지만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유로이 행복하기까지는 많은 자원들이 없기에 탈가정 청소년은 자유로이 고독하고, 울고, 자해하고, 외롭다. 원가정, 쉼터에서 맞춰진 틀에 따라 삶을 (강제된)규칙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해방적)폭발로 인해 삶을 '쓰레기처럼' '생활력 없이' 운영하게 되더라도,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토록 쟁취해낸/해내고자 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는 '나만의 집'을 과연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끔 쌓아올릴지는 오롯이 스스로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이 현재 탈가정 청소년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 2. 원가정을 애도하기 : 가정폭력 피해 & 어그러진 "모성애/부성애"에 대한 끝없는 재해석.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원가족, 가정폭력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든 탈가정 이후 자신의 삶에 다시, 몇 번이고 출현한다. 자신을 통제하려들며 폭언을 서슴치 않는 쉼터 쌤들을 통해서 엄마를 마주하거나, 정상성 사회의 '일반적' 임금 노동 현장에 끼여 굴러갈 정신적 에너지가 없어 간 소위 고소득 알바 자리, 성매매 업소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일삼는 아저씨 손님들을 통해 아빠를 마주하거나, 사랑한다 말하며 가스라이팅과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새로 사귄 애인을 통해서 양육자를 마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탈가정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식/무의식에 심어진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끊임없이 마주친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와 (+)의 지표에서 볼 때 탈가정 청소년들은 새출발을 0 혹은 (+)가 아닌 회복되지 않은 (---)의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0으로 향하는 새출발을 하기 위해선 회복이 필요하다. 재정적 여유가 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겠으나 탈가정 청소년들은 대게 쉼터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서 2차가해적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빈곤에 시달리므로 다른 방식의 회복을 찾아 떠난다. 일기 등 기록활동을 통해 겪은 가정폭력을 폭력이라 부르고 스스로 원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본가를 서성이다가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받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기도 하고, 혹은 재해석을 포기하고 실컷 아파하기도 한다.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치유에 힘을 써보지만, 혼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결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도 거대한 삶의 과제이므로, 전문적으로 회복을 지원할 인프라가 필요하다. 나만의 공간의 확보를 돕는 지원에서만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탈가정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나만의 공간 확보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 3. 능력주의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값을 저울질하기

도대체 홀로 남겨진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홀로인 나 그 자체는 자체만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나는 결핍 있게 자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아프기만 한데, 대체 어떠한 살 이유가 있을까? 숱하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은 시궁창같은 집에서 자라도 이렇게 자수성가하여 살 수 있다는 극복 신화를 몸소 실천에 옮기기 위해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직장에서의 자리에 오르거나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으는 식으로 인정욕구를 해소하기도 한다.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텅 빈 채로 말이다. 어떤 청소년은 결핍 극복 신화를 따를 수 없을 만큼 손상된 자신의 정신상태에 좌절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어떤 청소년은 꾸역꾸역 정상성 사회에 진입하려다 결국 실패하고 낙담에 빠지기도 한다. 탈가정 청소년은 이 각자도생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개인들이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의 밥벌이조차 어려운 이 능력주의 세상에서 그저 1인가구로서 나를 오롯이 혼자 부양하게 된 탈가정 청소년은 빈곤을 겪고는 스스로를 부양할 만한 목숨값이 있는 사람인지 검열한다. 탈가정 청년·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깎는 지출은 식비도 문화생활비도 아닌 '숨'비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에서 시작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목숨값을 홀로 저울질한다면 그것은 깃털만큼 가벼울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인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회라면 그 깃털과 같은 무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는 자신을 어차피 저런 애들, 어렵게 자라 어렵게 지내는 애들로 낙인 찍고는 이 위태로운 삶의 운영을 똑똑히 지켜보고도 적극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사는, 살아지는, 살아야 하는 애들'은 없다. 탈가정 청소년은 분명히 포괄적 개념에서의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탈가정 청소년에게 극복하라 주어진 고난들은 이미 산더미다. 나를 하루하루 먹여살리느라 바쁜 와중에 주위를 살피고 서로 돌볼 네트워크를 만들 여유는 사치인 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과제를 부당히 한 개인이 다 떠맡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혼자서 스스로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정신/재정난을 극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것, 그것에 실패함을 또다시 극복하는 것,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안 공동체를 꾸리는 새/재시작의 막막함과 부담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극복되어야 마땅함과 동시에 완벽히 극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 딜레마를 혼자서 감내해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그것에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들이 부재한, 인간관계망이 좁거나 없는 탈가정 청소년은 사지로 몰린다.

## 4. 그럼에도, 나아가기

이토록 고도화된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결핍 투성이 개인은 쉽게 죽는다. 덜 자라서, 잘못 자라서, 어려서, 미성숙해서라는 말을 넘어서 이들의 삶 그 자체를 그냥 좀 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이들은 정신병과 동거하고 있으며, 고립되어 있고, 알량한 시혜, 엄마·아빠 행세자들에 기댈 바에야 울타리를 치고 더욱 더 고립되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언젠가는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하여야만 다음 스텝이 있음을 알고 있다. 방출이자 해방 이후의 시간을 잘 꾸려가기, 대안 공동체를 찾아 나서기, 타에게서 반복되고 나에게서 발현되는 트라우마적 상황/행동을 해결하기, 실수하는 서로를 용서하고 고쳐가기... 넘어야 할 산이 산맥을 이룬다. 탈가정 청소년의 탈가정, 탈시설 이후의 삶에 사회가 적극적 지원으로서 고민과 실천을 함께한다면, 탈가정 청소년들이 가파르고 험난한 길 앞에서 숨 한번 크게 쉬고 그래도 잘 살아내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토론문

## -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가정복귀를 할 수도 없고, 청소년 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주거권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주거위기로 인해 파생된 인권침해 상황을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드러내어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때문에 소수자로 남아 있는 청소년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두에게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권의 의미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다.

## 2. 연구를 통해 드러난 보호자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모습

본 연구는 보호자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호자의 학대로부터 도망쳐 청소년 쉼터로 '살기 위해' 왔는데, 쉼터 입소를 하면 보호자에게 '부모 동의'를 구하여 청소년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너 만하면 괜찮은 거라며' 가정복귀를 종용하는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쉼터는 청소년을 지붕이 없는(roofless) 홈리스라는 최악의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한다. 그런데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 퇴소를 시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면, 가정복귀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결국 지붕이 없는(roofless) 홈리스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국가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어쩔 수 없어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쉼터 내 폭력, 감시, 사생활과 자유 없음을 감내하며 견디어야 한다. 청소년은 소소한 자기 일상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이 지붕과 자유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나치게 억압적인 쉼터 생활은 이미 상처 받은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각인되고 있었다.

쉼터를 나와 독립주거를 선택하여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주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과도한 월세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항상 퇴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은 포기한 채 혹은 아파도 쉬지도 치료받지도 못하며 위험한 노동을 하고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 3. 정책 제언에 대한 동의와 보완

원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 '탈시설화'와 '비차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원가정과의 관계, 친권 혹은 거소지정권과 관련된 제안은 다른 연구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의미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다음의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먼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할 부처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지에 대한 제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청소년주거복지센터를 별도 설치하기보다는 주거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직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추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보수교육을 주장하는 쪽을 제안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접근성 면에서 별도 기관 설치보다는 기존 기관의 활용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서비스와 독립적인 주거가 결합 된 주거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청소년에게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 중 어떤 청소년에게 지원주택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자가 보다 구

체화하여 제안할 것이라 생각한다.

원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직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어야 각종 복지급여에서의 청소년 개인의 수급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 차별 없이 통합적인 자립지원 체계 마련을 할 때 현재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제안을 하면 보다 현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자립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제안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가 보다 지속 가능해 질 것이다.

시설에 머무는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포함시킨다는 제안이 시설에 머무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독립주거를 바로 제공하자는 제안인지, 시설을 '가정형 보호' 즉 주거로 바꾸고 소규모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소규모 가정형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주거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출발이었던 청소년 당사자에게 주거지원 제도 설계 및 정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관심도 추가되기를 제안한다.

2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세상

세션 6

# 2023 아동인권 정책·현장 모니터링

##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발 표

김요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남화성 (경기대학교 평가사업단 대학기관연구센터 교수)
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고영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및 전북동화중학교 교사)
양오석 (국민의힘 광진(갑) 당원협의회 청년특별보좌관)
이정찬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정책 모니터링 결과
## - 법령과 17개 시도교육청 학생자치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

**김요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2023년 9월 15일,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날을 맞이하여 '더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가 강조되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의미있는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학교 참여, 교육정책 참여, 지자체 정책 참여, 선거로 대표되는 정치참여, 기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터전인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학교 참여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실태와 현상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책과 제도는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지며, 조직·기관과 이를 다루는 사람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 또한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에게 펼쳐지기도 한다.

우선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학교 참여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과 맞닿아 있으며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과 관련이 깊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권장·보호하는 학생자치활동,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자율·자치활동, OECD 2030 미래교육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학생 주도성 등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지방

분권,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와 같은 교육 분야의 구조적인 자치·분권 차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법령에서 학생자치활동 관련 조항은 1949년 제정된 후 48년간 유지되었던 「교육법」이 폐지되고,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0년이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어른들의 자치는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무수한 논의를 거쳐 왔지만, 하루의 절반 또는 대부분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치활동 조항은 달랑 한 줄로 규정된 채 수십 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유은혜 의원실, 2013).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은 학생이 학교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초 근거가 되는데,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학생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학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과정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교복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을 결정할 수 있다(김요섭 외, 2020).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권장·보호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활동의 근거를 학교 규칙에 둠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은 단위학교의 사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의견 수렴 등)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사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주체의 균형성,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으나 현행 법령은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위원이 아닌 회의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임의 조항

만을 두고 있다(김요섭, 2023). 법령상 보장된 학생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에서조차도 대부분 회의 참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생 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마저도 연 1-2회 정도의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이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구속력이 없고,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한계가 있다(김성천 외, 2019). 이 외에도 자치법규인 시·도 조례 차원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어서 학교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을 다루는 문서로써 1960년대부터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언급하고 있다. 정구영 외(2020)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 등을 분석하며 학생자치활동의 변천 과정을 규율의 내면화 단계(1951-1968), 공동체 의식 강화 단계(1968-1988), 학생 자율권 주장 단계(1988-2005), 참여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단계(2005-2019)로 구분하였다. 여러 시대적인 배경 아래 아동·청소년의 참여도 다양한 양상으로 이해되고 펼쳐져 오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주민직선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며 시민성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 참여와 관련한 정책모니터링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참여 관련 시행계획 문서를 살펴보았다. 학생참여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정책모니터링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자 시도교육청의 학생자치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행계획은 정책 사업 실행의 기본이 된다.

우선 예산과 관련한 학생참여 보장 정책이 추진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2~3백만원) 또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일정액(1-3%, 시·도 교육청별 상이)을 학생자치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지원, 학생회 운영비 지원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자치회의 예산 편성 운영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기상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향후 시도교육청의 학생자치 예산 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로 연동이 되는 구조인데, 올해 예상보다 60조 가까이 덜 걷힌 세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될 예정이다. 교육재정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시도교육청은 여러 정책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학생참여 예산도 대폭 삭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생참여 관련 예산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물리적 공간에 관한 사항으로 참여와 공론의 장 형성을 위한 위한 학생자치 공간 구축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다. 학생자치실, 학생회의실, 학생휴게실, 학생참여 온라인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시간의 측면에서 학급 회의 시간, 학생자치 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상 월 1-2회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를 학급, 학교 운영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선거교육(참정권 교육) 관련 시수를 편성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학생자치회와 학교장의 간담회로 학생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학생 대표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또한 개별 학교를 넘어서 학교 간 네트워크, 연합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 대표 협의회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의회, 컨설팅단, 청소년교육의회, 사회참여 동아리 등 교육청 단위의 학생자치기구를 조직하여 교육정책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의 일반화와 홍보 차원에서 학생자치 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작·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생자치활동 중점 추진학교 운영, 관련 정책 연구,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대상 교육, 매니페스토 발표대회, 학생자치 정책 숙려제, 사회참여활동 연계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실행 권한이 법적으로 학교장, 학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정책,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무풍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정책이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한다. 화려한 계획서 속 언어의 성찬을 넘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점검이 중요한 지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생참여 관련 정책적인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며 점진적인 제도의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확대된 것과 같은 변화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정식 학교운영위원 포함, 16세 교육감 선거권 보장과 관련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바 있으니 이를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나아가 학생참여 정책은 비단 학생자치의 테두리에 담아둘 수 없다.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로 나아가야 한다. K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영역에서도 참여권을 내실있게 보장하고 있다. 학교급식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규칙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 학생 희망 급식, 학생주도 급식 질서 활동, 영양 식생활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I교육청에서는 학생이 학생자치에 관한 책을 집필해서 전국적으로 3,000권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였다. 그간 학생자치 책이 교사, 연구자의 시선으로 쓰여졌다면 학생자치의 주인공인 학생이 직접 저자가 되어 학생의 눈높이에서 책을 집필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강사가 되는 학생자치 강사단 사업을 운영하며 고등학생이 초, 중학교에 학생자치 강사로 출강하여 선배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이야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J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 현장조사, 탐방을 바탕으로 중학생용 지역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학생이 교과서를 배우는 존재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이러한 변혁과 개척의 시각으로 교육활동의 전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문제의식, 연구, 실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교육기본법(2022). 법률 제18456호.

김성천, 김요섭, 김인엽, 김진화, 김혁동, 오수정, 이경아, 이영희, 임재일, 홍섭근(2019). 학교자치2. 서울: 테크빌교육.

김요섭, 구슬이, 구연희, 김영자, 이동배, 임재일, 정옥희, 홍섭근(2020).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 서울: 테크빌교육.

김요섭(2023). 중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유은혜 의원실(2013).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현실진단과 개선방안 모색(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유은혜 의원실.

정구영, 김대식(2020). 초·중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교육사학연구, 30(1), 59-98.

초·중등교육법(2023). 법률 제1899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대통령령 제33381호.

17개 시도교육청(2023). 학생자치 관련 계획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청소년 참여와 권한부여(empowerment)

**남화성** (경기대학교 평가사업단 대학기관연구센터 교수)

## 1. 들어가는 말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UN, EU를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정이자 목표입니다(남화성, 2021).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적 여건과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실연(performance)과 책임(responsibility), 권리(right), 시민권(citizenship)'의 세 가지 개념(Thesis, 2007; 천정웅, 2011; 조남억, 장여옥 2016에서 재인용)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연과 책임으로서의 참여는 국가 주도의 단체나 조직, 지방정부에서 아동·청소년을 동원하는 형태로 조직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나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역량, 책임감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서비스나 정부 캠페인, 일회성 이벤트(대회, 콘퍼런스)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로서의 참여는 UN아동권리협약 참여권과 관련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표현·정보·결사·사상과 종교·사생활 등의 시민적 권리를 가지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존·발달·보호의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치들입니다. 셋째, 시민권으로서의 참여는 아동·청소년이 정

치, 정책 논의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책과 정부의 결정(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위원회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의 보장은 '실연과 책임'의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출 기회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례들로 보입니다. 예컨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당사자로서 가지는 권리보다는 시혜적 차원에서 일부에게 주어지는 발언권 및 의사표명권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참여제도 및 기구에 참여한 일부 청소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거나 '정책제안대회',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기관장) 간담회' 등 일회성 이벤트 형식의 참여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아동·청소년 주위의 특정 상황에 관한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권리나 시민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 모니터링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권 현황

2000년대 이전 시민단체나 민간 조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 동아리, 위원회 등 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2000년대 들어 주로 청소년정책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 「청소년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시행령을 근거로 각 지역별 지역회의를 거쳐 의제 발굴과 참가자 추천을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청소년기본법」 전부 개정과 함께 새로이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법령 중 최초로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으로만 구성되는 참여기구를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4년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조항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수립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정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선언적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이후 2017년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기본법」의 조항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문화관광부, 1998)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온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있었던 아동·청소년 참여권과 관련된 법적 변화는 아동·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9 ~ 24세의 연령 범위로 정의되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18세 미만 아동의 참여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법령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3년 현재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항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보다 복지와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참여기구 외에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친화예산위원회 등과 같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권한 범위를 가지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관련 조례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각 참여기구의 목적과 역할의 범위, 권한 부여 수준 관련된 사항들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의 범위나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경험을 통한 교육적 성취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 청소년의 경험 차이, 성취 수준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정책'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정책·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관련된 내용의 범위를 한정하여 제시하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일상과 관련된 환경, 교통, 보건, 복지,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영역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일정 수준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의회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의회의 운영이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도구화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명한 시민·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인해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제정 안건 자체가 부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금년도의 아동인권 정책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거나, 관심 있는 누군가의 개인적 노력 여하에 따른 피드백이 제시될 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과 그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낮다는 의견,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 보호의 대상 내지는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예비 구성원 정도로 이해하고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 등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하는 법정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차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에 위탁된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실질적인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3)를 근거 지침으로 삼아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관내 민간 청소년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2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즉,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4개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근거로 하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는 지방 사무로써 효율성이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한 민간위탁이 적절치 않은 사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임에도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3.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한 부여(empowerment)

일반적인 인식에서 대입 중심의 학교 교육이 아동·청소년참여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이나 사례를 돌아보면, 오히려 학교는 경쟁에 초점을 둔 대입제도,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높은 관심 속에서도 아동·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여건들을 만들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 권한의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학생자치회라는 아동·청소년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여 운영해왔고, 사회과 관련 교과목의 이론 강의를 통해 참여의 개념과 원칙, 중요성 인식의 기회를 마련해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천 기반 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가장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곳은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숙한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서 정의되거나, 미래의 주역으로써 역량을 길러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권리가 유예된 2등 시민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 교사, 청소년시설·기관·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체와 아동복지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과 책무를 가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일부 아동·청소년에게만 주어지는 시혜적 권리가 아니라는 사회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사회 구성원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동·청소년을 자기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이끌어 가면서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등 자신 주변의 변화에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법적·제도적 참여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및 기구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의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을 넘어,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협의회 등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또는 의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권한 강화가 추진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이나 청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분야에서 일부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의 의견 반영 노력 및 답변 회신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 참여권을 권한 부여(임파워먼트, empowerment)의 과정이자 결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워먼트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교육,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부터 정치, 경제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인식은 아동·청소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과 책무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문화관광부(1998).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

남화성(2021). 청소년 참여제도 현황 및 제도화 방안. 청소년정책리포트 2021 VOL.03.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조남억, 장여옥(2018). 국외 청소년의회 사례를 통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93-112.

# 청소년 참여권 보장, 정부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나

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 청소년 참여권 확대의 계기가 된 18세 선거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는 30년 이상 지나, 시민사회운동이 20여 년간 요구해 오고서야 이루어 낸 성과였다.

국제적으로 18세가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 기준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 만 18세가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바로 '만 18세'부터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 18세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기준은 벗어나지만,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에는 이르지 않은 나이다. 생애주기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선거일 시점 생일이 지난 사람들이 일부라도 포함되게 된다. 국회 안팎에서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입장의 요지도 '청소년(고등학생)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에 18세 선거권을 주장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긍정받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등 이를 '18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전반의 문제로 이야기했다.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정치 주요 이슈로 부상한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에서도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등의 선거권 연령 인하가 실현되면 '청소년 참정권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기대를 표했다.

18세 선거권은 제도적인 청소년 참여권 확대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던 '만 25세'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2021년 12월, 만 18세로 단번에 하향 조정되었다. 10여 일 뒤인 2022년 1월에는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단,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만을 정당 당원 및 발기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여 사실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봉쇄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었다.

물론 그럼에도 현행 선거·정치 관계법이 청소년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대표적 악법이고, 「정당법」 역시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둔 점,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원 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한 점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과도한 인권 침해이다. 나아가 대다수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정치적 활동 보장, 모의투표를 비롯한 선거·정치교육의 활성화 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었을까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이어진 제도의 개선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켰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만 18세 유권자들의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 자체는 20~30대 투표율에 비해 낮지 않게 나타났다.[1] 그럼에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현장 모니터링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지 여부에 대하여 평균 2.6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걸로 조사됐다.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다는 사실 외에 그 뒤 잇따른 법 개정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청소년

1) 〈뉴시스〉, [MZ의 대선]⑤선거연령 하향 후 첫 대선…18세 50만명의 표심은, 2022년 2월 26일.
〈경향신문〉, 올해 대선 투표율, 40대 이하 하락·50대 이상 상승…60대 87.6% '최고', 2022년 9월 30일.

들이 다들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서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변화를 상상한다면 그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동원되느라 공부를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과장된 우려를 표하던 이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소수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충분히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법하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땠을까? 우선 긍정적인 변화로 선거의 장에 청소년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은 만 18세인 청소년·청년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만 18세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규모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중앙선관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 20세 미만(만 18~19세) 후보자는 모두 7명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중 6명이 대학생이라, 청소년 정치 참여라고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2] 선거 결과 이들 중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고양시의원으로 1명이 당선됐다. 그런데 이 시의원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부모의 인맥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3] 2022년 지방선거는 총 후보자 수가 6,000명이 넘었고 광역·기초의원 의석 수도 3,000명 조금 못 미치는 숫자였다. 거기에서 만 18~19세 후보자는 7명, 당선자는 1명이었다는 것은 정치 참여에의 가능성보단 장벽을 보여 주는 것으로 느껴진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이나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곧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정당 내 청소년 기구 등의 기반을 가지고 청소년에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경우는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후보들 정도였다. 그리고 그나마 이러한 조직들도 선거나 정치 활동에 유의미할 정도의 자원을 갖추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청소년들의 경우도, 앞으로 나서는 얼굴격의 역할을 맡은 것이지 선거에서 결정권을 가지

2) 〈연합뉴스〉, 첫 출마 10대 후보 7명 공약은…청소년 인권·복지에 관심, 2022년 5월 19일.
3) 〈고양신문〉, 헌정사상 첫 10대 시의원, 아빠찬스로 공천됐나? '법적공방', 2022년 7월 16일.

거나 정책·공약·메시지 등에 유의미하게 개입할 수는 없는 위치가 대다수였던 걸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개개인의 출마나 임명 사례들을 청소년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일상적 참여와 활동에 부정적인 조건

이러한 한계는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가 극소수 개인만의, 정당 상층부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야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는 법률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 모니터링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평균 2.81점으로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아동·청소년의 정치활동 여건'은 한층 더 낮은 평균 1.88점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인식, 발언권을 주지 않고 편견을 가지는 경우, 관련된 교육 및 기반의 부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입시 외 활동의 어려움,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이 거론되었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학교 환경부터가 정치 참여에 우호적이지 않다. 2020년 3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533개 중고교 학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중 54.8%가 정당 및 정치적 단체 활동,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는 내용의 학칙은 약 70%의 중고교에서 발견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이후에 학칙을 개선한 경우에도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법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거나 "법률이 보장한 경우에만 정당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바뀐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등 참여권을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이다.

보편적으로 정치 참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금지와 처벌 위주로 운용되는 「공직선거법」도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는 청소년들이 선거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고 참여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생활 중이어도 만 18세 생일이 지난 사람만 특정 후보·정당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선거법은 황당하기까지 하고, 일상적 토론까지 옥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예를 살펴보자. 한국에서도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이나 지역·학교 동아리 차원의 활동이 몇 년 전부터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후정의운동의 주요 방법 중 하나인 파업·등교거부(결석시위)는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이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지만 학교나 교사에 따라선 '시위를 하는 건 체험학습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결석시위에 참가하는 학생 수가 많아진다면 학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꼭 결석시위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기후 위기 관련 수업 이후 행동에 나서서 수원시의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 사례는 언론 및 보수단체에 의해 '아동학대', '사상강요'라며 공격받고 신고를 당했다.[4] 바로 최근에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아동 동원이라는 등의 공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5] 어린이·청소년들이 기후 위기 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어른의 조종을 받은 것이라는 등의 비난을 당하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다음은 2020년대에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의 이야기다.

> 고등학교에서 체감하기로는,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입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니까 참정권과 관련한 교육 영상을 틀어 놓긴 하는데, 그러고 자습을 시킨다. 참정권 관련 학습보다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고 성적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도 학교는 입시를 더 중요시했다. 선거가 있던 3월과 6월, 학교에서는 선거일에도 집에서 쉬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략)
>
> 학생들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식 탓에 참정권과 관련한 교육을 들을 때도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한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정치적인 말을 하거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마냥 여겨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어리기에 정치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남을 선동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하

4) 〈파이낸스투데이〉, "전교조 교사, 무더위에 학생들에게 길바닥에서 죽은 시늉 강요?", 2023년 7월 16일.
5) 〈CBS노컷뉴스〉, 오염수 간담회에 초등생 '활동가' 부른 野에 김기현 "아동학대", 2023년 8월 9일.

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침받는다.[6)]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건 주요 정당들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 당원들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학교'를 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618위원회를 전국청년당 산하에 설치했다. 정의당 등도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치인' 개개인을 내세우는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모습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인 과정이겠으나, 이는 정치와 정당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점차 늘려나가고 조직화하는 것이 되어야지, 소수의 '예비 정치인'을 양성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향식 민주적 운영이 빈약하고 국회의원·명망가 위주로 운영된다고 평가되는 한국 주요 정당들의 구조를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지만 말이다.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은 정부의 책무

다른 한편,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확대하고, 그 권리의 실질적 행사이자 실현으로서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킬 책무를 가지는 가장 주요한 주체는 바로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청소년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소년 참여권을 위축시키는 사건이 여럿 일어났다. 〈윤석열차〉 만평 사건이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탄압이 대표적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도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및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시키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의 여러 청소년 사회·정치 참여 관련 사업들이 줄줄이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

6) 민서연, 〈청소년 참정권, 확대됐지만 변하지 않은〉, 《오늘의 교육》, 72호, 2023년 1·2월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정부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앞서 청소년 참여 활동, 정치 활동의 여건에 부저적인 여건으로 꼽힌 것은 매우 다양했다.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 등 문화의 차원도 있었고, 시간과 예산의 부족, 교육제도의 문제 등도 있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청소년 참여권의 실현은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자유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의 개정 이후로, 정부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청소년 등 여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거의 보이지를 않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반대로 청소년 정치 참여에 적대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적극적인 정책이 나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치를 포함하여 사회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치 참여 관련 제도만 손보는 것으로는 반쪽짜리 변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참여권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활 전반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첫 단추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 참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공현, 2020,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공현·둠코, 2016,《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교육공동체 벗.

민서연,〈청소년 참정권, 확대됐지만 변하지 않은〉,《오늘의 교육》, 72호, 2023년 1·2월호.

인권교육센터 들, 2020,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연구보고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보도자료] 중고교 절반 이상에 정치활동 금지 규칙,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규칙 존재, 2020년 3월 29일.

“어린게 뭘 아냐고요? 정치 5년차입니다”,〈한겨레21〉, 1416호, 2022년 6월 4일.

“선거권은 하향됐지만... '청소년 없는 청소년 정치'”,〈오마이뉴스〉, 2022년 8월 23일.

# 발 표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1. 들어가며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참여권 관련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오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동 인권 영역에서도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사건과 그로 인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학교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어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초석이 만들어진 동시에 보호출산제의 통과로 그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 영역에서는 심각한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주민발안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던 중 2023년 교사의 교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서 이슈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권에 대한 논의는 교사가 처한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마치 상충하는 것과 같은 대립적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논의로 집중되었습니다.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노동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아동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만 관련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가 가볍게 여겨지고 쉽게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권리로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하는 의문을 더욱 진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론은 학생의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학생에게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은'미성숙한 존재','부모나 비 청소년에 의해 쉽게 영향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편견과 프레임에 오랫동안 갇혀 '유예된 존재'로 너무나 많은 권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자기 삶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 학교와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학교 영역에서의 참여권 보장

2023 아동 인권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이하 '모니터링 결과보고'라 합니다)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의 참여에 대한 보장은 형식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O'Donoqhue(2002)에 따르면, 청소년참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기 쉽다고 지적하였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각종 위원회나 회의에 참가시키면 그것이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주기보다는 의회나 위원회에 배치된 것 자체로 의미를 두는 명목화(tokenism)나 장식화(decoration)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배타성(exclusivity)으로서, 청소년 중 가장 재능이나 능력이 있거나 특권이 있는 청소년들만 참여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회의나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김경준 외, 2004 재인용).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표결권을 주며,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및 선정은 모두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참석이 생활기록부 기재용이나 스펙 쌓기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참여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정치적 참정권 영역에서의 참여권 보장

## 가. 선거운동의 자유

###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1])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게 됩니다(제255조 제1항). 이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청소년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례[2]도 있었고, 한 교실에서 18세 이상 청소년과 18세 미만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이들 사이의 대화가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받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만 18세 생일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선거 당일에는 선거권을 행사하더라도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고[3],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18세 청소년도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내·외 각종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받는 사례[4]를 보면 학생이라는 이유로

---

1)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 연령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임.

2) 만 14세 청소년이 어깨띠를 매고 2회 선거운동을 한 사례(한겨레, “법의 이름으로 비웃지 마세요…만 14살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2020. 11. 8.).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8976.html (2021. 2. 4. 확인)
만 16세 청소년이 부모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뽑을 것을 설득하고 이를 SNS에 공유한 사례(민중의 소리, ”청소년에게는 선거운동도 19금, 지지의사 표시했다고 경찰 소환된 16세” (2018. 7. 5.).
http://www.vop.co.kr/A00001306692.html (2021. 2. 4. 확인)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2020), 1면.

4) 대표적인 것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의 전면적 금지와, 학내에서의 선거운동을 학칙에 의해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문제이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 2) 개선 방안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비청소년 중심의 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선거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참여 경험이 보장될 때 선거교육의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하여 2021. 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전)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 16세 하향 등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사전)투표·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삭제하자는 법안들[5]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선거운동 연령 제한을 삭제하거나 기준연령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 18세 선거권 하향 이후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의 현황과 관련하여, 학칙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모니터링과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5) 특히 강민정 의원은 선거권 연령 하향의 취지에 맞추어 선거 참여권 보장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개표 참관을 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나. 참정권 관련 교육의 활성화

### 1) 현황 및 문제점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치 활동 등에 대한 학교 내 교육의 정도는 현재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참정권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형식이고 내용이라면 실질적인 참정권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 2) 개선 방안

이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참정권 관련 교육을 교과 범위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이 자칫 형식적인 교육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메타버스를 통한 모의체험 등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료 개발에서도 학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다. 정당 활동의 자유

###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연령기준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정당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각 정당의 재량과 자율로 정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정당 구성원의 정당 결성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2) 개선 방안

정당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현실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창구라는 점, 정당 가입 및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당이 청소년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정당 활동의 자유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해외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 가입 연령에 관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해서 각 정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연령의 제한을 정하는 경우에도 14, 15, 16세 정도로 정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외국의 정당 가입연령 현황][6)]**

| 국가 | 정당가입 연령 | 근거 | 선거권 연령 | 민법상 성인연령 |
|---|---|---|---|---|
| 영국 | 보수당 : 제한없음 | 보수당 당헌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 노동당 : 14세 이상 | 노동당 당헌, 당규 | | |
| 독일 | 기민당 : 16세 이상 | 기민당 당헌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 사민당 : 14세 이상 | 사민당 당헌 | | |
| 프랑스 | 대중운동연합 : 제한없음 | 대중운동연합 당규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 사회당 : 15세 이상 | 사회당 당헌 | | |
| 미국 | 대부분의 주에서 당원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음 | | 18세 이상 | 18세 이상 (주별로 상이) |

따라서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없애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이석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연구원 (201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한 현재 당원 가입 시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부모 기타 법정대리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정치활동에 편견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경우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통한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청소년의 정당 활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이 높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각 정당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청소년 당원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만들고, 정당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3. 마치며

저는 청소년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청소년 정책이 변화하고, 청소년의 삶도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청소년이 더 이상 '유예된 존재'나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의 존재'이자'현재세대'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비청소년들이 자신의 책무로서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수거 조항 개정을 둘러싼 자치활동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고영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및 전북동화중학교 교사)

## 1. 사안 진행 경과

전북동화중에서 올 4월에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월요일 등교 때 수거해서 금요일 하교할 때 반환하는 생활규정을 학생인권 침해로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신고했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생활규정을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맞게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은 휴대전화 없는 학교, 공동체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돌려주면 전학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반발이 있으면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규정개정심의위원을 강경한 입장의 사람들로 교체한 후 전북교육인권센터를 항의 방문하기도 하고, 개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고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수거를 밀어붙였다. 국가인권위 결정에서 이미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해도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이기 때문에 수거는 힘들다고 사전 교육에서부터 강조했지만 이는 권고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러 차례 설득을 통해 개정되는 규정에는 수거 부분은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 동의를 얻고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예시안을 그대로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때가 6월 말이어서 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전 규정은 인권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해라는 판단이 나왔으므로 일단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교장에게 건의하였다. 교장은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방학 2주 전에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돌려줬다.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합의 사항 중 하나가 3주체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전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양육자들과의 논의 없이 휴대전화를 나눠준 것은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규정이 없으므로 잘못되었더라도 예전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걷으려고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장이 직접 물어보고, 관련 학생회의를 담임 대표교사가 진행하는 방식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이뤄졌고 그 결과로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담임이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돌려주는 것을 담임 판단에 따라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학기에 다시 도교육청 예시안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교육활동을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으로 해석하고 휴대전화를 사용에 관한 실질적 내용에 관한 발제문을 양육자 대표가 학생들에게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양육자 대표가 전체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제했다. 원래 수업시간 외 사용할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게 사용하면 임시로 수거할 수 있다는 해석 정도까지가 합의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발제내용은 교육활동을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으로 하면 기숙학교라서 월요일 등교해서 금요일에 하교할 때까지 모두 교육활동 시간이므로 소지는 할 수 있어도 쓸 수가 없게 되니 그냥 내라는 내용이었고, 학생회장도 그 내용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화가 난 일부 학생이 발제를 듣고 안 들키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설명하던 양육자가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며 그럴거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수정안을 만드는 회의에서 양육자들은 인권부장(발표자)이 지나치게 인권만 주장하여서 학생들의 인성이 나빠지고 있고, 법만 강조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 역시 법 때문에 기본생활이 망가지고 있고, 인권이 필요없다는데 왜 인권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였다. 한 양육자가 인권은 국내법

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잘못된 내용을 배우면 안 되니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정정하면 좋겠다고 하니, 근거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구하였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가 20% 정도 있으니 지금은 권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회의는 9월 18일 열렸다.

## 2. 문제점 및 대안

- 작년까지 학생생활규정의 문제점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학생의 참여의 기본이 되는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인권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재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서 삭제하고, 인권교육을 정비한다면서 일년 가까이 안내를 하지 않다가 현재는 기존의 인권강사단을 별다른 통지도 없이 해촉하고 인권교육을 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인사들을 강사단에 포함시킨 상태다. 자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줄이면서 오히려 학생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자치역량은 늘리지 않고 자치하는 척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일거에 인권교육을 축소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에서 어느 후보라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후보들에게 알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회 구성 자체가 순응적인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학생회가 단일한 하나의 학생집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처럼 학생회장을 배출하지 않은 학생집단을 대변하는 성격의 학생회 조직이 하나 이상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회 견제 세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회장 선거에서 득표 2위 후보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회 조직을 구성하여 학생회장의 학생회 운영을 견제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생회에서의 공개적인 발언은 다른 학생들의 양육자에게 옮겨지고 그 발언은 다시 자신의 양육자에게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양육자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사회의 힘이 매우 강한데, 규정이나 제도만으로 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순진한 것이다. 현재 국내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보면,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지배적 의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내용이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판결에도 여전히 대안입법이 되지 않고 사회의 압력에 의해 여성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교육과정에 넣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학부모회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 자치기구에서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기본교육과 인권 기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많고, 교육을 받아도 평상시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가 쉽고 고쳐지지 않아 학생을 대하는 자세가 권위적이거나 시혜적인 경우가 많다. 전라북도교육인권센터가 최근 개정된 학생생활규칙 예시안을 발표했는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분석 등의 사전 절차를 오히려 생략하면서 더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발표자가 전북외고에 있을 때도 관련 규정에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모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던 적이 있다. 충분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민주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 이와 같은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육자들 위주로 참석하게 되는 것 역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지배적 의견에 벗어난 의견의 경우는 소수의 의견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는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배척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위험을 경험했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가해에 대한 사회의 반성이 없었던 상태가 현대사를 관통해서 흘러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가해의 경우에도 일부 과한 행동을 한 일부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집단적 책

임을 묻지 않는 현상을 현재에도 학교폭력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폭력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결국 폭력적 문화를 유지한 채로 일부 구성원을 희생양 삼아 그 존속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사 진상 규명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가 그 반성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

- 회의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며 규정개정심의위원의 50%를 학생으로 구성했지만, 양육자들과 교사들 간의 토론 중에 간혹 학생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어 전혀 평등한 분위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역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등한 분위기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과 같은 내용의 문화가 학교에 널리 퍼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일부 교사들은 교육적으로 옳은 목적이라면 절차상의 사소한 흠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교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인권친화적 절차는 오히려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의 자치권을 교육청이나 중앙인권기관이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듯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교사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하지 않냐고 주장하는 학생의 의견에 대해 교사들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고 의장이 제지하는 일을 있었다. 회의 진행 시 예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의견 표명의 권리가 쉽게 제지당하는 면이 많았다. 예절이 만약 상호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괜찮을 텐데, 일방적 존중이 예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평등한 토론과 참여의 문화는 생겨나기 힘들 것이다.

- 학생자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교사나 양육자의 경우 관련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개입했다고 주장하면 면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자치권 보장이 더 어렵다. 자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개입에 대한 행정상 조치 정도의 낮은 수준의 징계를 통해 교사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양육자의 경우 자치활동 참여 일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 3. 마무리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가져와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의 기저에는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깔려있다. 교사와 양육자들의 다수가 학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한 자치권을 인정할 리가 없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학생 자치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사와 양육자들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시 학생의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는 등의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 내부 역시 다수에 의한 억압을 막고 학생 의견의 다양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학생회 견제 세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2023 아동인권 정책·현장 모니터링
##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

**양오석** (국민의힘 광진(갑) 당원협의회 청년특별보좌관)

## [서론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광진(갑) 당원협의회 청년특보 양오석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각 분야의 훌륭하신 분들과 토론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사견을 밝힙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게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당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체크리스트와 심층인터뷰에 기반한 분석 결과와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현시점의 당 차원에서의 노력을 본론부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론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본론부]

저희 국민의힘은 현직 교사와 일반 학생, 정치와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서울 소재 현직 초등교사의 의견입니다. 참여권과 관련한 교육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간 확보의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여권과 관련한 교육은 교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학교에서 법정의무교육 시간과 같은 요소들이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참여권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된 좋은 교육 사업들도 실제로 많이 사장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소재 학교 일반 학생의 의견입니다. 정치의 입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참정권에 있어 청소년들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올바른 참여관 인식에 차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치 참여를 위한 시·공간적 제약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참여하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 단체의 의견은 어떨까요? 일반 학생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청소년 위원들이 아동·청소년 정치 참여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인프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및 교육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첨언하여 대한민국이 청소년의 존재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정치와 행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주장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자들의 의견입니다. 놀랍게도 당 차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보았지만, 과거와 견주어 현재는 개선되고 있는 양상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민선 8기에 당선된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나이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으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이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고양시 시의원에서 20세 미만의 나이로 국민의힘 천승아 후보가 당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꾸준히 당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소년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보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있고, 끊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저희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 체제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요, 당의 중론을 결정하는 혁신위원에 청소년이 발탁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노력은 지역 행정에서도 이어집니다. 광진구를 예시로 제1회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통해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29명이 위촉되어 직접 정책이나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협 차원에서

대원여고, 대원외고, 광남중학교 등 바로 며칠 전에는 광장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함께 참여권과 관련한 소통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결론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학생이 할 일은 공부"라는 명분에 참여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실에 직면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과 시·공간적 제약의 해결방안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장되는 좋은 교육들도 줄여나가도록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발 표

**이정찬**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 - 아동·청소년의 정당, 정치참여

2022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 이후 청소년의 정치 문턱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당입당의 경우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제한이 남아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만18세로의 연령하향은 크나 큰 성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실로 맺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당가입 연령 완전 폐지와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등 아직까지 바꾸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당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여러 정당들에는 청소년 당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민주노동당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청소년녹색당과 정의당 등 청소년들은 대게 진보정당들에 잔류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까지 원내정당 대부분이 지역조직이나 중앙조직에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당원들의 조직, 교육사업과 자발적인 참여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써 청소년의 정치 진입 문턱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정의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만16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서 법정대리인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입당 신청 시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정당법 제23조 1항을 악법조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당원제도를 운영하여 만14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비당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정당참여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당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당 활동을 이어가도 선거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선거운동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 활동을 함께한 당원 동지여도 선거 때엔 당원들과 함께 당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에 대해 독려하기 위해선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독일의 지방선거는 10개의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사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선거연령의 제한은 자기결정권의 침해와도 같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출마했습니다. 지역 시·군·구의원 선거에 경주시의원 선거, 무안군의원 선거, 고양시의원 선거에 각각 출마했고, 시·도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서울시의원 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청소년 후보자들은 이들이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여러 선거에서도 많은 청소년 후보자들이 출마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진입장벽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게 현실화 되었고 제도가 개선되면 여러 선거들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 아동·청소년의 청소년 활동참여

정당과 정치, 선거 전선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별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와 아동·청소년의회 등이 있습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정치  활동 보단 단순하고 접근성도 쉬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해서 청소년정책 수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도적 기구입니다. 제도에 기반 되어 있고 지자체가 맡아 운영하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안정적임과 동시에 지자체에 정책 제안, 봉사시간 지급 등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해당 지자체에 청소년 관련 사업·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위에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법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한다 해도 지자체 입장에선 딱히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친화적인 지자체는 연합활동과 청소년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을 잘 운영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도적으로 활동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합니다. 현장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작성한 말이지만 정책을 제안 받는 피제안자들이 청소년

들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청소년의회 활동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를 예로 들자면 다른 지역의 청소년의회는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청소년들만 선발했다면, 이곳은 의회 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정당을 만들어 광주 청소년들이 투표해 투표 득표 수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완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동·청소년의회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자면 민주성을 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하면 관련 부서가 신중하게 검토해 실현되게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참여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위 관료들에 정책제안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계속 언급하였듯 잘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제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명목적인 활동들뿐이고 아무리 청소년들이 잘 참여해도 제안들이 수렴되지 않으면 참여권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의 표현과 살아갈 방식을 정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으니 참여권과 자기결정권의 침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법이 바뀐다고해서 더 나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들을,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여권이 더욱 진보하려면 존중의 문화와 그들의 결정을 인정하는 방식,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을 강화해야합니다. 누군가 아동·청소년을 미래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이들의 참여와 권리가 완전 보장되는 날까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힘쓰겠다는 말씀드리며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 표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세상

세션 7

#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활동소개

# 활동소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이란?

# Lens of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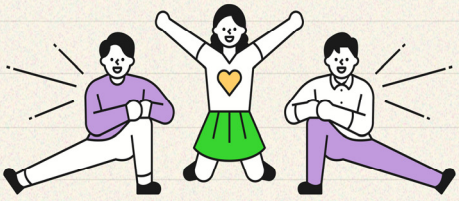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관점(LENS)으로부터 출발

당사자의 주도로
능동적인 모니터링 활동 진행

궁극적으로 아동 스스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
아동권리 수준의 도약을 도모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목표

### 아동의 권리주체성 강화

아동권리 관련 주제에 대해
권리주체의 당사인 아동들이 직접 실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주체성 강화"

### 아동의 역량 향상

아동이 자신 주변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
아동이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 등 향상

LENS

###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실현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입각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 권리주체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 및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

### 아동권리 수준의 도약

아동 참여권을 실질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의 수준 도약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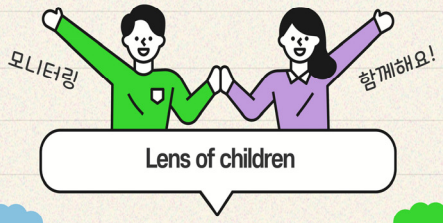


**모집권역**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모집대상**
만 10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활동인원**
단원 : 168명
코디네이터 : 20명

**활동기간**
7월 ~ 10월

**활동내용**
공통주제 모니터링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진행
권역별주제 모니터링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진행과정

**준비 단계**
[~6월]
- 모니터링단 홍보 및 모집
- 모니터링단(아동, 코디) 선발
-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체크리스트 자문회의

**진행 단계**
[7월 ~ 10월]
- 발대식 진행
- 모니터링 권역별 주제 선정
- 체크리스트 문항 선정
- 권역별 모니터링 진행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설문 진행 및 결과 분석

**마무리 단계**
[11월]
-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공통주제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권역별 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공통주제)관련

| 조이름 (권역) | 주제 |
|---|---|
| 불사조 (서울2-2) | 학교에서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 방안 -학교 내부 건의함 설치를 중심으로- |
| 포에버드림 (서울2-3) | 진로, 휴식에 관한 결정에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가? |
| 카프리썬 (전남1) | 참여기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률 |
| 경남즈 (경남) | 아동·청소년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
| NLCS (제주1) | 아동의 정치 참여율과 교육의 연관성 |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권역별 주제

###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관련

| 조이름 (권역) | 주제 |
|---|---|
| LENS US (전북) |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의견 |
| 징징컴퍼니 (서울2-1) |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
| 기억해 (서울1) | 노키즈존 문제(아동 인권 침해) |
| 안성초프렌즈 (경기1) | 가정 내 아동학대 |
| 라이트빌더 (경기2) | 아동학대 -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개선 방안 |
| 감자 (강원) |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 |
| 세렌디피티 (전남2) |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권역별 주제

###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관련

| 조이름 (권역) | 주제 |
|---|---|
| DHI 인연동 (경북2) |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가 |
| 우리가이기조 (충남2) | 인권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 |
| 다함께 (충남1) | 아동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알아보고, 널리 알리기 |
| 은광 (서울3) | 아동의 놀 권리 - 놀이공간 모니터링 |
| 안양외고 (경기3) |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 청자 (경북1) | 노래방, PC방에서의 시간 제한 |
| c_lens_w (충북) |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권 침해 |
| Youth Activists (제주2) | 장애 아동의 교육권 (신체장애 & 정신장애) |

I
LENS
Thank you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공통주제 발표

#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Ⅰ. 아동·청소년 참여권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 1. 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된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이며, 체크리스트는 조사대상의 연령대와 학교급에 따라 아동용(10세~12세 또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청소년용(13세~18세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 진행하였다. 총 1,5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중복응답 등을 제외한 총 1,500부의 설문지에 대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담은 도입부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묻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크리스트의 도입부에는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생년월일 및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여 학교에 관련된 질문과 부모 등 보호

자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그다음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관한 체크리스트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체크리스트 문항구성**

| 문항주제 | | 문항 응답 양식 |
|---|---|---|
|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⑤ 매우 관심이 많다'의 5점 Likert 척도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 '① 전혀 모른다' ~ '⑤ 잘 알고 있다'의 5점 Likert 척도 |
| | 권리교육 여부 | ① 있다 / ② 없다 |
| | 인권교육 필요 정도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매우 필요하다'의 5점 Likert 척도 |

본문에서는 가정에서의 참여권, 학교에서의 참여권, 사회에서의 참여권, 이렇게 총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배치하였다. 첫째, 가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측정도구는 김한진(2002)과 홍승애(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좀 더 쉬운 표현과 시의성을 반영한 어휘를 사용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둘째, 학교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측정도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참여권 관련 조항의 분류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연구(홍승애, 2003; Takaaki, 2002)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셋째, 사회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측정도구는 천정웅(1998)과 홍승애(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영역 분류를 기초로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총 55문항(아동용 3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해능력과 각기 다른 학교제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분류하여 아동용은 39문항, 중고등학생 및 해당 나이의 아동들은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용 55문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예비조사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참여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5, 학교에서 참여 척도의 신뢰도는 .893, 사회에서 참여 척도의 신뢰도는 .841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실시 후 조사결과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재구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인권 당사자들의 의견, 아동 인권 관련 전문 자문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조사에 사용된 각 척도의 하위영역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 문항은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이다. 첫 번째 하위영역은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 생활 참여 영역이다. 가정의 중요한 결정 과정 참여와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 모임 참여 시 의견 존중, 가족구성원이 아동·청소년과 소통을 통해 맡은 집안일 하기와 관련된 영역이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가정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영역으로, 방과후 동아리 등 참여여부와 활동 종류 결정, 학원 결정, 하교 후 공부 및 휴식시간 스스로 정하기, 아동·청소년의 선호도 존중과 관련된 영역이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사생활 존중 영역으로, 사고 싶은 물건 결정할 때 의견 존중, 아동·청소년의 SNS 등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존중, 외모 관련 의견 존중, 취미 활동 결정 존중, 용돈 사용 존중과 관련된 영역이다. 네 번째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 영역은 미래 직업에 대한 의사소통, 종교활동의 자유,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각각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하위영역 | 문항수 | 문항구성 | 신뢰도 | |
|---|---|---|---|---|
| 가정 내 생활 참여 | 3문항 | 1, 2, 3 | .720 | .875 |
| 교육 참여 | 4문항 | 4, 5, 6, 7 | .723 | |
| 사생활 존중 | 5문항 | 8, 9, 10, 11, 12 | .790 | |
| 가정 참여 기타 | 3문항 | 13, 14, 15* | .613 | |

※ 문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통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 (2)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첫 번째 하위영역은 수업 영역 참여이다. 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아동·청소년과 교사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의사존중이 이루어지는 등 수업과 관련된 참여 활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학급 운영 참여 영역으로, 학급 임원 선출, 학급 회의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표명하고, 학급운영 관련 토론의 상시 참여, 학급운영 관련 학생의견 반영 등 학급 단위에서 자신의 학급을 만들어 나가는데 관련된 영역이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학교 운영 참여로, 동아리 및 방과후 활동에서 학생의 의견 반영,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행사의 일정 및 장소 등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학교 규칙에 학생 의견 반영, 학교생활 관련 의견제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참여 영역이다. 네 번째 하위영역은 학교 활동 참여로, 자기주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요 안하기, 학교공식 매체를 통한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의 제공, 학생자치회의실 등 의견 나누는 공간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영역은 학교 참여 기타로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영역이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5개 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하위영역 | 문항수 | 문항구성 | 신뢰도 | |
|---|---|---|---|---|
| 수업 영역 참여 | 1문항 | 1 | - | |
| 학급 운영 참여 | 5문항 | 2, 3, 4, 5*, 6 | .804 | |
| 학교 운영 참여 | 5문항 | 7, 8, 9, 10*, 11 | .819 | .907 |
| 학교 활동 참여 | 4문항 | 12*, 13, 14*, 15 | .694 | |
| 학교 참여 기타 | 1문항 | 16* | - | |

※ 문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통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은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영역은 정책과정 참여로, 지역사회나 국가의 아동정책과 행정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 정책 및 현상에 대한 정보 접근,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방식 변화 모색, 아동·청소년의 의견 공식매체에 표명, 청소년 단체 참여 등과 같은 참여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지역 중심 참여로, 자신의 생활거점인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나 모임 참여 활동, 지역 현안 관련 청소년 설명회 개최, 청소년 의회 등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단체자율 참여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동아리 활동 참여 등 조직적·집단적인 프로그램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된 활동이다. 네 번째 하위영역은 정치적 참여로, 청소년이 선거참여[1]와 정당가입이 가능[2]해졌기 때문에 선거권과 투표, 정당관련 참여 등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 번째 사회 참여 기타 영역은 나와 타인의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하위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하위영역 | 문항수 | 문항구성 | 신뢰도 | |
|---|---|---|---|---|
| 정책과정 참여 | 5문항 | 1, 2*, 3*, 4, 5 | .745 | |
| 지역중심 참여 | 5문항 | 6*, 7*, 8, 9, 10 | .834 | |
| 단체자율 참여 | 1문항 | 11 | - | .906 |
| 정치적 참여 | 6문항 | 12*, 13*, 14*, 15*, 16*, 17* | .723 | |
| 사회 참여 기타 | 2문항 | 18, 19 | .731 | |

※ 문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통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1) 2019년 12월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 선거참여 가능.
행복한 교육(2020년 2월호). 만 18세 선거권 갖게 된 청소년들.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52&nttId=9799

2) 2022년 1월부터, 만 16세 이상 청소년 정당가입 가능.
연합뉴스(2022년 1월 11자 기사).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학교 현장선 기대·우려 교차.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18200530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참여권의 세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의 참여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과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분석 결과

### 1)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사항

본 조사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5〉와 같다. 먼저 성별은 총 1,500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은 458명(30.53%), 여성은 1,034명(68.93%), 기타 성별은 8명(0.53%)으로 나타났다. 전체 1,500명 중에 아동은 431명(28.7%), 청소년은 1,069명(71.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도는 경기도 335명(22.3%), 제주특별자치도 191명(12.7%), 서울특별시 160명(10.7%), 강원특별자치도 113명(7.5%), 부산광역시 88명(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9명(0.6%), 대전광역시 28명(1.9%), 충청남도 33명(2.2%) 순으로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항

| 기본정보 | 구분 | 조사 참여자 | | |
|---|---|---|---|---|
| | | 아동N(비율) | 청소년N(비율) | 전체N(비율) |
| 성별 | ① 남 | 178 | 280 | 458(30.53%) |
| | ② 여 | 251 | 783 | 1,034(68.93%) |
| | ③ 기타 | 2 | 6 | 8(0.53%) |
| | 전체 | 431(28.7%) | 1,069(71.3%) | 1,500(100%) |
| 생활하고 있는 시·도 | ① 서울특별시 | 70 | 90 | 160(10.7%) |
| | ② 부산광역시 | 35 | 53 | 88(5.9%) |
| | ③ 대구광역시 | 15 | 39 | 54(3.6%) |
| | ④ 인천광역시 | 5 | 32 | 37(2.5%) |
| | ⑤ 광주광역시 | 42 | 40 | 82(5.5%) |
| | ⑥ 대전광역시 | 9 | 19 | 28(1.9%) |
| | ⑦ 울산광역시 | 25 | 14 | 39(2.6%) |
| | ⑧ 세종특별자치시 | 1 | 8 | 9(0.6%) |
| | ⑨ 경기도 | 61 | 274 | 335(22.3%) |
| | ⑩ 강원특별자치도 | 63 | 50 | 113(7.5%) |
| | ⑪ 충청북도 | 7 | 34 | 41(2.7%) |
| | ⑫ 충청남도 | 11 | 22 | 33(2.2%) |
| | ⑬ 전라북도 | 8 | 77 | 85(5.7%) |
| | ⑭ 전라남도 | 25 | 36 | 61(4.1%) |
| | ⑮ 경상북도 | 35 | 28 | 63(4.2%) |
| | ⑯ 경상남도 | 8 | 73 | 81(5.4%) |
| | ⑰ 제주특별자치도 | 11 | 180 | 191(12.7%) |
| | 전체 | 431(28.7%) | 1,069(71.3%) | 1,500(100%) |

### 2)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 = 1점', '매우 관심이 많다 = 5점'

Likert 척도로 나타내었을 때 평균 3.72(SD=0.89)로 조사되었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는 평균 2.91점(SD=1.17)으로 나타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아는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3.8%(507명)로 제일 높았다. 셋째, 권리교육 여부는 '있다'를 1점, '없다'를 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0.86점(SD=0.35)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29점(SD=0.81)으로 확인되었다.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5점)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7.1%(706명)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문항 응답수와 비율, 그리고 권리의식 하위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 권리의식 | 구분 | 조사 참여자 | | | 평균(M) |
|---|---|---|---|---|---|
| | | 아동N(%) | 청소년N(%) | 전체N(%) | (표준편차, SD) |
|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18(4.2) | 8(0.7) | 26(1.7) | 3.72 (0.89) |
| | ② 관심 없는 편이다 | 37(8.6) | 46(4.3) | 83(5.5) | |
| | ③ 보통이다 | 150(34.8) | 315(29.5) | 465(31.0) | |
| | ④ 관심이 있는 편이다 | 169(39.2) | 475(44.4) | 644(42.9) | |
| | ⑤ 매우 관심이 많다 | 57(13.2) | 225(21.0) | 282(18.8) | |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 ① 전혀 모른다 | 91(21.1) | 141(13.2) | 232(15.5) | 2.91 (1.17) |
| | ② 모르는 편이다 | 70(16.2) | 209(19.6) | 279(18.6) | |
| | ③ 보통이다 | 125(29.0) | 382(35.7) | 507(33.8) | |
| | ④ 알고 있는 편이다 | 101(23.4) | 256(23.9) | 357(23.8) | |
| | ⑤ 잘 알고 있다 | 44(10.2) | 81(7.6) | 125(8.3) | |
| 권리교육 여부 | ① 있다(1점) | 373(86.5) | 920(0.9) | 1,293(86.2) | 0.86 (0.35) |
| | ② 없다(0점) | 58(13.5) | 149(0.1) | 207(13.8) | |
| 인권교육 필요 정도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1.4) | 5(0.5) | 11(0.7) | 4.29 (0.81) |
|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15(3.5) | 13(1.2) | 28(1.9) | |
| | ③ 보통이다 | 80(18.6) | 103(9.6) | 183(12.2) | |
| | ④ 필요한 편이다 | 168(39.0) | 404(37.8) | 572(38.1) | |
| | ⑤ 매우 필요하다 | 162(37.6) | 544(50.9) | 706(47.1)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권리의식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권리의식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F=5.19, p<.01), 인권교육의 필요정도(F=22.89, p<.001)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권리의식 전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권리의식의 하위문항은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t=-6.37, p<.001),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t=-6.51, p<.001)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권리의식(t=-5.32, p<.001)도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평균 비교**

| 변인 | | 구분 | 권리의식 | | | | 권리의식 전체 |
|---|---|---|---|---|---|---|---|
| | | |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 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 권리교육 여부 | 인권교육 필요 정도 | |
| 아동 청소년 변인 | 성별 | ① 남 | 3.60(0.99) | 3.02(1.22) | 0.87(0.34) | 4.09(0.90) | 2.89(1.54) |
| | | ② 여 | 3.76(0.84) | 2.87(1.14) | 0.86(0.35) | 4.38(0.74) | 2.97(1.56) |
| | | ③ 기타 | 3.63(1.06) | 2.38(1.06) | 0.75(0.46) | 3.75(1.39) | 2.63(1.58) |
| | | F | 5.19** | 3.42* | 0.47 | 22.89*** | 3.90* |
| | | 사후검증 결과 | 남<여** | - | - | 남<여*** | - |
| | 연령대 | ① 아동 | 3.49(0.97) | 2.85(1.28) | 0.87(0.34) | 4.08(0.91) | 2.82(1.53) |
| | | ② 청소년 | 3.81(0.84) | 2.93(1.12) | 0.86(0.35) | 4.37(0.75) | 2.99(1.56) |
| | | t | -6.37*** | -1.17 | 0.24 | -6.51*** | -5.32*** |

*p < .05, **p < .01, ***p < .001

### 3)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가정에서 하위영역 문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표 8〉과 같다. 사생활 존중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M=3.36, SD=0.76), 그다음이 교육 참여(M=3.30, SD=0.82), 가정 참여권 기타(M=3.17, SD=0.94) 순이었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용돈 사용의 의견 존중(M=3.55, SD=0.68), 방과후 동아리 등 참여여부와 활동 종류 결정(M=3.53, SD=0.71), 아동의 사생활 존중(M=3.38, SD=0.84), 취미 활동 결정 존중(M=3.38, SD=0.73), 학원 결정(M=3.35, SD=0.81)의 순으로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의 선호도 존중(M=3.03, SD=0.84),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M=2.97, SD=0.97), 소통을 통해 맡은 집안일 하기(M=2.90, SD=0.84)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낮게 나타났다.

**〈표 8〉 가정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하위영역 | 문항내용 | 평균 M (표준편차 SD) |
|---|---|---|
| 가정 내 생활 참여 | 가정의 중요한 결정 과정 참여와 의견존중 | 3.22(0.74) |
| | 2. 모임참여 의견 존중 | 3.04(0.84) |
| | 3. 소통을 통해 맡은 집안일 하기 | 2.90(0.84) |
| | 전체 | 3.05(0.82) |
| 교육 참여 | 4. 방과후 동아리 등 참여여부와 활동 종류 결정 | 3.53(0.71) |
| | 5. 학원 결정 | 3.35(0.81) |
| | 6. 하교 후 공부 및 휴식시간 스스로 정하기 | 3.30(0.83) |
| | 7. 아동의 선호도 존중 | 3.03(0.84) |
| | 전체 | 3.30(0.82) |
| 사생활 존중 | 8. 사고 싶은 물건 결정할 때 의견 존중 | 3.22(0.74) |
| | 9. 아동 사생활 존중 | 3.38(0.84) |
| | 10. 외모 관련 의견 존중 | 3.28(0.76) |
| | 11. 취미 활동 결정 존중 | 3.38(0.73) |
| | 12. 용돈 사용 존중 | 3.55(0.68) |
| | 전체 | 3.36(0.76) |
| 가정 참여 기타 | 13. 미래 직업에 대한 의사 소통 | 3.25(0.85) |
| | 14. 종교 활동의 자유 | 3.23(0.97) |
| | 15.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2.97(0.97) |
| | 전체 | 3.17(0.94) |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 참여(F=7.78, p〈.001), 사생활 존중(F=6.25, p〈.01)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가정에서의 참여권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29, p〈.05),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은 교육 참여(t=-7.98, p〈.001), 사생활 존중(t=-5.34, p〈.001)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가정에서의 참여권(t=-4.84, p〈.001)도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9〉 아동·청소년의 가정에서 참여권의 평균 비교**

| 변인 | | 구분 | 가정에서의 참여권 | | | | 가정 참여권 전체 |
|---|---|---|---|---|---|---|---|
| | | | 가정 내 생활 참여 | 교육 참여 | 사생활 존중 | 기타 | |
| 아동 청소년 변인 | 성별 | ① 남 | 3.06(0.83) | 3.21(0.86) | 3.29(0.81) | 3.13(0.97) | 3.19(0.86) |
| | | ② 여 | 3.05(0.82) | 3.34(0.79) | 3.39(0.74) | 3.19(0.92) | 3.27(0.82) |
| | | ③ 기타 | 3.25(0.61) | 3.28(0.63) | 3.20(0.72) | 3.23(0.75) | 3.24(0.68) |
| | | F | 0.46 | 7.78*** | 6.25** | 1.20 | 4.29* |
| | | 사후검증 결과 | - | 남〈여*** | 남〈여** | - | 남〈여* |
| | 연령대 | ① 아동 | 3.06(0.80) | 3.11(0.88) | 3.24(0.79) | 3.14(0.95) | 3.15(0.84) |
| | | ② 청소년 | 3.05(0.83) | 3.38(0.78) | 3.41(0.74) | 3.18(0.93) | 3.28(0.82) |
| | | t | 0.16 | -7.98*** | -5.34*** | -1.06 | -4.84*** |

*p 〈 .05, **p 〈 .01,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하위문항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정도는 가정 내 생활 참여(r=0.162, p〈0.001), 교육 참여(r=0.151, p〈0.001), 사생활 존중(r=0.107, p〈0.001),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r=0.195,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는 가정 내 생활 참여(r=0.122, p<0.001) 영역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기타(r=0.17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권리교육 여부는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r=0.195, p<0.001)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 내 생활참여 영역과 사생활 존중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상관계수(r)의 값이 0.1 미만으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박용규, 2001)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가정 내 생활 참여(r=0.146, p<0.001), 교육 참여(r=0.180, p<0.001), 사생활 존중(r=0.146, p<0.001),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r=0.21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0〉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가정에서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 변인 | | 가정에서의 참여권 | | | |
|---|---|---|---|---|---|
| | | 가정 내 생활 참여 | 교육 참여 | 사생활 존중 | 기타 |
| 권리의식 변인 |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 0.162*** | 0.151*** | 0.107*** | 0.195***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 0.122*** | 0.033 | 0.031 | 0.172*** |
| | 권리교육 여부 (있다=1) | 0.086*** | 0.050 | 0.067** | 0.122*** |
| | 인권교육 필요 정도 | 0.146*** | 0.180*** | 0.146*** | 0.212*** |

*p < .05, **p < .01, ***p < .001

### 4)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학교에서 하위영역 문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표 11〉과 같다. 학급 운영 참여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M=3.37, SD=0.76), 그 다음이 수업 영역 참여(M=3.34, SD=0.71), 학교 운영 참여(M=3.10, SD=0.88) 순이었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학급임원 선거 관련(M=3.67, SD=0.58), 자기주도학

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요 안함(M=3.47, SD=0.78),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M=3.43, SD=0.71), 학급회의 진행 관련(M=3.40, SD=0.71),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 교환(M=3.34, SD=0.71)의 순으로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행사 결정 과정 참여(M=2.99, SD=0.94),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 참여(M=2.98, SD=0.90), 학교 공식 매체에 자유로운 의견 표현(M=2.85, SD=0.96), 학생의견 개진 게시판 유무(M=2.69, SD=1.01)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낮게 나타났다.

**〈표 11〉 학교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하위영역 | 문항내용 | 평균 M (표준편차 SD) |
|---|---|---|
| 수업 영역 참여 | 1.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 교환 | 3.34(0.71) |
| 학급 운영 참여 | 2. 학급임원 선거 관련 | 3.67(0.58) |
| | 3. 학급회의 진행 관련 | 3.40(0.71) |
| | 4.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 | 3.43(0.71) |
| | 5. 학급운영 관련 토론 상시참여* | 3.09(0.87) |
| | 6. 학급운영 관련 학생의견 반영 | 3.17(0.78) |
| | 전체 | 3.37(0.76) |
| 학교 운영 참여 | 7. 동아리, 방과후 활동 학생 의견 반영 | 3.23(0.77) |
| | 8. 학교행사 결정 과정 참여* | 2.99(0.94) |
| | 9. 학칙 학생의견 반영 | 3.08(0.87) |
| | 10. 학교생활 관련 의견제시 | 3.11(0.86) |
| | 11. 청소년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3.12(0.91) |
| | 전체 | 3.10(0.88) |
| 학교 활동 참여 | 12. 자기주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요 안함* | 3.47(0.78) |
| | 13. 학교 공식 매체에 자유로운 의견 표현 | 2.85(0.96) |
| | 14. 학생의견 개진 게시판 유무* | 2.69(1.01) |
| | 15. 학생자치회의실 등 의견 나누는 공간 | 3.07(0.94) |
| | 전체 | 3.01(0.97) |
| 학교 참여 기타 | 16.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 참여* | 2.98(0.90) |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참여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문항인 전체 학교 참여권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은 학급 운영 참여(t=3.35, p〈.001), 학교 활동 참여(t=-2.16, p〈.05)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급 운영 참여는 아동이, 학교 활동 참여는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아동과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 참여권의 평균 비교**

| 변인 | | 구분 | 학교에서의 참여권 | | | | | 학교 참여권 전체 |
|---|---|---|---|---|---|---|---|---|
| | | | 수업 영역 참여 | 학급 운영 참여 | 학교 운영 참여 | 학교 활동 참여 | 기타 | |
| 아동 청소년 변인 | 성별 | ① 남 | 3.30(0.76) | 3.36(0.77) | 3.08(0.93) | 3.01(0.99) | 3.01(0.95) | 3.17(0.90) |
| | | ② 여 | 3.36(0.69) | 3.37(0.75) | 3.11(0.85) | 3.01(0.96) | 2.97(0.89) | 3.18(0.85) |
| | | ③ 기타 | 3.38(0.52) | 3.16(0.64) | 3.24(0.54) | 3.14(0.80) | 3.33(0.82) | 3.20(0.65) |
| | | F | 1.44 | 0.78 | 0.58 | 0.22 | 0.68 | 0.18 |
| | | 사후검증 결과 | - | - | - | - | - | - |
| | 연령대 | ① 아동 | 3.38(0.71) | 3.45(0.69) | 3.09(0.89) | 2.94(0.99) | - | 3.22(0.85) |
| | | ② 청소년 | 3.33(0.71) | 3.34(0.77) | 3.11(0.87) | 3.02(0.97) | 2.98(0.90) | 3.17(0.87) |
| | | t | 1.37 | 3.35*** | -0.40 | -2.16* | - | 1.64 |

*p 〈 .05, **p 〈 .01,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하위문항과 학교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정도는 수업 영역 참여(r=0.123, p〈0.001), 학급 운영 참여(r=0.125, p〈0.001), 학교 운영 참여(r=0.15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는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계를 보였다(r=0.128~0.184, p〈0.001). 셋째, 권리교육 여부는 수업 영역 참여(r=0.137, p〈0.001), 학급 운영 참여(r=0.166, p〈0.001), 학교 운영 참여(r=0.123, p〈0.001), 학교 활동 참여(r=0.114, p〈0.001)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수업 영역 참여(r=0.155, p〈0.001), 학급 운영 참여(r=0.197, p〈0.001), 학교 운영 참여(r=0.148, p〈0.001), 학교 활동 참여(r=0.10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3〉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학교에서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 변인 | | 학교에서의 참여권 | | | | |
|---|---|---|---|---|---|---|
| | | 수업 영역 참여 | 학급 운영 참여 | 학교 운영 참여 | 학교 활동 참여 | 기타 |
| 권리의식 변인 |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 0.123*** | 0.125*** | 0.152*** | 0.093*** | 0.052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 0.128*** | 0.157*** | 0.184*** | 0.155*** | 0.138*** |
| | 권리교육 여부 (있다=1) | 0.137*** | 0.166*** | 0.123*** | 0.114*** | 0.091** |
| | 인권교육 필요 정도 | 0.155*** | 0.197*** | 0.148*** | 0.102*** | 0.064* |

*p 〈 .05, **p 〈 .01, ***p 〈 .001

### 5)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사회에서 하위영역 문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표 14〉와 같다. 사회 참여 기타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M=3.25, SD=0.74) 그 내용은 나와 타인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 그다음이 정책 과정 참여(M=2.80, SD=1.00), 정치적 참여(M=2.77, SD=1.03) 순이었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투표 참여(M=3.59, SD=0.62), 정책결정에 청소년의 참여방식 변화 필요(M=3.31, SD=0.68), 타인의 인권침해 고발(M=3.23, SD=0.75), 나의 인권침해 고발(M=3.23, SD=0.74),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 인지(M=3.20, SD=0.79)의 순으로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단체 참여(M=2.37, SD=1.15), 선거철에 아동·청소년에게 후보자 설명(M=2.33, SD=1.01), 아동·청소년 정치참여 용이(M=2.25, SD=0.99), 아동·청소년 모임이나 행사 참여(M=2.21, SD=1.08)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낮게 나타났다.

**〈표 14〉 사회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하위영역 | 문항내용 | 평균 M (표준편차 SD) |
|---|---|---|
| 정책과정 참여 | 사회정책 및 현상의 정보 접근 | 3.19(0.76) |
| | 2. 지역사회 정책 결정 시 아동·청소년 의견수렴* | 2.80(0.88) |
| | 3. 정책결정에 청소년의 참여방식 변화 필요* | 3.31(0.68) |
| | 4. 나의 의견을 공식매체에 표현 | 2.48(1.00) |
| | 5. 청소년 단체 참여 | 2.37(1.15) |
| | 전체 | 2.80(1.00) |
| 지역중심 참여 | 6. 지역 현안 관련 청소년 설명회 개최* | 2.38(0.95) |
| | 7. 청소년의회 등 운영* | 2.69(0.96) |
| | 8. 자원봉사활동의 기회 | 2.93(0.85) |
| | 9. 아동·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 | 2.66(1.02) |
| | 10. 아동·청소년 모임이나 행사 참여 | 2.21(1.08) |
| | 전체 | 2.58(1.01) |
| 단체자율 참여 | 11.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참여 | 2.47(1.07) |
| 정치적 참여* | 12. 아동·청소년 정치참여 용이* | 2.25(0.99) |
| | 13. 선거철에 아동·청소년에게 후보자 설명* | 2.33(1.01) |
| | 14. 선거후보자 관련 정보 관심* | 2.83(0.96) |
| | 15.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 인지* | 3.20(0.79) |
| | 16. 투표 참여* | 3.59(0.62) |
| | 17. 선거 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한 활동* | 2.44(1.00) |
| | 전체 | 2.77(1.03) |
| 사회 참여 기타 | 18. 나의 인권침해 고발 | 3.23(0.74) |
| | 19. 타인의 인권침해 고발 | 3.23(0.75) |
| | 전체 | 3.25(0.74) |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중심 참여(F=6.97, p〈.001), 정치적 참여(F=9.42, p〈.001)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지역 중심 참여와 정치적 참여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25, p〈.01),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과정 참여권은 남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사후검증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은 지역 중심 참여(t=3.22, p〈.01), 단체 자율 참여(t=6.04, p〈.001), 사회 참여 기타(t=3.16, p〈.01)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에 비해 아동의 참여가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t=2.28, p〈.05)도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15〉 아동·청소년의 사회에서 참여권의 평균 비교**

| 변인 | | 구분 | 사회에서의 참여권 | | | | | 사회 참여권 전체 |
|---|---|---|---|---|---|---|---|---|
| | | | 정책 과정 참여 | 지역 중심 참여 | 단체 자율 참여 | 정치적 참여 | 기타 | |
| 아동 청소년 변인 | 성별 | ① 남 | 2.88(1.01) | 2.69(1.02) | 2.55(1.08) | 2.90(1.03) | 3.27(0.78) | 2.86(1.01) |
| | | ② 여 | 2.77(0.99) | 2.53(1.01) | 2.43(1.06) | 2.73(1.03) | 3.24(0.73) | 2.73(1.01) |
| | | ③ 기타 | 3.03(0.94) | 2.81(0.89) | 2.63(0.92) | 3.03(0.88) | 3.38(0.62) | 2.98(0.88) |
| | | F | 3.78* | 6.97*** | 2.02 | 9.40*** | 0.32 | 7.25*** |
| | | 사후검증 결과 | - | 남〉여** | - | 남〉여*** | - | 남〉여** |
| | 연령대 | ① 아동 | 2.67(1.00) | 2.69(0.99) | 2.73(0.97) | - | 3.34(0.73) | 2.83(0.98) |
| | | ② 청소년 | 2.83(0.99) | 2.55(1.02) | 2.36(1.09) | 2.77(1.03) | 3.22(0.75) | 2.75(1.02) |
| | | t | -4.17 | 3.22** | 6.04*** | - | 3.16** | 2.28* |

*p 〈 .05, **p 〈 .01,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하위문항과 사회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6〉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정도는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모

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115~0.235, p<0.001).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역시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145~0.306, p<0.001). 셋째, 권리교육 여부는 사회에서의 참여 기타(r=0.108, p<0.001)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나머지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상관계수(r)의 값이 0.1 미만으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박용규, 2001)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정책 과정 참여(r=0.146, p<0.001)와 사회에서의 참여 기타(r=0.168,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6〉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사회에서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 변인 | | 사회에서의 참여권 | | | | |
|---|---|---|---|---|---|---|
| | | 정책 과정 참여 | 지역 중심 참여 | 단체 자율 참여 | 정치적 참여 | 기타 |
| 권리의식 변인 |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 0.235*** | 0.155*** | 0.115*** | 0.159*** | 0.135***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 0.306*** | 0.251*** | 0.212*** | 0.196*** | 0.145*** |
| | 권리교육 여부 (있다=1) | 0.097*** | 0.080** | 0.054* | 0.067* | 0.108*** |
| | 인권교육 필요 정도 | 0.146*** | 0.057* | 0.054* | 0.079** | 0.168*** |

*p < .05, **p < .01, ***p < .001

### 6)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과 각각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7〉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가정에서의 참여권이 총 4점 만점에 3.25점(SD=0.83), 학교에서의 참여권이 평균 3.18점(SD=0.87)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참여권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대를 보여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평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77(SD=1.0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참여권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7〉 가정, 학교, 사회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구분 | 하위영역 | 평균(표준편차) |
|---|---|---|
| 가정에서 참여권 | 가정 내 생활 참여 | 3.05(0.82) |
| | 교육 참여 | 3.30(0.82) |
| | 사생활 존중 | 3.36(0.76) |
| | 가정 참여권 기타 | 3.17(0.94) |
| | 전체 | 3.25(0.83) |
| 학교에서의 참여권 | 수업 영역 참여 | 3.34(0.71) |
| | 학급 운영 참여 | 3.37(0.76) |
| | 학교 운영 참여 | 3.10(0.88) |
| | 학교 활동 참여 | 3.01(0.97) |
| | 학교 참여권 기타 | 2.99(0.90) |
| | 전체 | 3.18(0.87) |
| 사회에서의 참여권 | 정책과정 참여 | 2.80(1.00) |
| | 지역중심 참여 | 2.58(1.01) |
| | 단체자율 참여 | 2.36(1.09) |
| | 정치적 참여 | 2.77(1.03) |
| | 사회 참여권 기타 | 3.25(0.74) |
| | 전체 | 2.77(1.01) |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차이는 〈표 18〉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남성이 평균 3.19(SD=0.86), 여성이 3.27(SD=0.82)로 평균차이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에서의 참여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29$, $p<.05$).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에

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남성은 평균 2.86점(SD=1.01), 여성은 2.73점(SD=1.01)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F=7.25, p<.01).

그다음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아동이 평균 3.15점(SD=0.84), 청소년이 평균 3.28점(SD=0.82)으로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참여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4, p<0.001). 학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은 아동 평균 2.83점(SD=0.98), 청소년 평균 2.75점(SD=0.02)으로 아동의 참여권이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28, p<0.05).

**〈표 18〉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평균 비교**

| 변인 | | 구분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 |
|---|---|---|---|---|---|
| | | | 가정에서 참여권 | 학교에서의 참여권 | 사회에서의 참여권 |
| 아동 청소년 변인 | 성별 | ① 남 | 3.19(0.86) | 3.17(0.90) | 2.86(1.01) |
| | | ② 여 | 3.27(0.82) | 3.18(0.85) | 2.73(1.01) |
| | | ③ 기타 | 3.24(0.68) | 3.20(0.65) | 2.98(0.88) |
| | | F | 4.29* | 0.18 | 7.25*** |
| | | 사후검증 결과 | 남<여* | - | 남>여** |
| | 연령대 | ① 아동 | 3.15(0.84) | 3.22(0.85) | 2.83(0.98) |
| | | ② 청소년 | 3.28(0.82) | 3.17(0.87) | 2.75(0.02) |
| | | t | -4.84*** | 1.64 | 2.28* |

*p < .05, **p < .01,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과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과 가정에서의 참여권(r=0.216, p<0.001), 학교에서의 참여권(r=0.239, p<0.001), 사회에서의 참여권(r=0.296,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19〉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 변인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 |
|---|---|---|---|
| | 가정에서 참여권 | 학교에서의 참여권 | 사회에서의 참여권 |
| 권리의식 전체 | 0.216*** | 0.239*** | 0.296*** |

*p 〈 .05, **p 〈 .01, ***p 〈 .001

## 3. 분석결과 요약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남성이 30.53%, 여성이 68.93%, 기타 성별이 0.53%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참여자 중에서 아동은 28.7%, 청소년은 71.3%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은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권리교육 여부, 인권교육 필요 정도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는 5점 만점 중에 3.72점(SD=0.89)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는 '보통이다(3점)' 이하의 점수인 2.91점(SD=1.17)으로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를 1점, 받지 못한 경우를 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권리교육 여부의 평균값은 0.86점(SD=0.35)으로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인권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5점 만점에 4.29점(SD=0.81)으로,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권리의식의 차이는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에서 여성의 평균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권리의식 전체의 평균

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권리의식의 차이는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에서 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권리의식도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리의식의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보다는 청소년의 권리의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사생활 존중 영역이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이 교육 참여 영역, 가정 참여권 기타 영역, 가정 내 생활 참여 영역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 분석에서 여성의 참여권이 남성의 참여권과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참여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하위문항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와 가정 참여권 기타 영역,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와 가정 참여권 기타 영역,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와 가정의 교육 참여 영역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학급 운영 참여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이 수업 참여 영역, 학교 운영 참여 영역, 학교 활동 참여 영역, 학교 참여 기타 영역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참여권 분석에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아동이 학급 운영에서의 참여권이 더 높고, 청소년이 학교 활동의 참여권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하위문항과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와 학급 운영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학교 활동 참여, 권리교육 여부와 학급 운영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와 학급 운영 참여 영역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나와 타인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사회 참여 기타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정책 과정 참여 영역, 정치적 참여 영역, 지역중심 참여 영역, 단체 자율 참여 영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 분석에서 지역중심 참여 영역, 정치적 참여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지역중심 참여 영역, 단체 자율 참여 영역, 기타 참여 영역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에서의 참여권 역시 청소년에 비해 아동의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남성인 경우에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권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하위문항과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정책 과정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지역중심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정치적 참여 영역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책 과정 참여 영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의 참여권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학교에서의 참여권이며, 사회에서의 참여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에서는 여성의 참여권이 높고, 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사회에서는 남성의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을 살펴보면,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이 높고, 학교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사회에서는 아동의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참여권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권리의식과 사회에서의 참여권, 학교에서의 참여권, 가정에서의 참여권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김한진(2002). 가정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용규(2001). 통계시리즈(Ⅵ): 상관분석과 회귀분석.「가정의학회지」22(1), 43-51.

유니세프코리아(2023).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unicef.or.kr/about-us/unicef/mission/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천정웅(1998). IMF 시대 청소년 참여의 방향과 과제: P 이론의 가능성 탐색.「IMF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한국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69-222.

홍승애(2003).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akaaki Tashiro(2002). 子どもの参加の権利研究の到達点と課題（特集 子どもの権利の総合的保障と学際研究). Children's Rights Journal, 子どもの権利条約総合研究所 編 (1), 11-17.

[부록 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아동용]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아동·청소년 참여권[3]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아동용)

## Ⅰ 기본정보

**(작성방법)**

- 아동용 설문은 **아동(10세-12세 또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숫자에 'V'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안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성별 | ① 남 | ② 여 | ③ 기타 |
| 생년월일 | (　　)년 (　)월 (　)일 | | |
| 생활하고 있는 시도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⑨ 경기도 |
| | ⑩ 강원특별자치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 ⑬ 전라북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 | ⑯ 경상남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3)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의 하나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II 아동·청소년 권리의식에 관한 설문

**(작성방법)** • 해당되는 숫자에 'V'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인권[4]에 관해 관심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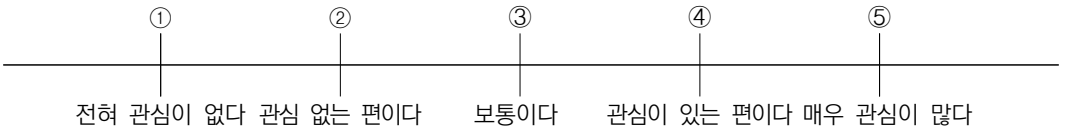


3.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5]〉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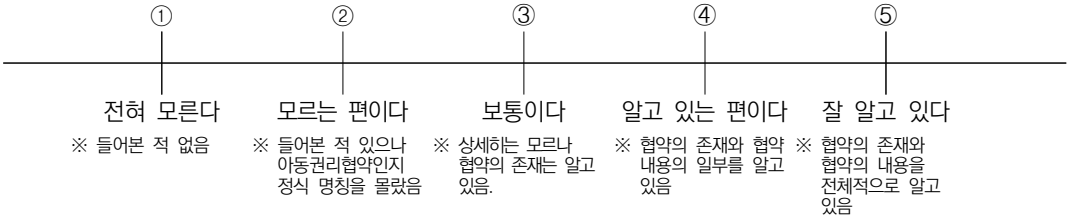


4. 여러분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가정,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여러분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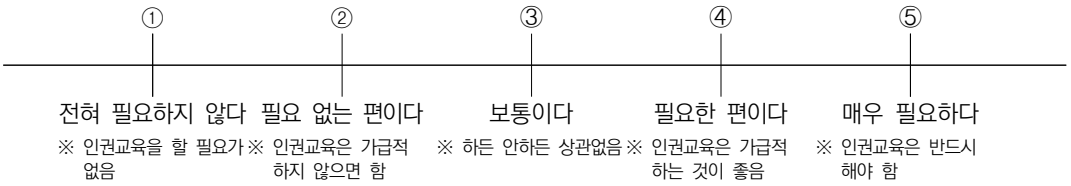


4) **(인권)**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와 지위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함.

5) **(유엔아동권리협약)** 만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으로,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Ⅲ 참여권 행사에 관한 설문 (아동용)

6. 다음은 **가정에서의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 분야 | 번호 | 문 항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3 대체로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
| 가정 내 생활 | 1 | 부모님(보호자)은 집에서 중요한 결정(이사, 전학, 가족여행, 가구 및 가전제품 교체 등)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키고, 내 의견을 존중한다. | | | | |
| | 2 | 부모님(보호자)은 부모님의 친구모임이 있을 때 모임의 성격을 설명하고,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 질문 후 나를 참여시키는 등 내 의견을 존중한다. | | | | |
| | 3 | 우리 집은 각자 맡은 집안일(방청소, 분리수거 등) 이 있으며, 각자의 능력(힘, 체력 등)과 소통을 통해 집안일을 하고 있다. | | | | |
| 교육 | 4 | 학교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참가할지 말지와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의 종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 | | | |
| | 5 |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 어느 학원을 다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 | | | |
| | 6 |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 | | | |
| | 7 | 부모님(보호자)은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준다. | | | | |
| 사생활 | 8 |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결정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 . | | | |
| | 9 |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휴대폰 메시지, 카톡내용, SNS를 내 동의 없이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내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 | | | | |
| | 10 |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모를 꾸밀 때(옷, 머리모양 등) 부모님(보호자)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 | | | |
| | 11 | 취미활동(컴퓨터 게임, 체육활동, 악기연주 등)을 선택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 | | | |
| | 12 | 부모님(보호자)이 용돈을 주실 때,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 | | | |
| 기타 | 13 |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해 언제든 자유롭게 소통한다. | | | | |
| | 14 |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 뜻에 따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 | | | |

7. 다음은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 분야 | 번호 | 문 항 | 1 | 2 | 3 | 4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수업 | 1 | 우리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 | | | |
| 학급 운영 참여 | 2 | 학급 임원(반장, 회장, 부장 등)은 우리의 의견에 따라 뽑는다. | | | | |
| | 3 | 우리의 의견에 따라 학급회의(주제, 진행방법 등)가 진행된다. | | | | |
| | 4 | 나는 학급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 | | |
| | 5 | 학급회의 시간에 의논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학급 운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 | | | | |
| 학교운영 참여 | 6 | 학교의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 | | | |
| | 7 | 학교 행사(소풍, 수련회, 운동회 등)의 장소, 일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등 참여하는 과정이 있다. | | | | |
| | 8 | 나는 학교의 학교 학칙을 만들거나 수정 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설문지, 학급회의, 대의원회 등). | | | | |
| | 9 | 아동 대표(반장, 회장 등)가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말하고 있다. | | | | |
| 기타 | 10 |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 | | | |
| | 11 |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학생자치회의실 등) 있다. | | | | |

8. 다음은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 분야 | 번호 | 문 항 | 1<br>전혀 그렇지 않다 | 2<br>대체로 그렇지 않다 | 3<br>대체로 그렇다 | 4<br>매우 그렇다 |
|---|---|---|---|---|---|---|
| 정책과정 | 1 | 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 | | | |
| | 2 | 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어린이날 폐지, 놀이터 위험시설, 학교 주변 위험시설 등)에 대한 나의 의견을 공식적인 매체(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말한다. | | | | |
| | 3 | 나는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체(아동의회, 아동 시·군·구 평가단, 시책모니터단 등)에 참가하고 있다. | | | | |
| 지역중심참여 | 4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 | | | |
| | 5 | 나와 친구들은 지역사회에서 아동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 | |
| | 6 | 나는 우리동네에서 운영하는 아동을 위한 모임(YMCA, 아동포럼 등)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 | | | |
| 단체자율 | 7 | 나는 아동을 위한 학교 밖 동아리활동(시사토론, 독서, 영화, 연극, 인권운동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 | |
| 기타 | 8 |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다. | | | | |
| | 9 |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를 발견했을 경우, 나는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예 :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을 경우 등) | | | | |

※ 설문 참여에 관한 사례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래에 정보제공 동의와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귀하는 동의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하는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수집항목: 휴대폰 번호
- 이용목적: 설문 참여 사례(모바일 상품권) 발송
- 보유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때까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제한됩니다.

9.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네 (☞ 9-1 번으로) ○ 아니오 (설문 종료)

9-1. 상품권 기프티콘 받으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휴대폰 번호: [ ] (예: 010-0000-0000)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아동·청소년 참여권[6]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청소년용)

## Ⅰ 기본정보

**(작성방법)**

- 청소년용 설문은 **청소년(13세 이상-18세 이하 또는 중학생-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숫자에 'V'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안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성별 | ① 남 | ② 여 | ③ 기타 |
| 생년월일 | (　　)년 (　)월 (　)일 | | |
| 생활하고 있는 시도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⑨ 경기도 |
| | ⑩ 강원특별자치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 ⑬ 전라북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 | ⑯ 경상남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6)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의 하나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Ⅱ 아동·청소년 권리의식에 관한 설문

**(작성방법)** • 해당되는 숫자에 'V'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인권[7]에 관해 관심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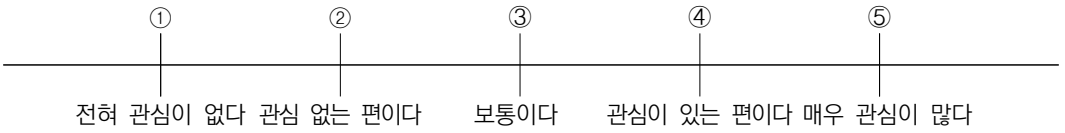


3.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8]〉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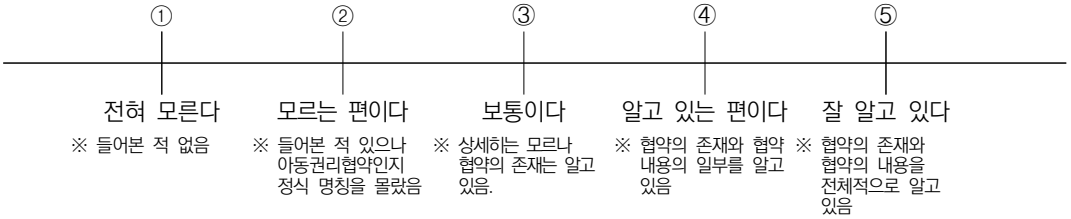


4. 여러분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가정,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여러분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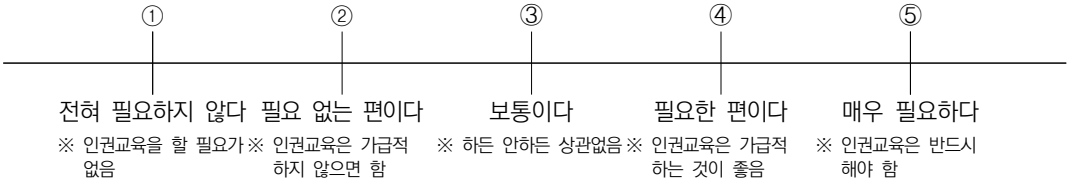


7) **(인권)**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와 지위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함.

8) **(유엔아동권리협약)** 만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Ⅲ 참여권 행사에 관한 설문 (청소년용)

6. 다음은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 분야 | 번호 | 문 항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3 대체로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
| 가정 내 생활 | 1 | 부모님(보호자)은 집에서 중요한 결정(이사, 전학, 가족여행, 가구 및 가전제품 교체 등)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키고, 내 의견을 존중한다. | | | | |
| | 2 | 부모님(보호자)은 부모님의 친구모임이 있을 때 모임의 성격을 설명하고,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 질문 후 나를 참여시키는 등 내 의견을 존중한다. | | | | |
| | 3 | 우리 집은 각자 맡은 집안일(방청소, 분리수거 등)이 있으며, 각자의 능력(힘, 체력 등)과 소통을 통해 집안일을 하고 있다. | | | | |
| 교육 | 4 | 학교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참가할지 말지와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의 종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 | | | |
| | 5 |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 어느 학원을 다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 | | | |
| | 6 |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 | | | |
| | 7 | 부모님(보호자)은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준다. | | | | |
| 사생활 | 8 |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결정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 . | | | |
| | 9 |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휴대폰 메시지, 카톡내용, SNS를 내 동의 없이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내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 | | | | |
| | 10 |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모를 꾸밀 때(옷, 머리모양 등) 부모님(보호자)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 | | | |
| | 11 | 취미활동(컴퓨터 게임, 체육활동, 악기연주 등)을 선택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 | | | |
| | 12 | 부모님(보호자)이 용돈을 주실 때,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 | | | |
| 기타 | 13 |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해 언제든 자유롭게 소통한다. | | | | |
| | 14 |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 뜻에 따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 | | | |
| | 15 | 나는 부모님과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다. | | | | |

7. 다음은 **학교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선택문항)

| 분야 | 번호 | 문 항 | 1 | 2 | 3 | 4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수업 | 1 | 우리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 | | | |
| 학급 운영 참여 | 2 | 학급 임원(반장, 회장, 부장 등)은 우리의 의견에 따라 뽑는다. | | | | |
| | 3 | 우리의 의견에 따라 학급회의(주제, 진행방법 등)가 진행된다. | | | | |
| | 4 | 나는 학급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 | | |
| | 5 | 나는 우리반 학급운영에 관하여 상시 토론에 참여한다. | | | | |
| | 6 | 학급회의 시간에 의논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학급 운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 | | | | |
| 학교 운영 참여 | 7 | 학교의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 | | | |
| | 8 | 학교 행사(소풍, 수련회, 운동회 등)의 장소, 일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등 참여하는 과정이 있다. | | | | |
| | 9 | 나는 학교의 학교 학칙을 만들거나 수정 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설문지, 학급회의, 대의원회 등). | | | | |
| | 10 | 나는 학교생활에 대해 학급회, 학생회, 대의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 | |
| | 11 | 청소년 대표(반장, 회장 등)가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말하고 있다. | | | | |
| 학교 활동 참여 | 12 | 우리 학교는 점심시간 자기주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는다. | | | | |
| | 13 |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 | | | |
| | 14 | 우리 학교는 학생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되어있다. | | | | |
| | 15 |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학생자치회의실 등) 있다. | | | | |
| 기타 | 16 | 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 | | |

8. 다음은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 분야 | 번호 | 문 항 | 1<br>전혀 그렇지 않다 | 2<br>대체로 그렇지 않다 | 3<br>대체로 그렇다 | 4<br>매우 그렇다 |
|---|---|---|---|---|---|---|
| 정책 과정 참여 | 1 | 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 | | | |
| | 2 | 지역사회 정책 결정 시 아동·청소년 의견을 수렴한다. | | | | |
| | 3 | 지역사회 정책 결정, 운영에 청소년의 참여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 | | | |
| | 4 | 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청소년증, 소지품검사,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나의 의견을 공식적인 매체(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말한다. | | | | |
| | 5 | 나는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체(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시·군·구 평가단, 청소년시책모니터단, 청소년창안제 등)에 참가하고 있다. | | | | |
| 지역 중심 참여 | 6 | 우리 지역은 지역 아동·청소년 현안에 대한 청소년 설명회를 개최한다. | | | | |
| | 7 | 우리 지역은 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 등이 운영된다. | | | | |
| | 8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 | | | |
| | 9 | 나와 친구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 | |
| | 10 | 나는 우리동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모임(YMCA 청소년 클럽, 청소년포럼, 청소년미래신문등)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 | | | |
| 단체 자율 | 11 | 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동아리활동(시사토론, 독서, 영화, 연극, 인권운동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 | |
| 정치적 참여 | 12 |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쉽게 할 수 있다. | | | | |
| | 13 | 우리 지역은 선거철에 아동·청소년이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 | | | |
| | 14 |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 | | | |
| | 15 | 내가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법 지키기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 | | |
| | 16 | 내게 선거권이 생기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 | | | |
| | 17 | 내게 선거권이 생기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 | | | |
| 기타 | 18 |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다. | | | | |
| | 19 |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를 발견했을 경우, 나는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예 :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을 경우 등) | | | | |

※ 설문 참여에 관한 사례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래에 정보제공 동의와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귀하는 동의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하는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수집항목: 휴대폰 번호
- 이용목적: 설문 참여 사례(모바일 상품권) 발송
- 보유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때까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제한됩니다.

9.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네 (☞ 9-1 번으로) ○ 아니오 (설문 종료)

9-1. 상품권 기프티콘 받으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휴대폰 번호: [ ] (예: 010-0000-0000)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권역별 당사자 모니터링 참여 아동 및 연구자

# 공통주제 사례발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공통주제 사례발표

## - 불사조, 서울 2-2권역 -

발표 : 김의준, 이서현, 신민서, 강승후, 오연우
코디네이터 : 김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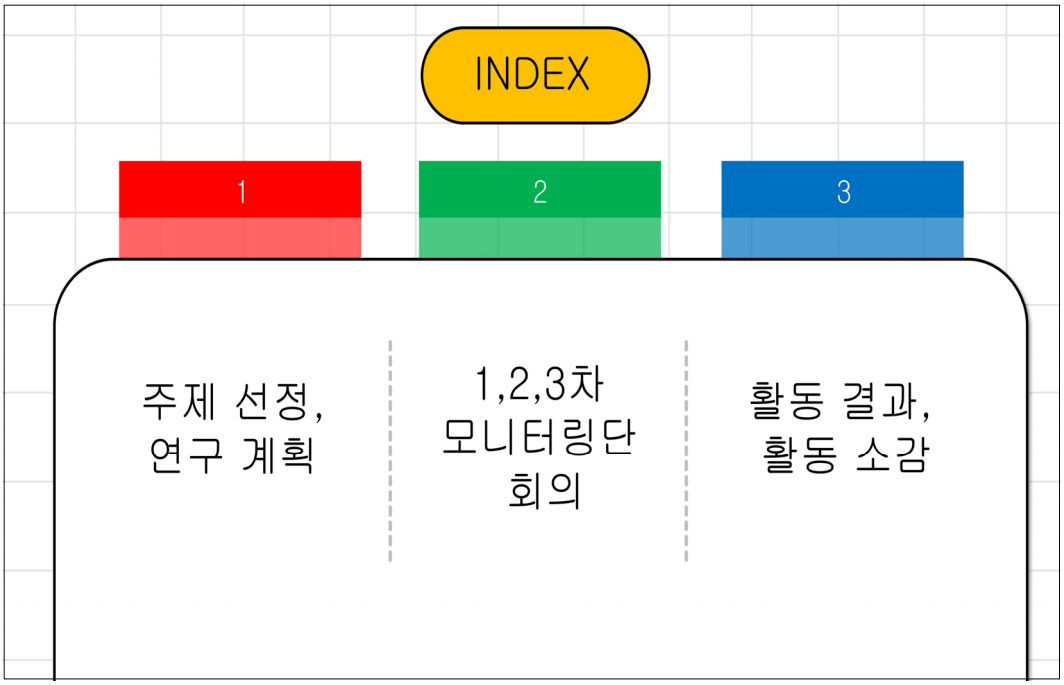
INDEX
1
2
3
주제 선정,
연구 계획
1,2,3차
모니터링단
회의
활동 결과,
활동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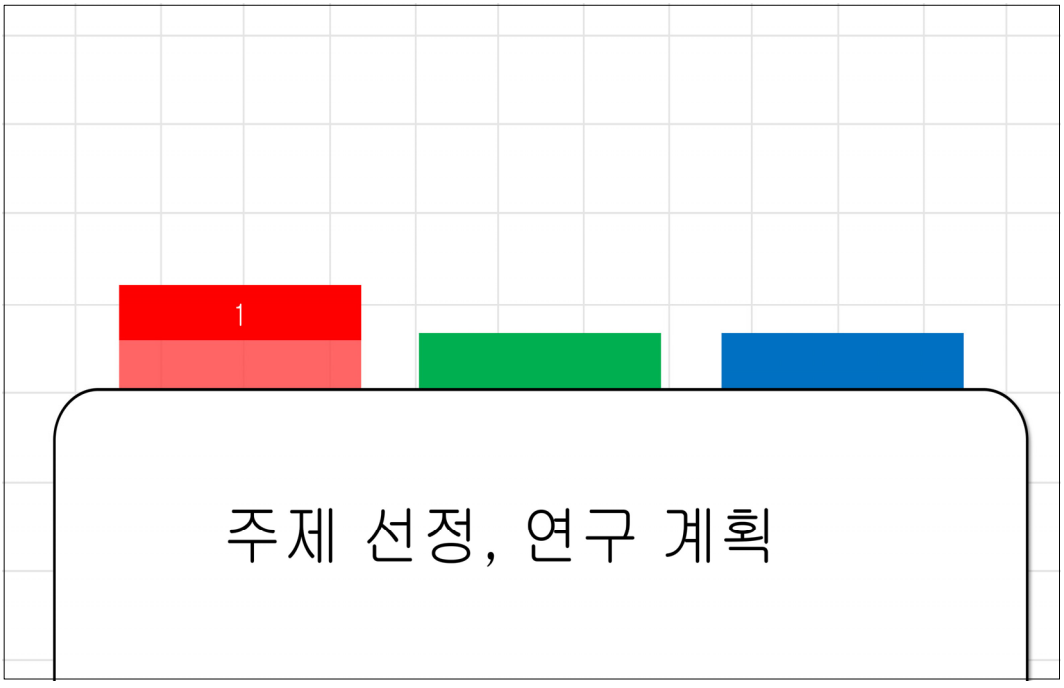
1
주제 선정, 연구 계획

## 주제 선정

# 학교에서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 방안
# - 건의함 설치하기 -

## 주제 선정 이유

## 주제 선정 이유

문래초등학교의 과거 건의함 모습

## 연구 계획

문래초등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

건의함 설치 제안서 작성

▼

교장선생님께 건의함 설치 제안

▼

건의함 참여 독려 캠페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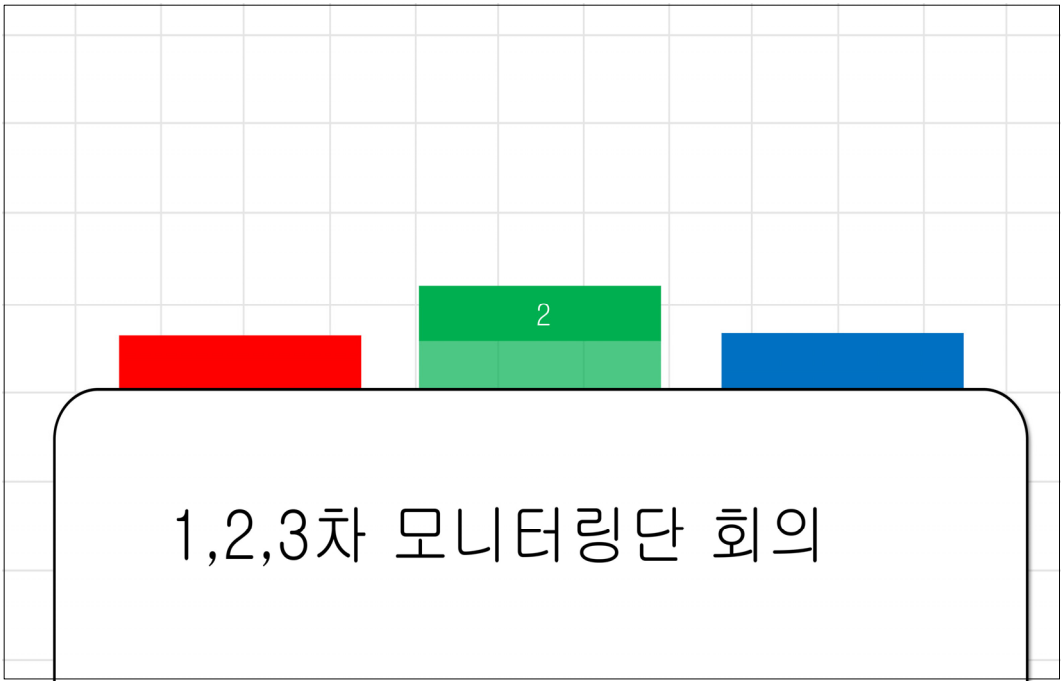
2
1,2,3차 모니터링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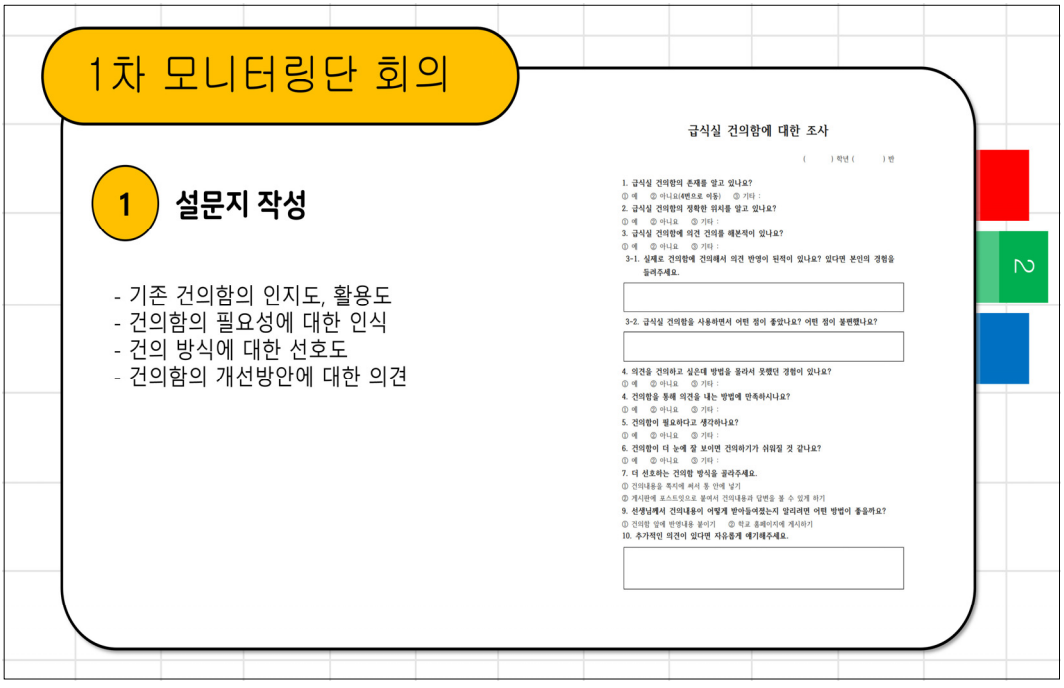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설문지 작성
- 기존 건의함의 인지도, 활용도
- 건의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건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
- 건의함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급식실 건의함에 대한 조사
( ) 학년 ( ) 반
1. 급식실 건의함의 존재를 알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4번으로 이동) ③ 기타 :
2. 급식실 건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3. 급식실 건의함에 의견 건의를 해본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3-1. 실제로 건의함에 건의해서 의견 반영이 된적이 있나요? 있다면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3-2. 급식실 건의함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어떤 점이 불편했나요?
4. 의견을 건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4. 건의함을 통해 의견을 내는 방법에 만족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5. 건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6. 건의함이 더 눈에 잘 보이면 건의하기가 쉬워질 것 같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7. 더 선호하는 건의함 방식을 골라주세요.
① 건의내용을 적지에 써서 통 안에 넣기
② 게시판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건의내용과 답변을 볼 수 있게 하기
9. 선생님께서 건의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① 건의함 앞에 반영내용 붙이기 ②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10.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2

## 1차 모니터링단 회의

**2 설문 방법 결정**

- 조사 대상 : 전학년 대상, 한 학년에 한 반씩 조사
- 조사 방법 : 아침 조회시간에 설문지 배부, 하교 시간에 설문지 수거

**3 그 외 자료조사**

- 인터넷 자료조사 : 인터넷을 통해 타 학교 건의함 설치 우수 사례 조사
- 급식실 영양사선생님 인터뷰 : 기존 급식실 건의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인터뷰

##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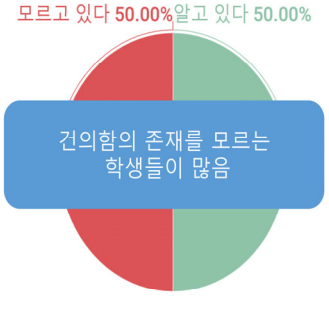


기존 건의함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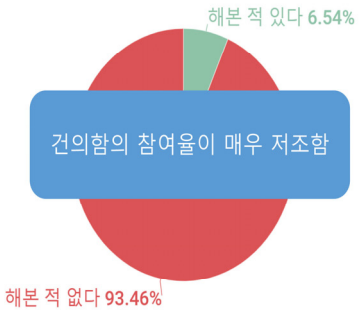


건의함에 건의해본 경험

##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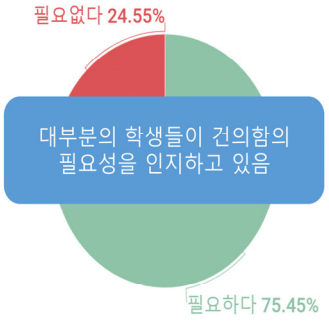


건의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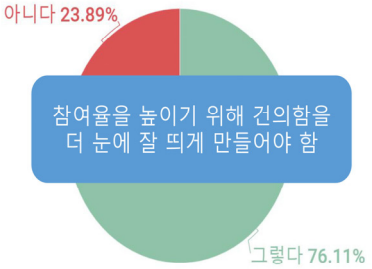


건의함이 눈에 더 잘 띈다면
건의하기 쉬워질 것 같나요?

##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2 건의함 설치 제안서 작성

1) 건의함의 위치

- 전 학년이 오가고,
접근성이 좋은 급식실

급식실 앞 구체적인 건의함 설치 제안 위치

##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2 건의함 설치 제안서 작성

2) 건의함의 모양

- 건의함이 더 눈에 잘 띄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건의함의 크기를 키움

- 건의함 주변에 물건을 놓지 못하도록 관리

- 건의함 앞에 메모지와 펜 배치해 건의 편의성 높이기

물건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과거 건의함의 모습

2

##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2 건의함 설치 제안서 작성

3) 건의함의 운영 방안

- 한달에 한 번 관리자가 건의함 확인
-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적어 건의함 앞에 붙여놓기

4) 건의함 홍보 계획

- 건의함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 제작, 캠페인 진행
- 건의함의 중요성,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담을 예정

2

##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1 교장 선생님께 제안서 전달

- 아동들이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안서 전달
-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 받음

##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2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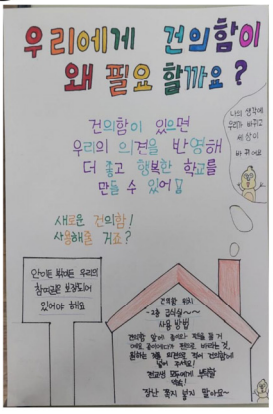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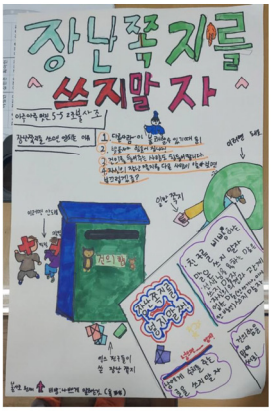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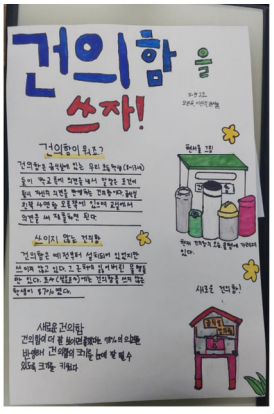

3

# 활동 결과, 활동 소감

## 활동 결과

건의함 주변에 포스터 부착하고
주변 물건을 치워 눈에 잘 띄게 함

3

## 활동 소감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개선해봄으로써
참여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3

# 감사합니다!

# 공통주제 사례발표

## - 포에버드림, 서울 2-3권역 -

발표 : 김민건, 이민성, 이재원, 이효린, 임주원, 최아인, 최주희

코디네이터 : 심은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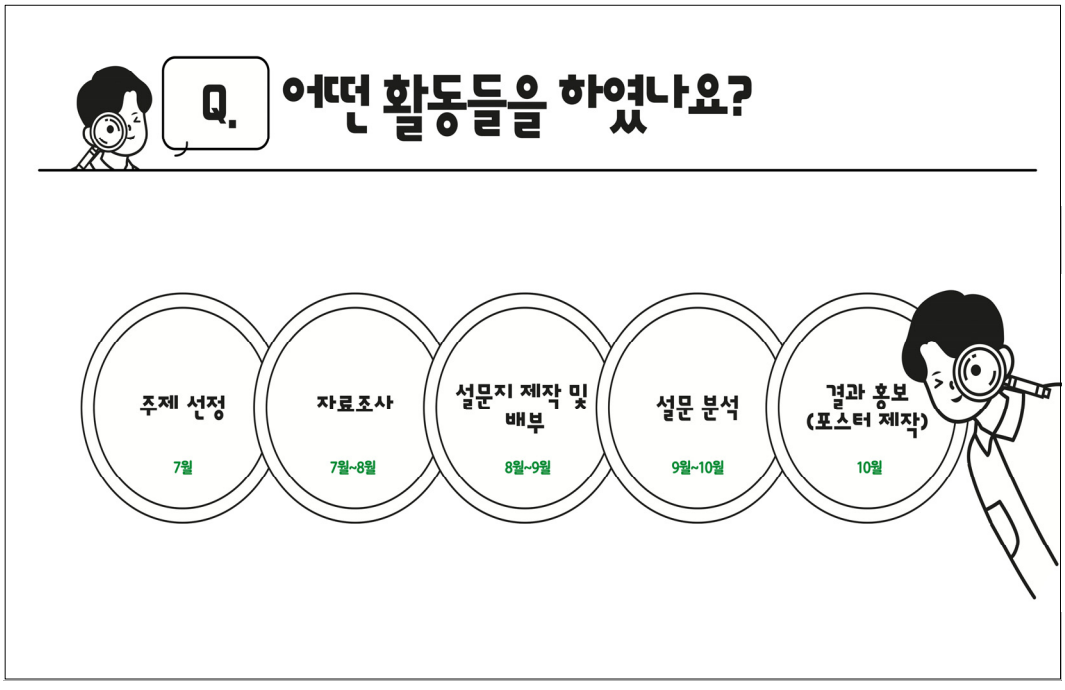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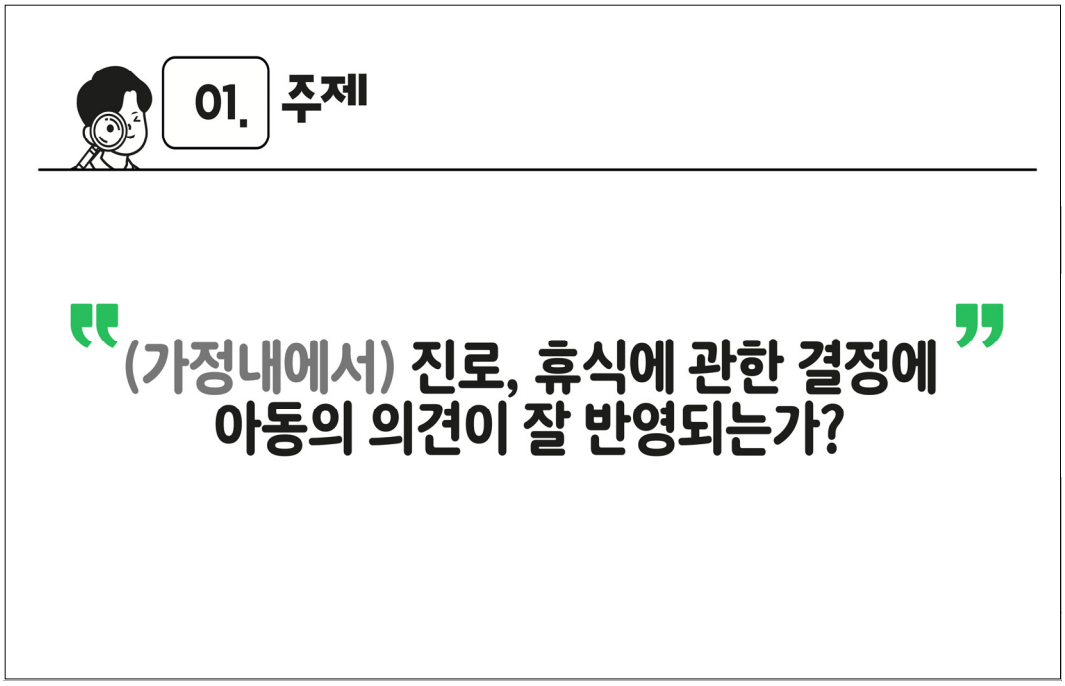
01. 주제
"(가정내에서) 진로, 휴식에 관한 결정에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가?"

02. 활동 – 자료조사
아동관련 법 찾아보기
진로, 휴식 관련 기사 찾아보기
아동복지법
UN아동권리협약
조선에듀
서울 학생 73%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법 개정 추진하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입력 2020.07.06 10:28
-"일요일 학원 다니는 학생, 휴식 정도 낮아"
-법 개정 등 추진 본격화 시 학원계 반발 예상
The JoongAng
사회 : 교육
"하루라도 쉬자"vs"학습권 존중"…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팽팽

# 02. 활동 – 설문지 제작 및 배부

**<아동의 진로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담사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 )학년

| 번호 | 문항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
| 1 |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 | | | |
| 2 | 부모님은 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 | | | |
| 3 |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 | | | |
| 4 |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 | | | |
| 5 |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 | | | |
| 6 |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 | | | |
| 7 |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 | | | |
| 8 |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 | | | |
| 9 |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 | | | |
| 10 |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 | | | |
| 11 |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 | | | |
| 12 | 나는 내가 쉬는 것에 만족한다. | | | | |
| 13 |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 | | | |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2. 부모님은 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2. 나는 내가 쉬는 것에 만족한다.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 02. 활동 – 설문 결과

1. 설문 기간
   9월 14일 ~ 9월 20일

2. 설문 대상
   문래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151명
   (4-2, 4-7, 5-2, 5-7, 6-2,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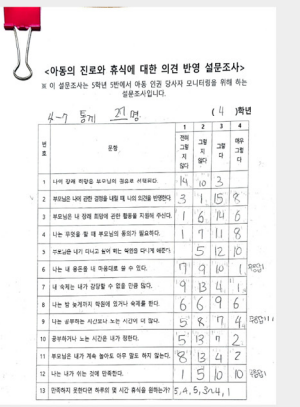

**<아동의 진로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담사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4-7 통계 21명 ( 4 )학년

| 번호 | 문항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
| 1 |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 14 | 10 | 3 | |
| 2 | 부모님은 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 3 | 1 | 15 | 8 |
| 3 |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 1 | 6 | 14 | 6 |
| 4 |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 1 | 9 | 11 | 8 |
| 5 |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 | 5 | 12 | 10 |
| 6 |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 17 | 9 | 10 | 1 |
| 7 |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 9 | 13 | 4 | 1 |
| 8 |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 6 | 6 | 9 | 6 |
| 9 |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 5 | 8 | 17 | 4 |
| 10 |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 5 | 13 | 11 | 2 |
| 11 |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 8 | 13 | 4 | 7 |
| 12 | 나는 내가 쉬는 것에 만족한다. | 1 | 5 | 10 | 10 |
| 13 |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 5, 4, 5, 3, 4, 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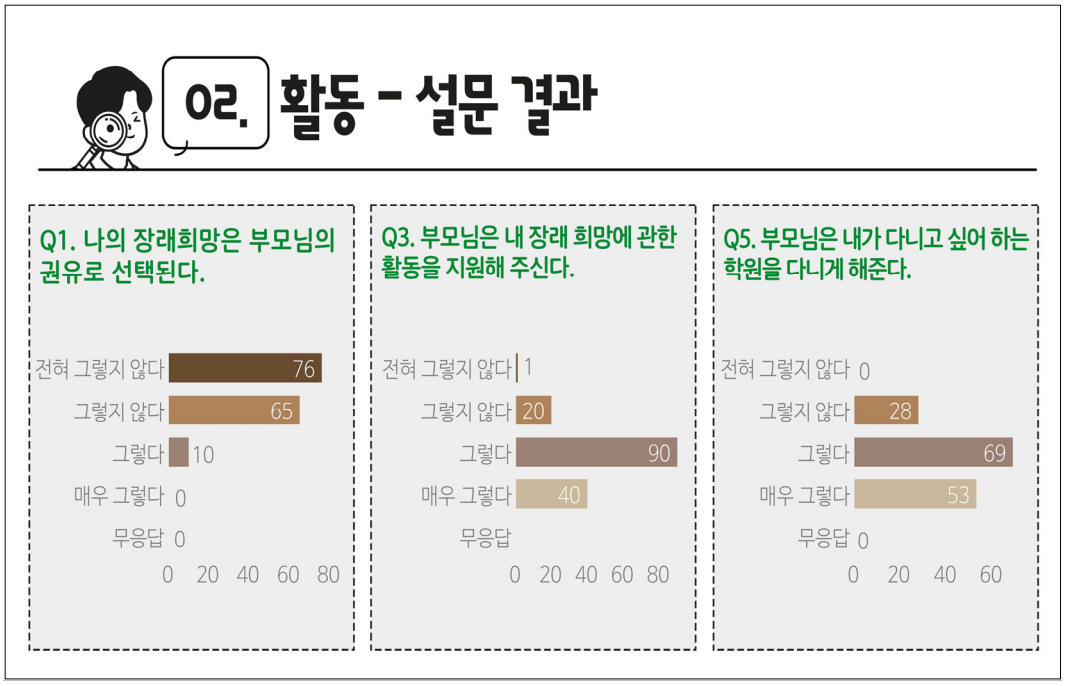
02. 활동 - 설문 결과
Q1. 나의 장래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76
그렇지 않다 65
그렇다 10
매우 그렇다 0
무응답 0
0 20 40 60 80
Q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0
그렇다 90
매우 그렇다 40
무응답
0 20 40 60 80
Q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28
그렇다 69
매우 그렇다 53
무응답 0
0 20 4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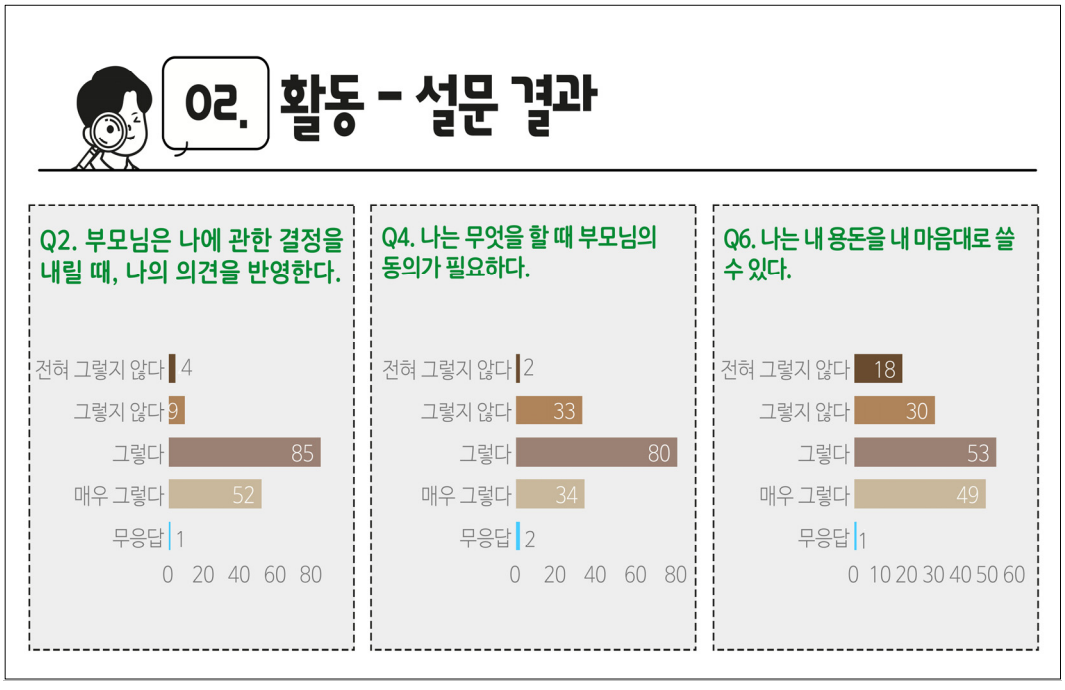
02. 활동 - 설문 결과
Q2. 부모님은 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그렇지 않다 9
그렇다 85
매우 그렇다 52
무응답 1
0 20 40 60 80
Q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3
그렇다 80
매우 그렇다 34
무응답 2
0 20 40 60 80
Q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그렇지 않다 30
그렇다 53
매우 그렇다 49
무응답 1
0 10 20 30 40 50 6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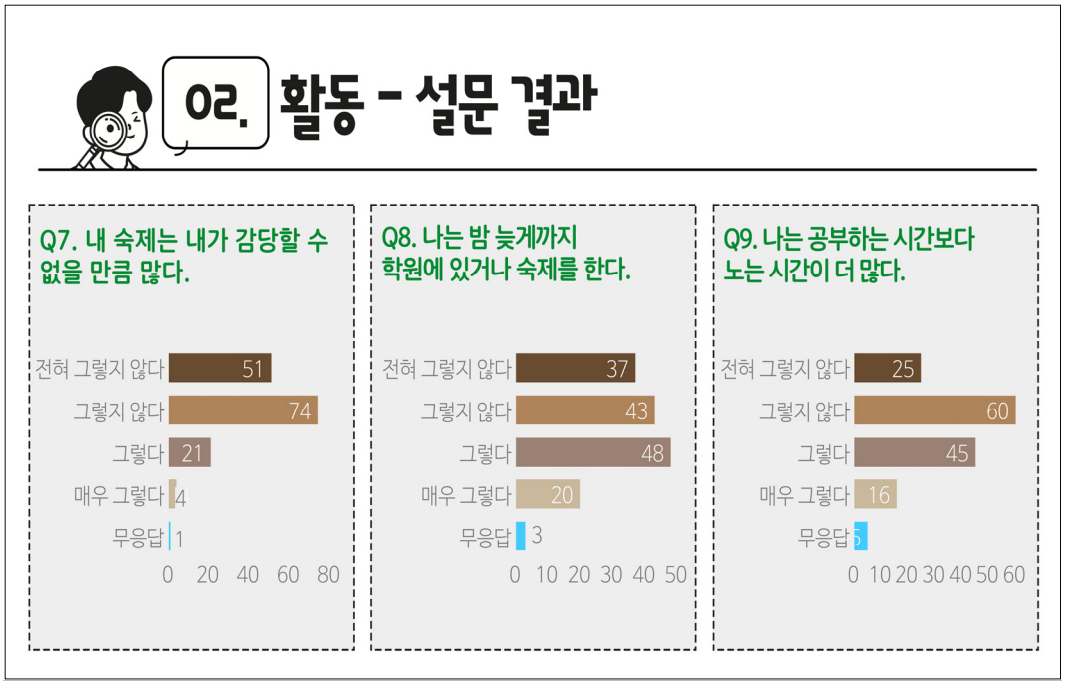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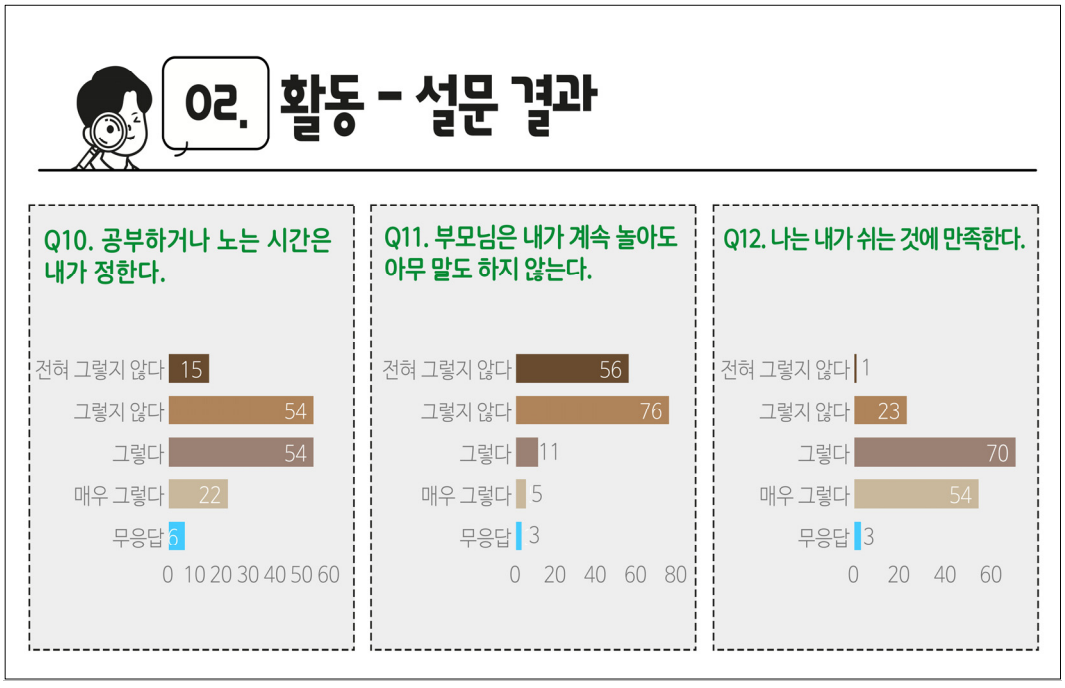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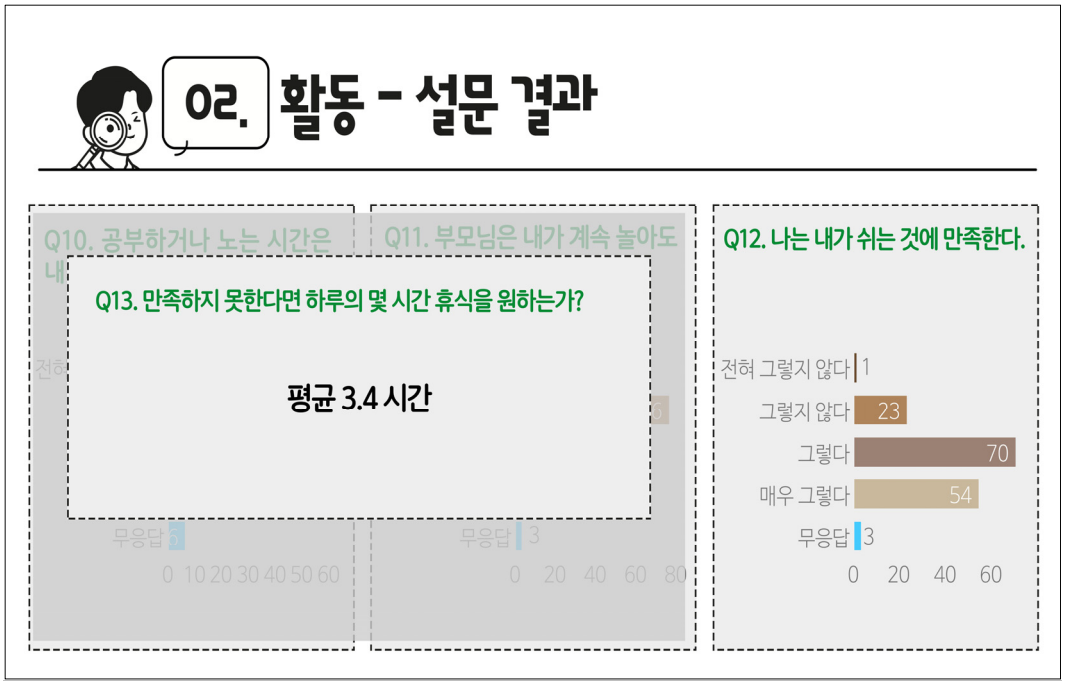
02. 활동 - 설문 결과
Q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Q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Q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평균 3.4 시간
무응답 5
0 10 20 30 40 50 60
무응답 3
0 20 40 60 80
Q12. 나는 내가 쉬는 것에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3
그렇다 70
매우 그렇다 54
무응답 3
0 20 4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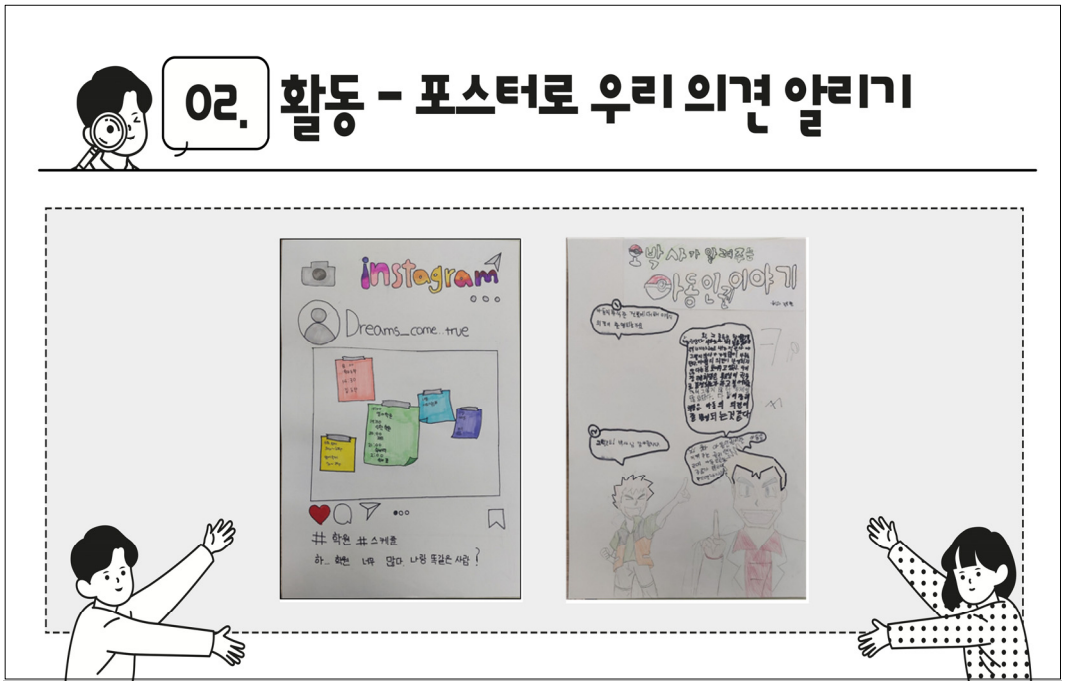
02. 활동 - 포스터로 우리 의견 알리기
instagram
Dreams_come_true
아동인권이야기

## 03. 활동소감

**[ 김민건, 이민성, 이재원, 이정민, 이효린, 임주원, 정하윤, 최아인, 최주희 ]**

- 설문해보았을 때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서 생각외의 느낌이 들었다.
- 포스터를 만들때 서로 역할을 정해서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뿌듯했다.
- 아동의 진로에 대한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아동의 휴식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아동의 진로에 대한 의견은 잘 반영되는 것 같다. 하지만 휴식에 대한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 활동을 하며 아동인권에 대해서 더 잘알수 있었고 생각해보지 못한 청소년(아동)의 의견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 많은 아동들이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포스터 만드는게 오래걸리는 거라는걸 알았다.
- 이걸 하면서 나는 잘되지만 대부분 친구는 휴식을 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 휴식에서 의견반영이 안된다는 것이 공감되었다.
-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었다.
- 아동인권을 하기 전에는 나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몰랐는데 아동인권을 배우고나니까 나의 인권이 침해되는 점을 부모님께 말하고 고치고 있어서 다행이고 배울때 재밌었다.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 Thanks

## 포에버드림 활동발표

감사합니다

## 공통주제 사례발표

### - 카프리썬, 전남 1권역 -

발표 : 손성호, 안유비
코디네이터 : 박은주

## 주제

참여기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아동 ,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률

## 추진 배경

❖ 팀내 대화 중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동 자율성에 대한 차이 발생

❖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자기 주도성 의문

❖ 타 청소년 참여기구 실태조사 및 개선점 마련



##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자 경험 설문조사

- 전국 청소년
- 청소년 참여기구 유경험자
- 온라인 플랫폼
- 09월01일 ~ 15일

### 청소년 참여 기구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기간 중 겪었던 경험과, 참여 의견 반영 비율 등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입니다.

LENS
전남 1권역

1.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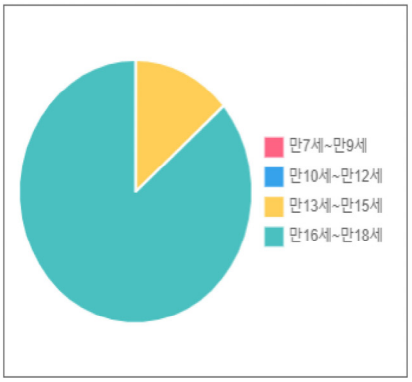


## 연령대

- 만16세~ 만18세 86.4%
- 만13세~ 만15세 13.6%

* 타 연령대 응답자 없음.

2. 귀하가 활동했었던 참여 기구를 한 개만 선택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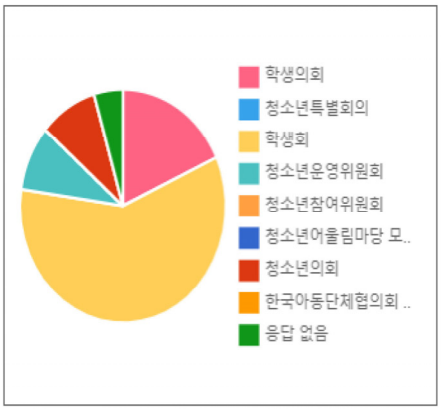


## 참여기구 분포

- 학생회 59.1%
- 학생의회 18.2%
- 청소년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9.1%
- 응답 없음 4.5%

5

3. 귀하가 청소년 참여 기구에서 활동하게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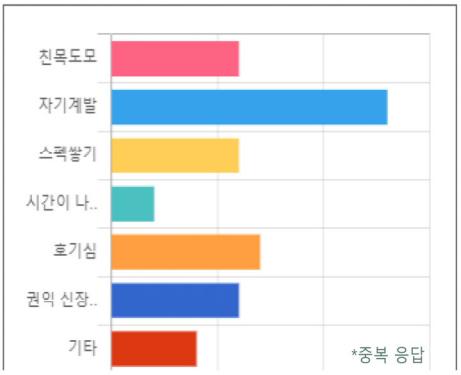


## 활동 계기

- 자기계발 29.5%
- 호기심 15.9%
- 권익 신장 기여, 스펙 쌓기, 친목도모 13.6%
- 기타 9.1%
- 여가시간 4.5%

6

## 참여기구 활동기간

1~2년 36.4%

6개월~1년 22.7%

6개월 미만 18.2%

2~3년, 3~4년 9.1%

5~6년 4.5%

4.귀하가 청소년 참여 활동을 경험한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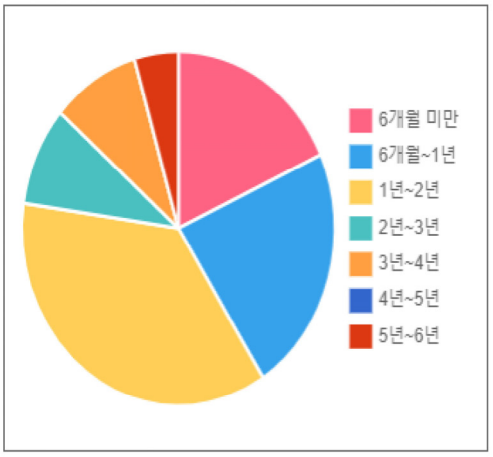


7

5.청소년 참여 활동의 귀하의 만족도는 얼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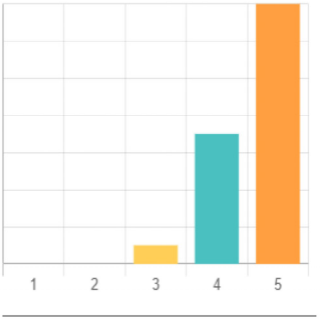


## 참여 활동 만족도

- 만족도5 63.6%
- 만족도4 31.8%
- 만족도3 4.5%

6.청소년 참여 활동은 난이도는 본인의 눈높이에 맞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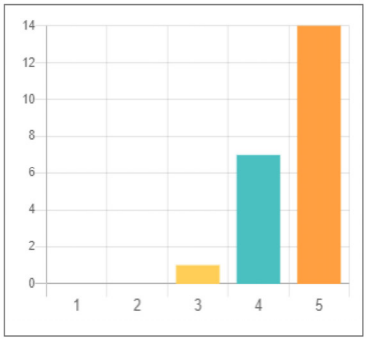


## 눈높이 만족도

- 매우 그렇다 63.6%
- 그렇다 31.8%
- 보통 4.5%

7-1.귀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중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느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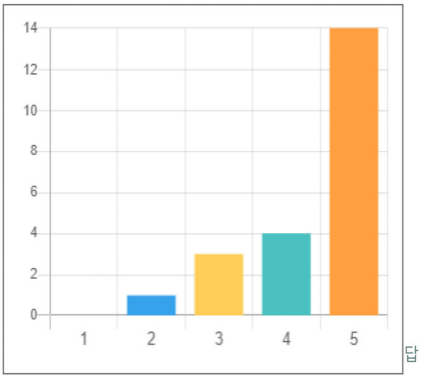


## 주체적 활동 만족도

- 매우 그렇다 63.6%
- 그렇다 18.2%
- 보통 13.6%
- 아니다 4.5%

10

7-2.(7-1에서 1~3선택자만)귀하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 이유를 입력해 주세요.

답변

청소년의 자치적으로 활동을 해도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게 적어서

11

8-1.귀하가 소속된 청소년 참여 기구에서 낸 의견이 수용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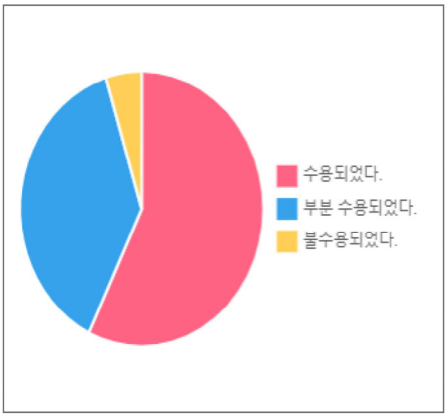


## 수용 현황

- 수용 54.5%
- 부분수용36.4%
- 불수용 4.5%

12

8-2.(8-1에서 부분 수용, 불수용 응답자만) 귀하가 소속된 참여 기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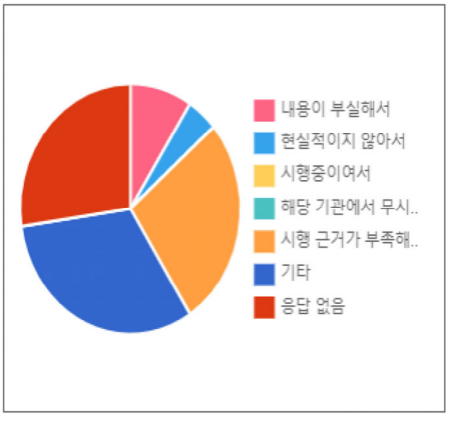


## 원인 파악

- 기타 31.8
- 응답 없음, 시행근거가 부족 27.3%
- 내용 부실 9.1%
- 현실성 없음 4.5%

13

8-3. (8-2.응답자만)수용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수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활동을 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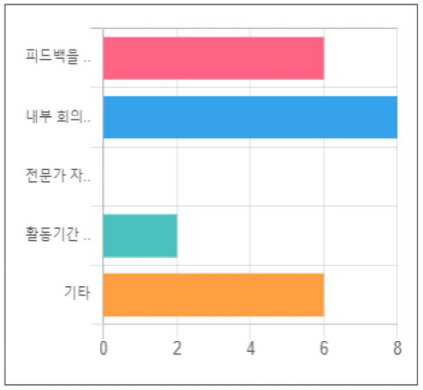


## 활동내용

- 내부 회의 내용 보충 36.4%
- 피드백을 바탕 내용 수정 27.3%
- 활동기간 종료로 하지 못함 9.1%
- 기타 27.3%

14

# 청소년 참여 기구에게 바라는 점

조금 더 자유롭고 학생 자치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산 지원 확충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보다 활발하게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도적으로 많이 소통할 기회와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며 청소년 참여 기구를 선택한것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입장이 어른들에게 전달되는 루트 과정이 어렵고, 전달된다고 하여도 무시당하는 경향이 크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을 거 같다.

학생들이 더 주체적으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서로 의견을 내며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학생들이 더 주체적으로 어른들의 도움없이 서로 의견을 내며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5

## 보다 성장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가 되기 위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도 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미디어 속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른 면이 많으니 편견없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체이기에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류가 있다면 충분히 성장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학생 회장으로서 저의 4원칙을 공유해 드리자면 바로 믿음,신뢰,소통,실행 입니다! 무엇이든지 실행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순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청소년 참여 기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학생자치, 청소년자치를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건 청소년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사회에서 어떤 리더쉽을 발휘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많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고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꼭 하면 좋겠고 나중에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많은 경험들을 하며 순간순간 열심히 빛나게 살아가길 바란다

홍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용

16

## 설문 결과

다수의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느끼고 있었음.

더욱 많은 예산과 홍보,참여 혜택,전문성을 요구

17

# 공통주제 사례발표

## - 경남즈, 경남 권역 -

발표 : 김지현, 서유민, 장지민
코디네이터 : 박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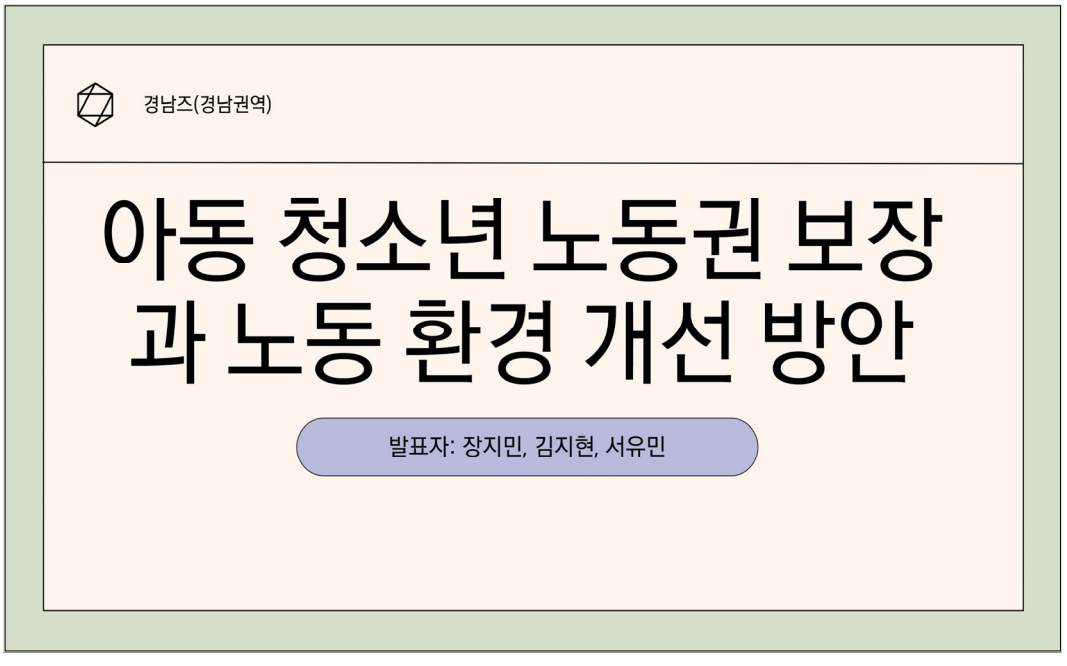

# 목차

다룰 주제


1 주제 선정 이유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법률

3 활동 내용 및 현황

4 개선 방안

5 느낀점


## 주제 선정 이유

우리 주변에도 생계유지나 용돈벌이 등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직접 겪어 가장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법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 60조

최저임금법 제 6조

기간제법 제 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 활동 내용

급식실 앞 설문조사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점심시간 급식소 앞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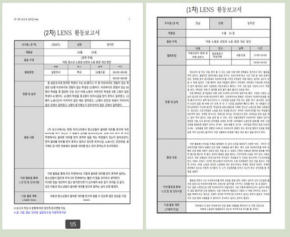

보고서 작성

1,2차 모니터링 이후 작성한 보고서들

설문 홍보

SNS계정으로 설문 홍보를 실시하였다

앞선 활동에서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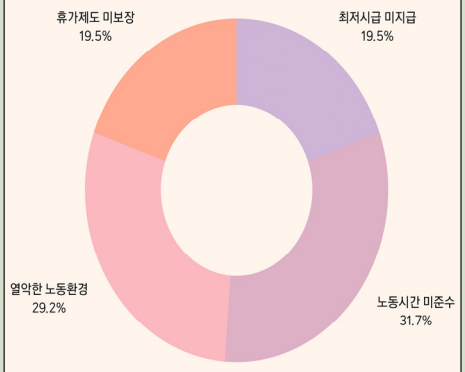


밀양 동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동시간 미준수의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두 번 째로는 열악환 노동환경이 29.2%로 많았으며, 마지막으로는 휴가제도 미보장과 최저시급 미지급이 19.5%로 같은 수치로 나왔다.

# 우리가 생각한 개선방안

**교육강화**

정부에서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법률보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동과 근로에 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함

**관련기관의 확실한 후속 조치**

신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청소년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단독 법률 제정**

현재 청소년이 연소자라는 이유로 위계적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너무 거칠게 침해당하고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 |
|---|---|
| 활동 후 우리의 느낀점 |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도 아동들은 노동을 침해 당하고 있고, 이번 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사례들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며 미약했던 정부의 아동 노동권 보호에 대해 알게 되어 안타까웠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미흡한 부분이 시정되어 우리 아동들이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공통주제 사례발표

## - NLCS, 제주 1권역 -

발표 : 이한진, 정예림, 곽효민
코디네이터 : 이하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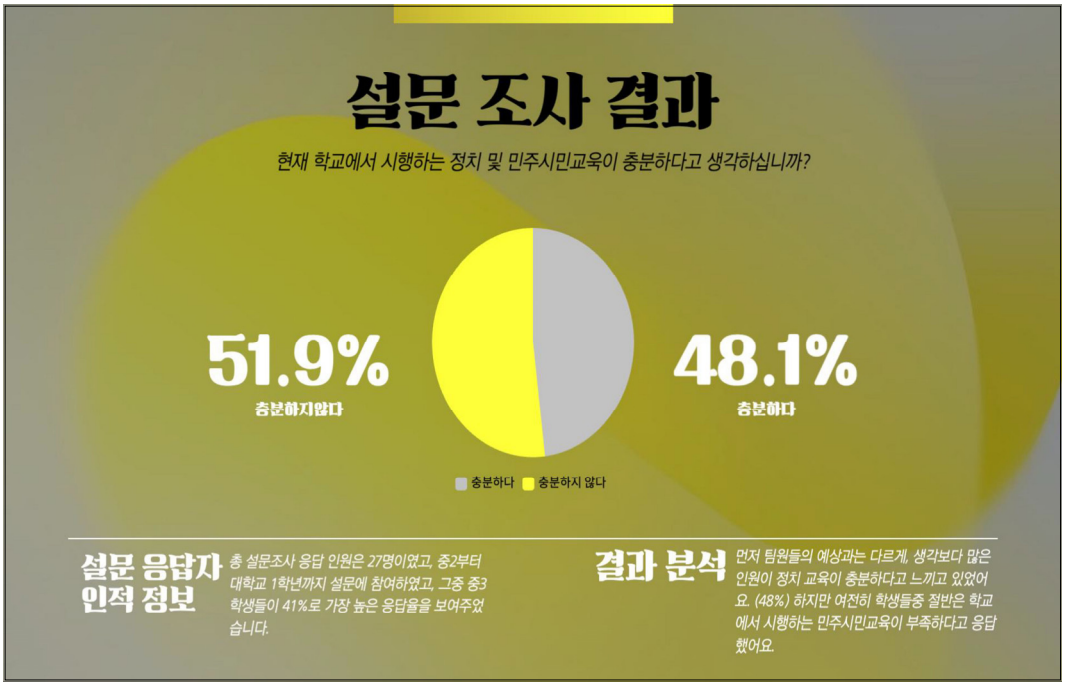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치 및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9%
충분하지않다
48.1%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설문 응답자 인적 정보
총 설문조사 응답 인원은 27명이였고, 중2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설문에 참여하였고, 그중 중3 학생들이 4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분석
먼저 팀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정치 교육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48%)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중 절반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어요.

01 개선할 점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점
아동 정치 참여권, 학교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기회 부족
민주시민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하고, 제약되어 있다.
선택적 배움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정치와 법' 과목이 선택과목 이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의 비중이 낮다.
언어 사용
정치 및 시사문제에 대해 논의할때 사용되는 단어에 대해 학생들이 아직 익숙치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지도자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지도자로 인한 올바르지 못한 민주시민교육 제공
결과 발표회 프레젠테이션
PPT제작
정예림

# 01 세부 의견

*학생들의 의견은?*

**고3 W학생**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치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만약 민주시민교육을 더 깊이 하게된다면, 학부형의 반대가 있을것같아요.*

"정치는 저와 상관 없어요"

**고3 C학생**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치교육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이상적인 정치교육의 모습이에요. 다양한 관점으로 현대 정치를 바라볼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의 교육이 필요해요"

**중3 K학생**

*민주시민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게 정치를 배울수 있도록 게임니아 창의적 활동들로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좋겠어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재밌게 정치를 배우고 싶어요"

**고1 M학생**

*도덕만으로는 아직 부족한것 같아요. 교과목에 민주시민교육과정을 넣고, 정치관련 뉴스 기사 분석과 같은 수업 등 비판적 사고와 시각을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 교육과정에 정치 교육을 추가해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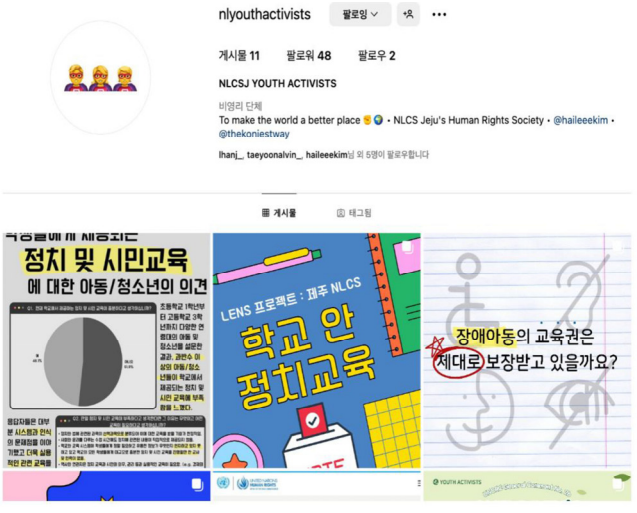


# 02 2차 활동

*홍보물 제작*

1.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교육 실태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2. 모두가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선정
3.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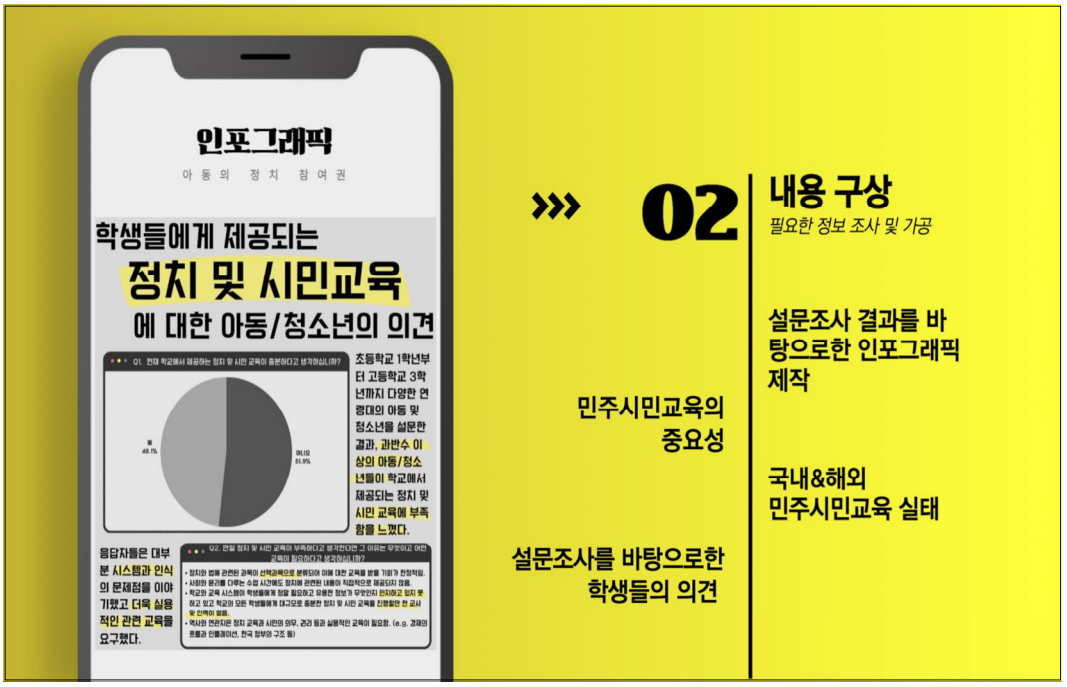
인포그래픽
아동의 정치 참여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치 및 시민교육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Q1.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치 및 시민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설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정치 및 시민 교육에 부족함을 느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시스템과 인식의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더욱 실용적인 관련 교육을 요구했다.
Q2. 만일 정치 및 시민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2
내용 구상
필요한 정보 조사 및 가공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설문조사를 바탕으로한 학생들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인포그래픽 제작
국내&해외 민주시민교육 실태

홍보물 완성본
LENS 프로젝트 : 제주 NLCS
학교 안 정치교육
우리나라 정치교육 실태
해외 정치교육 상황
호주, 나이별로 적합한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스웨덴, 정당 가입 나이 14세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활동에 참여
정치교육, 뭣이 중헌디?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올바른 정치교육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력을 키워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회참여와 책임감을 증진시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학생들의 생각은?
참고 자료/문헌

# 03 | 본론

학교 홈페이지에 기고

# 마무리

평가 및 느낀점

| 어려웠던 점 | 느낀점 | 개선할 점 |
|---|---|---|
| 먼저, '정치교육'이라는 생소하고 비인기한 주제를 선택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높은 설물조사 응답률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활동으로 계획된 "학교 내 강연"이 학교측의 거절로 무산되면서, 급하게 마무리 활동을 다시 구축해야했기 때문에, 팀원 모두가 노력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야 했습니다. |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당연시하게 아동의 결정권, 참정권이 무시되고 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참정권의 중요성과 실태에 대해 더 자세히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생각 해볼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민감하지만, 학생들이 관심 없는 주제에 관해 알리고 설문조사를 한다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였지만, 팀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씩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매주 보고서를 써나가고, 눈으로 직접 활동들이 점점 완성되어나가는것을 보니, 렌즈 활동단으로써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였습니다! | 다음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더 오랜 기간동안, 체계적으로 팀을 짜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조금 더 발전된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LENS 제주 1권역
NLCS 팀 결과 발표회
2023.11.25
PPT제작
정예림
감사합니다
제 주 1 권 역 N L C S 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권역별 당사자 모니터링 참여 아동 및 연구자

# 권역별 사례발표

# 권역별 사례발표

## - LENS US, 전북 권역 -

발표 : 이가인, 김태우
코디네이터 : 김지유

# LENS 활동 결과

## 아동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전북 권역: 김태우, 이가인

# 1차 활동

**권역주제:**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의견에 대해 알아보자

**조사내용:**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며 아동의 의견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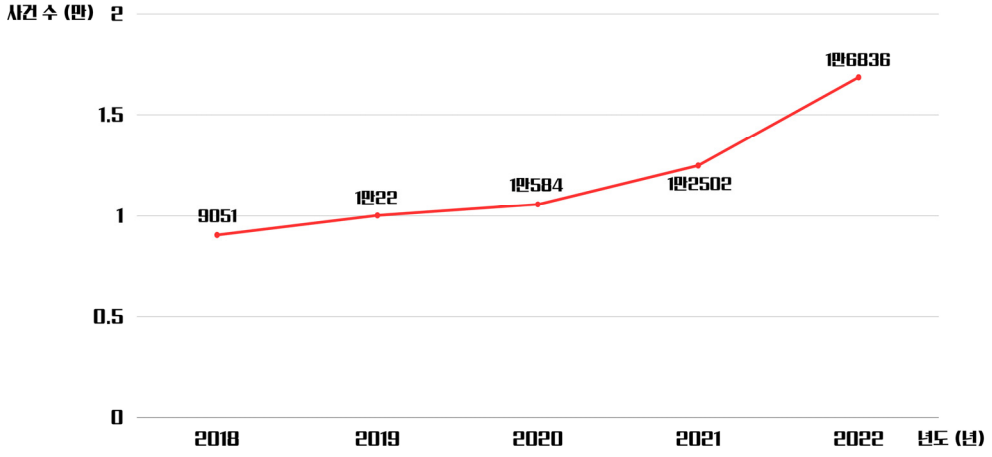


* 자료: 대법원 통계월보

# 1차 활동

## 권역별 활동 계획서

**활동 계획:**

**8월:** OT 및 단워늘 간 역할 분담
권역별 주제 선정
**9월:**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문항 작성
QR 제작 및 지역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 진행
**10월:**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의견 나누기 및 내용 정리

**권역별 활동계획서**

| | | | |
|---|---|---|---|
| 조이름 (권역) | 전북 | 참여아동 성명 (전원 기재) | 장서연, 김태우, 정수아, 이승민, 박주예 김민정, 정수빈, 이가인, 김선우, 한유민, 권명호, 오은재 |
| 담당코디 | 김지유 | | |
| 공통주제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br>→ 공통주제 관련 설문조사 진행(설문지 한아웨 제공) | | |
| 권역주제 |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의견에 대해 알아보자! | | |
| 권역주제 선정이유 | 소년심판 드라마를 통해 소년법이 화제가 되었고 소년법에 적용받는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주제로 선정했다. | | |
| 활동계획 | 구분 | 활동 기간 | 내용 |
| | 계획 | 1차 : ~ |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문항 작성 |
| | | 2차 : ~ | 설문조사 |
| | | 3차 : ~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br>전북지역 모니터링토의 및 결론 도출, 팜플렛 제작 |
| | 조사 대상 및 방법 | 우범소년<br>촉법소년<br>해당 나이대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우범소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동들과 해당 대상자들이 속한 다양한 판결 및 사례들을 찾아보고, 해당법에 위촉되는 당사자들의 의견과 함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 제출일 | 2023 년 8 월 1 일 | | |

# 1차 활동

## OT 및 발대식

**장소:**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일시:** 7월 29일 10시

**방법:**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LENS 활동에 대한 설명
보고서 작성법, 카페 가입 등의 절차 설명
역할 분담 -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권역별 주제 선정

# 2차 활동

## ZOOM MEETING

**장소**: 온라인 ZOOM

**일시**: 9월 9일 16시

**방법**: 설문조사 문항 선정

**결과**: 대상: 14세 - 18세 아동 대상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인지 조사
아동 권리 강화 여부에 대한 생각 조사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강조되어야 할 부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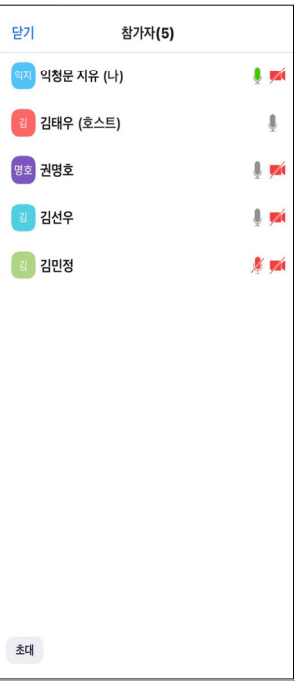


# 2차 활동

## 설문조사 제작

1. 성별 - 남/여
2. 학년 -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3.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
4. 아동권리 중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권리
5. 아동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유무
5-1, 2.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권리 우선시 강화와 그 이유
5-1. 강화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유
6. 아동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일: 법적장치 촉구, 홍보활동, 아동인권 교육

# 2차 활동

3.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정책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예, 안전한 주거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등)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예,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 등)
발달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예, 문화생활,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예, 사생활 보호,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알고 계셨나요?

- ○ 알고 있었다
- ○ 몰랐다

4. 다음의 아동 권리 중 본인이 살면서 침해되었다고 생각한 권리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발달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5. 아동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네
- ○ 아니요

6. 아동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 법적 장치 및 제도를 위한 촉구
- ○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 학교 교육과정 내 아동인권 교육 추가
- ○ Other...

5-1. 다음 아동 권리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

- ○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발달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5-2. 질문 5-1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아동 권리에 해당한 이유를 써주세요. *
(예, 법적제도 문제, 인식 문제 등)

Long answer text

5-1. 아동 권리가 강화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

Long answer text

1. 성별 *

- ○ 남자
- ○ 여자

2. 학년 *

- ○ 중학교 1학년
- ○ 중학교 2학년
- ○ 중학교 3학년
- ○ 고등학교 1학년
- ○ 고등학교 2학년
- ○ 고등학교 3학년
- ○ 기타 (~13세까지)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장소**: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일시**: 10월 7일 12시

**방법**: 익산 지역 내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여 아동 인권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동 인권에 대해 알리고 QR 설문의 참여를 유도

**결과**: 104명의 청소년 참여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1. 성별**

10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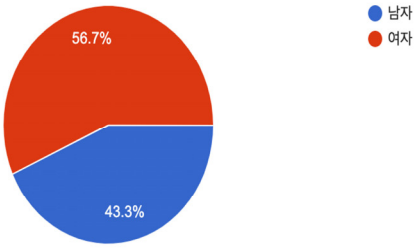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2. 학년**

10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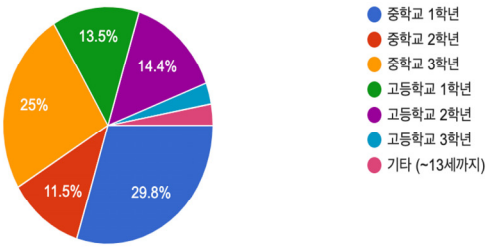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3.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정책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예, 안전한 주거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등)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예,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 등)
발달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예, 문화생활,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예, 사생활 보호,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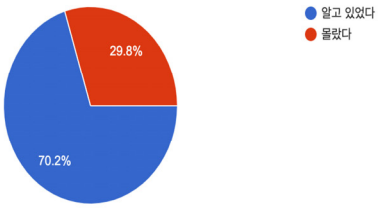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4. 다음의 아동 권리 중 본인이 살면서 침해되었다고 생각한 권리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10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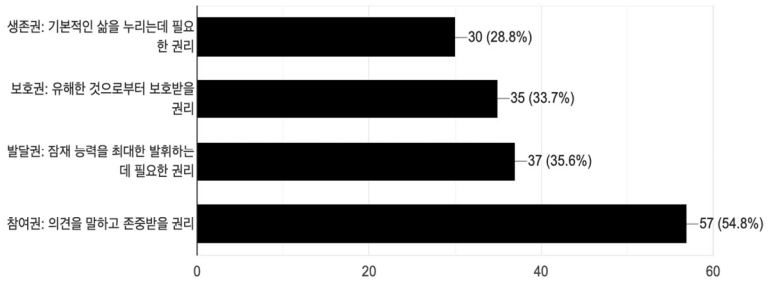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5. 아동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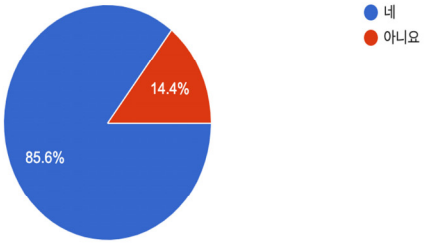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5-1. 다음 아동 권리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89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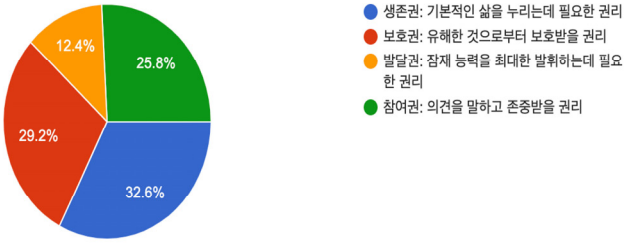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5-2. 질문 5-1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아동 권리에 해당한 이유를 써주세요.**
(예, 법적제도 문제, 인식 문제 등)

89 responses

**생존권**: 다른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배경
**보호권**: 인터넷 매체 증가로 인한 문제
**발달권**: 고정관념으로 인한 발달 저해
**참여권**: 아동들의 의견이 가볍다는 편견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5-1. 아동 권리가 강화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15 responses

촉법소년
교권침해
책임 증가
한 대상에 대한 권리 또는 권위가 강화되면 그에 반한 대상의 권위가 떨어지기 마련

# 3차 활동

##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6. 아동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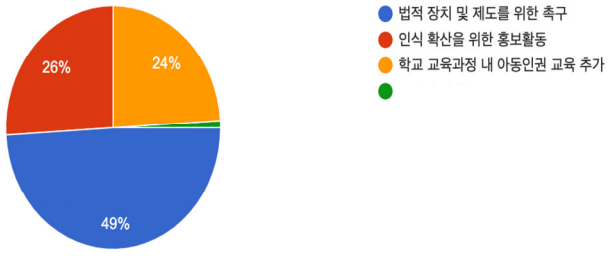


# 소감

**사례를 통해 아동의 생각 알아보는 활동 목적**

**조사내용**: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사례를 토대로 아동들의 생각을 조사

↓

**아동의 인식과 아동권리의 침해 또는 강화시켜야 할 부분 확인,**
**필요한 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변환**

# 소감

사람들에게 **아동인권** 소개

**아동인권**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 가능

**아동인권**에 대한 무관심 성찰

권리에 따른 안전한 삶 보장에 대한 감사

**아동인권** 결점 발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아동인권**의 인식과 부족한 점들 이해

추후 활동 기대

아동 인권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렌즈에 참여
했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아동보호
정책 조차 들어보지 않고 참여해 스스로 부끄
러움이 컸다. 심지어 모임에서 만든 설문조사
에 포함한 아동 인권 보호 정책에 대해 아는
지 물어본 질문에서 거의 3/4가 안다고 답해
주도하는 나로써 한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
다는 점에서 후회도 했다. 하지만 이
로 대한민국의 4가지 기본 권리에 대
하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아동들의
장할 때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주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뿌듯했다. 모임들끼리 서로 바빠 만
부족해 친해지지 못했다는 점과 활
운동에 참여하며 주장하지 못했던 점에서 아
쉬움이 크지만
들에게 우리를
해서 알릴 수
아동들이 권리
수 있는 시간
여자들이 촉법

처음 아동 인권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활동에 참여
해보니 아동인권에 대해 배우고 설문 조사를
실기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생
각하는 아동인권의 인식과 부족한 점들을 알
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선배 추천으로 외부활동 한 본 해보
자는 느낌으로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다 같이
활동해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설문조사를 실
시하며 이전에 못 해본 경험을 많이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에 대해 다
른 단원들과 이야기하며 다양한 생각을 이해
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
시키고 싶다는 생각

이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아
동들이 생각하는 인권을 알아볼 수 있었고 생
각보다 나도 다른 이들도 인권에 대해 많이
무관했다는걸 알게되는 시간이었다. 중간에
참여를 못 한 활동이 있기도 하고 조사를 잘
못 해와서 아쉬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있었지
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활동
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감사합니다

## 권역별 사례발표

### - 징징컴퍼니, 서울 2-1권역 -

발표 : 심예나, 김주하

코디네이터 : 양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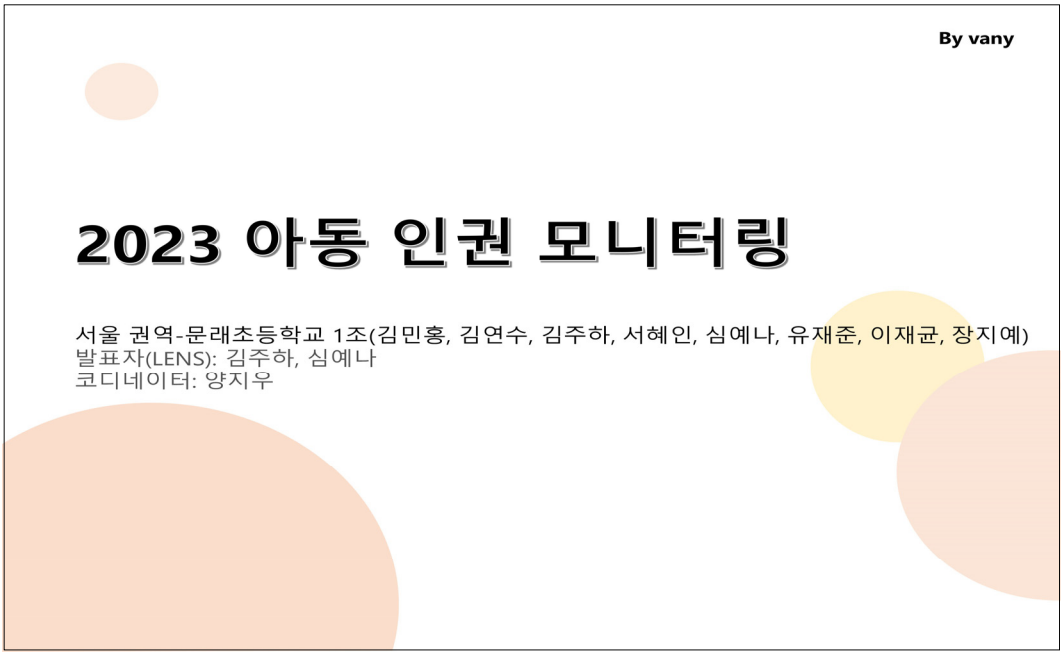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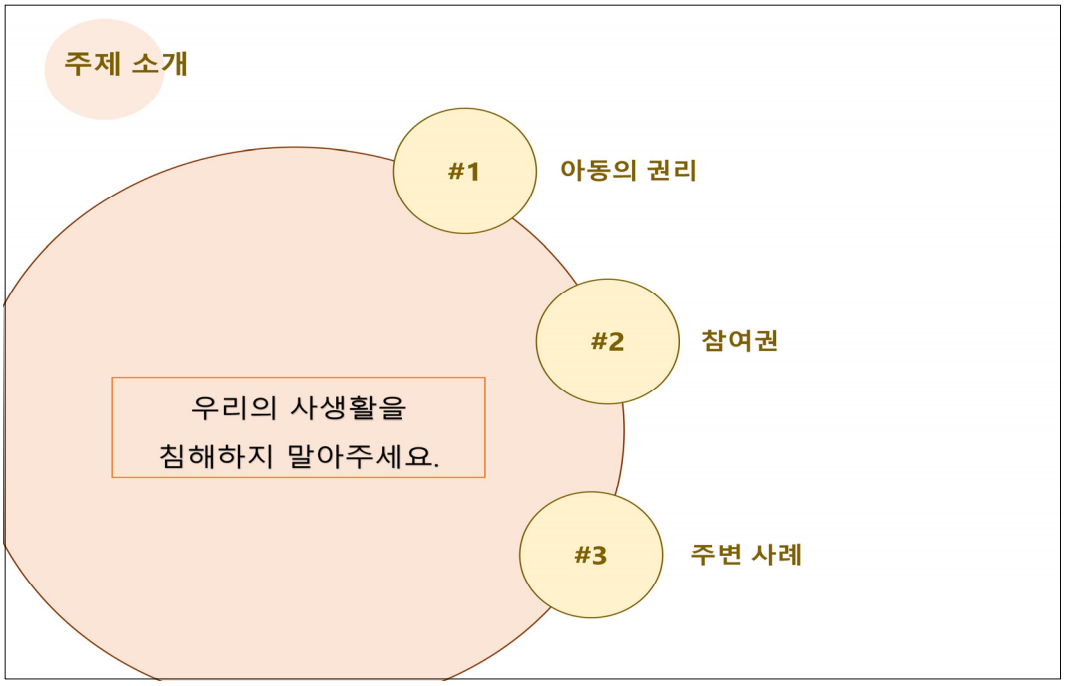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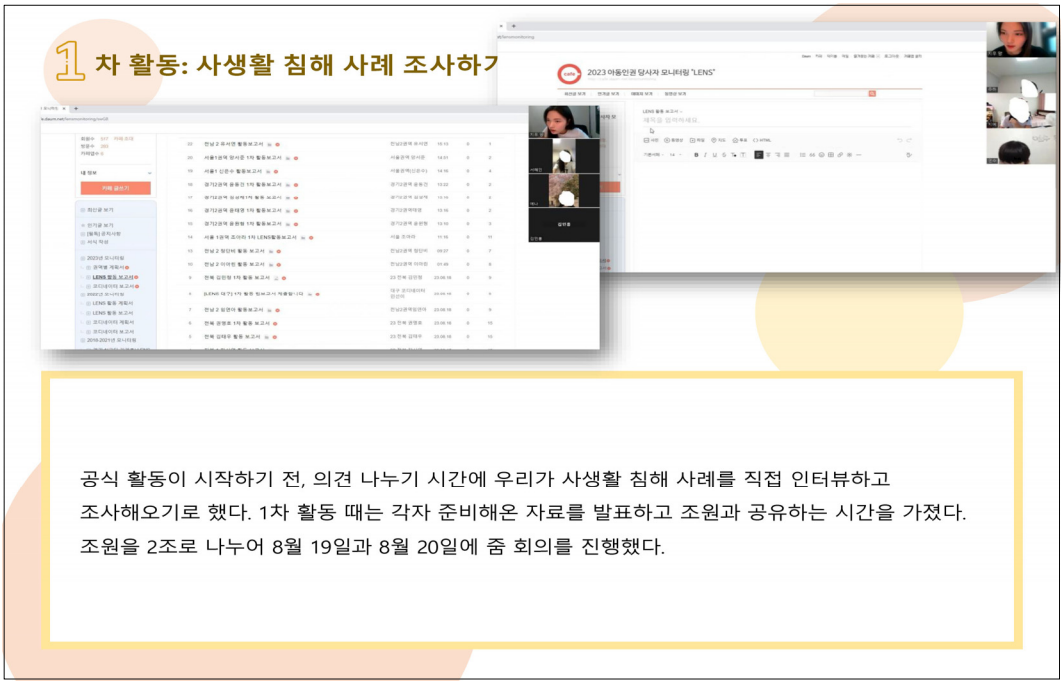


공식 활동이 시작하기 전, 의견 나누기 시간에 우리가 사생활 침해 사례를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해오기로 했다. 1차 활동 때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고 조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을 2조로 나누어 8월 19일과 8월 20일에 줌 회의를 진행했다.

## 2 차 활동: 포스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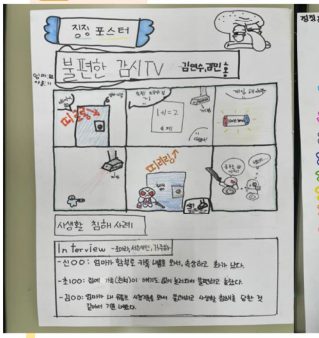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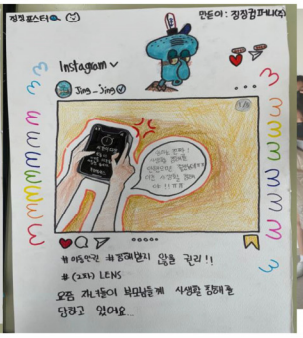

9월 8일에는 지난 1차 활동을 토대로, 아동들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4명의 조원은 패밀리링크(스마트폰 감시 어플) 관련 포스터를, 5명의 조원은 홈cctv 관련 포스터를 제작했다. 제작한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교문 앞, 뒤에 부착했다.

## 3 차 활동: 가정통신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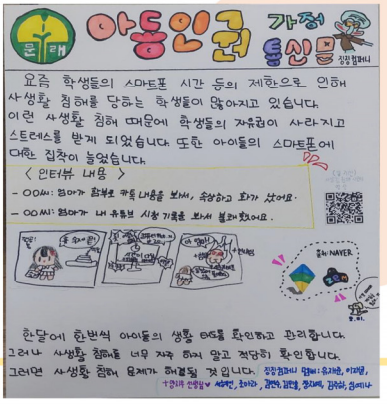


10월 6일엔 이전에 조사했던 사생활 침해 내용을 바탕으로 하드보드지에 아동 인권 가정통신문을 만들었다. 하드보드지의 내용 중 서론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시했고, 본론에는 사생활 침해 사례 인터뷰 내용을, 결론 부분에는 우리가 바라는 사생활 침해 개선 방안을 넣어 가정통신문을 완성했다. 완성된 결과물은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교장실 앞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 4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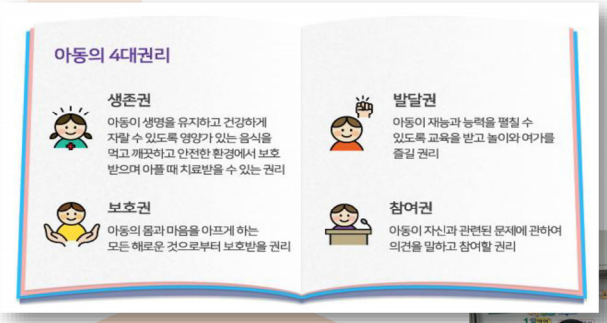


▲ 사진 출처: 굿네이버스

# 감사합니다!

## 권역별 사례발표

### - 기억해, 서울 1권역 -

발표 : 최준용, 이아인, 신은수
코디네이터 : 오채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목차

A. 활동 주제

B. 활동 진행 방향

C.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D. 노키즈존의 대안책

2

## A. 활동 주제

### 노키즈존이란? 다시 봐야할 우리의 문제

노키즈존은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을 제한하고 어른만을 위한 공간을 지칭합니다. 어린이가 주로 출입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안전문제, 공간 혼잡의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어린이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키즈존을 어린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3

## A-1. 노키즈존은 왜 차별인가?

# 아동의 인권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런데 노키즈존은 왜 차별일까요?
그 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조 1항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써있어 어린이들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4

## B. 활동 진행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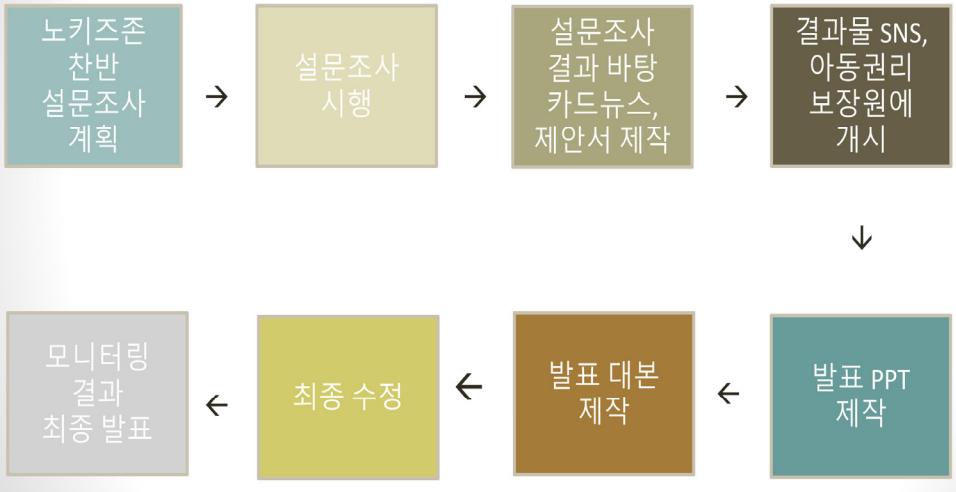


5

## C.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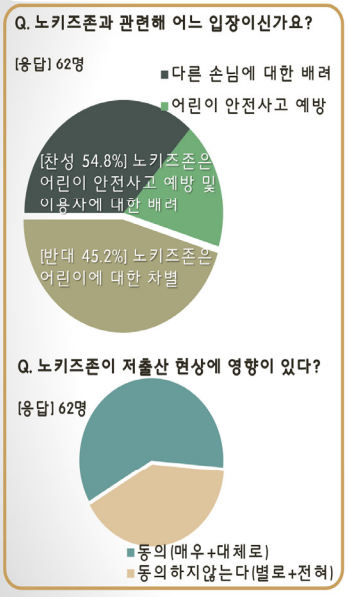


-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결과**

- 노키즈존 찬성: 54.8% 반대: 45.2%

  많은 사람이 찬성한 이유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다른 손님의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자들은 답했습니다.

- '노키즈존이 저출산에 영향을 끼친다' 동의: 40.3% 반대: 59.%로 집계되었습니다.

6

## C-1. 카드 뉴스 제작 및 홍보 (모니터링 결과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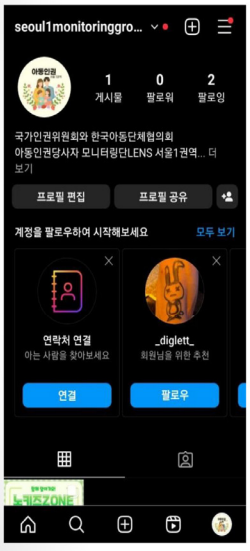

7

## C-2. 아동권리보장원 플랫폼에 제안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 바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 단원들입니다. 저희는 요즘 점점 많아지는 노키즈존 카페(음식점)에 대해 분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노키즈존의 심각성을 알려서 노키즈존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노키즈존이란,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카페 따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노키즈존 카페와 음식점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노키즈존이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 관심이 딱히 없는 아동들도 많고요. 그러나 노키즈존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게 굴어서 피해를 보신 경험이 모두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1항에서도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노키즈존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3명 중 60.4%가 노키즈존을 찬성했고, 39.6%가 반대하였습니다. 찬성 의견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는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77.4%가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의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 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키즈존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다른 손님들을 위한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키즈존이 아니여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주지 않을 수 있는 대안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첫번째 대안책은 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들이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블록 쌓기 등 놀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방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 입니다.....아동들이 놀 수 있는 방 같은 공간을 만들면 아동들이 그곳에서 놀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대안책은 층을 구분한 키즈존 만들기입니다. 단 뜨거운 음식이나 어린이한테 위험한 인테리어들이 있는 가게들만 층을 구분하는 것..의 주장입니다. 예시하면 층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업장만 층 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노키즈존이 아동인권 차별이라는 것과 노키즈존 대안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키즈존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권을 무시했기에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8

## D. 노키즈존의 대안책

(1) 식당 등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장소에는 놀이시설 마련하자는 의견

(2) 층을 구분한 노키즈존 (1층은 키즈존)
단, 층을 구분하는 조건은, 뜨거운 음식 판매 업장, 계단 있는 업장, 인테리어로 인해 충돌 위험이 있는 업장만 가능
(층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업장만 층 구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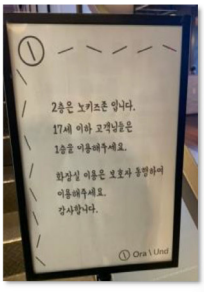


(사진) 대안의 예

9

## Cookie. 활동 내용 느낀 점 (활동 소감)

몰랐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노키즈존에 대해 알아가면서 의견을 나눠가는 것이 흥미로웠다

**양서준**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관심이 더 생기고, 아동인권에 관한 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 **신은수**

앞으로도 아동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우리 사회에 아동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을 없게 해서 아동들이 살기 편하고 발전된 곳으로 만들어 가고싶다.

**이아인**

노키즈존에 대해 알아보는것과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재밌었다

**최지호**

노키즈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이라는게 아쉬웠다. 또한 아동인권 활동기간이 짧다는 것도 아쉬웠지만 우리의 인권을 위해 내가 기여할수 있다는 점은 기뻤다.

**최준용**

10

Thank you!

11

# 권역별 사례발표

## - 안성초프렌즈, 경기 1권역 -

발표 : 김성채, 윤동건, 윤원형, 윤태영

코디네이터 : 이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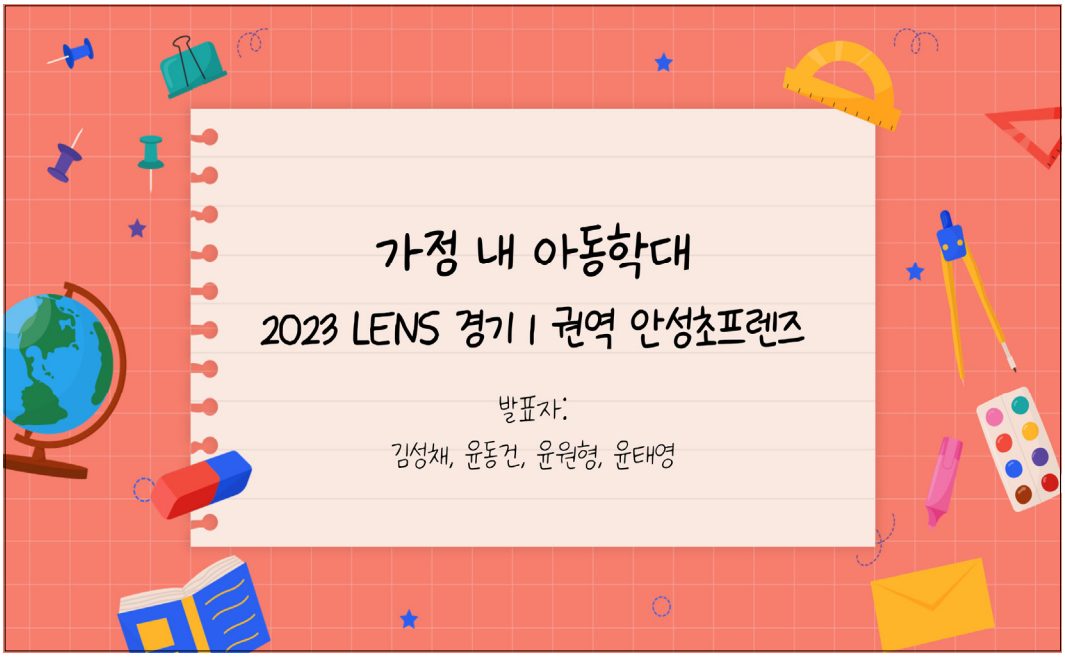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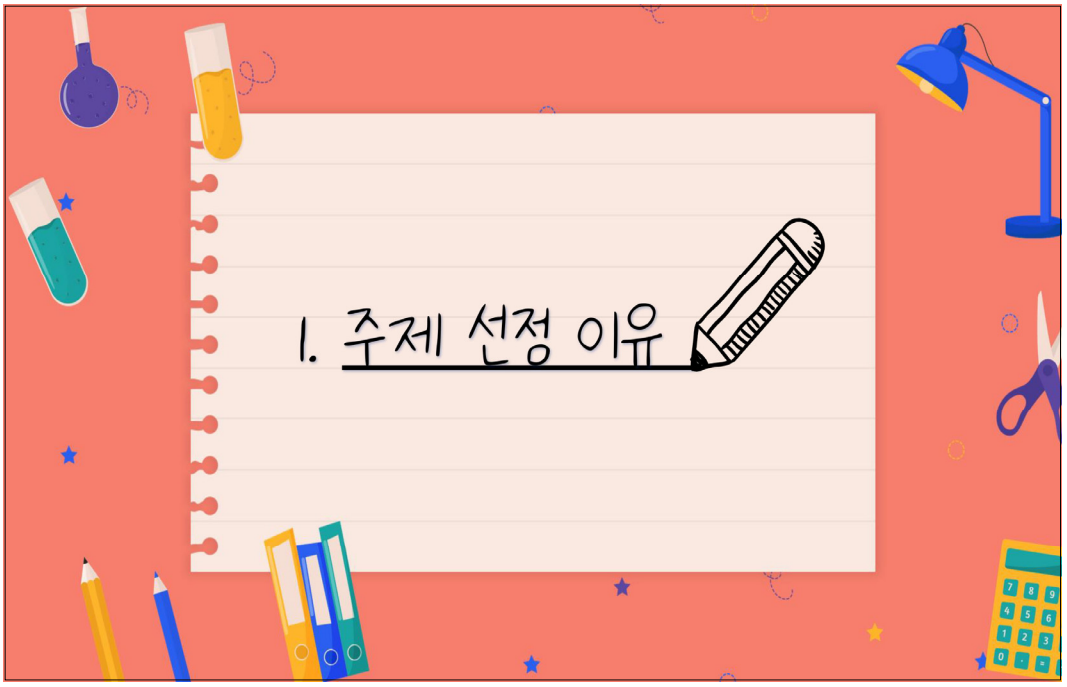


## 주제 선정 이유

✓ "아동인권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떠오르고 있을까?"

✓코로나 이후로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원인, 유형, 해결방안 등에 대해 궁금하다.

✓사회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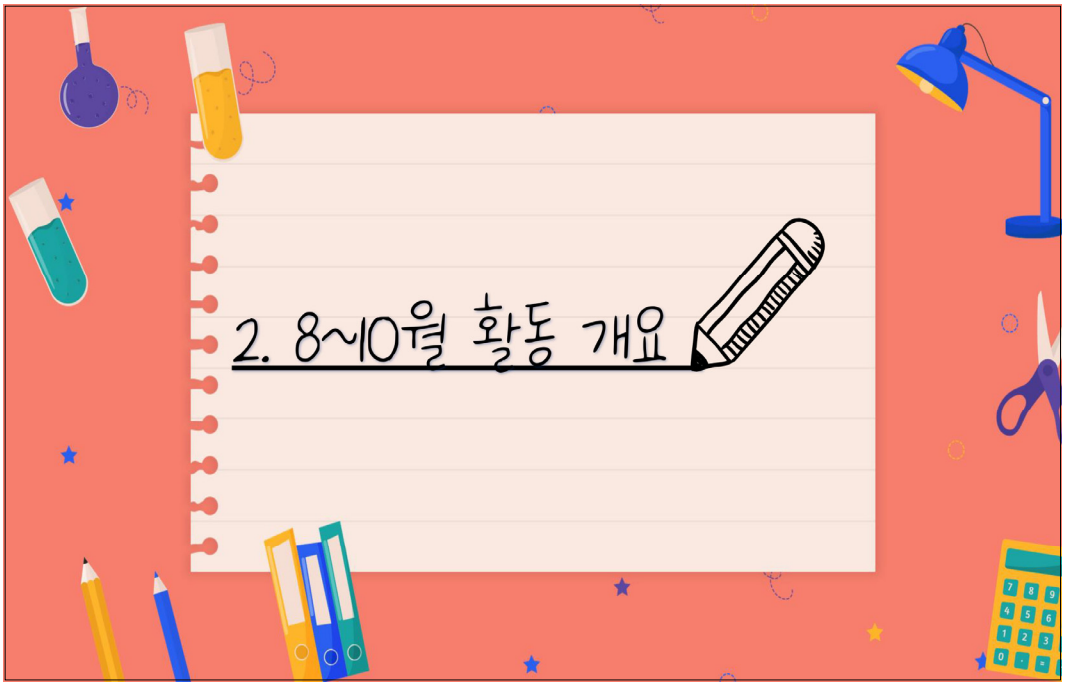
2. 8~10월 활동 개요

8월
1차 모니터링 활동
✓역할분담과 활동계획 세우기
✓첫번째 소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9월
2차 모니터링 활동
✓설문조사와 답변 분석
✓두번째 소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10월
3차 모니터링 활동
✓나만의 포스터 제작, 캠페인
✓세번째 소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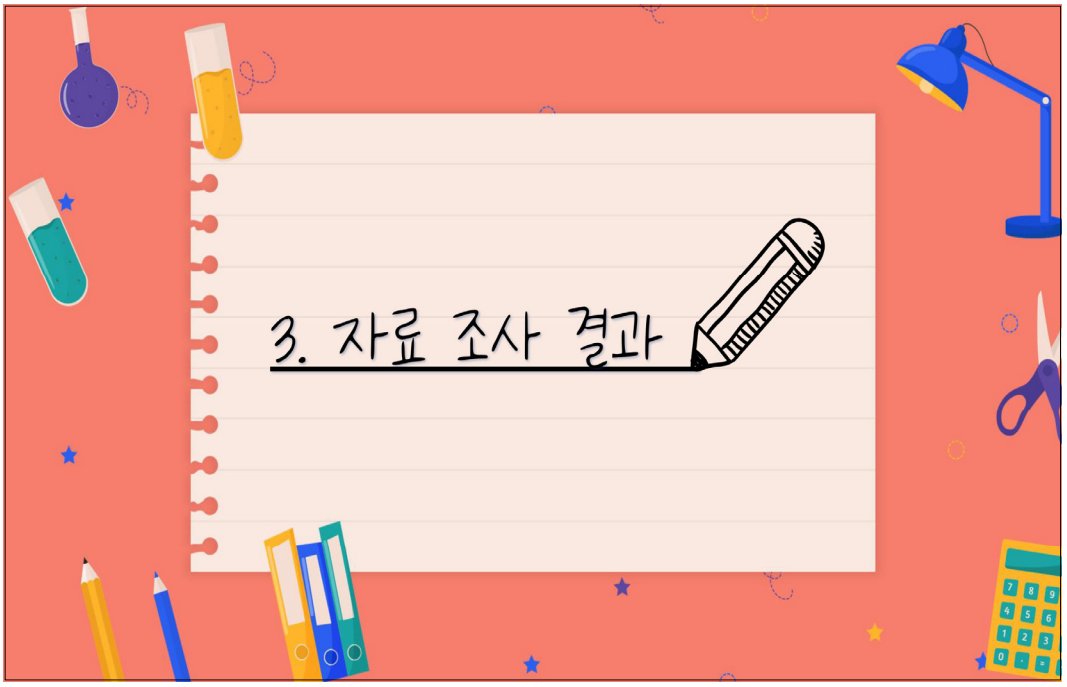


## 소주제(1) 아동학대의 유형, 원인, 코로나 이후로 급증한 이유

**아동학대의 네 가지 유형 :**

1) 신체 학대 2) 정서 학대 3) 성 학대 4) 방임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

1) 부모요인 :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의 지식 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 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적 학대 받은 경험, 알코올 중독, 그릇된 아동관

2) 가정적, 사회적 요인 : 가족관계의 문제, 가족구조의 문제,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아동학대가 코로나 이후로 아동학대가 52.84% 급증한 이유 :**

외부활동이 줄면서 가정 내 고립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대 사례가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 소주제(2)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와 사례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기본권 :**

1)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 보호의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의 권리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4) 참여의 권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내고 존중 받을 권리

**사례 분석 예시 :**

1)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먹이고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
2) 7살 딸을 18개월 감금한 사건:
   ->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

## 소주제(3) 피해 아동의 구제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보호 · 지원 방법 :**

1) 심리 및 정서 지원 2) 의료 지원 3) 아동발달 지원 4) 보호소 시설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 필요한 노력 :**

1)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 관련 지식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 학교는 학생의 입학 및 학적 관리에 힘써서 입학하지 않은 아동이나 무단결석하는 아이들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아동 학대 사건의 신고 의무자들이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와 홍보가 필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한다.
4) 아동학대 범죄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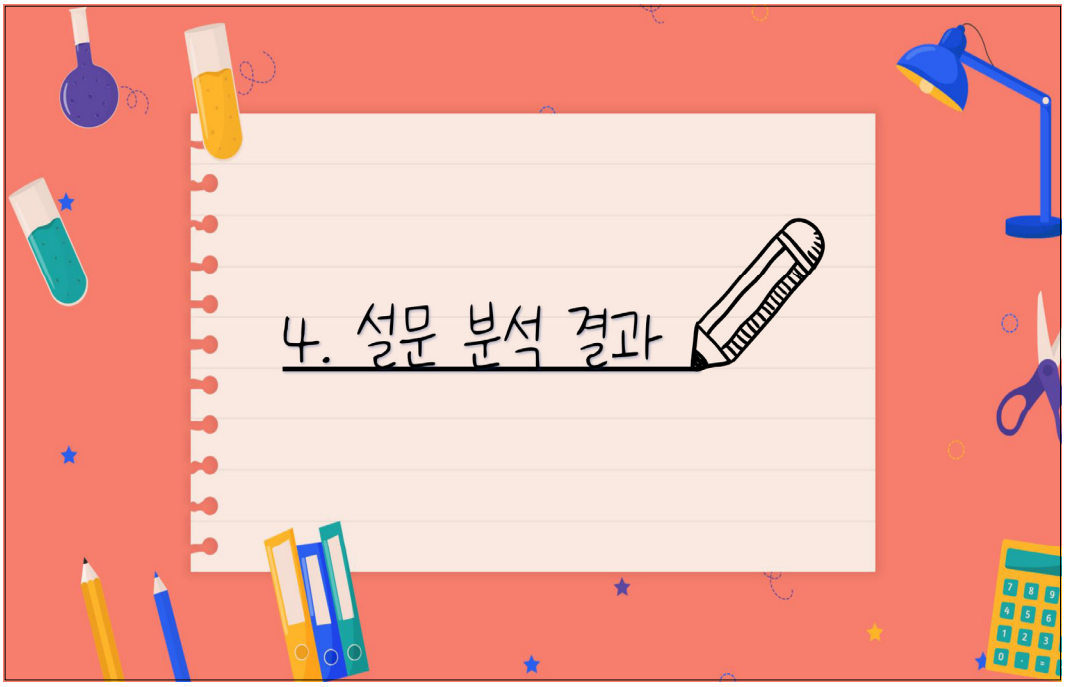
4. 설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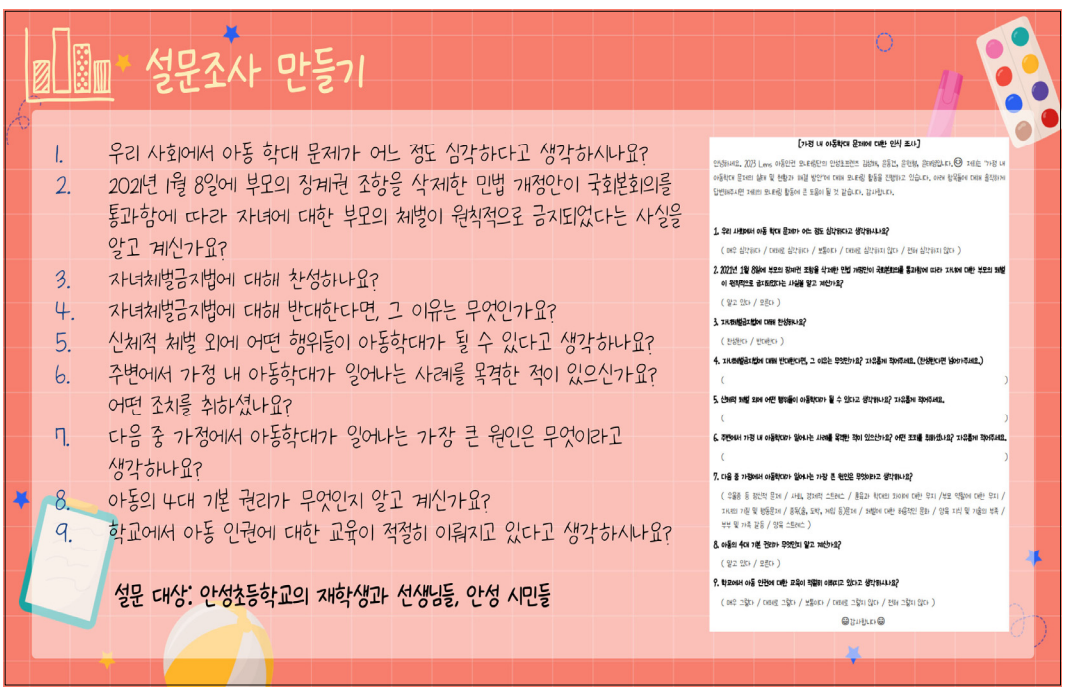
설문조사 만들기

1.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2021년 1월 8일에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나요?
4.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신체적 체벌 외에 어떤 행위들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6. 주변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7. 다음 중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아동의 4대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9. 학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문 대상: 안성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선생님들, 안성 시민들

## 설문조사 답변 분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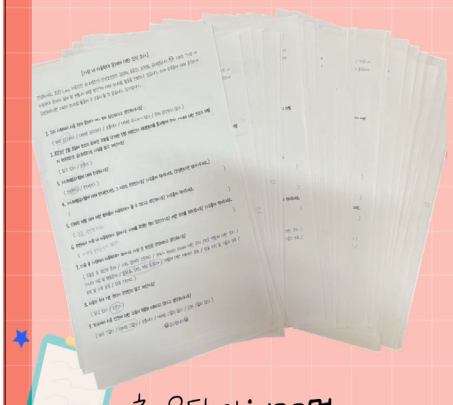

총 응답자: 100명

Q)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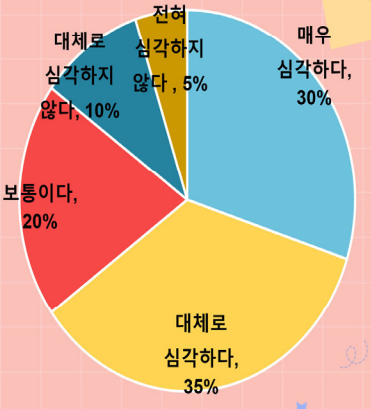


## 설문조사 답변 분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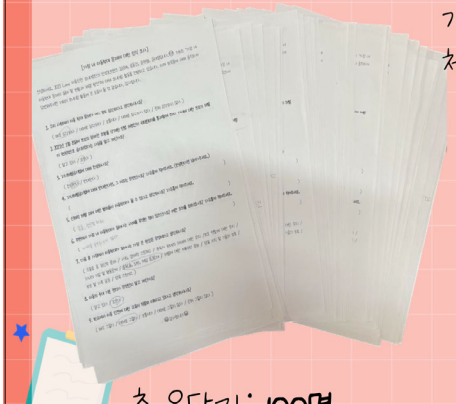

총 응답자: 100명

Q) 2021년 1월 8일에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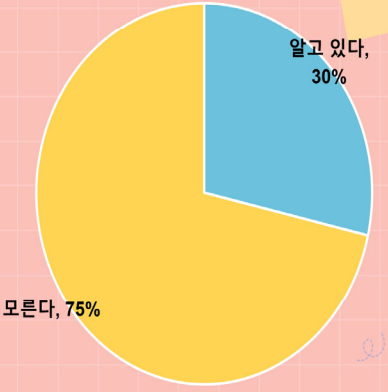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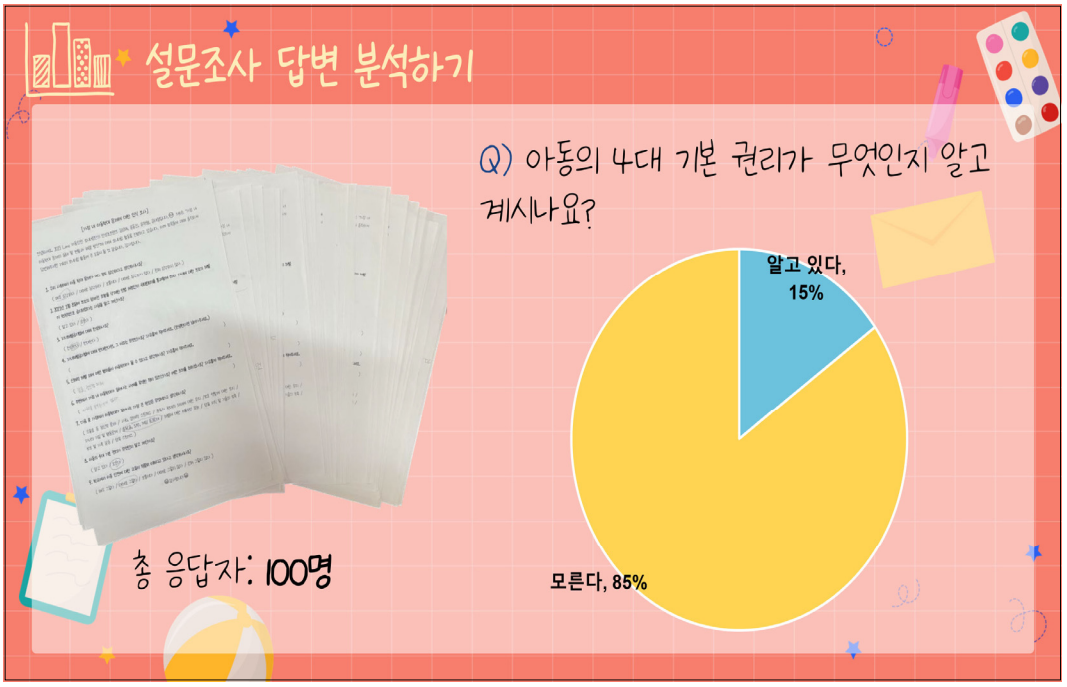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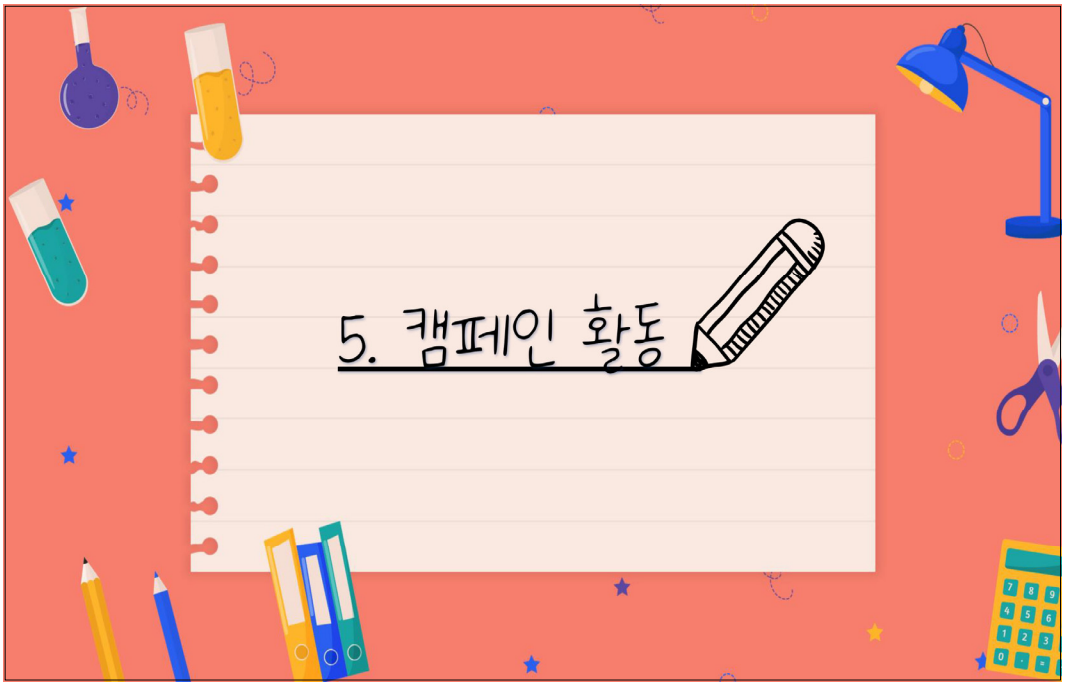

## 나만의 포스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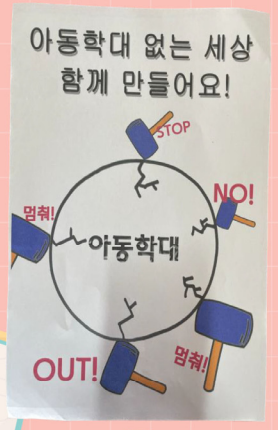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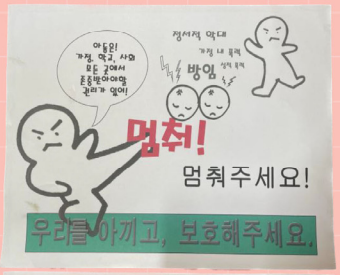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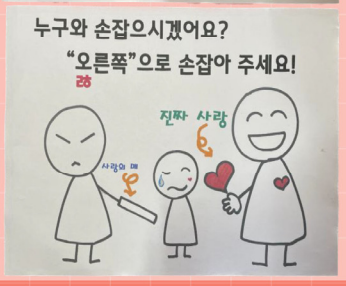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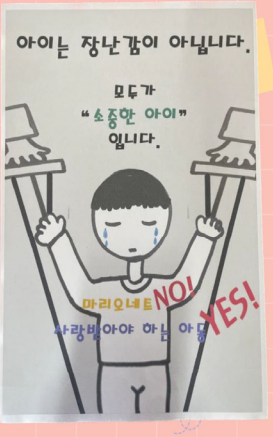


## 교내 캠페인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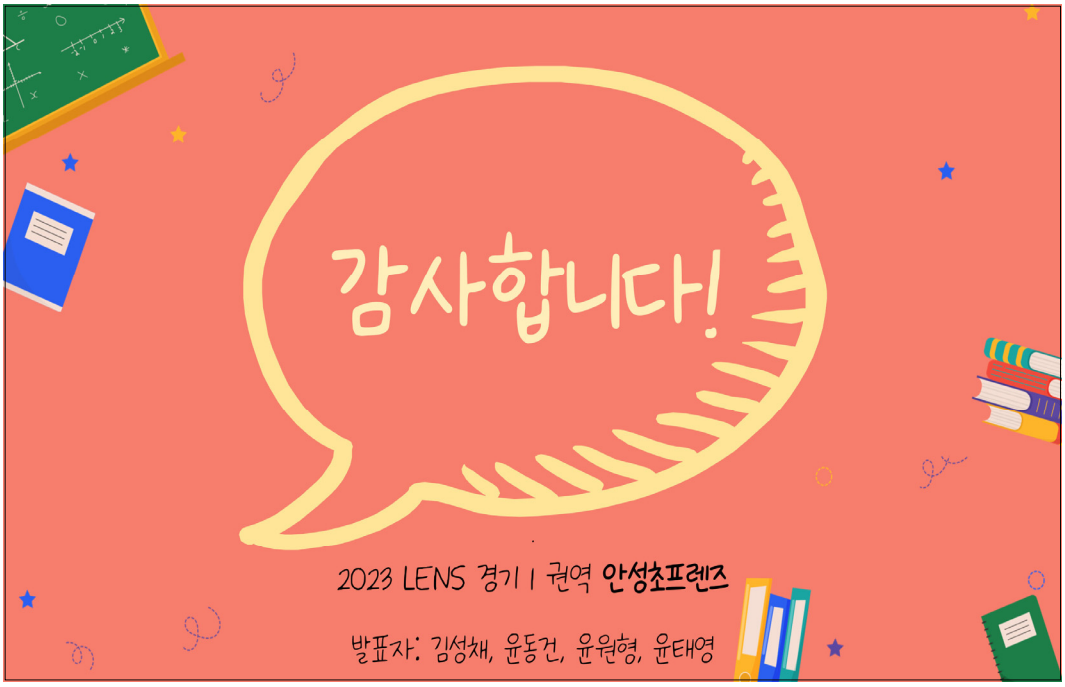

# 권역별 사례발표

## - 라이트빌더, 경기 2권역 -

발표 : 윤수영, 정세현, 홍유나

코디네이터 : 김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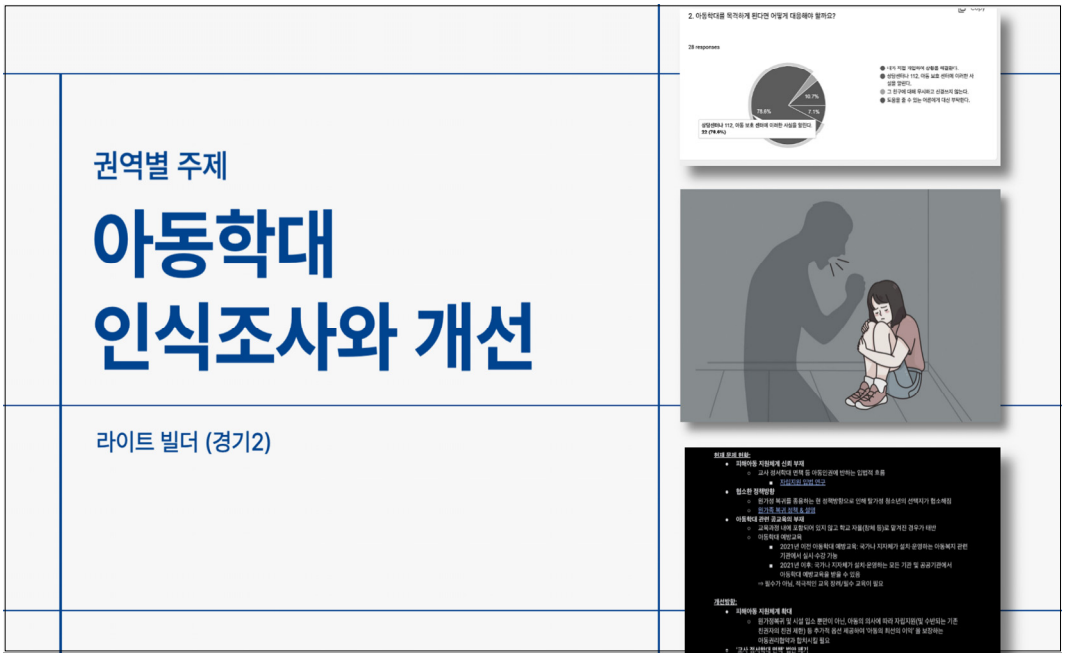

주제 소개 |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 Right Builder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경계심 함양

아동학대는 오랜 시간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끔찍한 사건들로 온 국민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고 법과 사회도 움직였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매번 심각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결론
-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 불가능
→ 학대에 대한 주위의 의식&관심과 아동의 피해 인식이 중요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스스로가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게 함
→ 신고 후 수사와 보호 진행 절차를 안다면 신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목표:
- 아동의 아동 학대 & 권리 인지 역량을 확인
- 학대 신고 후 절차 소개

실천한 활동 |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 Right Builder

## 사전 조사

사전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더 깊은 이해

- 아동학대 판례 & 유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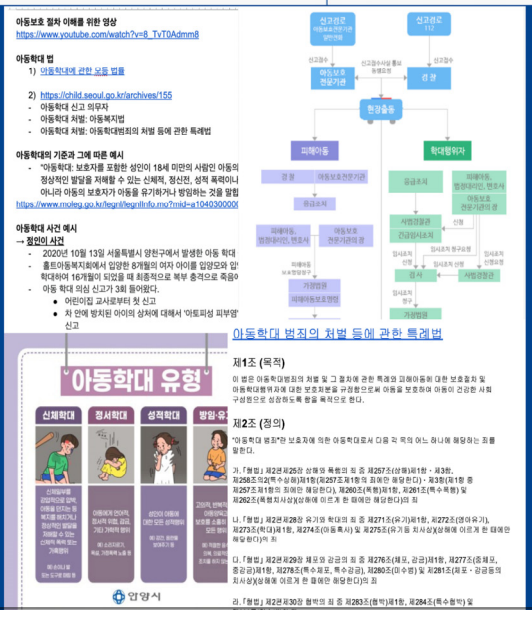

## 아동학대 팜플렛 제작

아동학대 신고, 상담기관, 유형을 포함한 설명지

-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심 함양과 개선을 위한 안내서
- 오프라인 아동학대 인식조사 과정에서 같이 배포

## 아동학대 인식 설문 조사

초등학생을 상대로 오프라인 설문 조사

- 초등생용 설문지 질문 제작
  - 객관식 문제 포함
- 아동학대 팜플렛 배포
- 모든 조원이 다른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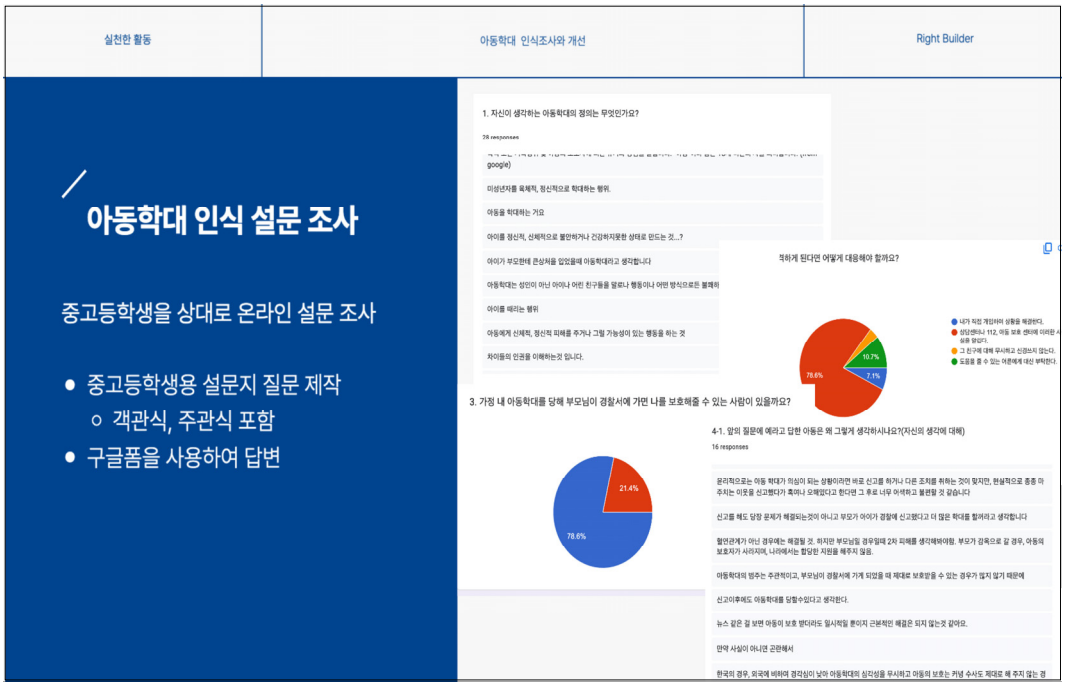
실천한 활동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아동학대 인식 설문 조사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 조사
●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질문 제작
○ 객관식, 주관식 포함
● 구글폼을 사용하여 답변
1. 자신이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78.6%
21.4%
3. 가정 내 아동학대를 당해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78.6%
21.4%

실천한 활동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아동학대 인식 인터뷰 진행
모든 조원이 다른 나이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질문 제작
● 만 12세, 15세, 17세를 상대로 인터뷰
● 인터뷰를 토대로 영상 제작
아동들이 생각하는
'아동학대'란?

설문지 분석과 결론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설문지 분석과 결론
01 아동학대 설문지 결과
02 문제점 &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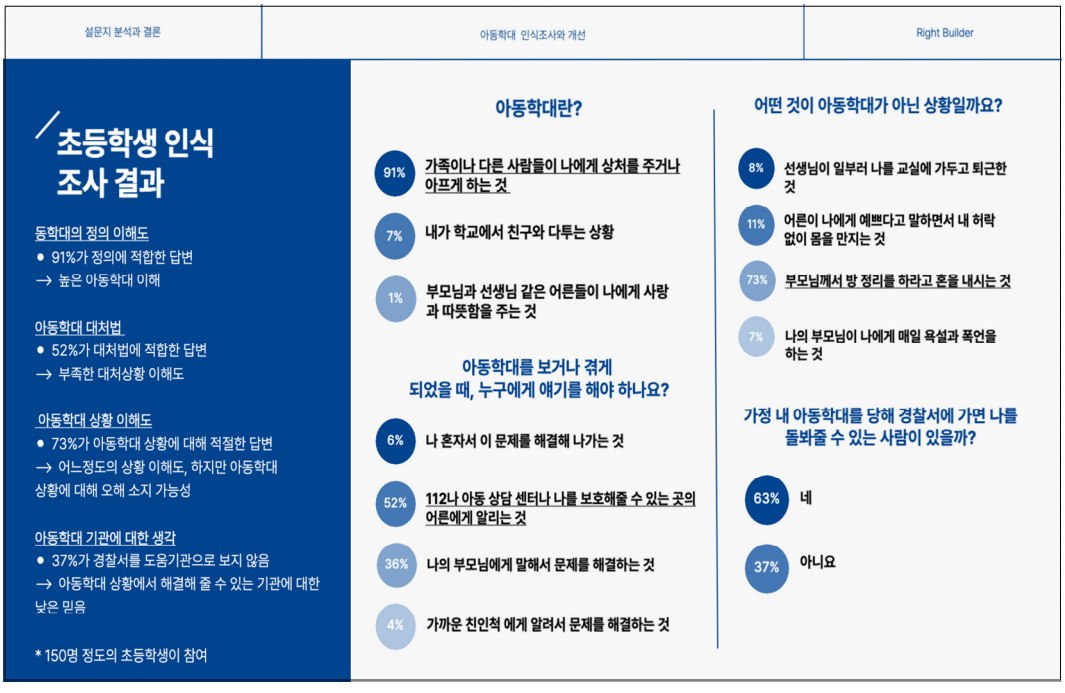
설문지 분석과 결론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초등학생 인식 조사 결과
동학대의 정의 이해도
• 91%가 정의에 적합한 답변
→ 높은 아동학대 이해
아동학대 대처법
• 52%가 대처법에 적합한 답변
→ 부족한 대처상황 이해도
아동학대 상황 이해도
• 73%가 아동학대 상황에 대해 적절한 답변
→ 어느정도의 상황 이해도, 하지만 아동학대 상황에 대해 오해 소지 가능성
아동학대 기관에 대한 생각
• 37%가 경찰서를 도움기관으로 보지 않음
→ 아동학대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낮은 믿음
* 150명 정도의 초등학생이 참여
아동학대란?
91%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것
7% 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상황
1% 부모님과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나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것
아동학대를 보거나 겪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6%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52% 112나 아동 상담 센터나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의 어른에게 알리는 것
36% 나의 부모님에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4% 가까운 친인척 에게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떤 것이 아동학대가 아닌 상황일까요?
8% 선생님이 일부러 나를 교실에 가두고 퇴근한 것
11% 어른이 나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내 허락 없이 몸을 만지는 것
73% 부모님께서 방 정리를 하라고 혼을 내시는 것
7%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매일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
가정 내 아동학대를 당해 경찰서에 가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63% 네
37%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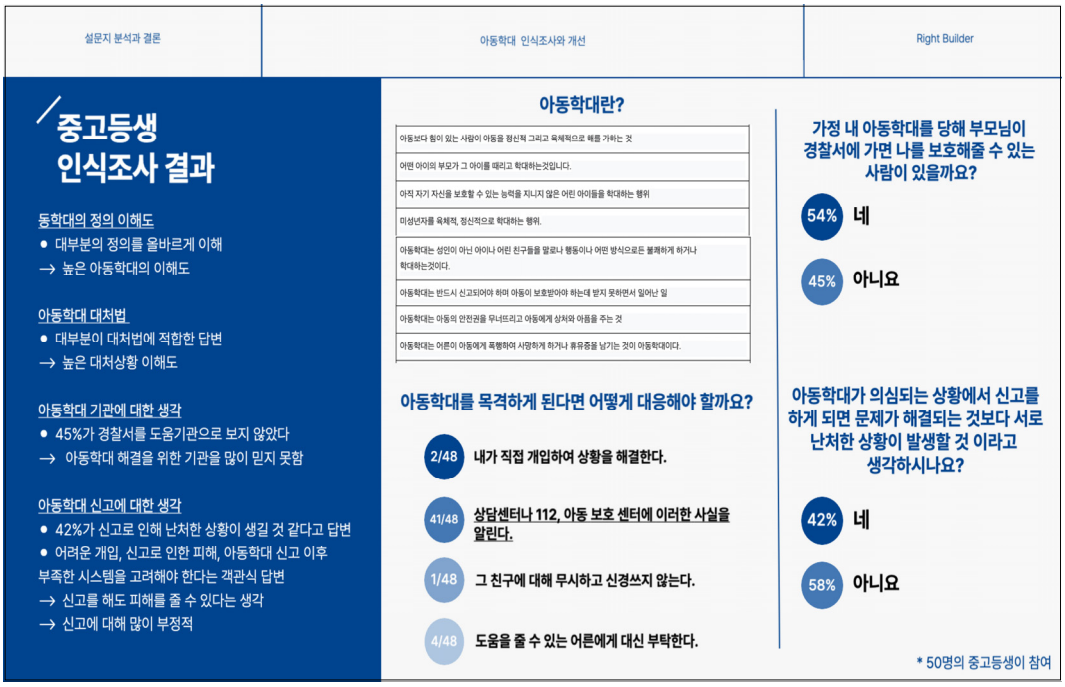
설문지 분석과 결론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중고등생
인식조사 결과
동학대의 정의 이해도
● 대부분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
→ 높은 아동학대의 이해도
아동학대 대처법
● 대부분이 대처법에 적합한 답변
→ 높은 대처상황 이해도
아동학대 기관에 대한 생각
● 45%가 경찰서를 도움기관으로 보지 않았다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기관을 많이 믿지 못함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생각
● 42%가 신고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답변
● 어려운 개입, 신고로 인한 피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부족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는 객관식 답변
→ 신고를 해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 신고에 대해 많이 부정적
아동학대란?
아동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아동을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
어떤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는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행위
미성년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닌 아이나 어린 친구들을 말로나 행동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쾌하게 하거나
학대하는것이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아동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전권을 무너뜨리고 아동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아동학대는 어른이 아동에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유유증을 남기는 것이 아동학대이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48 내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을 해결한다.
41/48 상담센터나 112, 아동 보호 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1/48 그 친구에 대해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는다.
4/48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에게 대신 부탁한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당해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54% 네
45% 아니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서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2% 네
58% 아니요
* 50명의 중고등생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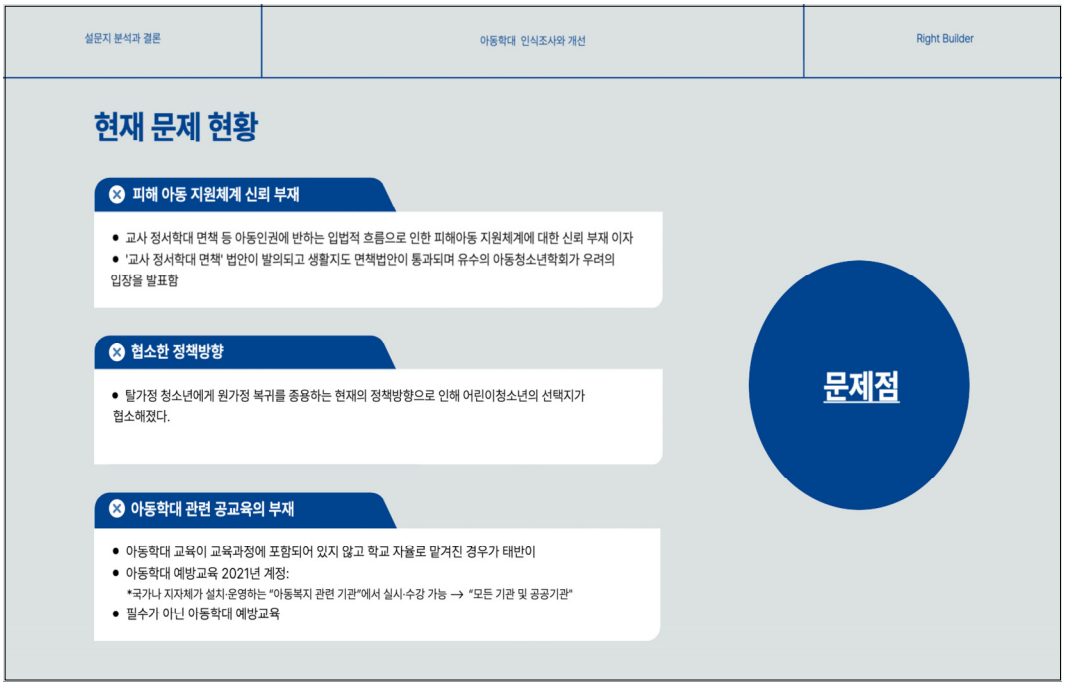
설문지 분석과 결론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현재 문제 현황
피해 아동 지원체계 신뢰 부재
● 교사 정서학대 면책 등 아동인권에 반하는 입법적 흐름으로 인한 피해아동 지원체계에 대한 신뢰 부재 이자
● '교사 정서학대 면책' 법안이 발의되고 생활지도 면책법안이 통과되며 유수의 아동청소년학회가 우려의
입장을 발표함
협소한 정책방향
● 탈가정 청소년에게 원가정 복귀를 종용하는 현재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어린이청소년의 선택지가
협소해졌다.
아동학대 관련 공교육의 부재
● 아동학대 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교 자율로 맡겨진 경우가 태반이
●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1년 계정: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서 실시·수강 가능 → "모든 기관 및 공공기관"
● 필수가 아닌 아동학대 예방교육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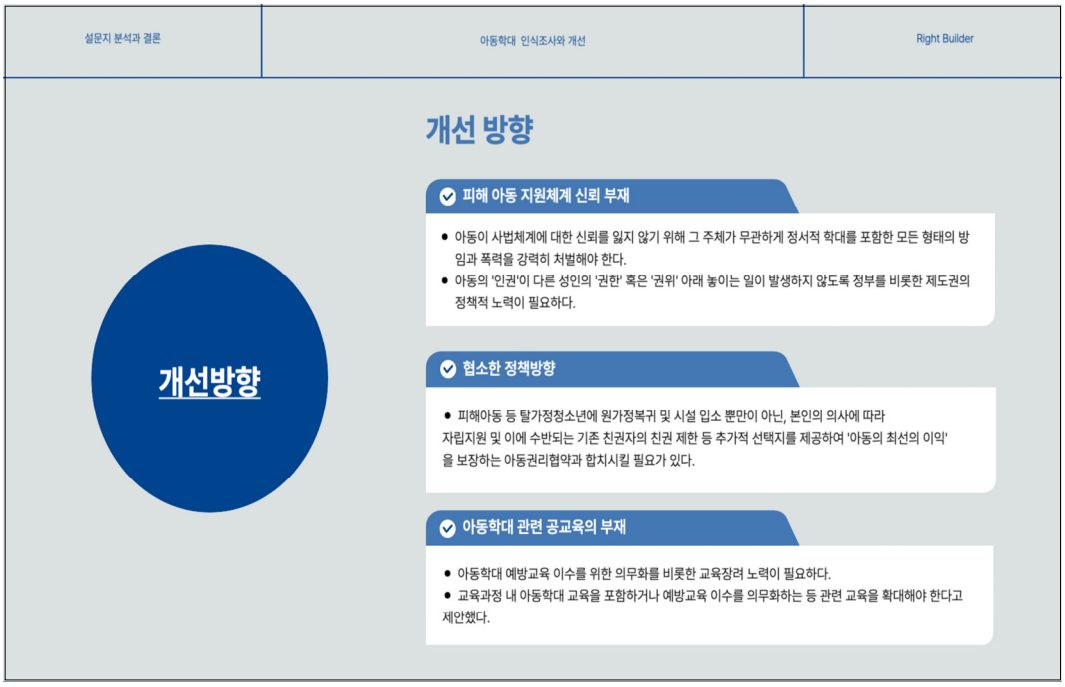
설문지 분석과 결론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개선방향
개선 방향
피해 아동 지원체계 신뢰 부재
아동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그 주체가 무관하게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방임과 폭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아동의 '인권'이 다른 성인의 '권한' 혹은 '권위' 아래 놓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협소한 정책방향
피해아동 등 탈가정청소년에 원가정복귀 및 시설 입소 뿐만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립지원 및 이에 수반되는 기존 친권자의 친권 제한 등 추가적 선택지를 제공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아동권리협약과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관련 공교육의 부재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위한 의무화를 비롯한 교육장려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 교육을 포함하거나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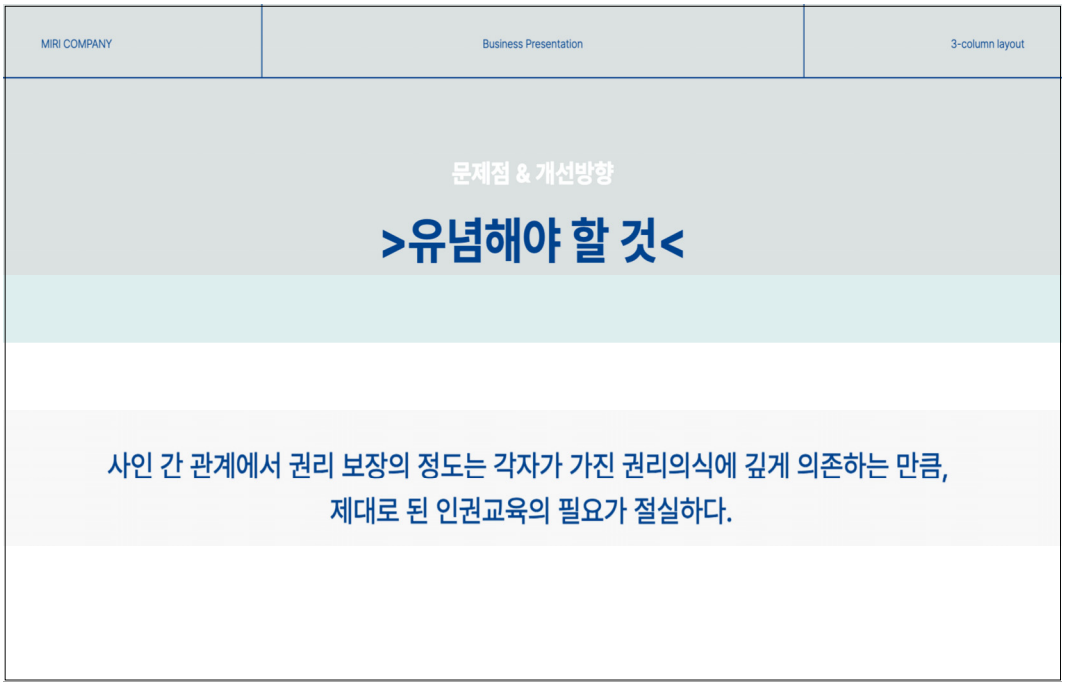
MIRI COMPANY
Business Presentation
3-column layout
문제점 & 개선방향
>유념해야 할 것<
사인 간 관계에서 권리 보장의 정도는 각자가 가진 권리의식에 깊게 의존하는 만큼,
제대로 된 인권교육의 필요가 절실하다.

설문지 분석과 결론
아동학대 인식조사와 개선
Right Builder
감사합니다!
라이트 빌더 (경기2)

# 권역별 당사자 모니터링 참여 아동 및 연구자

## - 감자, 강원 권역 -

발표 : 이누리, 김하율, 신영인
코디네이터 : 기솔

## 02. 지난활동이야기

## 01. 모니터링 주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아동안전"

## 02. 주제선정이유

- 아동인권교육을 들으며 '아동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듬.
- 활동계획을 작성하며 아동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아동안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동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 즉 어린이보호구역을 장소로 선정하게 됐다.
- 따라서, 스쿨존에서 아동안전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스쿨존에 대한 다른 아동들의 의견을 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쿨존에서의 아동안전'을 주제로 선정함.

## 02. 1차 활동 (스쿨존 직접 가보기)

## 02. 1차 활동 (스쿨존 직접 가보기)

→ 자신이 생각하는 권리침해 사진 촬영하기!

## 02. 1차 활동 (스쿨존 직접 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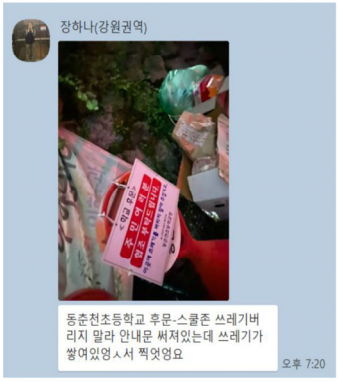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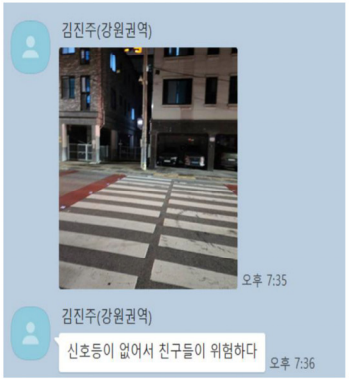


→ 권리침해 사진 촬영 및 설문지 구성

## 02. 1차 활동 (스쿨존 직접 가보기)

- 활동이 끝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스쿨존에서의 안전규칙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되어 다른 친구들도 안전규칙에 관해 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듬.
- 스쿨존에 가보니 안전규칙이 제대로 이루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스쿨존에 관한 생각을 조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듬.

## 03. 2차 활동 (어린이호보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2023 아동청소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 활동을 진행하는 강원권역 팀입니다!

본 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수칙을 아동이 인지하고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여 아동의 의견을 국가에 제안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에 맞고 틀리고의 정답은 없고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앞서 제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TEL. 010-4433-0718 / E-mail: rlthf7777@naver.com)

Google에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저장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표시는 필수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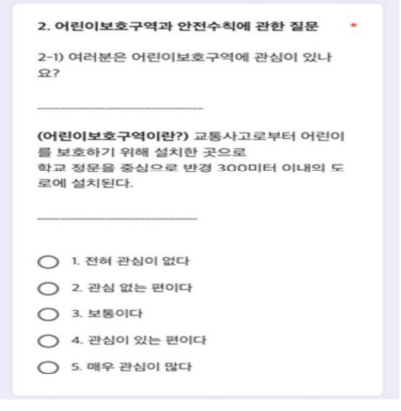
2.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수칙에 관한 질문 *

2-1) 여러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설치된다.

1. 전혀 관심이 없다
2. 관심 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있는 편이다
5. 매우 관심이 많다

→ 약 한달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 03. 2차 활동 (어린이호보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 06. 활동 과제 1: 설문조사 진행하기

-> 센터 내에 있는 친구들 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해달라고 부탁하고 몇명했는지 확인하고 설문조사가 다 끝나면 다 같이 결과 함께 확인하고 이야기하기 !!

→ 대면 설문조사 진행 (센터 내에 있는 아이들)

# 03. 2차 활동 (어린이호보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2.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수칙에 관한 질문**

2-1) 여러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설치된다.

응답 2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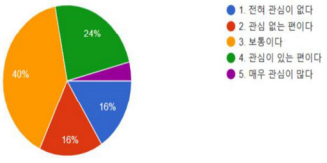


**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관한 질문**

3-1)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응답 2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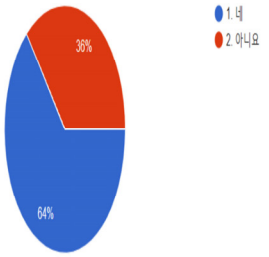

# 03. 2차 활동 (어린이호보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3-2)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응답 25개

-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차들이 빨리 달리때도 있기때문에
- 보호구역에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조건에 적합한거같다
- 어린이보호구역 에서도 차가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다.
- 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 사고위험 방지
- 건너주게해주시는보안간선생님이계셔서
- 경비아지씨분들과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알려주기 때문이다
- 사고날일이없으니깐

▶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
- 경비아저씨분들과 같은 어른들이 잘 알려줘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규칙이 있어서

▶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안전규칙을 안지키는 사람들도 있어 일반도로와 같다고 생각해서

# 03. 2차 활동 (어린이호보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3-3)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응답 25개

- 모른다
-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난다
- 엄청난 처벌
- 어른들의 양심
- 10키로로가기
- 표지판을 더 크게한다
- 과태료 인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자동차가 빨리 안달리면 좋겠다
- 단속을철저히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확대

▶ 과태료 인상

▶ 단속을 철저히 시행

▶ cctv 설치 확대

## 03. 2차 활동 (어린이호보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 결론

-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확대

## 04. 활동을 진행하며 느낀점

김하율: 활동을 통해 스쿨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아동안전에 더욱 관심을 지니게 됐다.
박민혁: 설문조사와 교육을 통해 민식이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재미있었다.
신지훈: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 재밌다고 느껴졌다.
이누리: 스쿨존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배우고 아동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며 올바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진주: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동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세희: 스쿨존교육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스쿨존에서 위험해 보이는 것에 관한 관리가 잘되어 더 안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우섭: 스쿨존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며 아동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장하나: 민식이 법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건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과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사합니다.

# 권역별 사례발표

## - 세렌디피티, 전남 2권역 -

발표 : 임연아, 임은미, 정단비
코디네이터 : 서지원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 -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

발표 : 임연아 임은미 정단비
PPT : 유서연 이아린

## ‘세렌디피티’를 소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불법촬영**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5명의 청소년이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Q. 학교에서 허락없이 찍은 체육대회 사진이 졸업앨범에 올라갔다면 불법촬영일까?**

**Q. 걸어가다가 버스킹 하고 있는 댄스팀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불법촬영일까?**

**Q. 여러분은 불법촬영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초상권

- 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동의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법촬영

-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신체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침해도 불법촬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불법촬영의 종류를 초상권과 성착취로 나눠 활동했습니다.**

## 불법촬영피해사례

한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와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K 시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초상권침해사례

놀이공원에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다 보면 순간포착 사진에 찍히곤 한다. 중국의 한 대학생이 '이러한 사진은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쑤저우대 법학과 학생 왕모씨는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자신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모습을 함부로 찍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다.

왕씨는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디즈니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기구에서 내린 뒤 자신을 담은 사진이 다른 관광객들의 사진과 함께 나열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순간포착 방식으로 찍힌 사진이었다. 디즈니랜드는 이런 사진을 장당 118위안(약 2만 1000원)에 판매한다.

## 불법촬영현황 및 실태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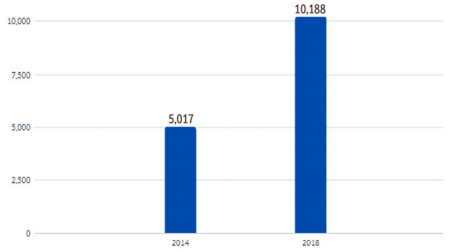


초상권침해 범죄 발생 건수

불법촬영물 삭제, 차단 건수
2021년에 비해 2022년 153,491건으로 4.5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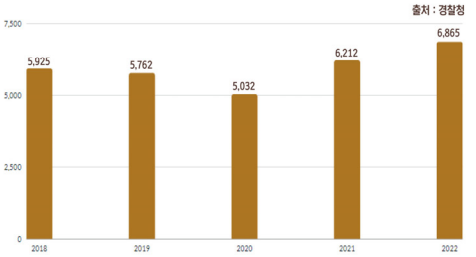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

##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초상권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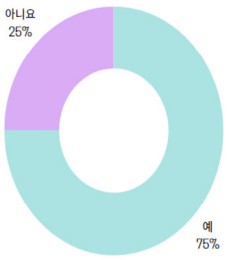


**Q.**
우리나라가 초상권 침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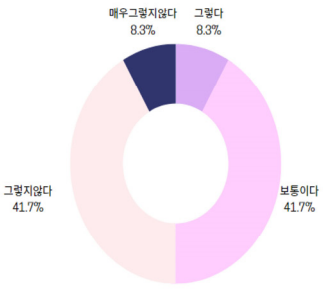


**Q.**
돈을 주고 캐리커쳐 작업을 맡긴 뒤 작가가 내 얼굴 그림을 sns에 업로드했다면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성착취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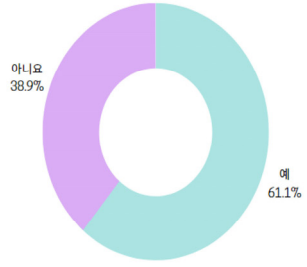


**Q.**
공중화장실, 영화관,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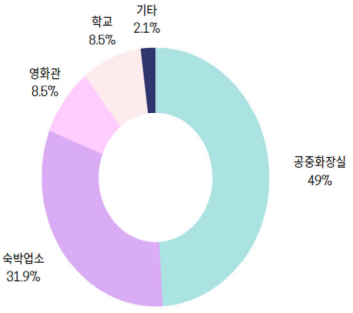


**Q.**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불안감을 느끼셨던 장소에
체크해주세요.

##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성착취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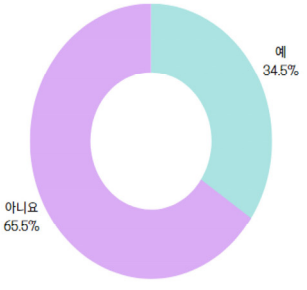


**Q.**
최근 보신 성착취 불법촬영 뉴스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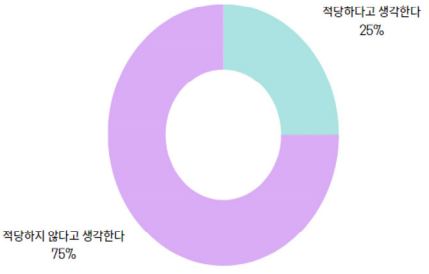


**Q.**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착취 불법촬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촬영** 대한민국 현행법-초상권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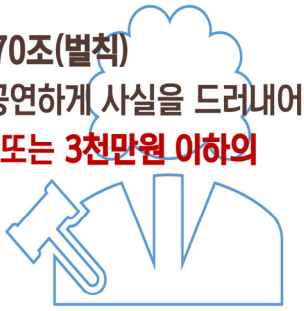

**불법촬영** 대한민국 현행법-성착취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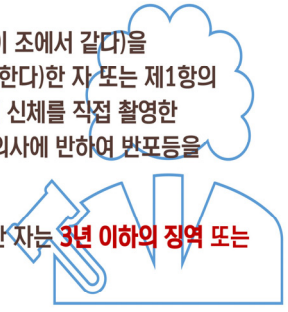

## 불법촬영 대한민국 현행법-아동 청소년 처벌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 종류 | 내용 | 기간(연장) | 적용연령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 10세 이상 |
| 6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월 이내 | 10세 이상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월 이내 | 10세 이상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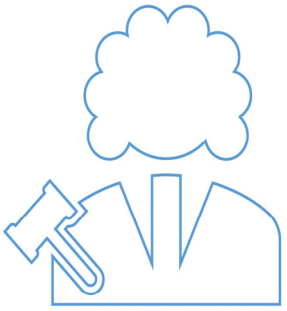

## 불법촬영 해외 현행법-성착취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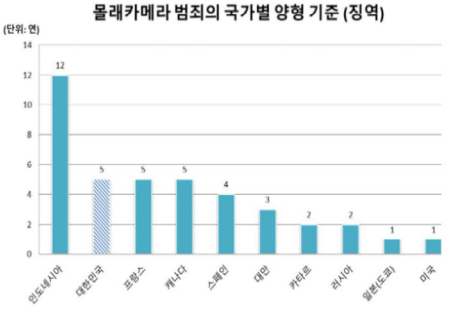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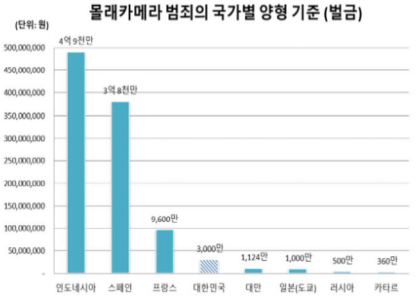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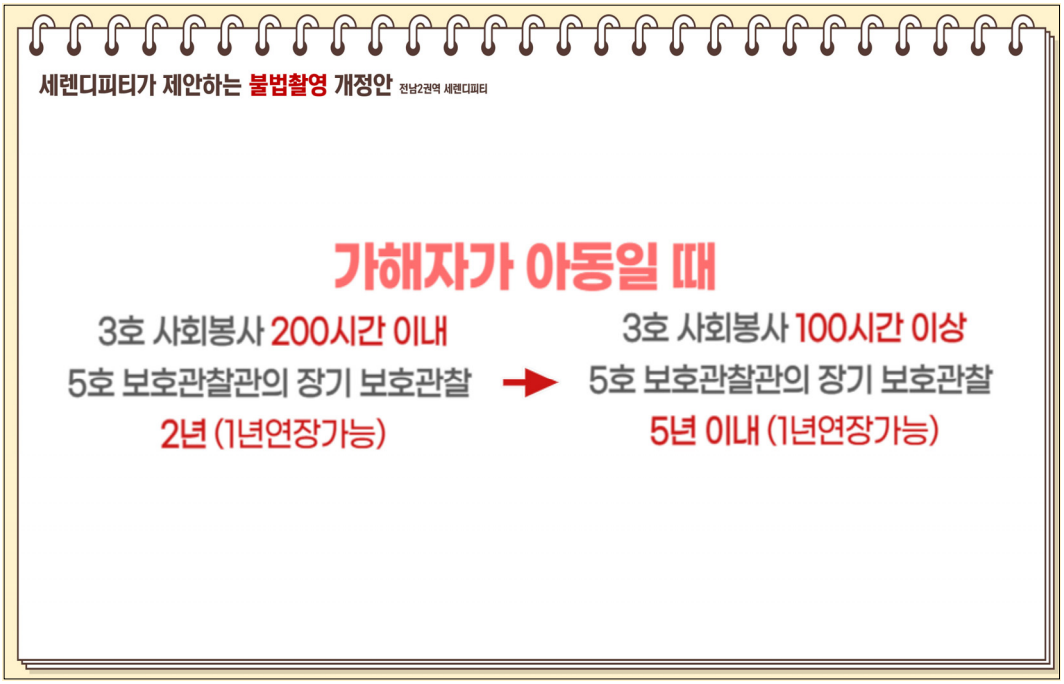
세렌디피티가 제안하는 불법촬영 개정안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가해자가 아동일 때
3호 사회봉사 200시간 이내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연장가능)
3호 사회봉사 100시간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5년 이내 (1년연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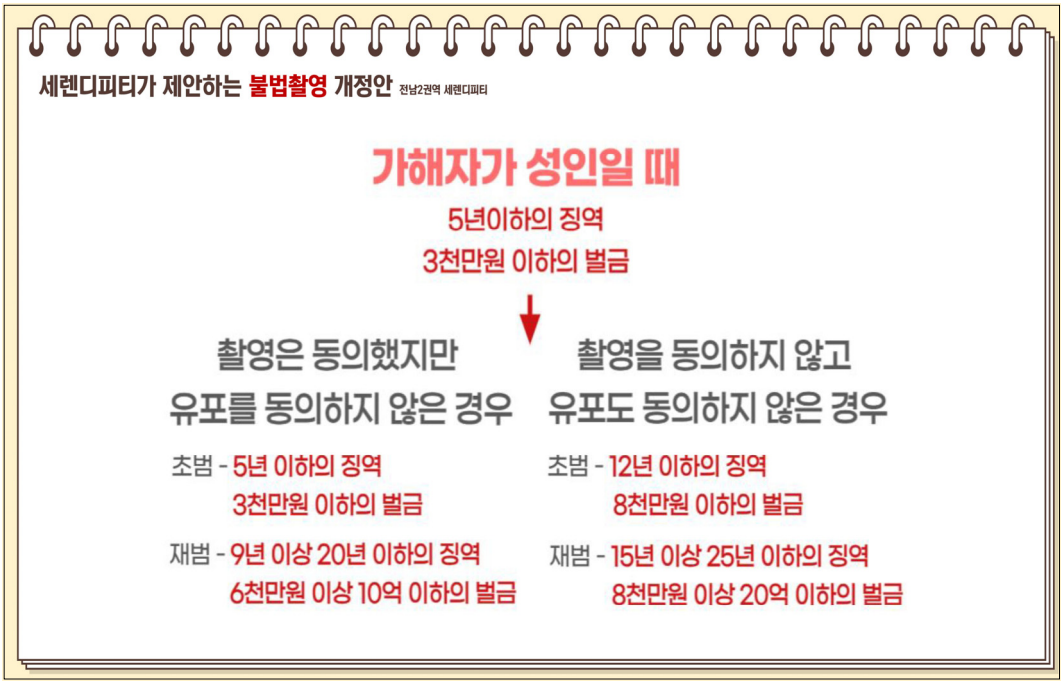
세렌디피티가 제안하는 불법촬영 개정안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가해자가 성인일 때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초범 -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 9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6천만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
촬영을 동의하지 않고
유포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초범 - 12년 이하의 징역
8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 1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8천만원 이상 20억 이하의 벌금

## 세렌디피티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 세렌디피티 활동소감 전남2권역 세렌디피티

평소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점을 인식만 하고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활동을 하며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법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계속해보니 주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렌즈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접하게 되어서 좋았다.

처음 활동을 참여했을 때는 내가 주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득 찼지만 활동을 계속 참여하면서 언니들과 열심히 자료조사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으니 점점 주제를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고 남들에게도 주제를 알려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활동을 마무리해서 뿌듯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렌즈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는 실력이나 새로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아져서 내가 전보다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불법촬영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성착취만 생각했는데 이 활동을 초상권도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초상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착취 만큼 초상권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 감사합니다

# 권역별 사례발표

## - DHI 인연동, 경북 2권역 -

발표 : 김수아, 이명은, 최서영
코디네이터 : 민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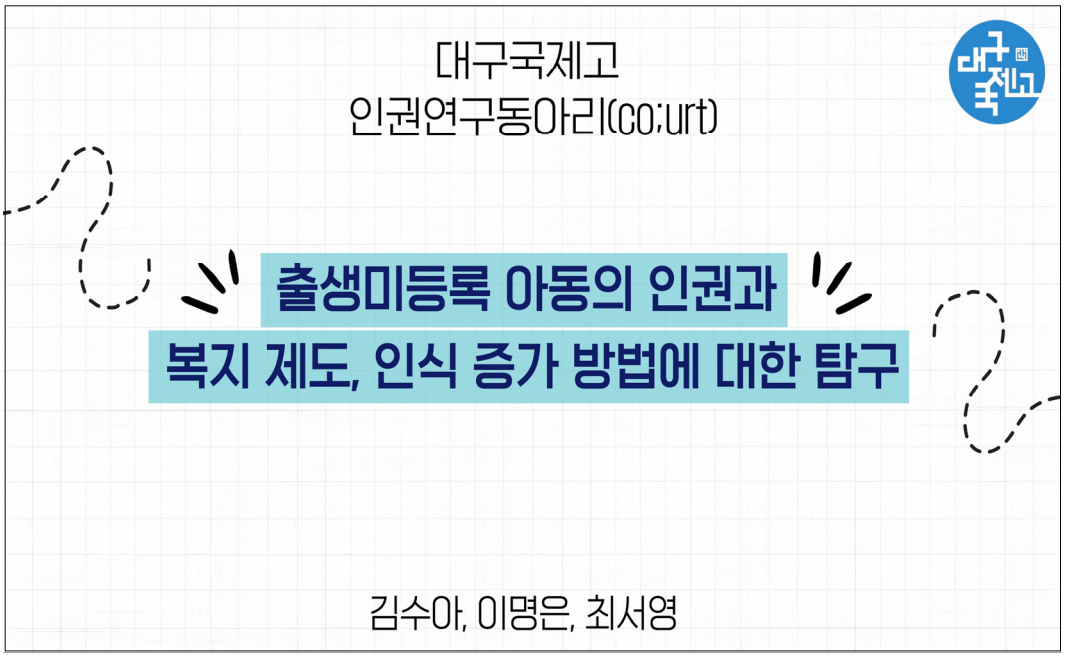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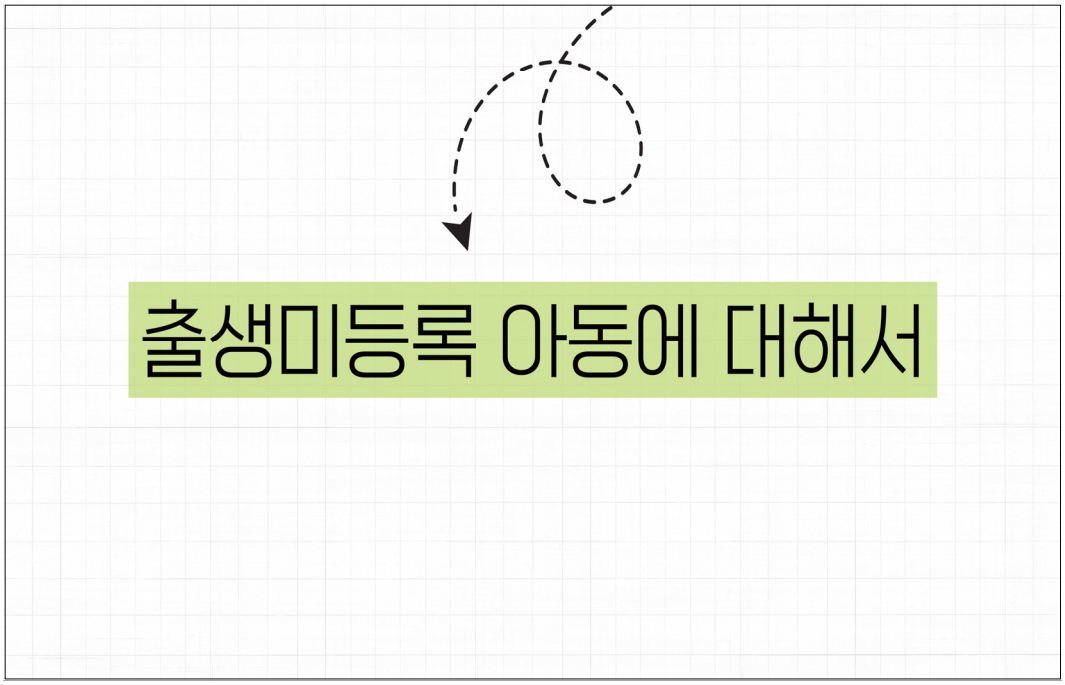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출생미등록아동?
출생 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서류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원인
1) 출산기록이 남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2)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국내법상 출생을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에서 배제됨
→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이 어려운 현실임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실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한 전수 조사 착수
확인된 아동 2,236명 (올해 4월 기준),
출생신고 이뤄진 아동 제외 2,123명 조사대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470
641
94
83
107
46
51
78
7
80
75
97
63
98
98
122
16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감사원 감사보고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 실태' 보도자료 중>
<강원도민일보 복지부 '유령아동' 2123명 전수조사 착수… 내달 7일 완료 예정>
2,123명 중 수사의뢰 1,095명
지자체 확인 완료 1,028명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1,095명
27
814
234
지자체 확인완료 1,028명
수사의뢰 사유
베이비 박스등 유기 (601)
연락두절 방문거부 (232)
출생신고 전 입양 (89)
출생사실 부인 (72)
기타(101)
<뉴시스 「그곳에 두고 온 2123명 중 248명 사망…61세엔 수사 종>
인큐베이터 속 이름 모를 아동
2017년 12월, 서울의 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이 모두 부모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까지 남은 이름 없는 아이가 있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던 아이는 3년동안 병실에 누워 홀로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이 2020년 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출생 통보제 '두 번 버림받는 아이들', 왜 그동안 출생신고조차 못했나?>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국제규범
UN아동권리협약
제3 조 제1 항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 조 제1 항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 조 제1 항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 출생미등록 아동

출생 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만
**서류 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서류 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의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 원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출산기록이 남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함.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이 어려운 현실

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국내법 상 출생을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에서 배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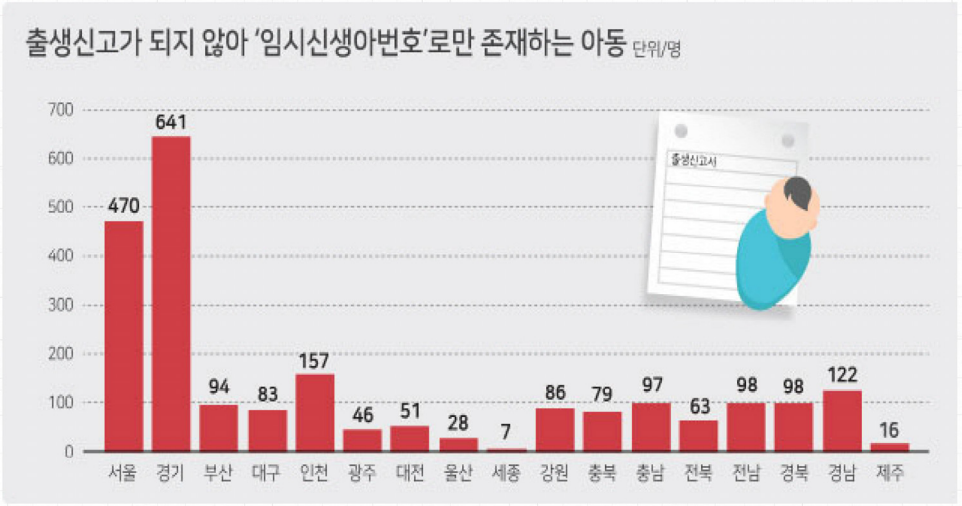


<강원도민일보. 복지부 '유령아동' 2123명 전수조사 착수… 내달 7일 완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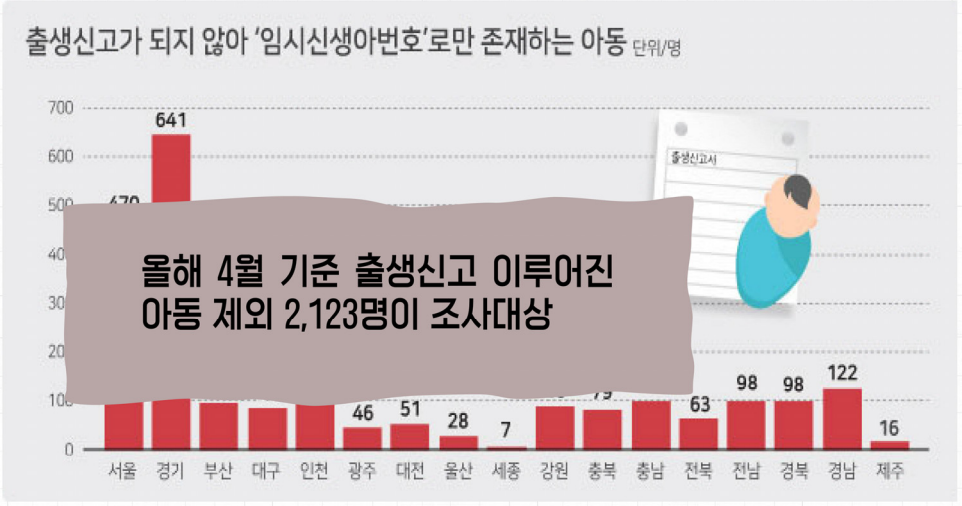


<강원도민일보. 복지부 '유령아동' 2123명 전수조사 착수… 내달 7일 완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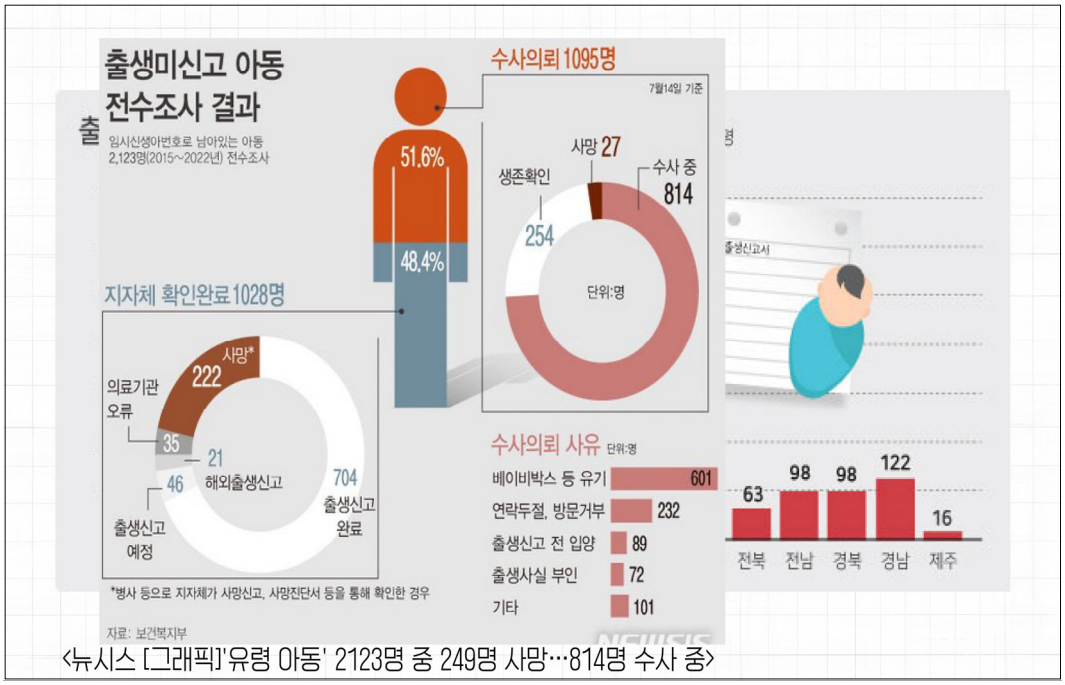

<뉴시스 [그래픽]'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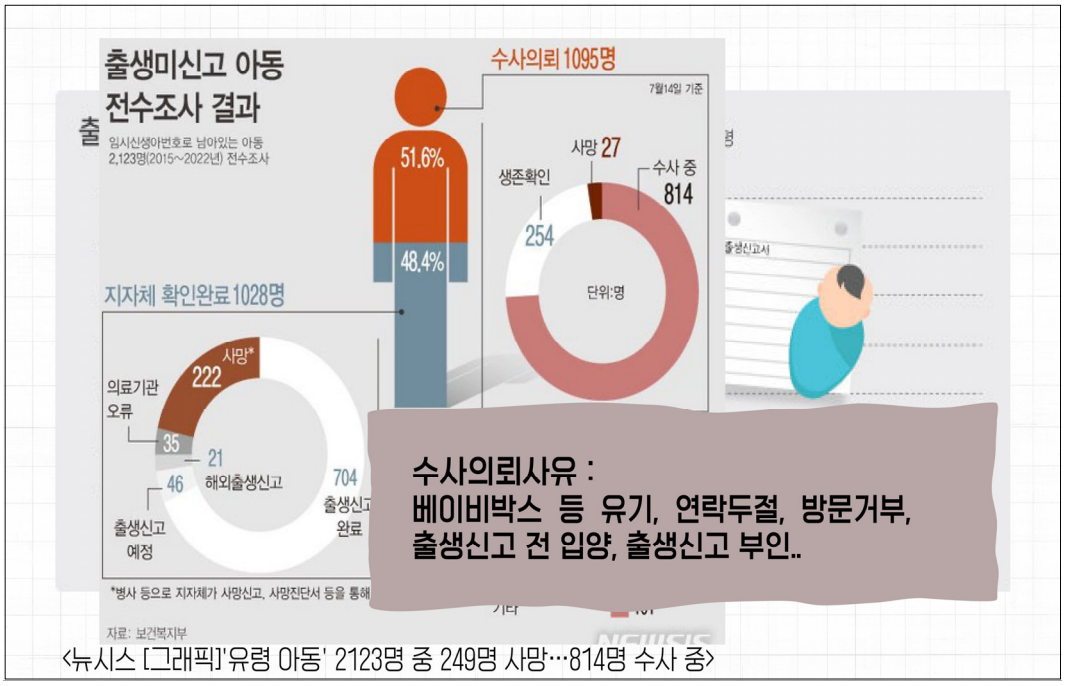

<뉴시스 [그래픽]'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 다른 나라의
# 출생 미등록 아동 복지 제도

# 대한민국 건강권 실태

이주 아동 건강권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실효적인 법과 제도, 정책이 부재
-->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됨**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정보부재, 의사소통의 어려움, 치료비 부담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
-->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와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해외 복지 제도

## 일본

**제한적 외국인 출생 등록 제도**를 통해
미등록된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허용
호적에 기재되지는 않으나
주민 기본 대장에는 등록

## 프랑스

특정 조건 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
**피부양자 혜택** 받을 수 있음

## 미국

**미국 연방 민권법 제6편**
모든 사람은 ~국적~ 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모든 미국에 있는 아동: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이민 신분 상관없이
**동등하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영국

**영국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의료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잉글랜드, 웨일즈:
병원에서 출생 시 병원 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가 발급되어 통계청에서 통합관리

# 인식 증가 방법과 아이디어

# 인식 증가 방법 사례

**사례1.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벽 마련

**사례2. 미혼부의 출생 신고**

--> 호적과 관계 없는 출생 신고 제도 검토

# <아이디어>

유튜브 광고 게시

-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와 해결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한다.
- YouTube Ads에 광고 문의를 통해 유튜브 영상 시작 전, 관련 **광고**를 뜨게 한다.
- 시청자들이 사이트 방문 링크를 누르면 우리가 제작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감사합니다

# 권역별 사례발표

## - 우리가 이기조, 충남 권역 -

발표 : 권성수, 이예찬
코디네이터 : 이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발달권
아동이 생각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마음 건강, 정신적 정서적 발달…
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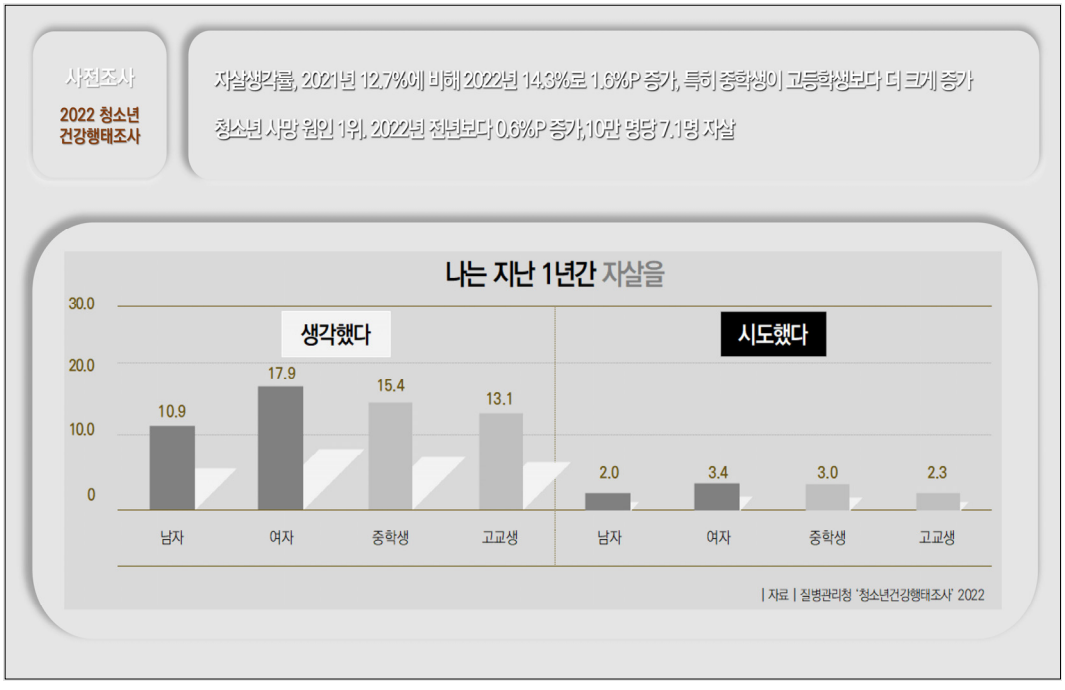
사전조사
2022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살생각률, 2021년 12.7%에 비해 2022년 14.3%로 1.6%P 증가,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크게 증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2022년 전년보다 0.6%P 증가,10만 명당 7.1명 자살
나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
시도했다
30.0
20.0
10.0
0
10.9
17.9
15.4
13.1
2.0
3.4
3.0
2.3
남자
여자
중학생
고교생
남자
여자
중학생
고교생
| 자료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설문조사**

죽음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로
초등학생은 **(학교)폭력(64%)**을, 중학생은 **성적**과 **(학교)폭력(43%)**을 가장 많이 선택

죽음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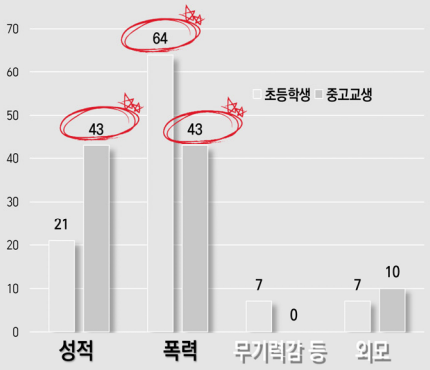


**설문조사**

학년이 올라갈 때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초등학생은 **'우울감(36%)'**을, 중고교생은 **'성적(57%)'**을 1순위로 선택

학년이 올라갈 때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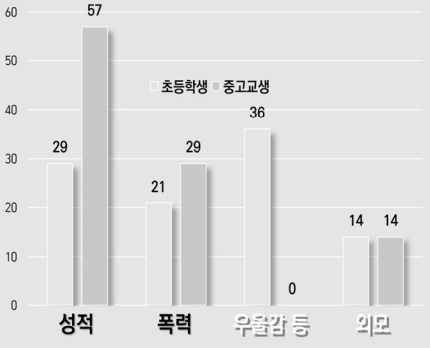

**설문조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초등학생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57%)'**를, 중고교생은 **'온라인 채팅 상담 확대(43%)'**를 1순위로 선택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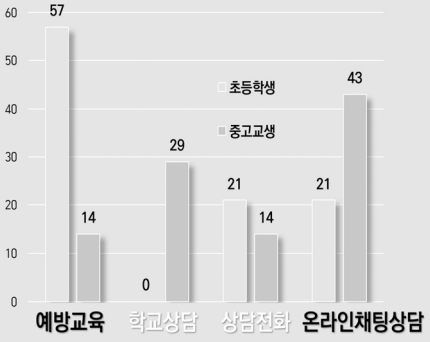


유엔
아동권리협약
**발달권참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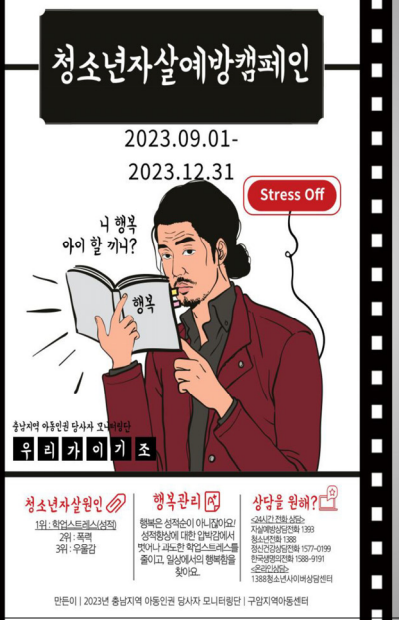

유엔
아동권리협약
**발달권참여권**

아동인권당사
자모니터링단
**활동소감**

"

한국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은
입시 및 진로와 관련된 압박감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김기환, 전명희, 2000)
학업 저하로 인한 좌절감과 절망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자살과 관련된 변인으로 포함된다.(구본권, 1995; 김기환, 전명희, 2000)

"

[출처] 서고운,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08.25.)

## 권역별 사례발표

### - 다함께, 충남 권역 -

발표 : 변환기, 이시영

코디네이터 : 이서정

# 당신은 아동권리를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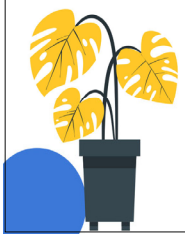

## 아동권리

아동이 가진 인권
아동에게 특별환 보호와 배려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등.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아동권리를 알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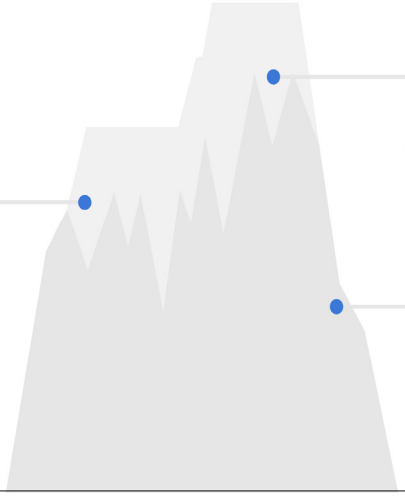

**sns 홍보**

sns 중 인스타를 활용하여
카드뉴스 업로드

**카드뉴스 제작**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설문조사,슬로건**

현재 아동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상황

## 설문조사 결과 분석

**01 알고 있는가**

55.6%가 아동권리를
알고 있다 답했다.

**02 기본권을 아는가**

아동권리는 알지만
자세한 내요은 알지 못
한다.

**03 잘 지켜지고 있는가**

77.8%가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04 침해하지 않는 방법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의견을 낸다.

**04+**

아이들에게 어른과
같은 권리를 줘야한다.
아동을 존중한다.
학대와 같은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는다.

**05 알릴 방법은**

63.9%가 캠페인을 통한
홍보에 의견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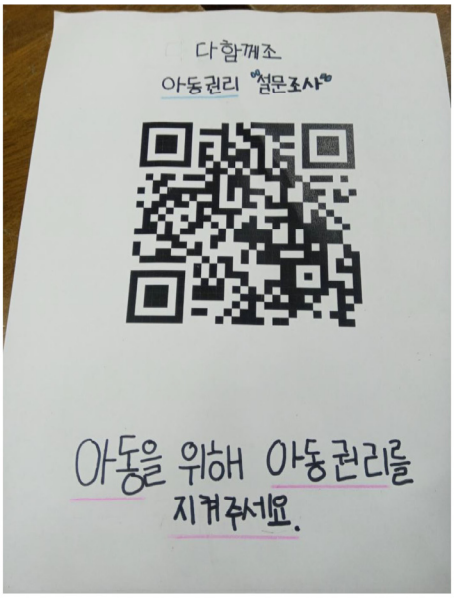


## 카드뉴스 제작

자료조사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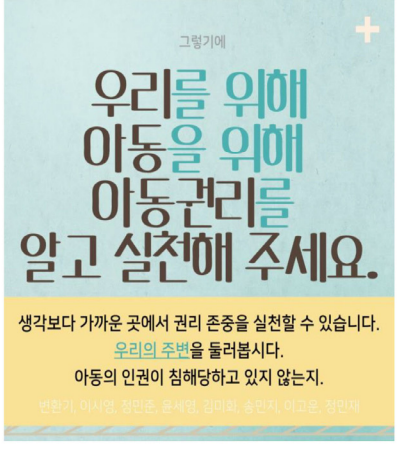

## sns 홍보

아동권리를 알아야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적은
글과
함께 인스타에 업로드

## 단원들의
## 활동 소감

이번 활동을 하면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웠는데 이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우리의 권리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세계의 아동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감사합니다

**다함께조**

변환기, 이시영, 정민준, 윤세영
김미화, 송민지, 이고운, 정민재

멘토 이서정

# 권역별 사례발표

## - 은광지역아동센터, 서울 3권역 -

발표 : 박단비, 이바울, 신수아
코디네이터 : 노에린

## 활동 내용 요약

1. 놀이권 교육
2. 주변 놀이시설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3. 놀이시설 개선사항, 이용 규칙 토의
4. 카드뉴스 제작

## 놀이권이란?

- 아동관리협약 제31조
-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할 권리

> 아동 놀이시설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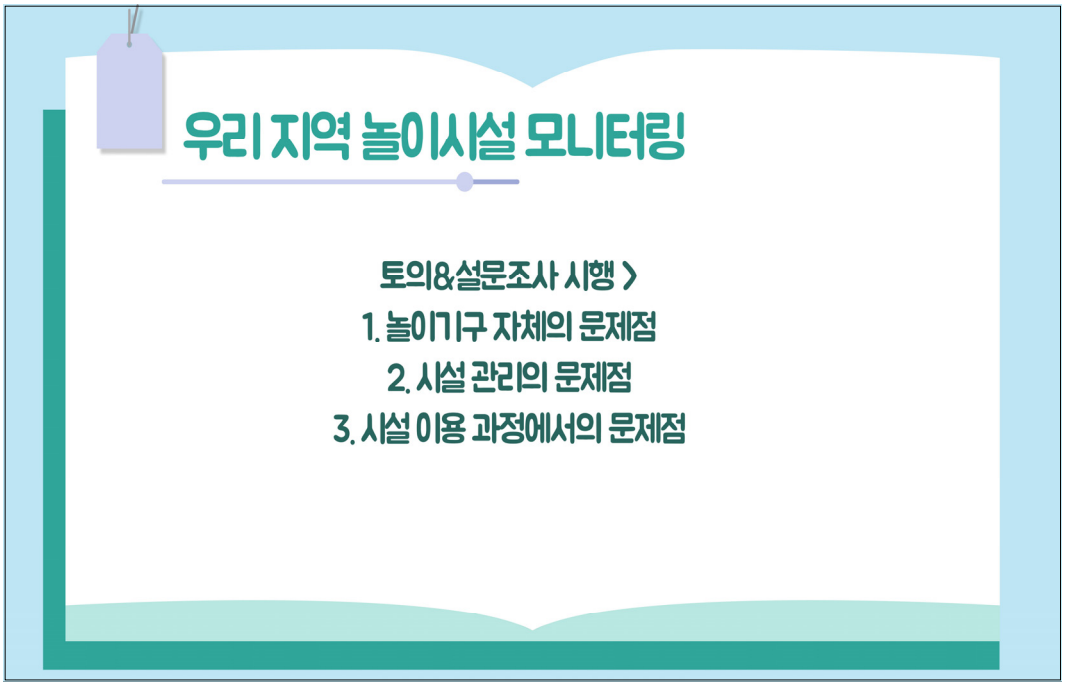
우리 지역 놀이시설 모니터링
토의&설문조사 시행 >
1. 놀이기구 자체의 문제점
2. 시설 관리의 문제점
3.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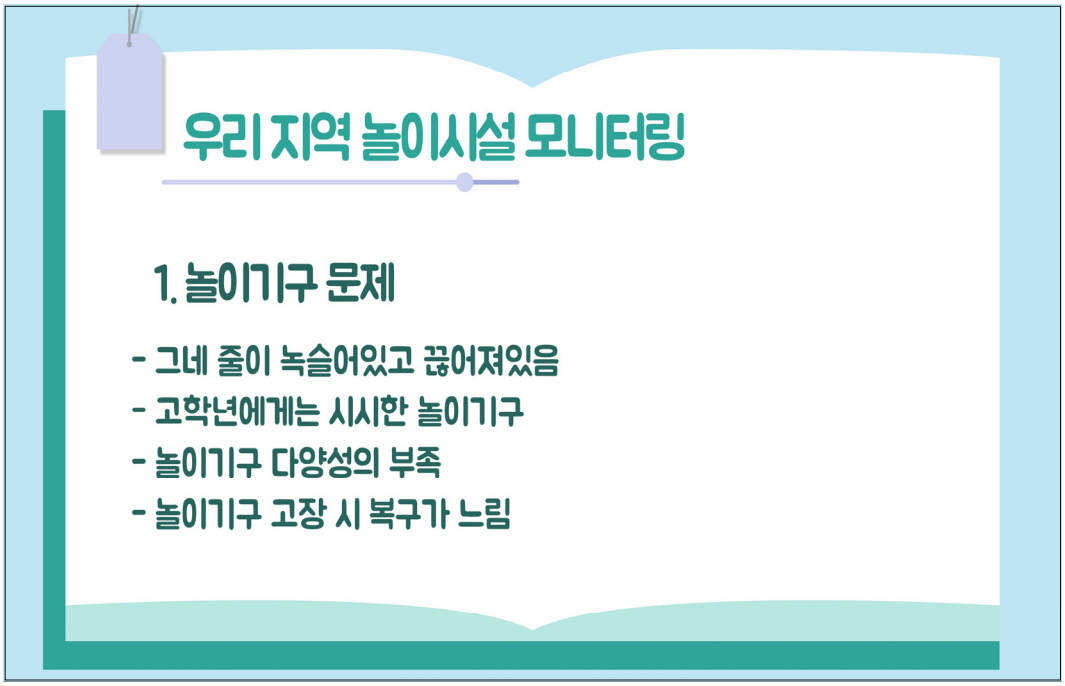
우리 지역 놀이시설 모니터링
1. 놀이기구 문제
- 그네 줄이 녹슬어있고 끊어져있음
- 고학년에게는 시시한 놀이기구
- 놀이기구 다양성의 부족
- 놀이기구 고장 시 복구가 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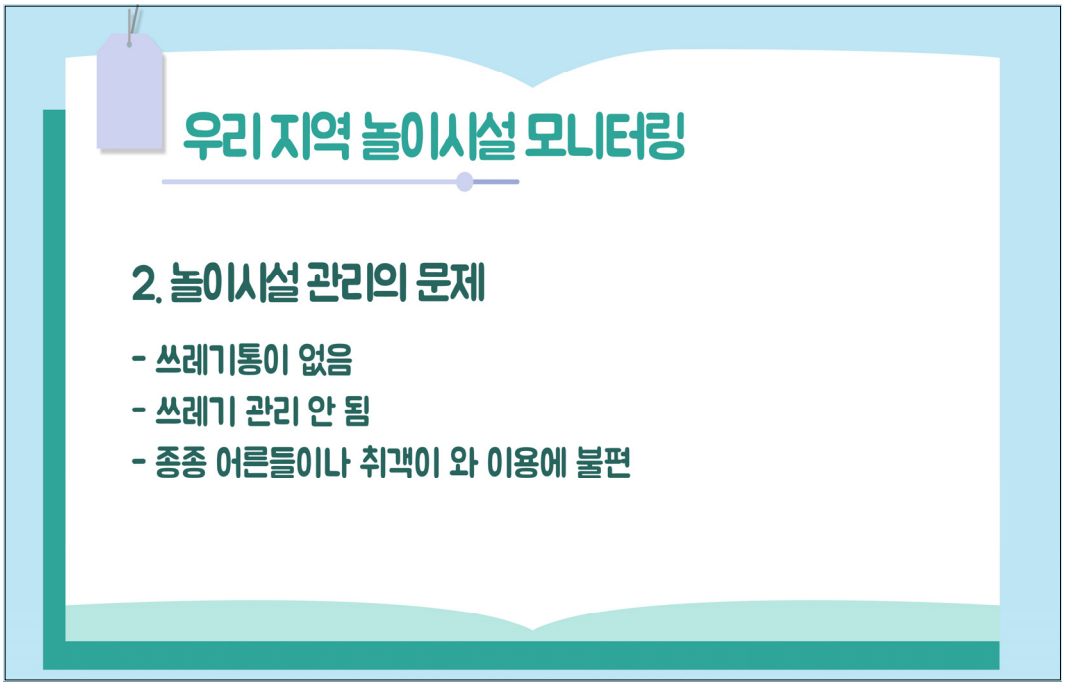
우리 지역 놀이시설 모니터링
2. 놀이시설 관리의 문제
- 쓰레기통이 없음
- 쓰레기 관리 안 됨
- 종종 어른들이나 취객이 와 이용에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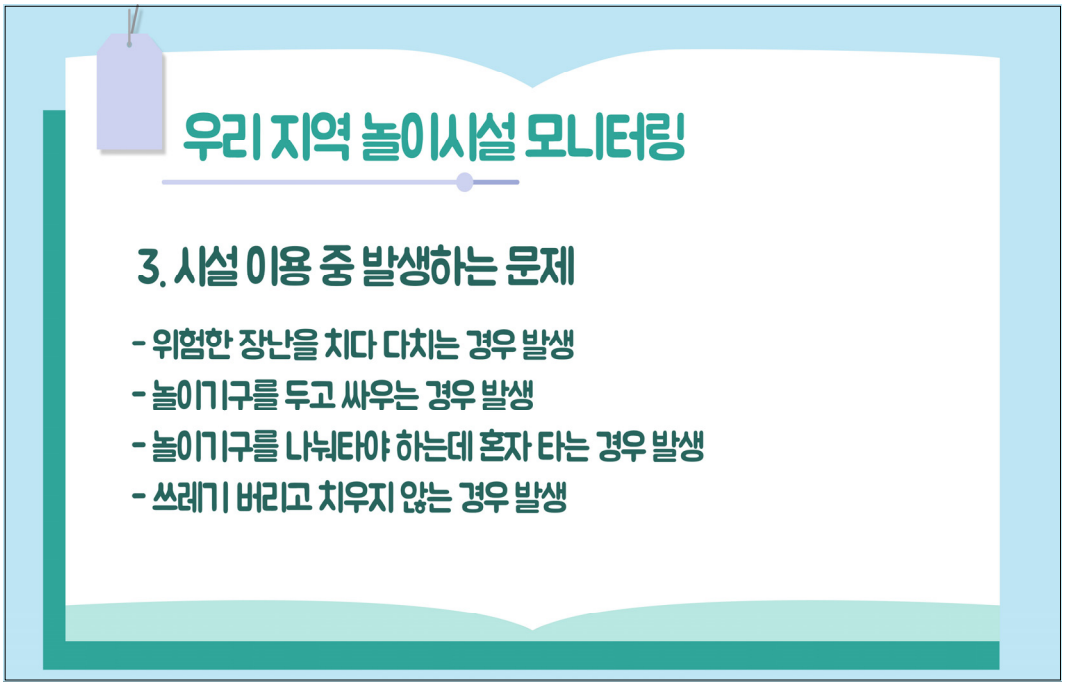
우리 지역 놀이시설 모니터링
3.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
- 위험한 장난을 치다 다치는 경우 발생
- 놀이기구를 두고 싸우는 경우 발생
- 놀이기구를 나눠타야 하는데 혼자 타는 경우 발생
- 쓰레기 버리고 치우지 않는 경우 발생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 놀이시설 이용 시 지켜야 할 규칙

- 놀이기구 안전히, 조심히 타기
-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 서로 배려하면서 놀기

## 카드뉴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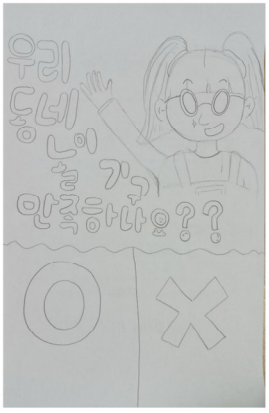

# 카드뉴스 제작

놀이시설 이용시
서로 지켜야 하는 규칙

놀이기구 안전히, 조심히 타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서로 배려하면서 놀기

# 감사합니다

## 권역별 사례발표

### - 안양외고, 경기 3권역 -

발표 : 김선유, 양태은, 김진성
코디네이터 : 김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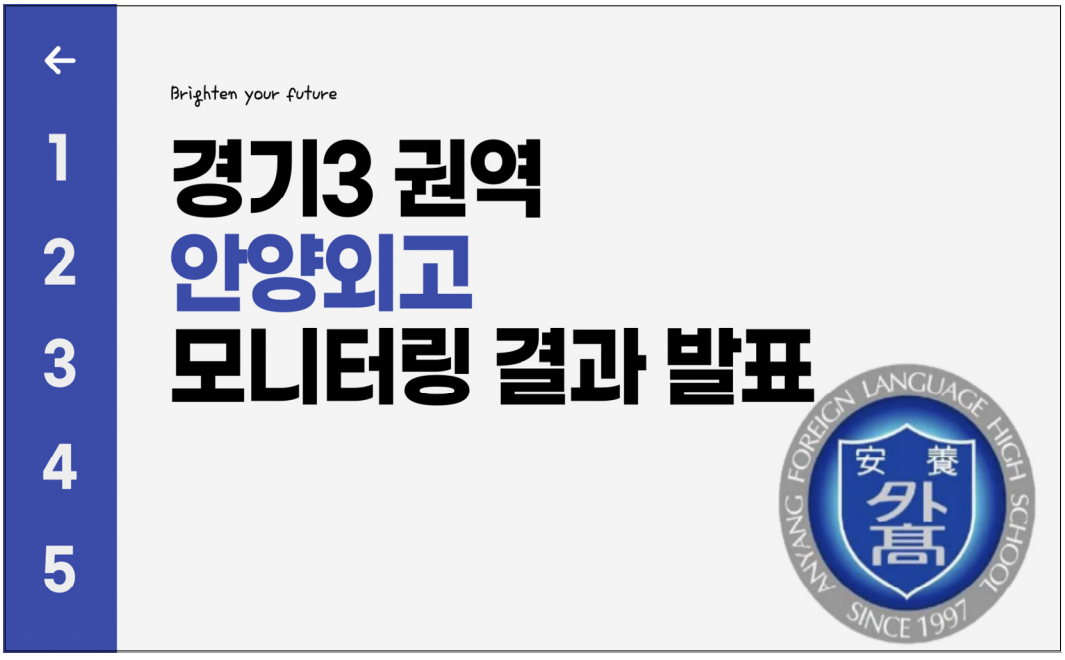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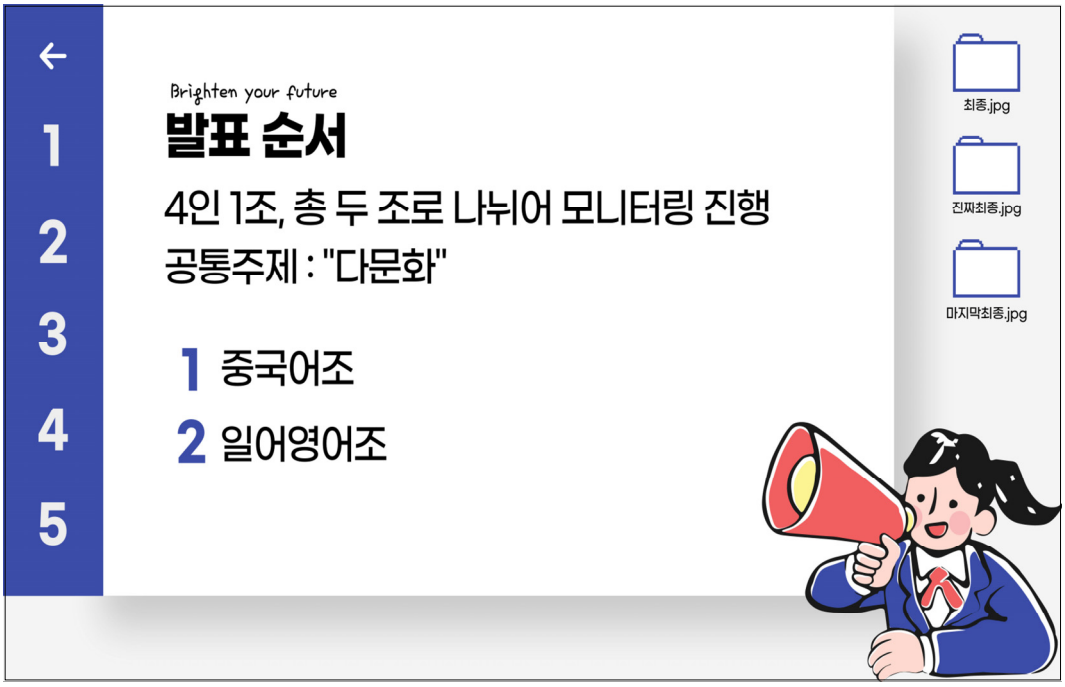

경기3 안양외고 – 송어조

VS

**샐러드볼 이론**
**Theory of Salad bowl**

**멜팅팟 이론**
**Theory of Melting pot**

경기3 안양외고 – 송어조

## 다문화 아동
## 인권 침해 사례 분석

< 전체 학생 및 다문화학생 수 증가 추이 >

출처: 한국경제, '진학 포기 없도록...다문화자녀 학습지원 강화', 2022.02.04

경기3 안양외고 – 중어조

## 다문화 아동
## 인권 침해 사례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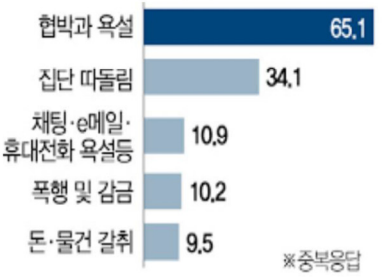


자료: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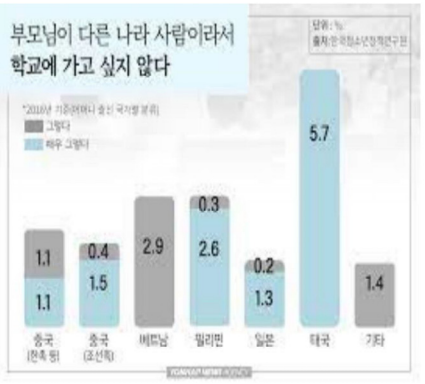


경기3 안양외고 – 중어조

## 다문화 아동
## 인권 침해 사례 분석

### 다문화 자녀 학업중단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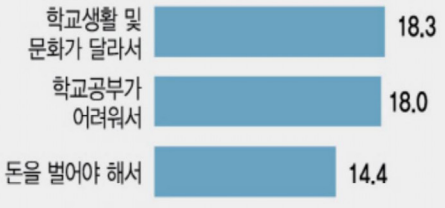


※ 2015년 조사 자료: 여성가족부

### 다문화 가구 중 한부모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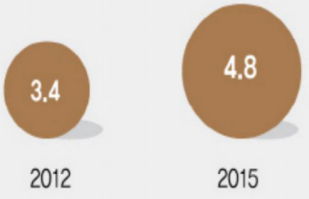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 실질적임을 넘어 '체감되는' 정책/방침의 마련이 필요함

경기3 안양외고 – 중어3

# 다문화 아동
# 인권 침해 사례 분석

## #사회 & 또래로부터 소외

-인종 차별, 또래 집단으로부터 왕따 경험
-다문화 수용성의 부족으로 이방인 취급

==> 언어발달 늦음, 상급학교 취학률 낮음

경기3 안양외고 – 중어3

# 다문화 인식개선
# 선행 연구 탐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등모델

##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았으나 교육부는 '다양성 공존'<<'다양한 문화를 무리 없이 동화시키는 것'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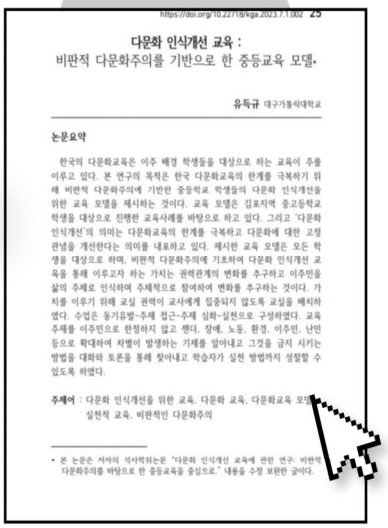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등교육 모델*

유득규 대구가톨릭대학교

논문요약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 모델은 김포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의 의미는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시한 교육 모델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주민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가치를 이루기 위해 교실 권력이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실을 배치하였다. 수업은 동기유발-주제 접근-주제 심화-실천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주제를 이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젠더, 장애, 노동, 환경, 이주민, 난민 등으로 확대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기제를 알아내고 그것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학습자가 실천 방법까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다문화 교육, 다문화교육 모델, 실천적 교육, 비판적인 다문화주의

*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연구: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경기3 안양외고 – 중어3

# 결론:

# 현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커리큘럼 제안

...

|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서 | |
|---|---|
| 비교과 프로그램명 | ('이방인'이 되어보는 체험) 다문화 인식 개선 커리큘럼 |
| 프로그램 개요 | -각 학급별로 각자 가진 다문화 인식 공유<br>-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공감해보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할 지 토의<br>-학급별 시행 계획서 제출 (미술관 참관, 자매교 학생과 교류 등)<br>-체험<br>-체험 후 후속활동으로 모둠별 해당 체험에 대한 발표, 다음 체험으로 무엇이 좋을 지 논의 |
| 참여대상 | 중고등학생 (아직 한국 학생들의 인식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미흡함.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함.) |
| 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함.<br>-지금껏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였기에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 경험의 격차를 교육으로 메워줄 필요가 있기에 다문화 커리큘럼의 보편적인 도입은 절실한 상황임.<br>-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의 국제 사회 진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기에 본격적으로 다문화를 접하기 전 아동에게 기본적인 다문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 기획 및 추진 배경 | -경험의 격차로 발생하는 한국 학교의 다문화 아동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줄여주고자 커리큘럼을 기획함.<br>-'글로벌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입장임에도 다문화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됨. 추후 국제 사회로 진출할 한국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아동들에게 보다 열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 기대 효과 | -기존의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혹은 기본적인 이론만 알려주는 주입식 교육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임을 넘어선 보다 체감되는 커리큘럼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학생 주도적인 프로그램이기에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br>-조사 결과 실제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이해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기에 본 커리큘럼이 실제로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극명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 세부 추진 계획 및 내용 | 커리큘럼 고안 과정에서 정연두 작가의 '백년여행기'를 참고함. '백년여행기'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으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기분을 느끼며 근본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커리큘럼 시행 예시로 미술관 참관을 둠. |

경기3 안양외고 – 중어3

(실제 작품 사진)
작품 설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정연두의 '백년 여행기' 중 '상상곡'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뿌리내린 백련초와는 반대로 100여년전인 1905년 영국 상선을 타고 인천을 떠나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미술관의 지하 1층에는 열대 식물 모양의 오브제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으며, 붉은색 씨앗 같은 오브제 밑에 서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옹얼거리는 듯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한국에 사는 파라과이, 헝가리인 등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리운 사람과 희망,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이다.
해당 작품을 통해 우린 의미를 추측 조차도 할 수 없는 소리들에 둘러쌓여 이방인이 느낄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경기3 안양외고 – 충어초

## '이방인'에 대한 공감 커리큘럼

-각 학급별로 각자 가진 다문화 인식 공유

-다문화 학생들을 공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토의

-학급별 시행 계획서 제출
ex.) 미술관 참관 등

-후속활동으로 체험 후기 모둠별 발표

## 국제교와 연합 (안양외고/특목자사고)

-본교 방문 프로그램 수정

-동아리&학회 활동 내 변화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각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공유

-스포츠 종목 적극 반영

경기3 안양외고 – 충어초

## '이방인에 대한 공감' 커리큘럼 모티브

정연두의 '백년 여행기'

∨붉은 씨앗 오브제 밑에 서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소리들에 둘러쌓여 이방인이 느낄 경험 체험 가능

-> 한국에서도 이방인의 경험 느끼고 공감 유도

∨경험의 격차를 교육으로 메워 주어야 함

+기존 교육 형식에서 탈피하여 '체험'에 초점을 맞춰야 함

↘기존의 이주민 대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Brighten your future

# 경기3 권역
#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발표자: 김진성, PPT: 정시운

Brighten your future

## 우리의 활동은?

경기3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최종.jpg

진짜최종.jpg

마지막최종.jpg

1 주제선정

2 외국인 선생님 인터뷰

3 학교 학생들 설문

4 포스터 및 영상 활용 구상

5 일간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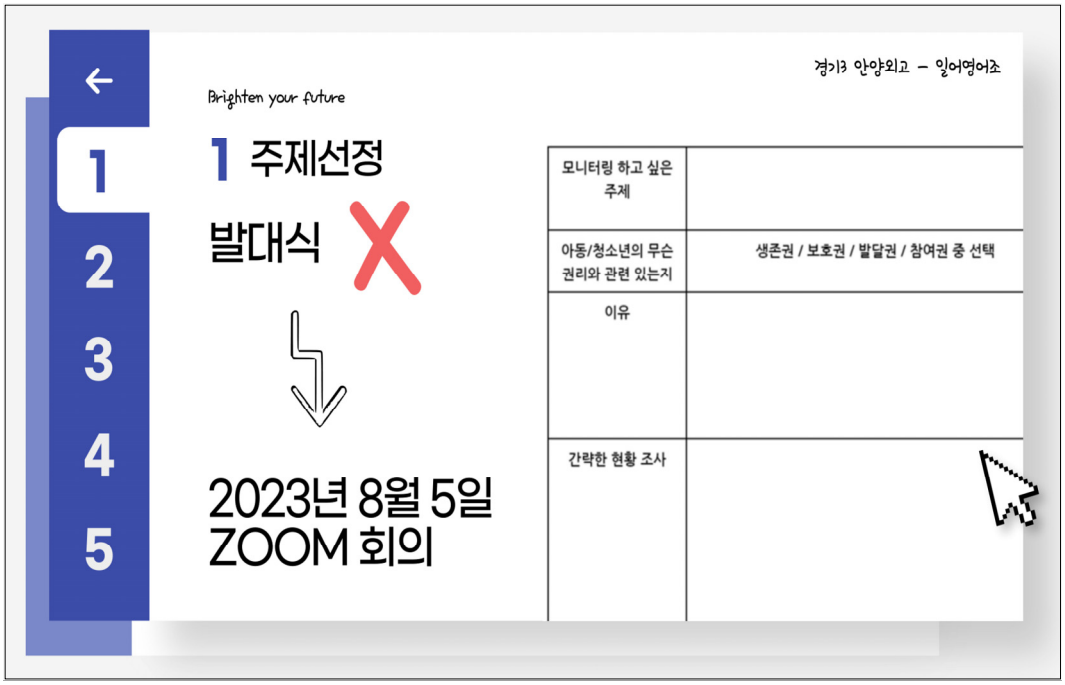
경기3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Brighten your future
1 주제선정
발대식
2023년 8월 5일
ZOOM 회의
모니터링 하고 싶은 주제
아동/청소년의 무슨 권리와 관련 있는지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중 선택
이유
간략한 현황 조사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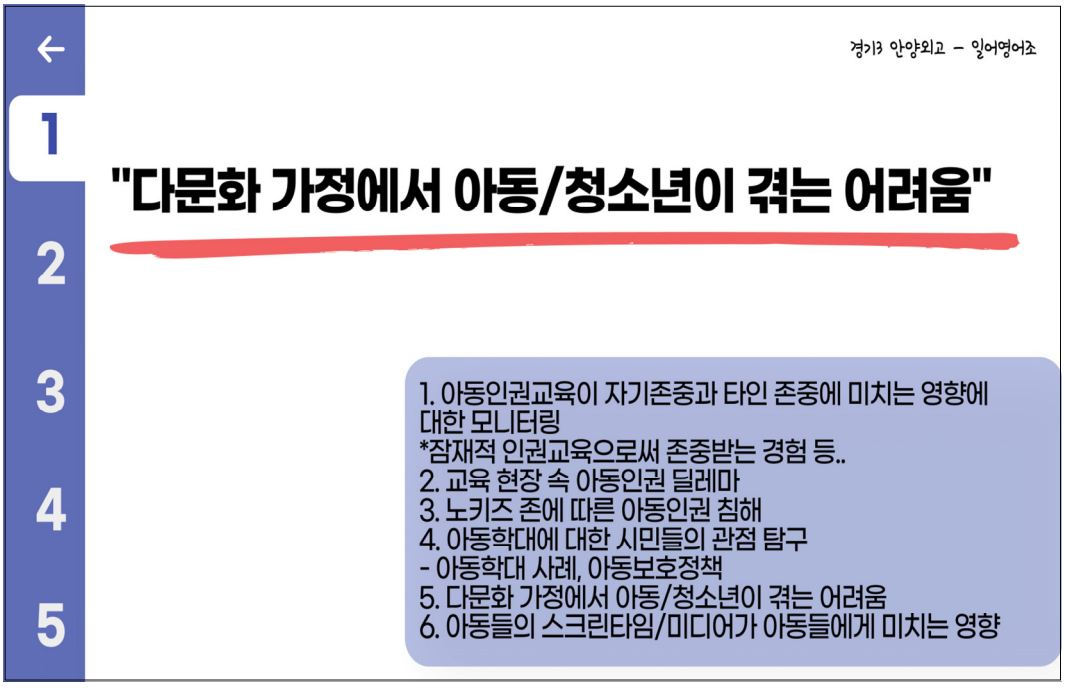
경기3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1. 아동인권교육이 자기존중과 타인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잠재적 인권교육으로써 존중받는 경험 등..
2. 교육 현장 속 아동인권 딜레마
3. 노키즈 존에 따른 아동인권 침해
4.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 탐구
- 아동학대 사례, 아동보호정책
5.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6. 아동들의 스크린타임/미디어가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
1
2
3
4
5

#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 | |
|---|---|
| 모니터링 하고 싶은 주제 |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 아동/청소년의 무슨 권리와 관련 있는지 |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중 선택<br><br>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
| 이유 |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차별에 대한 심각성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과연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 아동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고 싶다. |
| 간략한 현황 조사 | 총인구의 4%가 외국인…'다문화 사회' 넘어 '다민족 국가' :: 문화일보 munhwa<br>이 기사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퍼센트인 38만5000가구가 다문화 가구라고 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의 반열에 올라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0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 OHCHR)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며, 인종에 고정관념이나 법적 차별 금지 규정의 한계가 크다고 말한다. |

-다문화 점점 늘어나는 것 실감

-인식 타파할 수 있는 예시 제공, 고정관념 없앨 수 있는 것들도 조사 (게시판 같은 것을 보여주며)

-과거보다 많이 증가--> 어려움 극복 위해 정책들 많이 나오고 있음 (그럼에도 해결 안됨)

- 우리만의 특별한 활동을 원함

경기3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Brighten your future

## 2 외국인 선생님 인터뷰

**일본 원어민 선생님**

**미국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부탁

Brighten your future

## 2 외국인 선생님 인터뷰

**일본 원어민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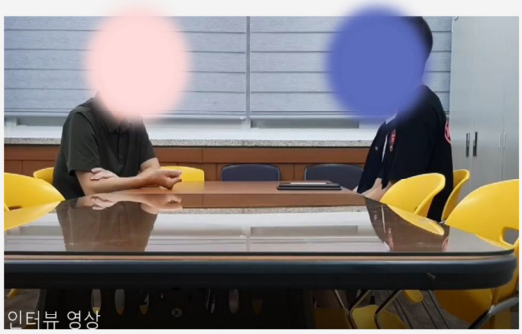


경기3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Brighten your future

## 2 외국인 선생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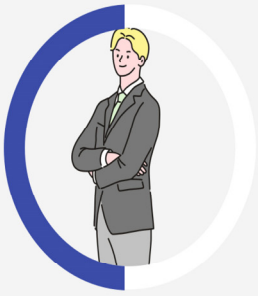

**미국 원어민 선생님**

1
2
3
4
5
Brighten your future
3 학교 학생 설문
https://forms.gle/sbi1bB9XtTc1g2Bq9
오후 12:27
인권 관련한 설문조사인데 하면 상품권 100%로 준대
오후 12:28
김진성
https://naver.me/xkl4saVz
N 오피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naver.me
오후 1:18
김진성
이것도 한번만 해주세요
오후 1:19
경기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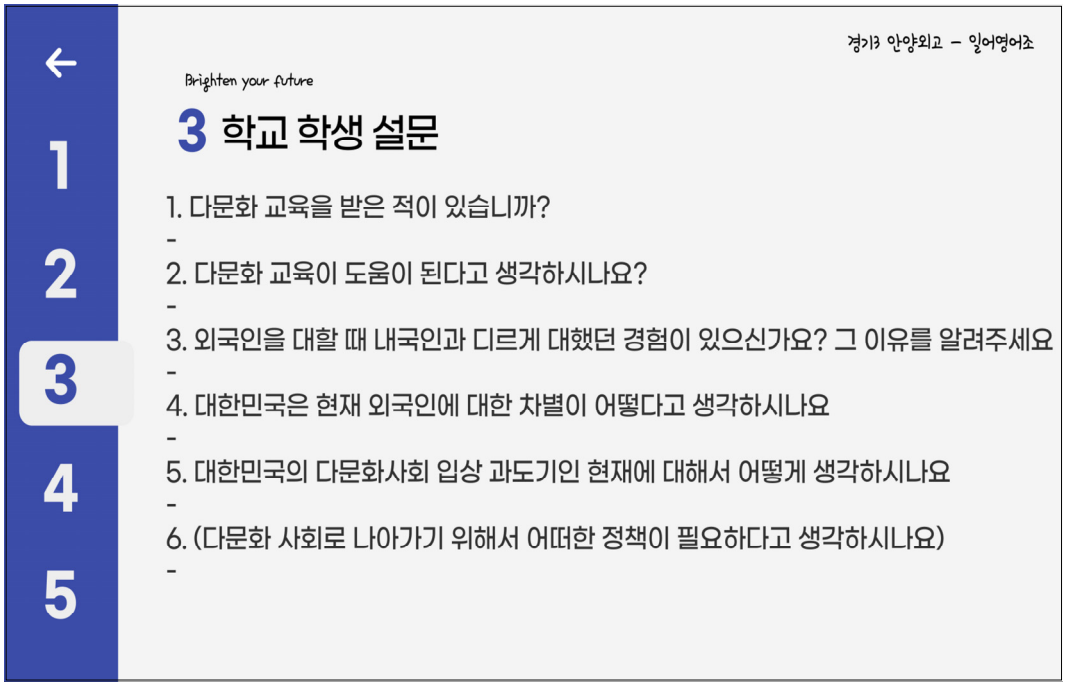
경기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1
2
3
4
5
Brighten your future
3 학교 학생 설문
1.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2. 다문화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3. 외국인을 대할 때 내국인과 다르게 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4.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5. 대한민국의 다문화사회 입상 과도기인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6.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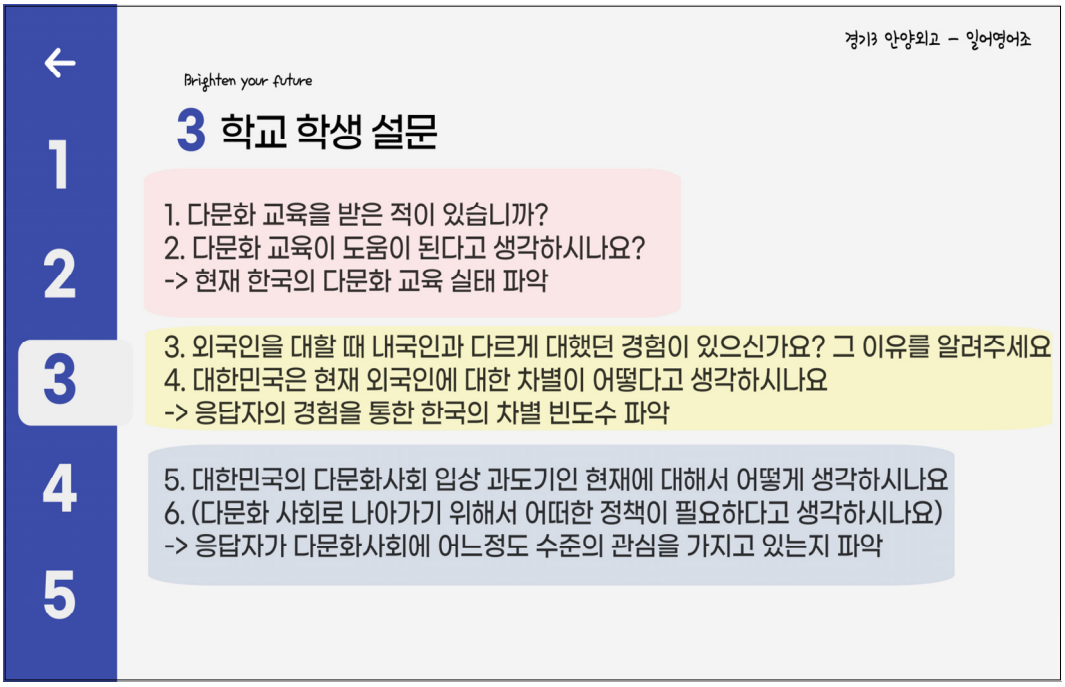
경기3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Brighten your future
3 학교 학생 설문
1.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다문화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현재 한국의 다문화 교육 실태 파악
3. 외국인을 대할 때 내국인과 다르게 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4.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응답자의 경험을 통한 한국의 차별 빈도수 파악
5. 대한민국의 다문화사회 입상 과도기인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응답자가 다문화사회에 어느정도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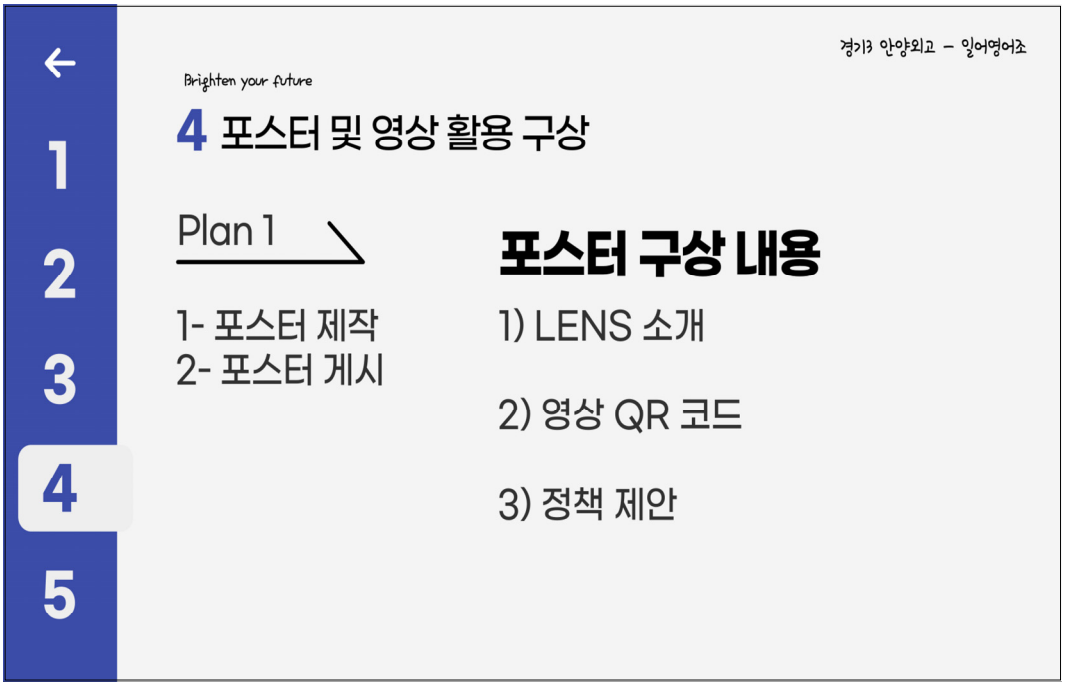
경기3 안양외고 – 일어영어조
Brighten your future
4 포스터 및 영상 활용 구상
Plan 1
1- 포스터 제작
2- 포스터 게시
포스터 구상 내용
1) LENS 소개
2) 영상 QR 코드
3) 정책 제안
1
2
3
4
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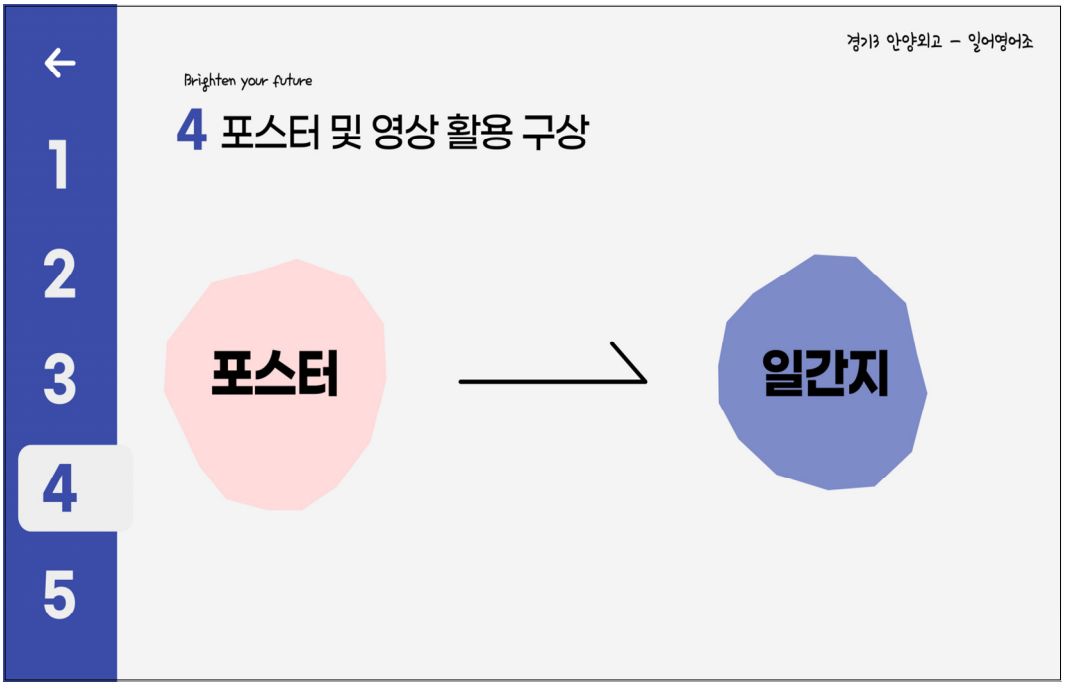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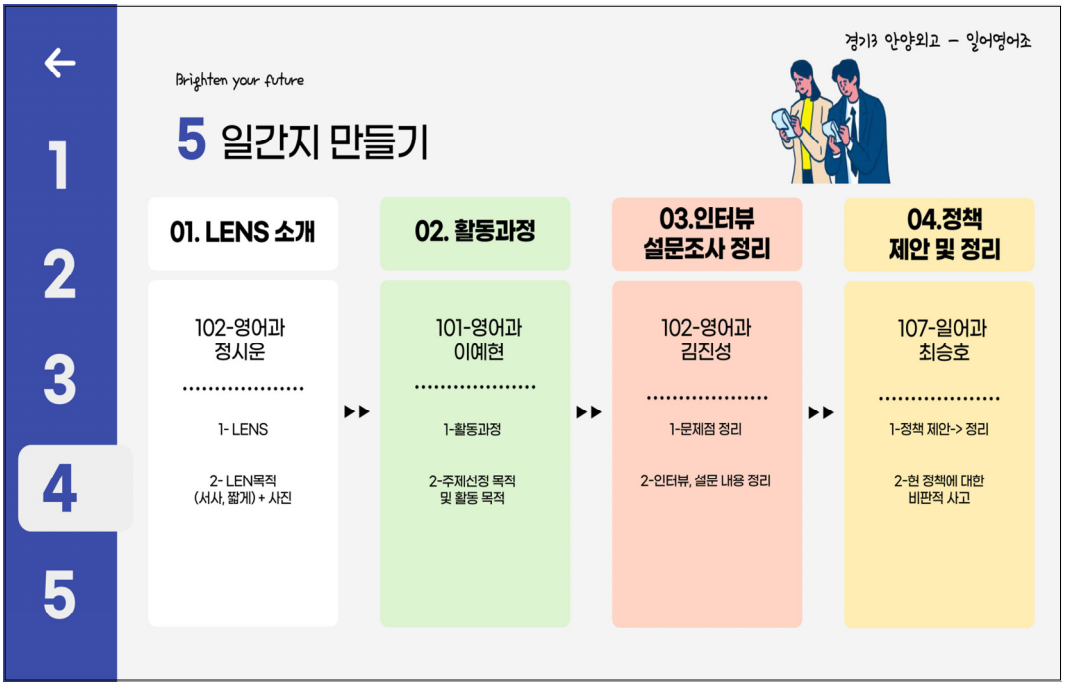

경기3 권역
안양외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역별 사례발표

## - 청자, 경북 1권역 -

발표 : 이도혁, 한서준
코디네이터 : 박재영

목차
청소년의 휴식권
01
우리들의 목표
우리는 무엇을 고치고 바꾸고 싶어 했을까?
02
설문조사
03
카드뉴스 제작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카드뉴스 제작
04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05
우리들의 생각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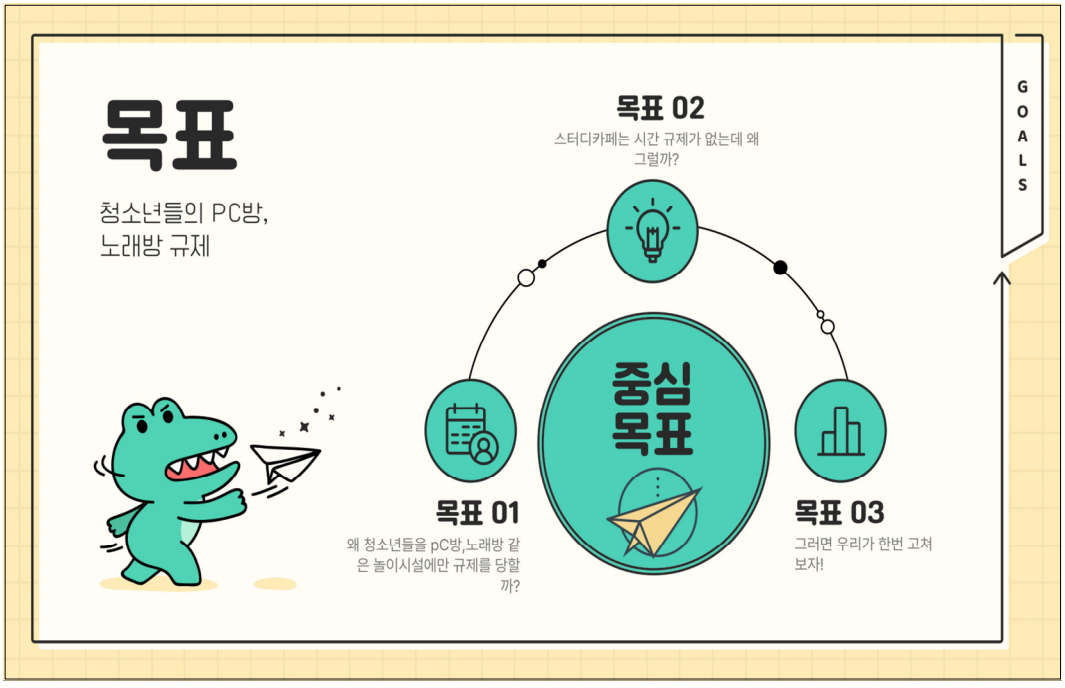
목표
청소년들의 PC방, 노래방 규제
목표 02
스터디카페는 시간 규제가 없는데 왜 그럴까?
중심 목표
목표 01
왜 청소년들을 pC방,노래방 같은 놀이시설에만 규제를 당할까?
목표 03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쳐 보자!
GOALS

TIMELINE
설문조사
7월동안 받은 설문조사 결과
01
놀이시설 규제를 알고 있는가?
pc방,노래방 같은 놀이시설에서 규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90% 이상
02
출입제한 경험이 있는 가?
pc방이나 노래방에서 출입제한 경험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90%이상이 경험이 없다고 답변
03
교육시설 출입제한
교육시설에서 출입제한 경험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90%이상이 경험이 없다고 답변
04
출입제한 개선
pc방이나 노래방에서 출입제한을 개선해야한다는 문항에서는 50%이상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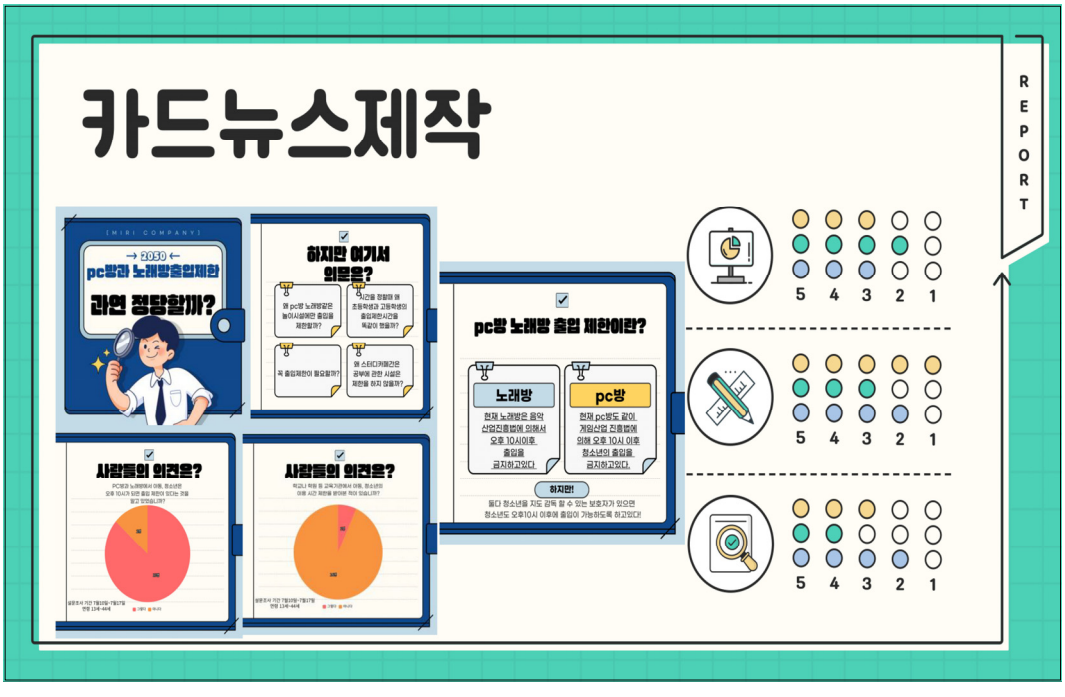
REPORT
카드뉴스제작
2030
pc방과 노래방출입제한
과연 정당할까?
하지만 여기서
의문은?
사람들의 의견은?
사람들의 의견은?
pc방 노래방 출입 제한이란?
노래방
pc방
하지만!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국민 신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TIMELINE
01
현황
현재 청소년의 휴식시설은 법으로 인해 오후 10시가 되면 퇴장을 해야함
02
문제점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은 다른장소에서 시간보내기 or 불법활동 시도 가능성
03
개선방안
규제를 완화 or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따로 제공 or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제도
04
출입제한 개선
출입제한을 완화하게 된다면 스트레스완화,우을증 자살률감소 효과 기대,경제 활동 촉진,불법활동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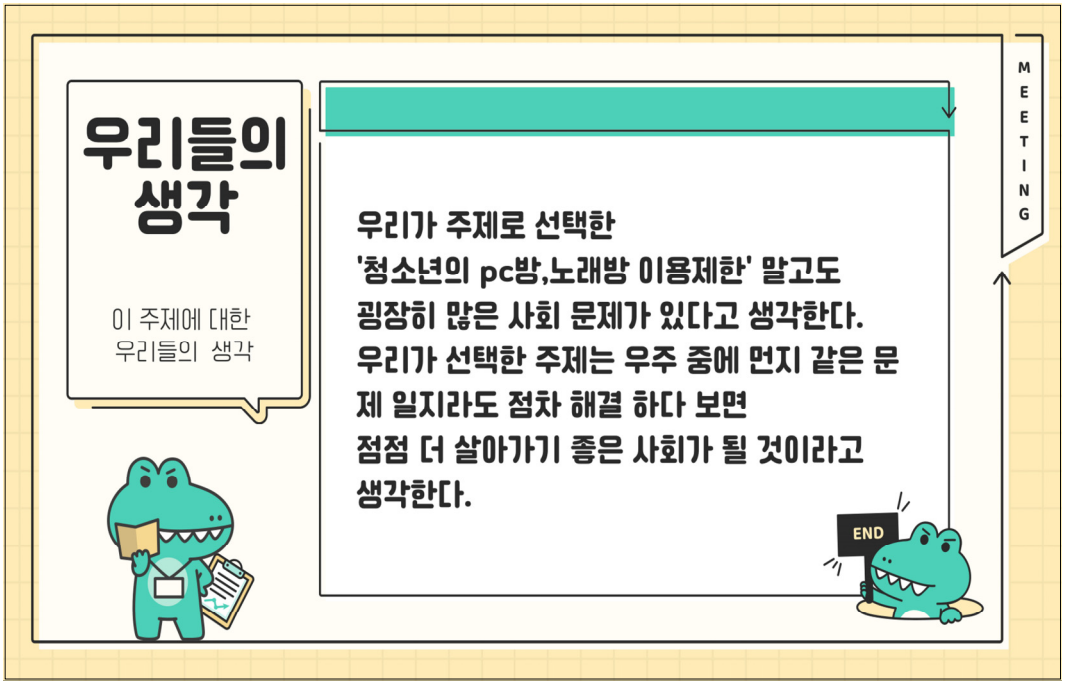
우리들의 생각
이 주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MEETING
우리가 주제로 선택한
'청소년의 pc방,노래방 이용제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선택한 주제는 우주 중에 먼지 같은 문제 일지라도 점차 해결 하다 보면
점점 더 살아가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ND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권역별 당사자 모니터링 참여 아동 및 연구자

## - c_lens_w, 충북 권역 -

발표 : 김정범, 정현희, 김민경
코디네이터 : 한형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CONTENTS

**c_lens_w 소개**
- 충북 아동 모니터링단 소개
- 주제와 선정 이유

**LENS 활동내용**
- 활동 계획
- 활동 사진과 내용

**활동 결과**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해석
- 계획 이행률(달성 정도)
- 모니터링 결과

**활동 소감**
- 활동에서 아쉬운 점
- 활동을 통해 배운 점
- 각 개인 활동 총평



# 충북 아동 모니터링단 소개

## ~ 충북 LENS ~

충북 LENS 활동 요약

**기간** 8월 1일(화) ~ 10월 31일까지, 매달 2회 대면회의 실시

**장소.** 충원고등학교 교내, 충주 시내

**인원.** 총 9명 (충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 8명, 코디네이터 1명)

**내용.** 아동의 발달권 보호,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옹호활동

# 충북 아동 모니터링단 소개

## ~충북 충주 소개 ~

충청북도 충주 지역소개

**위치.** (충원고등학교)_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동막강현길 377

**소개.** 충주 시민 약 21만 도시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분야 국가 산업단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전국 어디서든 접근 용이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지역 특산품은 사과로 유명함

PART 1. C_LENS_W 소개

# 충북 아동 모니터링단 소개

## ~ 단원 소개 ~

**이름.** 남예린
**역할.** 서기 역할
회의 결과 정리 및 기록
모범생

**이름.** 김민경
**역할.** 디자이너 역할
SNS 관리 및 그림 담당
분위기 메이커

**이름.** 김정범
**역할.** 서기 역할
회의 기록 및 정리 담당
전교 1등의 뇌지컬

**이름.** 김은율
**역할.** 사진사 역할
활동 영상 및 사진 기록 담당
투 머치 토커

# 충북 아동 모니터링단 소개

~ 단원 소개 ~

**이름.** 정현희
**역할.** 반장 역할
회의 총괄 및 발표
군기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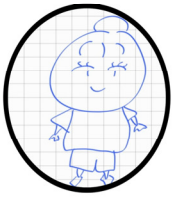

**이름.** 최혜원
**역할.** 홍보 담당
SNS 관리 및 게시물 작성
체육 선생님이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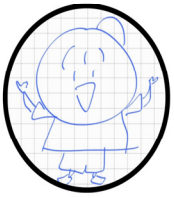

**이름.** 이성혜
**역할.** 홍보 담당
SNS 관리 및 게시글 홍보
부산 여자

**이름.** 박하은
**역할.** 기획 담당
아이디어 제시 및 기획
영어 잘해요



# 주제 선정과 이유

~ 활동 주제 ~

| 공동 주제 | 충북 권역 주제 |
| --- | --- |
|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권 침해 |

# 주제 선정과 이유

~ 주제 선정 이유 ~

| 충북 권역 주제 | 이유 |
| --- | --- |
|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권 침해 | 하나. 아동 발달권이란,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등 성장할 권리<br>둘. 교육을 통한 성장만을 중시하는 나머지, 아동의 발달권이 일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함<br>셋. 아동인권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종주 아동들의 학습활동 현황과 발달권의 관계를 확인하고 발달권을 널리 알려 올바르게 성장함 |



# 활동 기간 및 시간

# 활동 일정 계획표

| 구분 | 활동 기간 | 내용 |
|---|---|---|
| 계획 | 1차 :<br>8/1~8/23 | 1. 충북권역 아동 주제선정 회의 진행 (8/1 화 8시)<br>2. 권역주제 관련 자료 수집 및 토의 진행 (8/9 수 6시)<br>3. 설문조사 질문 작성 및 검토 (8/23 수) |
| | 2차 :<br>8/24~9/5 | 1. SNS 개설 및 게시글 작성 (인스타그램)<br>2. 설문조사 질문지를 네이버 폼으로 변경 (링크 생성)<br>3. 충북 중·고등학생대상으로 설문 진행 - 160명 대상<br>4. 권역주제 캠페인 준비 (피켓 제작 및 회의) |
| | 3차 :<br>9/6~10/6 | 1. 설문조사 결과 분석<br>2. 권역주제 관련 포스터 제작 (인스타그램 업로드)<br>3. 권역주제 캠페인 진행 |



# 활동 진행표

~ 충북LENS ~

**8월 활동**

- 충북권역 아동 주제선정 회의 (8월 1일 화요일 8시)
- 권역주제 관련 자료 수집, 토의 (8월 9일 수요일 6시)

**9월 활동**

- SNS 개설 및 게시물 작성
- 설문조사 질문지 작성 (9월 4일 월요일 8시)
- 설문조사 실시(교내, 교외)

**10월 활동**

- 설문조사 분석
- 주제관련 캠페인 진행
- 활동 마무리

# 활동 목표 (방향)

| | |
|---|---|
| 성실성 |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해 아이들이 꾸준히 달 2회 이상 참석 격려 |
| 의사소통 |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모든 의견을 존중 |
| 주체성 | 아동 인권의 주체이므로, 자신의 영향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 |
| 인권지식 | 전공지식과 활동들을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정보제공 |

**한형주** 아동들이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 LENS 활동 내용

## 8월 활동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충북(충주) 내 아동들의 인권관련 주제 선정 회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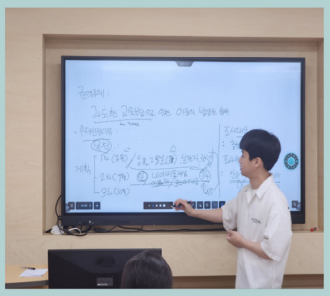

- 인권 교육 실시
- 모니터링 계획 구체화

# LENS 활동 내용

## 9월 활동

- "과도한 학습"과 "발달권"에 대한 설문조사지 작성

- 설문조사지(구글폼) 작성 후 배부

- "아동 발달권 보호" 캠페인 준비

PART 2. 활동 내용

# LENS 활동 내용

## 9월 활동

- 충주 시내 아이들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

- 홍보게시물 작성(인스타그램)

- 교내 학생들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

# LENS 활동 내용

## 10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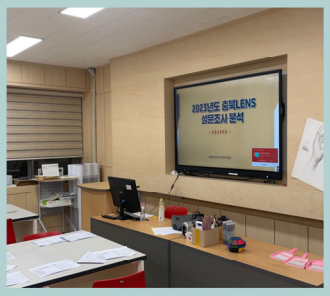


- 설문지 결과분석

- 설문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캠페인 구상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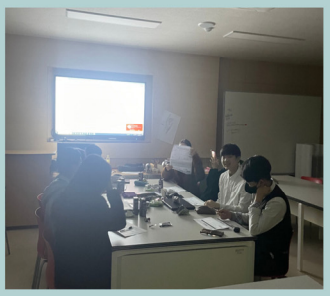

- 활동 마무리 & 소감 발표

# 설문조사 질문 내용

**기본정보 문항**
- 성별
- 나이(학년구분)
- 행복과 불행요소
- 아동인권 인지정도

**학습관련 문항**
- 학습 방식
- 학습 시간
- 학업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
- 학업 동기 및 스트레스 해결방법

**발달권 관련 문항**
- 평균 수면시간
- 평균 운동시간
- 평균 휴식시간과 방식
- 평균 식사량
- 문화 생활 정도

**기타 문항**
- 진로 설계에 대한 정보
- 자신의 의견 존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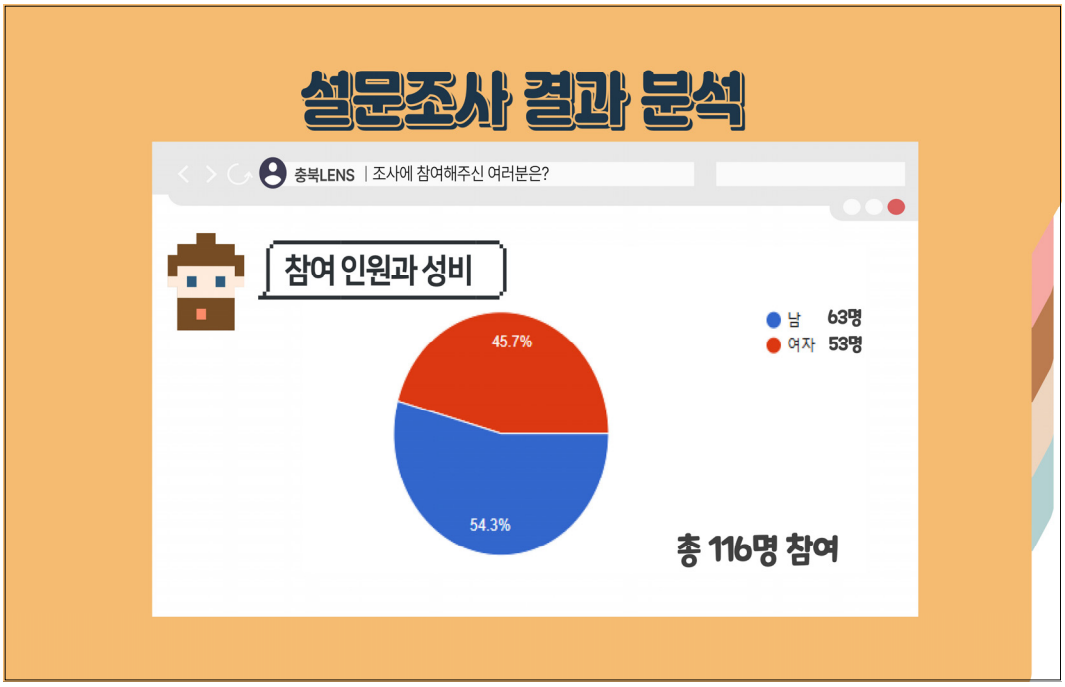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분석
충북LENS |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은?
참여 인원과 성비
45.7%
54.3%
남 63명
여자 53명
총 116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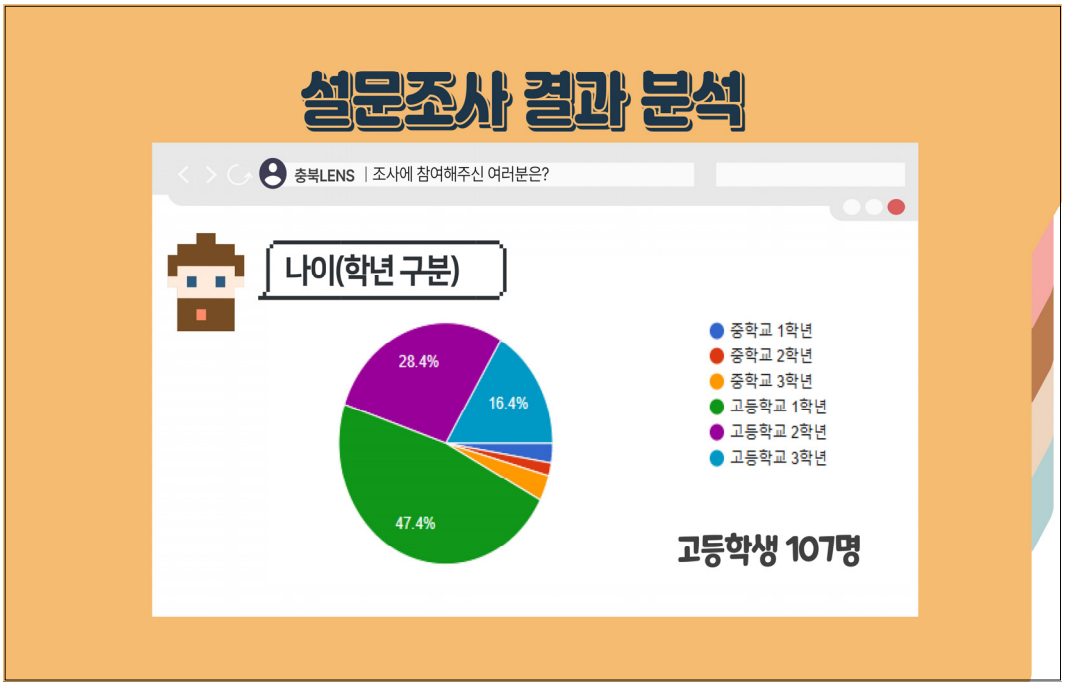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분석
충북LENS |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은?
나이(학년 구분)
28.4%
16.4%
47.4%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 107명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충북LENS |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은?

## 행복요소와 불행요소

### 행복 요소

- 가족
- 돈
- 친구
- 게임/노래
- 음식 등

### 불행 요소

- 공부
- 싸움
- 진로
- 학교/기숙사
- 인간관계 등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충북LENS | 학생들의 학습현황, 실태가 궁금해요.

## 학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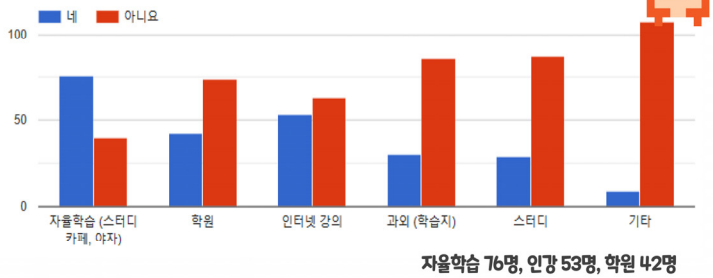


자율학습 76명, 인강 53명, 학원 42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충북LENS | 학생들의 학습현황, 실태가 궁금해요.

## 학습 시간(개인)

3. 시험기간 중 여러분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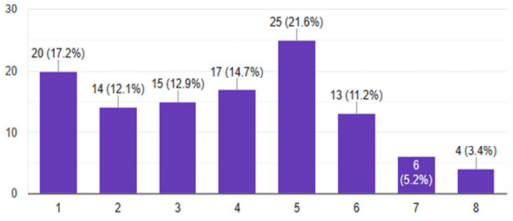


하루 평균 학습시간 3.9시간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충북LENS | 학생들의 학습현황, 실태가 궁금해요.

## 학업 스트레스 정도

6. 평소 학습 중 스트레스 정도를 표기해 주세요.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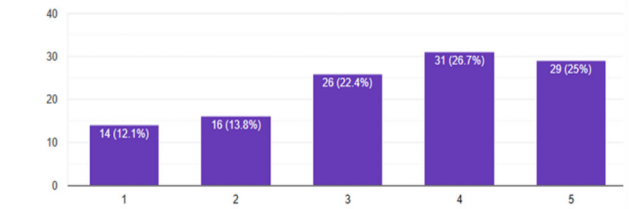


과반수 이상(51.7%)의 학생이 학업부담을 느낌

#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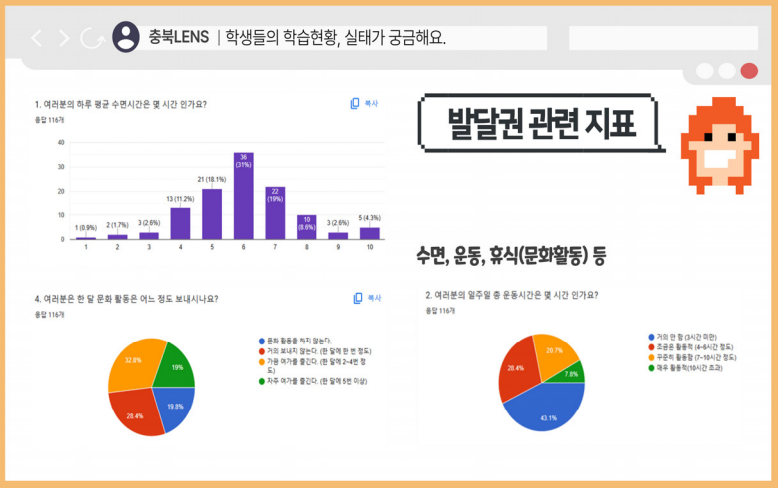


# 활동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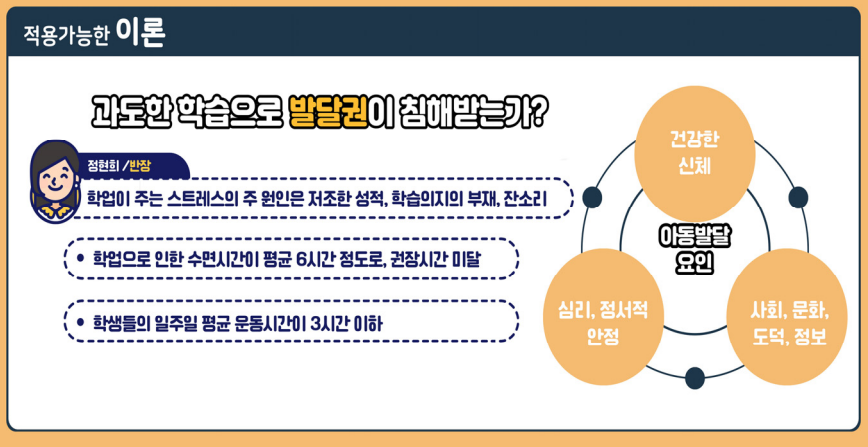

# 활동 결과

~ 계획달성 정도 ~

## 활동관련 이슈

- 하나 모든 대면 활동이 방과 후 늦은 시간에 이루어짐.
- 둘 외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2회기때, 기상 악화로 취소됨.
- 셋 캠페인 진행 시에 충주 시내 학생의 참여율이 저조함
- 넷 개인 일정이 타이트하여 활동을 간소화하여 진행함.

# 활동과정에서 아쉬운 점

- 개개인 일정이 바빠, 시간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 학교 내 활동이 주로 이루어져 아쉬움을 느꼈다.
- 학생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나왔지만, 주도적인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다.
- 설문지 작성 경험 부족으로 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 활동과정을 통해 배운 점

- 아동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감수성
- 토론을 통해 여러 의견을 조율하여 더 좋은 방안을 제시
- 주도적 활동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직접 실천하기)
- 팀원들과의 협동심

# 활동 총평

**정현희**

더 많은 활동을 같이하고 싶었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하지만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활동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인권감수성
특히, 발달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강의를 하거나 아동인권을 위한 실천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 QnA~

## 권역별 사례발표

### - Youth Activists, 제주 2권역 -

발표 : 이유민, 강윤교, 박한주
코디네이터 : 강민경

# 주제 선정 과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개선하고자 함.

→ 문화, 영양, 장애 등의 다양한 의견 도출

장애 아동의 인권이 사회적 시설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가?

# 2차 창작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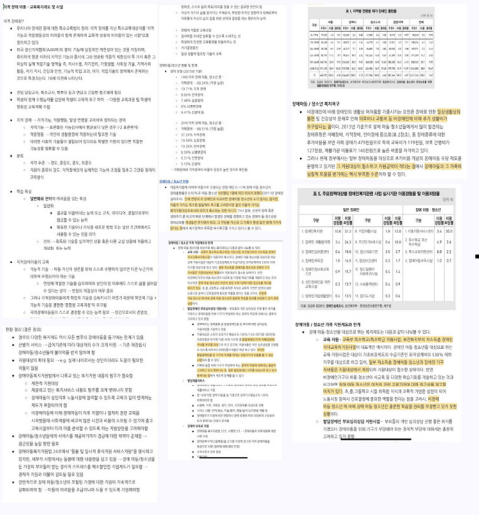

→

* 장애 아동의 일상 속 불편함을 강조하기 위한 카드 뉴스 (@nlyouthactivists 인스타그램에 게재)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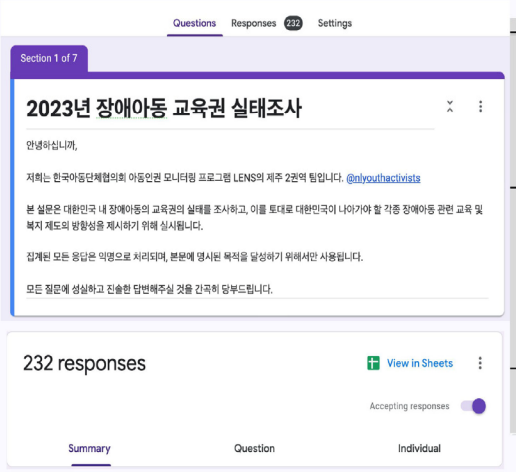


| 광역지자체명 | 학교명 | 인스타 링크 | 인스타 아이디 | 응답 |
|---|---|---|---|---|
| 서울 | 휘문고등학교 | https://www.insta | whimoon_official | |
|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https://www.insta | dwfhs_official | |
| | 잠실고등학교 | https://www.insta | jamsil.hs_official | |
| | 현대고등학교 | https://www.insta | hdhs_sc_official | |
| | 선덕고등학교 | https://www.insta | sunduck1983_official | |
| | 이화여자고등학교 | https://www.insta | ewha_1886 | |
| | 문정고등학교 | https://www.insta | mj_ggs_2023 | |
| | 반포고등학교 | https://www.insta | banpohs_sc | |
| | 광문고등학교 | https://www.insta | gwang_.mun | |
| | 경문고등학교 | https://www.insta | kyungmoon_sc | 미정 |
| | 계성고등학교 | https://www.insta | gyeseong_flatb_37 | 수학 |
| 경기 | 평내고등학교 | https://www.insta | pyeongnae_with.p | |
| | 경기여자고등학교 | https://www.insta | kgghs_sc | |
| | 호평고등학교 | https://www.insta | hopyeong_highschool_ | |
| | 의정부고등학교 | https://www.insta | uigocouncil_official | |
| | 보정고등학교 | https://www.insta | bojeong_student_council | |
| | 구리고등학교 | https://www.insta | gurihighschool | |
| | 위례고등학교 | https://www.insta | wirye_highschool_harang | 미정 |
| | 의왕고등학교 | https://www.insta | uiwanghighschool_official | |
| | 부천고등학교 | https://www.insta | bchs__official | |
| | 한솔고등학교 | https://www.insta | hanns0l_ | |
| | 인창고등학교 | https://www.insta | inchang_highschool_2023 | |
| | 보평고등학교 | https://www.insta | bphs_official | |
|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 https://www.insta | student_council_gcfl | |
| | 가화고등학교 | https://www.insta | gajwago_official | |
| | 계신여자고등학교 | https://www.insta | gsgh_official | |
| | 안일여자고등학교 | https://www.insta | inil_official | |
| | 학익여자고등학교 | https://www.insta | hakik_girls_st.c | |
| | 안천명호고등학교 | https://www.insta | yi_student_council | |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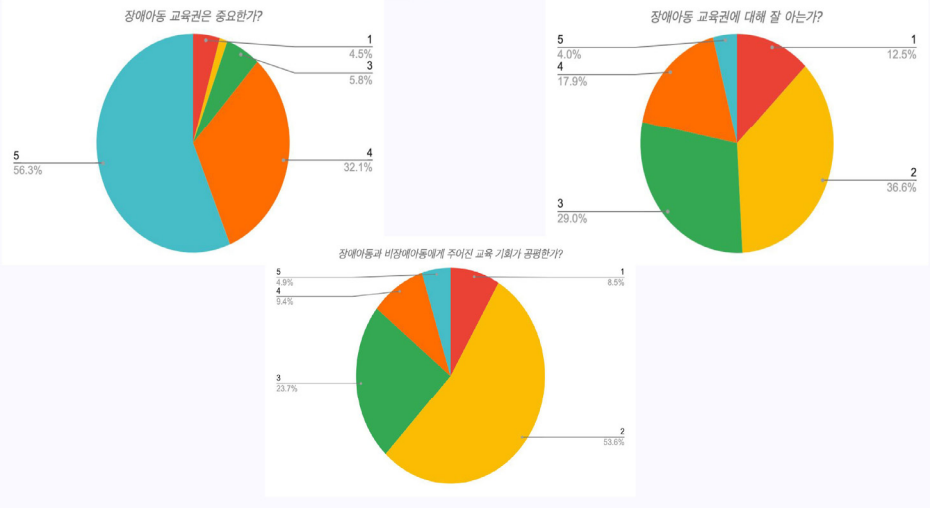

# 설문조사

| 설문조사 답변 |
| --- |
| 사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이 교실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해서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라는 옵션도 있고 또 같은 교실에서 비장애아동들과 같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다른 교재를 사용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따로 교육을 할 지언정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사회적으로 차별 요소가 너무 많고 장애아에게 관대한 부분들이 심히 많다 |
|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할 순 없지만 모든 아동이 똑같은 교육 기회를 얻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 아무래도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는 또래들과 같은 수업을 듣기 힘들어서 특수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br>제가 어렸을때 학교에 장애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특수반 수업도 있어서 친구들은 그 수업을 들으러 갔고 수업을 마치면 다시 반으로 돌아와 같이 종례시간을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br><br>그러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비장애인 친구들도 그 몸과 정신이 불편한 친구를 꺼리는게 아니라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고 어렸을때의 기억 때문인지 그런 사람들을 볼때 편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시절 잠깐이라도 아픈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기를수 있게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 특수학교가 아닌 경우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비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느끼는 차별적 요소나 교육 기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비장애아동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

| |
| --- |
| 장애아동의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장애아동의 비율보다는 비장애아동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보나 이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장애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전문 지식과 편견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과는 큰 차별점이 있을 것이다. |
|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 또는 다른 장애아동들과 분리시켜두기 때문에 비장애아동보다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
| 알 방법도 없고 경험해보지 않아 설문 응답에 어려움이 있다. |
| 장애인의 교육 과정과 장애인 교육 과정에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들과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다. |
| 사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모르는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장애교육 시간에 장애인의 대한 교육권을 다뤄주면 좋겠다 |

#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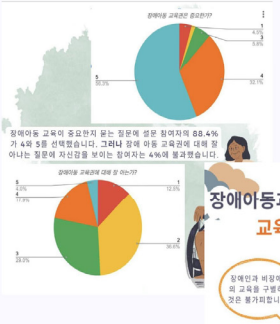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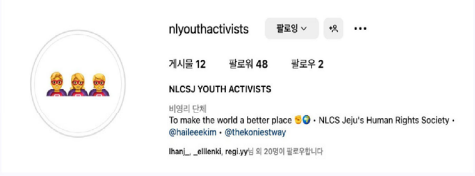

# 결론 도출

## 국내 언론사 기사 게재

### 장애교육, 형식 넘어 이해 선행돼야

'대한민국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NLCS 제주 12학년 강윤교

올해 8월부터 NLCS 제주 인권 동아리에서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동아리는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장애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비장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7%였던 비장애 아동 및 성인의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의 88.4%가 장애 아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반면 이에 대해 잘 안다고 대답한 이들은 21.9%에 불과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가 공평한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모든 아동이 똑같은 교육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과의 합반이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 분석을 통해 응답자 대다수가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장애 학생 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해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다. 장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기에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형식적인 장애교육을 넘어 장애 아동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동아리원들 모두 장애 아동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 일원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틴 Teen 매일경제

## 펀드레이징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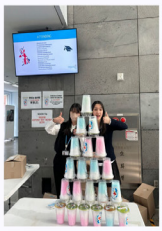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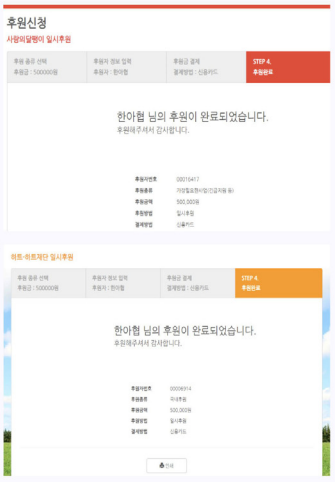


## 초등 저학년 대상 장애아동 이해 교육

## 추가 활동 계획

## 우리의 의견

# 감사합니다!

강윤교 기가현 김건이 김해인 박한주 이유민 이현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토 론 문

**김나연**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책임활동가)
**코 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토론문

## - 청소년 참여권의 지금 -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

김나연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책임활동가)

## 1. 들어가며

평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다양한 참여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권을 조금이나마 행사하고 있지만, 학업과 진로 고민으로 바쁜 이 시대의 아동들이 과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인 참여권의 영역부터 정치적 참여권까지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아동 당사자로서 현재 아동 참여권 보장 실태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고 나름의 분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동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참여들을 꼽자면 가정에서의 참여, 학교에서의 참여, 그리고 정치를 포함한 사회 일반 영역에서의 참여를 꼽을 수 있겠다.

## 2. 가깝지만 먼, 아동 참여권

### 1) 가정 내 참여권

가정에서 아동은 자신이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갈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갈지 등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어엿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어디로 이사를 갈지는 물론이고 어떤 종교를 믿을것인지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민

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시행하고있지만 이에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 2) 학교 내 참여권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생자치회장을 뽑고, 교칙을 개정하는 일 등 학생이 참여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에는 학생의 의결권이 없다. 교사와 학부모는 의결권이 있지만 학생대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게 다일 뿐이다. 또한 학생대표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일반 학생들은 의견을 제시할 창구와 수단이 부족하기도 하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모호하게 적혀있다.

### 3) 사회 내 참여권

사회에서 아동이 현재 참여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주로 지자체의 아동참여기구 등에 가입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아동의 수는 극히 일부이며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2023년 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성인 1천명과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참여권 인식 조사[1]에서는 아동 참여권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 아동 43%, 성인 33% 총 714명으로 겨우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교육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며, 현재 아동권리교육과 직접적 권리행사를 통한 내재화가 몹시 부족한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참정권 전반의 부여가 필요함에도 현재 만 16세 이상의 아동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아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아동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1) 세이브더칠드런(2023), 아동 참여권 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유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정치적 참여권에서 아동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 또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 3. 나가며

지역의 아동참여위원장부터 아동총회의 의장단까지를 지내며 내가 아동의 참여권에 대해 느꼈던 점을 적어보았다. 참여권은 아동의 4대 기본권 중에서 가장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장 지켜지고 있지 않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나이주의적 관점이 뿌리내린 것도 중요한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한 활동가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세대, 후발세대이다.**
**청소년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토론문

코 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토론문

##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 ‘가정, 학교’ 울타리를 넘어선,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1.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 차이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한 ‘아동 참여권 인식 조사(2023.5)’ 결과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43%, 성인 33% 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내지, 교육 등을 통해 성장시켜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권리적 관점’에서 당연하게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할 ‘참여권’이 일상생활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동 관련 법 중 1961년 제정되고, 그 다음 해에 시행한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의 제정 취지를 보더라도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보호’, ‘복지’의 관점은 여전히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기본법’ 체계 하에 개별 법률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스스

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관점과 접근이 아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은 사회적 규범으로 그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법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한 개념만 살펴보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사회적 인식과 당사자의 권리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형모 교수님께서 분석한 〈아동·청소년 참여권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아동보다는 청소년의 권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 역시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가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 편견을 넘어,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마땅히 권리의 주체로 권리를 행사하며, 보장받음은 물론, 시민권적 사회권을 확대해나가는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대정신을 담은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개념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갑논을박을 넘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주요 권리 중 하나로 '참여권'을 보는 것처럼, 「아동복지법」의 시대에서 아동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동 기본법」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년)」에서도 아동 행복과 권리주체로서 아동 관점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 정비,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아동 정책을 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립할 필요성을 수립 배경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아동을 보육·양육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권 보장을 넘어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가정', '학교'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실태

〈아동·청소년 참여권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김형모, 2023)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참여권 〉 학교에서의 참여권 〉 사회에서의 참여권 순으로 '사회에서의 참여권'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와 타인의 인권침해'와 '사회 참여 기타 영역'이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고, 정책과정 참여 〉 정치적 참여 〉 지역중심 참여 〉 단체 자율 참여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 참여권 하위영역 전체 평균이 3.25로 가장 높은 반면, 학교에서의 참여권 하위영역 전체 평균이 3.18로 가정에서 참여권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에서의 참여권 하위영역 전체 평균은 2.77로 가정과 학교 두 영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가정,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 보낸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역시 이질적인 결과는 아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외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 당사자 스스로의 권리·참여 의식은 높은 편으로 조사되지만, 사회에서 참여를 경험해 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절대적 시간 부족(여가 시간 포함)과 더불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정책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함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2004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제외하고, 실제 아동이 주체적으로 권

리를 인식하고 아동 스스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을 근거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사업) 중심의 운영은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어 형식적, 단편적으로 운영되거나 참여 유인 등이 부족하여 참여가 일부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무한경쟁의 입시 현실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에서의 참여는 가정, 학교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역시 상존하고 있다.

## 3. '가정', '학교' 울타리를 넘어선,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가정'과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인 '청년기'에 마치 '아동',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못한 것을 폭발적으로 하듯 '권리의 주체'로 강력하게 법·제도적 장치를 만든 흐름 역시, 앞선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이질적이지 않은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에는 청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30% 할당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청년보장제 등을 먼저 시작한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다.

**【참고】「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 ·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 · 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 · 추진 · 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년~'25년)」의 3대 원칙 중 하나가 '참여와 주도'이며, 청년정책 5대 영역 중 하나가 참여·권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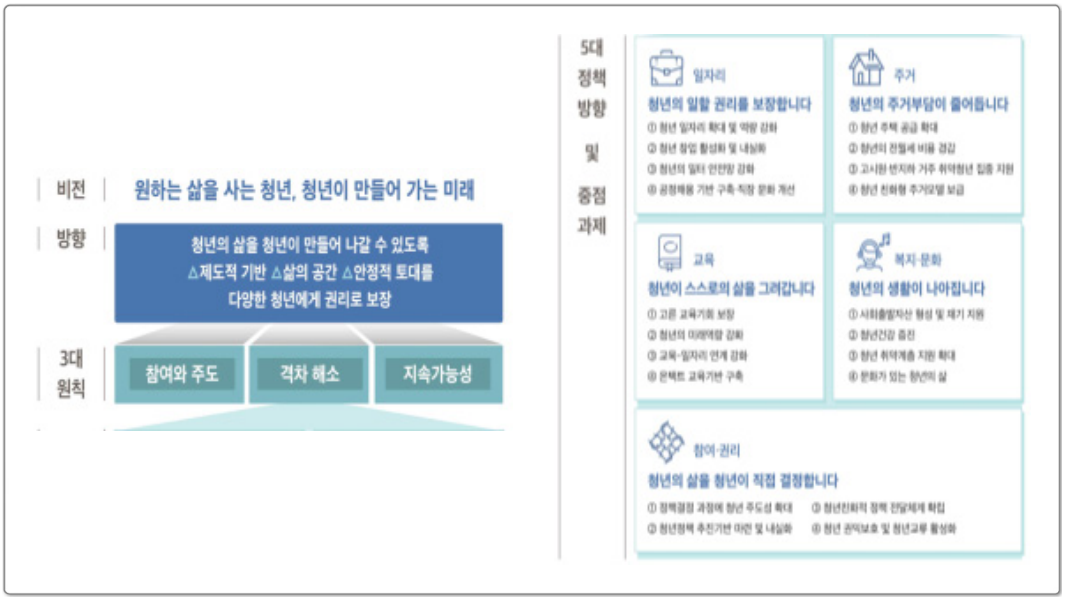


이러한 시민으로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본법 제정 이전에 지역에서부터 「청년기본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소비되는 청년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활동을 하며, 조례를 근거로 심의기구, 참여기구 활동의 장을 넓혀온 청년 당사자 주도의 사회운동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법제도에 비해 이제 형성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정책의 영역에서도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이것이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폭발적으로 집중되기보다는 시기별, 단계별로 다양한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흐름 속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정'과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서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일회적, 형식적 참여를 탈피하여 지속적인 참여보장을 통해 참여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일상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모임, 단체 활동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의 경우, 미래세대 인지적 관점의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 제도화가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그 결과가 다시 정책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Empowerment)하여, 참여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방안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21년 「공직선거법」, '22년 「정당법」 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확대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고,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하향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것인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023 아동인권 보고대회

| 인 쇄 | 2023년 11월
| 발 행 | 2023년 11월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 전 화 | (02) 2125-9641 | F A X | (02) 2125-0929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주)두루행복한세상 (사회적·장애인기업)
| 전 화 | (070) 4659-0803 | F A X | (070) 7500-1146

ISSN 3022-2141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